

발간등록번호

34-9761045-190018-13



[별책]

2019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표

ELECTORAL SYSTEM

A WORLDWIDE COMPARATIVE STUDY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차례

제1장 선거일반

| | |
|-------------------------------------|----|
| <표 1-1> 각국의 통치체제 | 7 |
| <표 1-2> 각국의 정부형태 | 8 |
| <표 1-3> 각국의 의회제도 | 9 |
| <표 1-4> 각국의 의원임기 | 11 |
| <표 1-5> 각국의 대표제도 | 14 |
| <표 1-6> 각국의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 | 17 |
| <표 1-7> OECD국가의 정부형태 및 선거제도 현황 | 18 |
| <표 1-8> OECD국가의 선거제도 내용 | 20 |
| <표 1-9> 각국의 선거원칙에 관한 헌법규정 | 29 |
| <표 1-10>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유형 | 30 |
| <표 1-11> OECD국가의 선거관리기관 현황 | 31 |
| <표 1-12> 의무투표제 실시 주요 국가 현황 | 34 |
| <표 1-13> OECD국가의 연도별 선거 투표율(%) | 35 |
| <표 1-14> OECD국가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 시 공개 내용 | 37 |
| <표 1-15> 주요 국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내용 | 39 |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 | |
|--------------------------------------|----|
| <표 2-1> 각국의 선거권 연령 | 40 |
| <표 2-2> 최근 선거연령 조정국가 현황 | 41 |
| <표 2-3> OECD국가의 민법상 성년연령 및 선거권 연령 비교 | 41 |
| <표 2-4> 각국의 선거권 요건(연령 제외) | 42 |
| <표 2-5> OECD국가의 선거권 도입연도 | 43 |
| <표 2-6> OECD국가의 선거권 현황 | 44 |
| <표 2-7> 각국의 피선거권 연령(하원의원 기준) | 47 |
| <표 2-8> 각국의 피선거권 요건 | 48 |
| <표 2-9> OECD국가의 피선거권 현황 | 50 |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 | |
|--------------------------------|----|
| <표 3-1> OECD국가의 의원 1명당 인구수 | 52 |
| <표 3-2> OECD국가의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비율 | 54 |
| <표 3-3> 각국의 선거구획정기구 | 56 |
| <표 3-4> OECD국가의 선거구획정절차 | 57 |
| <표 3-5> OECD국가의 선거구획정기준 | 61 |

제4장 선거일과 선거인명부

| | |
|-----------------------------|----|
| <표 4-1> OECD국가의 의회 선거소집 | 65 |
| <표 4-2> 각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관 | 68 |
| <표 4-3> OECD국가의 선거인명부 작성 현황 | 69 |

제5장 후보자

| | |
|--|----|
| <표 5-1> 각국의 무소속 후보자 출마가능 선거 | 71 |
| <표 5-2> OECD국가의 후보자 등록 신청방법 | 72 |
| <표 5-3> OECD국가의 무소속 후보자 등록방법 | 77 |
| <표 5-4> OECD국가의 공무원 입후보 및 사직기한 | 80 |
| <표 5-5> OECD국가의 후보자 사퇴 시한 | 83 |
| <표 5-6> 각국의 여성 의회의원 비율 | 84 |
| <표 5-7> 각국의 여성할당제 | 86 |
| <표 5-8> 지정의석할당제 국가 현황 | 87 |
| <표 5-9> OECD국가의 후보자 추천 관련 여성할당제와 제재 현황 | 90 |
| <표 5-10> OECD국가의 후보자 기탁금액 및 반환기준 | 93 |
| <표 5-11> 각국의 기탁금 반환요건 | 95 |

제6장 선거운동

| | |
|---------------------------------------|-----|
| <표 6-1> OECD국가의 선거운동기간 | 96 |
| <표 6-2> OECD국가의 무료 방송시간 및 무료 인쇄물 배정방법 | 99 |
| <표 6-3> OECD국가의 선거운동방법 | 101 |

제7장 선거운동 제한·금지사항

| | |
|----------------------------------|-----|
| <표 7-1> OECD국가의 확성기 사용제한 | 104 |
| <표 7-2> OECD국가의 선거일 선거운동 가능 여부 | 106 |
| <표 7-3> 각국의 여론조사 결과공표 제한 기간 | 108 |
| <표 7-4> 각국의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기간 변동 현황 | 109 |
| <표 7-5> OECD국가의 여론조사 결과공표 제한 | 111 |
| <표 7-6> OECD국가의 출구조사 규제 현황 | 113 |
| <표 7-7> 각국의 선거 관련 허위사실에 대한 대응 현황 | 115 |
| <표 7-8> OECD국가의 후보자 등 비방금지 관련 규정 | 118 |
| <표 7-9> OECD국가의 선거운동 규제방법 | 119 |

제8장 선거비용

| | |
|-----------------------------------|-----|
| <표 8-1> 각국의 선거비용 지출에 대한 제한 | 123 |
| <표 8-2> 각국의 선거비용 보고서 제출 및 공개여부 현황 | 123 |
| <표 8-3> OECD국가의 선거비용 제한액 현황 | 125 |
| <표 8-4> OECD국가의 선거비용 관련 위반 시 제재내용 | 129 |
| <표 8-5> 각국의 선거비용 직접지원 현황 | 132 |
| <표 8-6> 각국의 정당 활동 관련 간접비용 보조 현황 | 133 |
| <표 8-7> OECD국가의 선거비용 직접지원 현황 | 134 |
| <표 8-8> OECD국가의 선거비용 간접지원 현황 | 139 |

제9장 투표

| | |
|---|-----|
| <표 9-1> 각국의 투표요일 | 141 |
| <표 9-2> OECD국가의 투표요일, 선거일 수, 투표시간, 개표시간 | 142 |
| <표 9-3> OECD국가의 투표용지 내용 현황 | 145 |
| <표 9-4> OECD국가의 부재자투표 실시 현황 | 148 |
| <표 9-5> OECD국가의 특별투표제도 현황 | 152 |

제10장 재외선거

| | |
|-------------------------------|-----|
| <표 10-1> OECD국가의 재외선거인 자격요건기간 | 155 |
| <표 10-2> OECD국가의 재외선거 | 156 |
| <표 10-3> 해외선거구 도입 국가 | 161 |

제11장 전자투표

| | |
|-------------------------|-----|
| <표 11-1> 주요 전자투표 방식 | 162 |
| <표 11-2> 각국의 전자투표 실시 현황 | 163 |
| <표 11-3> 전자투표 비실시 국가 현황 | 165 |

제12장 개표

| | |
|-------------------------------|-----|
| <표 12-1> OECD국가의 개표장소 및 개표참관인 | 167 |
|-------------------------------|-----|

제13장 당선인

| | |
|----------------------------------|-----|
| <표 13-1> OECD국가의 의회의원 임기개시와 임기만료 | 169 |
|----------------------------------|-----|

제14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 | |
|---------------------------------|-----|
| <표 14-1> OECD국가의 의회의원 결원 시 보충방법 | 174 |
|---------------------------------|-----|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 | |
|---------------------------------|-----|
| <표 15-1> OECD국가의 선거에 관한 쟁송 제기방법 | 177 |
|---------------------------------|-----|

제16장 벌칙

| | |
|-----------------------------|-----|
| <표 16-1> OECD국가의 주요 선거범죄 비교 | 180 |
|-----------------------------|-----|

제1장 선거일반

<표 1-1> 각국의 통치체제

| 통치형태 | 대륙 | 국가 |
|---------------|----------------|---|
| 군주국(2) | 중동(2) |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
| 입헌군주국 (41) | 아시아(6) | 부탄, 브루나이, 캄보디아,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
| | 중동(4) |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 카타르 |
| | 아프리카(3) |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로코 |
| | 유럽 (11) | 안도라, 벨기에,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스웨덴, 스페인 |
| | 중·남·북미 (10) |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캐나다, 그레나다, 자메이카,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
| | 오세아니아 (7) |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투발루,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
| 공화국 (150) | 아시아 (22) | 대한민국, 방글라데시, 미얀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라오스, 몰디브, 몽골,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북한, 베트남,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동티모르,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
| | 중동 (15) | 아프가니스탄, 차드, 이집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리비아, 팔레스타인, 시리아, 터키, 아랍에미리트, 예멘, 아르메니아, 레바논, 키프로스 |
| | 아프리카 (49) | 알제리, 앙골라,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카보베르데, 코모로,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가봉,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온두라스, 케냐,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소말리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탄자니아, 토고, 튀니지,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감비아, 남수단 |
| | 유럽 (32) | 알바니아, 벨라루스,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오스트리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몰타, 몰도바, 몬테네그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
| | 중·남·북미 (25) |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멕시코, 아르헨티나,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푸에르토리코, 수리남, 미국, 우루과이, 트리니다드토바고, 베네수엘라, 도미니카연방 |
| | 오세아니아 (7) | 피지, 키리바시, 나우루,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바누아투, 마셜제도 |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Comparative Data.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ES001> (검색일 2019.3.8.)

외교부. 국가 및 지역정보 2019.3.8.기준

<표 1-2> 각국의 정부형태

| | 대륙 | 국가 |
|---------------|---|--|
| 대통령제 (92) | 아시아(9) | 대한민국,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몰디브, 필리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
| | 중동(6) | 이집트, 이란, 시리아, 터키, 아랍에미리트, 예멘 |
| | 아프리카 (45) |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앙골라,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가봉,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케냐, 말라위,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르완다, 나이지리아, 세네갈, 세이셸,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탄자니아, 토고, 튀니지,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
| | 유럽(6) |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키프로스,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
| | 중·남·북미 (23) |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미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 | 오세아니아 (3) | 키리바시,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
| 의원내각제 (76) | 아시아(11) | 방글라데시, 부탄,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네팔, 파키스탄, 싱가포르, 태국 |
| | 중동(7) | 바레인,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카타르 |
| | 아프리카(4) | 에티오피아, 레소토, 모리셔스, 에스와티니 |
| | 유럽 (29) | 알바니아, 안도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덴마크, 에스토니아, 조지아,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
| | 중·남·북미 (12) |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캐나다, 도미니카연방, 그레나다, 자메이카, 세인트키츠네비스연방,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트리니다드토바고 |
| 오세아니아 (13) | 사모아, 호주, 쿡제도, 피지, 마셜제도, 나우루, 뉴질랜드, 니우에,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 |
| 의원정부제 (18) | 아르메니아, 불가리아, 카보베르데, 크로아티아, 체코,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몰도바, 팔레스타인,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상투메프린시페,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동티모르 | |
| 집단지도체(1) | 스위스 | |
| 기타(6) |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북한, 중국, 라오스, 리비아 | |

※ 의원정부제: 직선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의회의 신임을 얻어 총리를 지명하고, 총리가 의회의 신임을 얻어 정부내각을 구성

※ 집단지도체: 임기가 4년인 정부각료 7명이 돌아가면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맡고, 상원과 하원의 합동회의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은 사실상 수석 각료로서 대외적인 외교 및 의전위주의 활동을 함.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Comparative Data.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ES003> (검색일 2019.3.11.)

외교부. 국가 및 지역정보 2019.3.8.기준

<표 1-3> 각국의 의회제도

■ 단원제 국가 116개국

| 아시아 | 중동 | 아프리카 | 유럽 | 중·남·북미 | 오세아니아 |
|---------|---------|-----------|--------|-------------|--------|
| 대만 | 리비아 | 가나 | 그리스 | 가이아나 | 캄 |
| 대한민국 | 사우디아라비아 | 감비아 | 노르웨이 | 파테말라 | 나우루 |
| 동티모르 | 시리아 | 기니 | 덴마크 | 니카라과 | 뉴질랜드 |
| 라오스 | 아랍에미리트 | 기니비사우 | 라트비아 | 도미니카연방 | 니우에 |
| 마카오 | 아르메니아 | 니제르 | 룩셈부르크 | 베네수엘라 | 마셜제도 |
| 몰디브 | 이라크 | 말라위 | 리투아니아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미크로네시아 |
| 몽골 | 이란 | 말리 | 리히텐슈타인 | 세인트키츠네비스 | 바누아투 |
| 방글라데시 | 이스라엘 | 모리셔스 | 마케도니아 | 수리남 | 사모아 |
| 베트남 | 이집트 | 모잠비크 | 모나코 | 에콰도르 | 솔로몬제도 |
| 북한 | 카타르 | 베냉 | 몬테네그로 | 엘살바도르 | 키리바시 |
| 브루나이 | 쿠웨이트 | 보츠와나 | 몰도바 | 코스타리카 | 통가 |
| 스리랑카 | 키프로스 | 상투메프린시페 | 몰타 | 쿠바 | 투발루 |
| 싱가포르 | 터키 | 세네갈 | 불가리아 | 파나마 | 파푸아뉴기니 |
| 중국 | | 세이셸 | 산마리노 | 페루 | 피지 |
| 키르기스스탄 | | 시에라리온 | 세르비아 | | |
| 투르크메니스탄 | | 에리트레아 | 스웨덴 | | |
| 팔레스타인 | | 온두라스 | 스페인 | | |
| 홍콩 | | 우간다 | 슬로바키아 | | |
| | | 잠비아 | 아이슬란드 | | |
| |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아제르바이잔 | | |
| | | 지부티 | 안도라 | | |
| | | 차드 | 알바니아 | | |
| | | 카보베르데 | 에스토니아 | | |
| | | 코모로 | 우크라이나 | | |
| | | 코트디부아르 | 조지아 | | |
| | | 탄자니아 | 크로아티아 | | |
| | | 토고 | 포르투갈 | | |
| | | 튀니지 | 핀란드 | | |
| | | | 헝가리 | | |
| 18개국 | 13개국 | 28개국 | 29개국 | 14개국 | 14개국 |

■ 양원제 국가 84개국

| 아시아 | 중동 | 아프리카 | 유럽 | 중·남·북미 | 오세아니아 |
|--------|-----|----------|------------|----------|--------|
| 네팔 | 레바논 | 가봉 | 네덜란드 | 그레나다 | 뉴칼레도니아 |
| 말레이시아 | 바레인 | 나미비아 | 독일 | 도미니카공화국 | 사모아 |
| 미얀마 | 예멘 | 나이지리아 | 러시아 | 멕시코 | 쿡제도 |
| 부탄 | 오만 | 남아프리카공화국 | 루마니아 | 미국 | 팔라우 |
| 우즈베키스탄 | 요르단 | 라이베리아 | 벨기에 | 바베이도스 | 호주 |
| 인도 | | 레소토 | 벨라루스 | 바하마 | |
| 인도네시아 | | 르완다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벨리즈 | |
| 일본 | | 마다가스카르 | 스위스 | 볼리비아 | |
| 카자흐스탄 | | 모로코 | 슬로베니아 | 브라질 | |
| 캄보디아 | | 모리타니 | 아일랜드 | 세인트루시아 | |
| 타지키스탄 | | 부룬디 | 영국 | 아르헨티나 | |
| 태국 | | 부르키나파소 | 이탈리아 | 아이티 | |
| 파키스탄 | | 소말리아 | 체코 | 앤티가바부다 | |
| 필리핀 | | 수단 | 폴란드 | 우루과이 | |
| | | 아프가니스탄 | 프랑스 | 자메이카 | |
| | | 알제리 | | 칠레 | |
| | | 에스와티니 | | 캐나다 | |
| | | 에티오피아 | | 콜롬비아 | |
| | | 적도기니 | | 트리니다드토바고 | |
| | | 짐바브웨 | | 파라과이 | |
| | | 카메룬 | | 푸에르토리코 | |
| | | 케냐 | | | |
| | | 콩고공화국 | | | |
| | | 콩고민주공화국 | | | |
| 14개국 | 5개국 | 24개국 | 15개국 | 21개국 | 5개국 |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Comparative Data.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ES004> (검색일 2019.3.11.)

외교부. 국가 및 지역정보 2019.3.11.기준

<표 1-4> 각국의 의원임기

■ 상원의원

| 임기 | 아시아 | 중동 | 아프리카 | 유럽 | 중·남·북미 | 오세아니아 |
|-------------------------------|--|-----|--|---|--|-------|
| 3년(1) | 말레이시아 | | | | | |
| 4년 (18) | | 요르단 | 나이지리아 마다가스카르 소말리아 | 네덜란드 러시아 루마니아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폴란드 | 도미니카공화국 볼리비아 콜롬비아 푸에르토리코 | 팔라우 |
| 5년 (33) |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태국 | |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부룬디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케냐 레소토 짐바브웨 | 벨기에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 그레나다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세인트루시아 우루과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 |
| 6년 (25) | 네팔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 | 가봉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수단 알제리 차드 콩고공화국 | 체코 프랑스 | 멕시코 미국 아르헨티나 아이티 | 호주 |
| 8년(2) | | | | | 브라질 칠레 | |
| 9년(1) | | | 라이베리아 | | | |
| 임기 다양 ¹⁾ (3) | 아프가니스탄 ²⁾ | | |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 | |
| 75세(1) | | | | | 캐나다 | |
| 종신(1) | | | | 영국 | | |

※ 이탈리아의 경우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자, 사회·과학·예술 등 영역에서 국가에 업적과 공훈을 쌓은 자 등 일부는 종신직

1) 개별 주정부가 임기결정

2) 아프가니스탄 상원의원의 임기는 주의회에서 선출한 의원의 경우는 4년,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의원은 3년, 대통령이 지명한 의원의 임기는 5년으로 다양

■ 하원의원

| 임기 | 아시아 | 중동 | 아프리카 | 유럽 | 중·남·북미 | 오세아니아 |
|------------|--|---|---|---|---|--|
| 2년(2) | | | | | 미국 | 미크로네시아 ³⁾ |
| 3년 (8) | 필리핀 | | | | 멕시코 엘살바도르 | 나우루 뉴질랜드 니우에 통가 호주 |
| 4년 (85) | 대만 대한민국 몽골 아르메니아 일본 조지아 태국 |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 가나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베냉 상투메프린시페 수단 소말리아 앙골라 차드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조지아 체코 코소보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 과테말라 그린란드 도미니카공화국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온두라스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푸에르토리코 | 마셜군도 바누아투 솔로몬군도 키리바시 쿡제도 투발루 팔라우 |

3) 미크로네시아의 14개 의석 중 4개 주에서 한 명씩 선출한 4석은 임기가 4년이며, 소선거구에서 선출된 10석은 2년 임기

| 입기 | 아시아 | 중동 | 아프리카 | 유럽 | 중·남·북미 | 오세아니아 |
|-------------|--|-----------------------------------|--|---|--|--------|
| 5년 (107) |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북한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오만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아르메니아 이집트 키프로스 터키 튀니지 | 가봉 감비아 기니 나미비아 남아공 니제르 레소토 르완다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 모잠비크 벨리즈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세이셸 소말리아 에스와티니 시에라리온 알제리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튀니지 | 러시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몰타 벨기에 산마리노 아일랜드 영국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프랑스 헝가리 | 가이아나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앤티가바부다 우루과이 자메이카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 피푸아뉴기니 |
| 6년 (6) | 스리랑카 | 예멘 | 라이베리아 모로코 수단 예멘 | | | |

출처: CIA. World Fact book. 2019.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resources/the-world-factbook/geos/xx.html> (검색일 2019.3.25.)

<표 1-5> 각국의 대표제도

■ 상원의원

| 대표제도 | | 아시아 | 중동 | 아프리카 | 유럽 | 중·남·북미 | 오세아니아 |
|-------------------|-----------------------|------------|----|--|----------------------------------|--|--------|
| 다수 대표제 (12) | 단순다수제 (10) | | | 나이지리아 말라위 에티오피아 잠비아 탄자니아 | 스위스 | 도미니카 공화국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 투발루 |
| | 결선투표 (2) | | | | 체코 | | 뉴칼레도니아 |
| 비례 대표제 (8) | 명부식 비례대표제 (5) | | | | 루마니아 |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 |
| |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 (3) | 인도 파키스탄 | | | | | 호주 |
| 혼합제 (4) | 2표병립제 (4) | 일본 | | 마다가스카르 | 프랑스 이탈리아 | | |
| 임명 (14) | | | 예멘 | 레소토 남수단 | 독일 러시아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영국 | 바베이도스 바하마 벨리즈 세인트루시아 자메이카 캐나다 | |
| 기타 (17) | | 네팔 베트남 | | 감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모로코 보츠와나 소말리아 에스와티니 알제리 에리트레아 카메룬 콩고 | 네덜란드 벨기에 벨라루스 | | 통가 |

■ 하원의원

| 대표제도 | 아시아 | 중동 | 아프리카 | 유럽 | 중·남·북미 | 오세아니아 | |
|-------------|----------------|---|---|--|--|--|---|
| 다수 대표제 (68) | 단순다수제 (49) |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인도 | 예멘 이집트 오만 | 가나 가봉 감비아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시에라리온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잔지바르 잠비아 짐바브웨 케냐 탄자니아 | 벨라루스 영국 | 그레나다 도미니카연방 미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 니우에 마셜군도 미크로네시아 사모아 세이셸 솔로몬제도 통가 팔라우 |
| | 선호투표제 (3) | | | | | 나우루 파푸아뉴기니 호주 | |
| | 결선투표제 (13) | 베트남 부탄 북한 우즈베키스탄 | 바레인 이란 | 말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프랑스 | 아이티 쿠바 | 뉴칼레도니아 키리바시 |
| | 단기비이양식 투표제 (3) | 몽골 | | 아프가니스탄 | | | 바누아투 |
| 비례 대표제 (63) | 명부식 비례대표제 (61) |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 아르메니아 이라크 이스라엘 키프로스 터키 팔레스타인 |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모로코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 그리스 그린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피지 |

| 대표제도 | 아시아 | 중동 | 아프리카 | 유럽 | 중·남·북미 | 오세아니아 |
|--------------|-----------------------|--|---|---|-------------------------------|-------|
| | | | 알제리 앙골라 적도기니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토고 튀니지 |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핀란드 | | |
| |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 (2) | | | 몰타 아일랜드 | | |
| 혼합제 (38) | 연동형/ 2표 병용제 (7) | | 레소토 잔지바르 지부티 | 독일 루마니아 | 볼리비아 | 뉴질랜드 |
| | 2표 병립제 (31) | 대한민국 일본 파키스탄 필리핀 타지키스탄 태국 동티모르 | 기니 니제르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모리타니 수단 차트 카메룬 | 이탈리아 러시아 리투아니아 모나코 몰도바 안도라 우크라이나 조지아 헝가리 | 멕시코 베네수엘라 파나마 푸에르토리코 | |
| 연기투표제 (3) | 싱가포르 ⁴⁾ | 레바논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 모리셔스 | | | 투발루 |
| 기타 (8) | 중국 카자흐스탄 | 요르단 | 소말리아 콩고 | |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파나마 | |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Comparative Data.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ES005> (검색일 2019.3.29.)

CIA. The World Fact Book 2019.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resources/the-world-factbook/geos/xx.html> (검색일 2019.3.29.)

IFES. Election Guide. <http://www.electionguide.org/elections/> (검색일 2019.3.29.)

4) 싱가포르는 정당일괄투표(party bloc vote)를 실시하는데 대선거구제하에서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하여 정당명부를 선택하고, 선거결과 상대다수의 지지를 얻은 정당이 해당 선거구의 의석을 모두 석권함.

<표 1-6> 각국의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

| | | 아시아 | 중동 | 아프리카 | 유럽 | 중·남·북미 | 오세아니아 |
|--------------------|--------------------------------|----------------------------|---------------------|-----------------------------------|--|--|-------|
| 최대평균 방식 (38) | 동트식 (32) | 일본 동티모르 스리랑카 캄보디아 | 아르메니아 이스라엘 터키 | 앙골라 모잠비크 지부티 베냉 카보베르데 |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파라과이 페루 | |
| | 생라계식 (2) | | | | 라트비아 | | 뉴질랜드 |
| | 수정된 생라계식 (4) | | | |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폴란드 | | |
| 최대잔여 방식 (21) | 헤어 기준수 (8) |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 | 카메룬 | 리투아니아 이탈리아 | 멕시코 온두라스 | |
| | 하겐 바흐 비쇼프 기준수 (12) | | | 모로코 시에라리온 튀니지 | 그리스 룩셈부르크 러시아 슬로바키아 스위스 | 수리남 코스타리카 볼리비아 에콰도르 | |
| | 드롭 기준수 (1) | | | | 아일랜드 | | |
| 기타(1) | | | | 차드 | | | |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Comparative Data.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question=ES005&view=country> (검색일 2019.4.3.)

European Parliament.

http://www.europarl.europa.eu/workingpapers/poli/w13/theme_en.htm (검색일 2019.4.3.)

IDEA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Electoral System Family

<https://www.idea.int/data-tools/question-view/130357> (검색일 2019.4.3.)

<표 1-7> OECD국가의 정부형태 및 선거제도 현황

| 정부형태 \ 선거제도 | 총계 | 다수대표제 | 비례대표제 | 혼합제(다수대표제+비례대표제) | | |
|---------------------|------|-------|-------|------------------|-----|-----|
| | | | | 계 | 연동제 | 병립제 |
| 계 | 36개국 | 5개국 | 24개국 | 7개국 | 2개국 | 5개국 |
| 내각제 | 25개국 | 3개국 | 20개국 | 4개국 | 2개국 | 2개국 |
| 대통령제 | 5개국 | 1개국 | 1개국 | 2개국 | - | 2개국 |
| 이원정부제 (집단지도체 포함) | 6개국 | 1개국 | 3개국 | 1개국 | - | 1개국 |

■ 국가별 현황(하원의원 기준)

| 국가명 (ABC순) | 정부형태 | 선거제도 | 권역별 여부 | 연동형 또는 병립형 |
|---------------|-------|------------------|---------------|---------------|
| 호 주 | 내각제 | 다수대표제 (선호투표제) | - | - |
| 오스트리아 | 내각제 | 비례대표제 | 권역 | - |
| 벨기에 | 내각제 | 비례대표제 | 권역 | - |
| 캐나다 | 내각제 | 다수대표제 (단순다수제) | - | - |
| 칠 레 | 대통령제 | 비례대표제 | 권역 | - |
| 체 코 | 내각제 | 비례대표제 | 권역 | - |
| 덴마크 | 내각제 | 비례대표제 | 권역/전국 동시운용 | - |
| 에스토니아 | 내각제 | 비례대표제 | 권역 | - |
| 핀란드 | 이원정부제 | 비례대표제 | 권역 | - |
| 프랑스 | 이원정부제 | 다수대표제 (결선투표제) | - | - |
| 독 일 | 내각제 | 혼합제 | 권역 | 연동형 |
| 그리스 | 이원정부제 | 비례대표제 | 권역 | - |
| 헝가리 | 내각제 | 혼합제 | 전국 | 병립형 |
| 아이슬란드 | 내각제 | 비례대표제 | 권역 | - |
| 아일랜드 | 내각제 | 비례대표제 | 권역 | - |
| 이스라엘 | 내각제 | 비례대표제 | 전국 | - |
| 이탈리아 | 내각제 | 비례대표제 | 권역 | - |
| 일 본 | 내각제 | 혼합제 | 권역 | 병립형 |
| 한 국 | 대통령제 | 혼합제 | 전국 | 병립형 |

| 국가명 (ABC순) | 정부형태 | 선거제도 | 권역별 여부 | 연동형 또는 병립형 |
|---------------|-------|------------------|--------|---------------|
| 라트비아 | 내각제 | 비례대표제 | 권역 | - |
| 리투아니아 | 내각제 | 혼합제 | 전국 | 병립형 |
| 룩셈부르크 | 내각제 | 비례대표제 | 권역 | - |
| 멕시코 | 대통령제 | 혼합제 | 전국 | 병립형 |
| 네덜란드 | 내각제 | 비례대표제 | 권역 | - |
| 뉴질랜드 | 내각제 | 혼합제 | 전국 | 연동형 |
| 노르웨이 | 내각제 | 비례대표제 | 권역 | - |
| 폴란드 | 이원정부제 | 비례대표제 | 권역 | - |
| 포르투갈 | 이원정부제 | 비례대표제 | 권역 | - |
| 슬로바키아 | 내각제 | 비례대표제 | 전국 | - |
| 슬로베니아 | 이원정부제 | 비례대표제 | 권역 | - |
| 스페인 | 내각제 | 비례대표제 | 권역 | - |
| 스웨덴 | 내각제 | 비례대표제 | 권역 | - |
| 스위스 | 집단지도체 | 비례대표제 | 권역 | - |
| 터 키 | 대통령제 | 비례대표제 | 권역 | - |
| 영 국 | 내각제 | 다수대표제 (단순다수제) | - | - |
| 미 국 | 대통령제 | 다수대표제 (단순다수제) | - | - |

<표 1-8> OECD국가의 선거제도 내용

| 국가명 | 명칭 | 의석수 | 선거구 | 대표제도 | 의원선출 방식 | 의석배분 방식 |
|-----|----|-----|---|-------|---|---|
| 한 국 | - | 300 | • 253개 소선거구 • 전국단일선거구 (총 47명 선출) | 혼합제 | 병립형 다수대표제(MMM) • 단순다수대표제(253명)+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47명) | 비례대표제는 헤어 방식으로 의석 배분 ※비례대표 의석배분을 위해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 또는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얻어 야 함. |
| 영 국 | 상원 | 775 | - | 임명직 | 세습직 | - |
| | 하원 | 650 | 650개 소선거구 | 다수대표제 | 단순다수대표제 • 잉글랜드 533명, 스코틀랜드 59명, 웨일즈 40명, 북아일랜드 18명 | - |
| 미 국 | 상원 | 100 | 50개 중선거구 (각 2명 선출) | 다수대표제 | 단순다수대표제 • 2년마다 1/3씩 개선하므로 사실상 소선거구 단순다수 대표제로 운영 ※조지아 주만 결선투표제 실시 | - |
| | 하원 | 435 | 435개 소선거구 | 다수대표제 | 단순다수대표제 | - |
| 프랑스 | 상원 | 348 | 44개 중대선거구 | 간접선거 |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로 선출 • 선거인단은 프랑스의 본토, 해 외 영토, 프랑스 자치령, 재외 국민으로 구분해 하원의원 지 역(레종)의회의원, 도(데парта망) 의회의원, 시·읍·면(코뮌)의 회의원들로 구성 ※선거인단의 선거방식은 혼합제(3년마다 1/2씩 개선) 26개 중대선거구 130명 및 해 외선거구에서 6명을 비례대표 제로 선출, 18개 중선거구에서 절대다수대표제로 34명 선출 | - |
| | 하원 | 577 | 577개 소선거구 | 다수대표제 | 절대다수대표제(결선투표제 실시) ※556개 본토 선거구, 10개 해 외영토 선거구, 11개 재외국 민선거구 | • 1차 선거에서 과반수를 획득하면 당선 • 2차 투표에는 1차 투표결과 12.5% 이상을 얻은 후보자들 이 출마 |
| 독 일 | 상원 | 69 | 16개 중대선거구 (3-6명 선출) | 간접선거 | 각 주(Länder) 의회가 인구비례 에 따라 3-6명을 선출하여 69석 을 구성 | - |
| | 하원 | 598 | • 299개 소선거구 | 혼합제 | 연동형 비례대표제(MMP) • 단순다수대표제(299명) | • 정당의 권역별 득표율에 따 라·수정 생 라게 방식으로 |

| 국가명 | 명칭 | 의석수 | 선거구 | 대표제도 | 의원선출 방식 | 의석배분 방식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개 중선거구 | | +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299명) | <p>의석 배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해당 정당의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인 수만큼 제외하고 비례대표 당선인 결정 • 지역구 당선인이 해당 정당의 권역별 의석수보다 많을 경우 초과 의석 발생 • 초과 의석 발생시 당초 전국단위의 득표율에 비례하도록 타 정당의 의석 추가 배분(보정 의석) <p>※비례대표 의석배분을 위해 전국적으로 5% 이상 득표를 하거나, 소선거구 선거에서 3석 이상을 얻어야 함.</p> |
| 일본 | 참의원 | 24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개 소선거구 • 13개 중선거구 (총 41명 선출) • 전국단일선거구 (총 48명 선출) | 혼합제 | <p>병립형 다수대표제(MM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3명: 32개 소선거구(32명) 및 13개 중선거구(41명)에서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 • 48명: 전국단일선거구에서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 <p>※총 242명의 의원을 3년마다 1/2씩 개선하므로 매번 선거를 할 때는 선거구 의석의 1/2만(121명)을 선출하게 됨. 이런 이유로 2인 선거구의 경우 1명을 선출하는 사례가 발생</p> | 비례대표제는 동트 방식으로 의석 배분 |
| | 중의원 | 46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89개 소선거구 • 11개 중선거구 (6-28명 선출) | 혼합제 | <p>병립형 다수대표제(MM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다수대표제(289명) +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176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례대표제는 동트 방식으로 의석 배분 • 중의원명부에서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의원으로 중복입후보한 경우 지역구에서 10% 이상 득표하고, 석패율이 큰 순위에 따라 당선인 결정 <p>※석패율: 해당 소선거구의 당선자 득표수에 대한 낙선자의 득표비율[(낙선후보자의 득표수/당선후보자의 득표수)×100]</p> |
| 스페인 | 상원 | 266 | 59개 중선거구 (1-4명 선출) | 다수대표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9개 선거구에서 단순다수대표제로 208명 선출 • 58명은 17개 지방자치커뮤니티 의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 | - |
| | 하원 | 35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개 중선거구 (총 348명 선출) | 비례대표제 | <p>폐쇄형 정당명부 비례대표제</p> <p>※50개 선거구에 최소 2명씩 배정하고 나머지 의석은 인구</p> | 의석은 동트 방식으로 배분 |

| 국가명 | 명칭 | 의석수 | 선거구 | 대표제도 | 의원선출 방식 | 의석배분 방식 |
|-----|----|-----|--|-------|--|---|
| | | | • 2개 소선거구 | | 비례로 배정 • 소선거구는 Ceuta, Melilla에 각 1명씩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 | |
| 스웨덴 | - | 349 | • 29개 중선거구 (2-34명, 총 310명) • 전국단일선거구 (총 39명) | 비례대표제 | 개방형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 선거권자는 정당을 선택하거 나 정당이 작성한 각 후보자 명부에 후보에 대한 선호를 표시할 수 있음. ※310명은 선거구별 정당득표 율에 따라 선출되며, 39명은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선출됨. | 의석은 수정 생 라게 방식으로 배분 ※비례대표 의석배분을 위해 전 국 4% 이상 또는 선거구내 12% 이상 득표해야 함. |
| 스위스 | 상원 | 46 | • 20개 중선거구 • 6개 소선거구 | 다수대표제 | 단순다수대표제 ※20개 선거구(칸톤)에서 2석 씩, 6개 선거구(칸톤)에서 1 석 씩 선출 | - |
| | 하원 | 200 | • 20개 중선거구 (총 194명 선출) • 6개 소선거구 | 비례대표제 |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선거권자는 정당을 선택하거 나 정당이 작성한 각 후보자 명부에 후보에 대한 선호를 표시할 수 있음. • 6개 소선거구에서는 단순다수 대표제로 선출 | 의석은 하겐바흐-비숍 방식으로 배분 |
| 캐나다 | 상원 | 105 | - | 임명제 | 연방총리가 추천한 인물을 총독이 형식적으로 임명 (형식적인 기관으로 존재) | - |
| | 하원 | 338 | 338개 소선거구 | 다수대표제 | 단순다수대표제 | - |
| 호주 | 상원 | 76 | • 6개(주별) 대선거구 (각 12명 선출) • 2개(준주별) 중선거구 (각 2명 선출) | 비례대표제 |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 • 한 정당에게 (일괄)투표하거나 출마한 후보자 수만큼 우선순 위를 부여해 투표할 수 있음. | • 드롭 기준수 이상을 득표한 후 보자가 당선 (드 롱 기 준 수 = $\frac{\text{총유효투표수}}{\text{의석수} + 1}$ +1) • 당선된 후보자의 남아있는 모 든 잉여표(기준수를 초과한 표) 를 제2선호에 따라 남은 후보 자들에게 이양 • 기준수를 넘는 후보가 없다면 제1선호표를 가장 적게 받은 후보를 제거하면서 그의 표를 제2선호 표시에 따라 남은 후 보들에게 이양해 의원정수에 이를 때까지 위 과정을 반복 |

| 국가명 | 명칭 | 의석수 | 선거구 | 대표제도 | 의원선출 방식 | 의석배분 방식 |
|-------|----|-----|---|-------|--|--|
| | 하원 | 150 | 150개 소선거구 | 다수대표제 | <p>선호투표제(=대안투표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마한 후보자 수만큼 우선순위를 부여해 투표할 수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투표총수 과반수 이상의 제1순위표를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 • 제1순위표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 어느 한 후보자의 유효투표총수의 득표수가 과반수 이상에 달할 때까지 최하위득표자의 표를 해체하여 그 표에 기재된 차순위후보자에게 이양 •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나올 때 까지 위 과정을 반복 • 최후로 후보자가 2명만 남는 경우 그 중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
| 오스트리아 | 상원 | 61 | 9개 중대선거구 (3-12명 선출) | 간접선거 | 지방의회에서 의석을 획득한 정당의 비율에 따라 간접선출 | - |
| | 하원 | 18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9개 대선거구 • 지역: 43개 중대선거구 | 비례대표제 | <p>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명부는 지역(local), 주(regional), 전국(national) 3단계로 작성되고, • 선거권자는 정당을 선택하거나 정당이 작성한 각 후보자 명부에 후보에 대한 선호를 표시 할 수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주단위에서 헤어 방식을 이용한 의석배분 후 • 연방단위에서 동트 방식으로 각 정당의 최종 의석 배분 <p>※전국선거구에서 4% 이상 획득해야 연방 의석 배분 가능</p> |
| 벨기에 | 상원 | 60 | - | 간접선거 | 언어권별 지역커뮤니티 대표로 구성 | - |
| | 하원 | 150 | 11개 중대선거구 (4-24명 선출) | 비례대표제 | <p>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권자는 정당을 선택하거나 정당이 작성한 각 후보자 명부에 후보에 대한 선호를 표시 할 수 있음. <p>※선호투표는 같은 정당 내에서만 가능하며 정당 간 분할투표는 금지</p> | 의석은 동트 방식으로 배분 |
| 칠레 | 상원 | 50 | 15개 중선거구 (2-5명 선출) | 비례대표제 | <p>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권자는 정당을 선택하거나 정당이 작성한 각 후보자 명부에 후보에 대한 선호를 표시 할 수 있음. <p>※4년 마다 의원정수 1/2씩 개선</p> | 의석은 동트 방식으로 배분 |
| | 하원 | 155 | 28개 | 비례대표제 |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의석은 동트 방식으로 배분 |

| 국가명 | 명칭 | 의석수 | 선거구 | 대표제도 | 의원선출 방식 | 의석배분 방식 |
|-------|----|-----|--|-------|---|--|
| | | | 중대선거구 (3-8명 선출) | | • 선거권자는 정당을 선택하거나 정당이 작성한 각 후보자 명부에 후보에 대한 선호를 표시 할 수 있음. | |
| 체코 | 상원 | 81 | 81개 소선거구 | 다수대표제 | 절대다수대표제 (결선투표제 실시) | • 1차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을 획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 6일후 2차 선거 실시 |
| | 하원 | 200 | 14개 대선거구 | 비례대표제 |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선거권자는 정당을 선택하거나 정당이 작성한 각 후보자 명부에 후보에 대한 (최대 4명까지) 선호를 표시 할 수 있음. | • 의석은 동트 방식으로 배분 *정당은 최소 5% 이상, 2개 정당 연합시 10%, 3개 연합시 15%, 4개 이상 연합시 20% 이상 득표해야 함. |
| 덴마크 | - | 179 | • 10개 대선거구 (총 135명 선출) • 전국단일선거구 (총 40명 선출) • 2개 소선거구 (각 2명 선출) | 비례대표제 |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선거권자는 정당을 선택하거나 정당이 작성한 각 후보자 명부에 후보에 대한 선호를 표시 할 수 있음. *각 2석씩 배정된 Faroe와 Greenland는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 | • 의석은 동트 방식으로 배분 • 10개 대선거구에서 정당득표율에 따라 135석을 배분한 후, • 전국단위에서 각 정당득표율에 따라 40석을 다시 배분 *전국단위 의석을 할당받기 위해 1개 선거구에서 최소 1석을 얻었거나 전국기준 2% 이상 득표를 했거나 2개 선거구에서 의석당 평균득표 이상을 획득해야 함. |
| 에스토니아 | - | 101 | 12개 대선거구 | 비례대표제 |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선거권자는 정당을 선택하거나 정당이 작성한 각 후보자 명부에 후보에 대한 선호를 표시 할 수 있음. *총의석은 13personal mandates, 66district mandates, 22compensation mandates로 구성(한 선거구내 의석도 3단계로 구분) | • 1단계(personal mandates) 한 선거구내 정당명부 중 후보자별로 기준수(쿼터) 이상 득표 시 당선 • 2단계(district mandates) 한 선거구내 각 정당의 유효투표총수가 기준수 이상이면 정당별로 의석 배분 • 3단계(compensation mandates) 전국득표수 기준으로 정당별 의석 수를 동트 방식으로 배분 *기준수: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총수를 의석수로 나눈 수로 선거구마다 달라짐. *정당은 선거구에서 최소 5% 이상 득표해야 함. |
| 핀란드 | - | 200 | • 13개 대선거구 (7-36명 선출) • 1개 소선거구 | 비례대표제 |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선거권자는 정당을 선택하거나 정당이 작성한 각 후보자 명부에 후보에 대한 선호를 표시 할 수 있음. | 의석은 동트 방식으로 배분 |

| 국가명 | 명칭 | 의석수 | 선거구 | 대표제도 | 의원선출 방식 | 의석배분 방식 |
|-------|----|-----|--|-------|---|--|
| | | | | | ※1석 배정된 Aland지역에서는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 | |
| 그리스 | - | 300 | • 48개 중대선거구 (총 280명 선출) • 전국단일선거구 (총 12명 선출) • 8개 소선거구 | 비례대표제 |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선거권자는 정당을 선택하거나 정당이 작성한 각 후보자 명부에 후보에 대한 선호를 표시 할 수 있음. ※8개 소선거구에서는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 | 의석은 하켄바흐-비숍 방식으로 배분 |
| 헝가리 | - | 199 | • 106개 소선거구 • 전국단일선거구 (총 93명 선출) | 혼합제 | 병립형 다수대표제(MMM) • 단순다수대표제(106명) +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93명) | 비례대표제 의석은 동트 방식으로 배분 ※비례대표 의석배분을 위해 개별정당은 전국적으로 5%, 2개 정당 연합시 10%, 3개 이상 정당연합시 15% 이상 득표해야 함. |
| 아이슬란드 | - | 63 | • 6-7개 대선거구 (10-11명 선출, 총 54명 선출) • 전국단일선거구 (총 9명 선출) | 비례대표제 |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의석은 동트 방식으로 배분 ※비례대표 의석배분을 위해 전국적으로 5% 이상 득표해야 함. |
| | 상원 | 60 | - | 간접선거 | 선거인단 선출(43명)+아일랜드 국립대학(3명)+더블린대학(3명)+수상임명(11명) | - |
| 아일랜드 | 하원 | 158 | 40개 중대선거구 (3-5명 선출) | 비례대표제 |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 • 한 정당에게 (일괄)투표하거나 출마한 후보자 수만큼 우선순위를 부여해 투표할 수 있음. | • 드롭기준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 (드 롱 기 준 수 = $\frac{\text{총유효투표수}}{\text{의석수}+1} + 1$) • 당선된 후보자의 남아있는 모든 잉여표(기준수를 초과한 표)를 제2선호에 따라 남은 후보자들에게 이양 • 기준수를 넘는 후보가 없다면 제1선호표를 가장 적게 받은 후보를 제거하면서 그의 표를 제2선호 표시에 따라 남은 후보들에게 이양해 의원정수에 이를 때까지 위 과정을 반복 |
| 이스라엘 | - | 120 | 전국단일선거구 | 비례대표제 |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의석은 동트 방식으로 배분 ※비례대표 의석배분을 위해 최소 2% 이상 득표를 해야 함. |
| 이탈 | 상원 | 321 | • 116개 | 혼합제 | 병립형 다수대표제(MMM) | 비례대표제 의석은 |

| 국가명 | 명칭 | 의석수 | 선거구 | 대표제도 | 의원선출 방식 | 의석배분 방식 |
|-------|----|-----|---|-------|---|--|
| 리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선거구 • 20개 중선거구 • 4개 재외국민 중선거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9명=단순다수대표제(116명)+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193명) • 6명: 해외선거구) 4개의 권역으로 나누되 1개의 선거구로 하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 • 6명: 전직대통령 등 임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헤어 방식으로 배분 ※비례대표 의석배분을 위해 개별정당은 각 선거구에서 3%, 정당 연합시 10% 이상 득표해야 함. |
| | 하원 | 6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2개 소선거구 • 27개 중선거구 • 4개 재외국민 중선거구 | 혼합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립형 다수대표제(MMM) • 618명=단순다수대표제(232)+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386명) • 12명: 해외선거구) 4개의 권역으로 나누되 1개의 선거구로 하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례대표제 의석은 헤어식으로 배분 ※비례대표 의석배분을 위해 개별정당은 유효투표총수의 3%, 정당 연합시 10% 이상 득표해야 함. |
| 룩셈부르크 | - | 60 | 4개 대선거구 | 비례대표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선거권자는 정당을 선택하거나 정당이 작성한 각 후보자 명부에 후보에 대한 선호를 표시 할 수 있음. ※남부 23명, 중부 21명, 북부 9명, 동부 7명 | 의석은 하겐비흐-비슈 방식으로 배분 |
| 라트비아 | - | 100 | 5개 대선거구 (13-32명 선출) | 비례대표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선거권자는 정당을 선택하거나 정당이 작성한 각 후보자 명부에 후보에 대한 선호를 표시할 수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석은 생 라게 방식으로 배분 ※비례대표 의석배분을 위해 유효투표총수의 5% 이상 얻어야 함. |
| 리투아니아 | - | 14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개 소선거구 • 전국단일선거구 (총 70명 선출) | 혼합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립형 다수대표제(MMM) • (결선투표제)절대다수대표제 (71명)+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70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다수대표제)1차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한 사람이 없으면, 2주 후 1, 2위에 오른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2차 선거 실시 • 비례대표)의석은 헤어방식으로 배분 |
| 멕시코 | 상원 | 12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개 중선거구 (각 3명 선출) • 전국단일선거구 (총 32명 선출) | 혼합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립형 다수대표제(MMM) • 변형 다수대표제(96명) +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32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대표제)32개 중선거구는 31개 주와 1개 연방지구로 구성 • 각 선거구별로 할당된 3석 가운데 2석은 다수득표자순으로 2석을 먼저 할당하고, • 나머지 1석은 선거구(주, 연방지구)에서 2위로 다수 득표한 정당의 후보자에게 배분 |
| | 하원 | 5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개 소선거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립형 다수대표제(MMM) • 단순다수대표제(300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례대표제)전국선거구는 정당투표 결과로 정당별 의석을 |

| 국가명 | 명칭 | 의석수 | 선거구 | 대표제도 | 의원선출 방식 | 의석배분 방식 |
|------|----|-----|--|-------|---|--|
| | | | • 전국단일선거구 (총 200명 선출) | | +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200명) ※어느 한 정당도 30석 이상을 차지할 수 없음. | 배분하되, 각 정당은 전국단 일명부가 아니라 권역명부를 제출하고 정당에 할당된 전국 의석범위 내에서 권역명부 당 선자를 결정함. • 해어 방식으로 의석배분 ※권역명부는 5개 주에서 40개 선거구별로 작성됨. |
| 노르웨이 | - | 169 | 19개 중대선거구 (3-17명 선출) | 비례대표제 |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선거권자는 정당을 선택하거나 정당이 작성한 각 후보자 명부에 후보에 대한 선호를 표시할 수 있음. ※총 169명은 모두 선거구에서 선출되지만, 150명은 선거구 대표로 선출되며, 19명(각 행 정구역별 1명)은 전국대표로 선출됨. | 의석은 수정 생 라게 방식으로 배분 |
| 네덜란드 | 상원 | 75 | - | 간접선거 | 12개 지방의회에서 할당된 의석수만큼 선출 | - |
| | 하원 | 150 | 전국단일선거구 | 비례대표제 |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선거권자는 정당을 선택하거나 정당이 작성한 각 후보자 명부에 후보에 대한 선호를 표시할 수 있음. ※20개 선거구가 존재하지만 투 표구를 나누는 행정적 기능에 그칩. 정당들도 모든 선거구 에 동일한 명부를 제출 | • 1차)의석배분은 전국쿼터(각 정 당후보자들이 전국적으로 얻은 득표율(150석)를 사용하여 최 고득표를 한 후보자순으로 이 루어짐. • 2차)1차 의석배분에서 남은 의석은 동트 방식으로 배분 • 정당명부는 선거구별로 작성 되지만, 의석의 배분은 전국단 위로 이루어짐. ※의석배분은 전국수준에서 유 효투표총수의 0.67% 이상을 얻은 정당에게 배분 |
| 뉴질랜드 | - | 120 | • 70개 소선거구 • 전국단일선거구 (총 50명 선출) | 혼합제 | 연동형 비례대표제(MMP) • 단순다수대표제(70명) +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50명) ※70개 소선거구 중 7개는 마오리 지역에 할당 | • 정당이 배정받은 총의석수에 서 지역구 당선인수를 뺀 나 머지 수만큼 명부순위에 따라 당선인 결정 • 지역구 당선인이 해당 정당의 총의석수보다 많을 경우 초과 의석 발생 ※의석배분을 위해 유효투표총 수의 5% 이상이나 지역구에서 1석 이상 의석을 확보해야 함. |
| 폴란드 | 상원 | 100 | 100개 소선거구 | 다수대표제 | 단순다수대표제 | - |

| 국가명 | 명칭 | 의석수 | 선거구 | 대표제도 | 의원선출 방식 | 의석배분 방식 |
|-------|----|-----|---|-------|---|---|
| | 하원 | 460 | 41개 대선거구 (7-19명 선출) | 비례대표제 |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선거권자는 정당을 선택하거나 정당이 작성한 각 후보자 명부에 후보에 대한 선호를 표시할 수 있음. | 의석은 수정 생라그 방식으로 배분 ※비례대표 의석배분을 위해 개별정당 5% 이상, 정당연합시 8% 이상 득표해야 함. |
| 포르투갈 | - | 230 | • 22개 대선거구 (총 226명 선출) • 2개 중선거구 (각 2석 선출) | 비례대표제 |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해외선거구는 유럽 1개 선거구와 그 외 지역을 1개의 선거구로 하여 각 2명씩 총 4명을 선출함. | 의석은 동트 방식으로 배분 |
| 슬로바키아 | - | 150 | 전국단일선거구 | 비례대표제 |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선거권자는 하나의 명부에 있는 후보자들에 대해 4번째 선호하는 후보까지 투표를 할 수 있음. | 의석은 하켄바흐-비숍식으로 배분 ※비례대표 의석배분을 위해 5% 이상 득표해야 함. |
| 슬로베니아 | 상원 | 40 | | 간접선거 | 이익집단별로 배분. ※지방이익집단 22석, 비상업활동 단체 6석, 고용주 4석, 고용인 4석, 농민/기능직/전문직 4석 등에 배분 | - |
| | 하원 | 90 | • 8개 대선거구 (각 11명 선출) • 2개 소선거구 | 비례대표제 |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선거권자는 정당을 선택하거나 정당이 작성한 각 후보자 명부에 후보에 대한 선호를 표시할 수 있음. ※소선거구는 헝가리안, 이탈리아 커뮤니티를 말하며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 | 의석은 동트 방식으로 배분 ※비례대표 의석배분을 위해 4% 이상 득표해야 함. |
| 터키 | - | 600 | 79개 중대선거구 | 비례대표제 |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의석은 동트 방식으로 배분 ※의석배분을 위한 요건 정당이 A)최소 절반 이상의 지역과 1/3의 구에서 완전히 조직되었을 때, B)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두 명 이상의 후보를 지명했을 때, C)전국구 투표에서 10% 이상 득표하고, D)유효투표가 쿼터를 넘었을 때, 그 정당 후보자는 당선 이 확정됨. |

출처: IPU. PARLINE DATABASE
<https://data.ipu.org/> (검색일 2019.3.27.)

<표 1-9> 각국의 선거원칙에 관한 헌법규정

| 국가 | 내용 | 법조문 |
|-------|--------------------------|-----------------------------|
| 미 국 | 간접선거(선거인단선출규정-대통령) | 제2장 제1조 |
| |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 수정헌법 제12·15·17·19·24·26조 |
| 독 일 |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선거 | 제38조 |
| 프랑스 | 보통, 평등, 비밀선거 | 제3조 |
| | 하원: 직접선거, 상원: 간접선거 | 제24조 |
| 일 본 | 보통, 비밀선거 | 제15조 |
| 스페인 | 보통, 자유, 평등, 직접, 비밀선거 | 제68·69조 |
| 스위스 | 보통, 평등선거 | 제136조 |
| 호 주 | 직접선거 | 제7조, 제24조 |
| 아르헨티나 | 보통, 평등, 비밀, 의무선거 | 제37조 |
| 오스트리아 | 평등, 직접, 자유, 비밀, 보통선거 | 제26조 |
| | 평등, 직접, 자유, 비밀, 보통, 의무선거 | 제60조 |
| 벨기에 | 보통, 직접, 평등, 비밀, 의무선거 | 제61·62조 |
| 브라질 |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의무선거 | 제14조 |
| 중 국 | 보통, 평등선거 | 제34조 |
| 체 코 |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 제18조 |
| 에스토니아 |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 제60조 |
| 그리스 | 직접, 보통, 비밀, 의무선거 | 제51조 |
| 아일랜드 | 직접, 비밀선거 | 제12조 |
| 이탈리아 | 보통, 평등, 자유, 비밀, 의무선거 | 제48조 |
| | 하원·상원: 보통·직접선거 | 제56·58조 |
| 러시아 |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 제81조 |
| 대 만 |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 제129조 |
| 태 국 | 의무선거 | 제68조 |
| | 직접, 비밀선거 | 제104조 |
| 터 키 | 자유, 평등, 비밀, 직접, 보통선거 | 제67조 |
| | 의무선거 | 제175조 |
| 피 지 | 비밀선거 | 제36조 |

<표 1-10>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유형

| 구분 | 국가명 | |
|--------------------------------|----------------------|--|
| 독립 위원회형 (Independent model) | 아시아 |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한국,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대만, 타지키스탄, 태국, 우즈베키스탄 |
| | 중 동 | 아르메니아, 이집트,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오만, 팔레스타인, 시리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예멘 |
| | 아프리카 |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베냉, 부탄,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 비사우, 가이아나, 케냐, 레소토,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수단, 에스와티니, 탄자니아, 토고, 튀니지,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
| | 유럽 |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조지아, 코소보, 라트비아, 라이베리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몰타, 몰도바, 몬테네그로,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
| | 중·남·북미 |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 | 오세아니아 | 피지, 키리바시, 몰디브, 나우루, 뉴질랜드,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세이셸, 솔로몬제도, 통가 |
| | 혼합형 (Mixed model) | 아시아 |
| 중 동 | | 이란, 레바논 |
| 아프리카 | | 알제리, 카보베르데, 차드, 코모로, 지부티, 적도기니, 가봉,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콩고, 세네갈 |
| 유럽 | | 안도라, 아르헨티나, 프랑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
| 중·남·북미 | | 벨리즈,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
| 오세아니아 | | 바누아투 |
| 행정부형 (Governmental model) | 아시아 | 북한, 싱가포르, 베트남 |
| | 중 동 |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
| | 아프리카 | 모로코 |
| | 유럽 |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핀란드,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모나코, 노르웨이, 산마리노, 스웨덴, 스위스, 영국 |
| | 중·남·북미 | 그레나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 | 오세아니아 | 쿡제도, 마셜군도, 미크로네시아, 니우에, 투발루 |

※ 독립위원회형: 정부의 집행부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그 자체 예산을 스스로 관리하는 기관을 조직하고 관리
 혼합형: 행정부형(정부 부처 또는 지방정부) 부문에 따라 조직되나 독립형(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정책 및 감시·감독기능) 부문에 따라 일정 정도의 감독을 실시

행정부형: 정부의 부처(예: 내무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조직되고 관리됨.

출처: IDEA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Model of Electoral Management. <https://www.idea.int/data-tools/question-view/130365> (검색일 2019.4.4.)

<표 1-11> OECD국가의 선거관리기관 현황

| 국가명 | 선거관리기관 | 위원 구성 | 임기 | 위원구성방법 | 위원장 임명방법 | 근거규정 |
|-----|------------------------|-------|--------|--|---|-----------------------------------|
| 영 국 | 선거위원회 | 9-10명 | 최대 10년 | 하원에서 위원 선출 | 의회가 9명의 위원 중에서 임명 |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제1,3조 |
| | 내무부(선거관리) | | | | | - |
| 미 국 | 연방선거위원회 | 6명 | 6년 | 상원 동의 하에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하며 2년 마다 2명씩 교체 ※ 결원시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함. | 위원장, 부위원장은 1년 (1회 연임 가능) 임기로 위원 중에서 선출(호선) | 연방선거 운동법 제30106조 |
| 프랑스 | 헌법 평의회 | 9명 | 9년 | 대통령 3명, 하원의장 3명, 상원의장 3명을 위원으로 임명하며 3년마다 3명씩 교체(정수 외에 전직대통령은 직무상 당연직 종신위원) ※ 결원시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함. |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 헌법 제56조 |
| | 투표감독 위원회 | 3명 | 비상설 | - | 항소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1인 | 선거법 제L85-1조 |
| | 선거운동 감독 국가위원회 | 5명 | 비상설 | - | 최고행정법원 부원장 | no 2001-213 법률명령 |
| | 선거운동 회계보고 및 정치자금 국가위원회 | 9명 | 5년 | - | 위원 중에서 선출(호선) | 선거비용 제한 및 정치자금 투명성에 관한 법률 no90-55 |
| | 시청각 최고위원회 | 9명 | 6년 | - | 대통령이 임명 | 커뮤니케이션 no 86-1067 법률 |
| 독 일 | 연방선거 위원회 | 9명 | 부정기적 | 위원장이 정당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8명을 선임 | 연방내무부 장관이 연방선거관리관(관례상 연방통계청장) 임명 ※ 주 및 선거구선거관리관은 주정부가 임명 | 연방 선거법 제8,9조 |
| 일 본 | 중앙선거관리회 | 5명 | 3년 | 의회의 의결에 의한 지명에 따라 총리가 임명 | 위원 중에서 선출(호선) | 공직 선거법 제5,6조 |
| | 총무성(실질적 선거총괄기관) | | | | | - |

| 국가명 | 선거관리기관 | 위원 구성 | 임기 | 위원구성방법 | 위원장 임명방법 | 근거규정 |
|-------------------|---------|--------|--------------|---|---------------------------|-----------------------|
| 스페인 | 중앙선거위원회 | 13명 | 입법부 임기 (4년) | 사법부총평의회의 추천으로 대법원판사 8명 및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등의 추천에 따라 선임된 5명의 법학·정치학 교수로 위원 구성 | 위원 간 사법부 출신 위원 중 선출(호선) | 선거법 제9조 |
| 스웨덴 | 중앙선거청 | 5명 | 불특정 | - | 정부가 임명 | 선거법 제1장제3절 |
| 스위스 | 연방내각국 | 불특정 | | - | 정부가 임명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20조 |
| 캐나다 | 중앙선거청 | 1명 | 65세 | - | 선거관리장은 하원의결로 임명(1명 독임제) | 선거법 제13조 |
| 호 주 | 선거위원회 | 3명 | 최대 7년 | 총독이 임명하는 전현직 연방 법원 판사와 연방통계청장으로 구성 | 위원장은 3명의 판사 중에서 총독이 임명 | 연방 선거법 제6,8조 |
| 오스트리아 | 연방선거위원회 | 18명 | 매 선거 기간마다 소집 | - | 내무장관 | 헌법 제26조, 의회선거법 제6,12조 |
| 벨기에 ⁵⁾ | 행정부 | | | | | - |
| 체 코 | 선거위원회 | 19명 | 불특정 | - | 위원 중에서 선출(호선) | 선거법 제8~12조 |
| 칠 레 | 선거청 | 5명 | 불특정 | - | 위원 중에서 선출(호선) | 선거법 제63,66조 |
| 덴마크 | 선거위원회 | 3명 | 비상설 | 내무부 장관이 필요시 선출 | 내무부 장관이 선거기간 동안 위원장 역할 수행 | 선거법 제17조 |
| 에스토니아 | 선거위원회 | 7명 | 4년 | - | 위원 중에서 선출(호선) | 선거법 제10,14조 |
| 핀란드 | 선거위원회 | 5명 | 4년 | - | 등록 정당 명단에서 선출 | 선거법 제11조 |
| 그리스 | 내무부 | | | | | 헌법 제104조 공무원법 제39조 |
| 헝가리 | 선거위원회 | 10명 | 9년 | - | 위원 중에서 선출(호선) | 선거법 제3,39조 |
| 아이슬란드 | 선거위원회 | 5명 | 4년 | - | 위원 중에서 선출(호선) | 의회 선거법 제12, 15조 |
| 아일랜드 | 행정부 | | | | | 선거법(1992) 제30조 |
| 이스라엘 | 중앙선거위원회 | 31명 이하 | 입법부 임기 | - | 대법원이 임명 | 선거법 제16조 |

| 국가명 | 선거관리기관 | 위원 구성 | 임기 | 위원구성방법 | 위원장 임명방법 | 근거규정 |
|-------|---------------|----------|-------------|---|-------------------------|---------------------------|
| 이탈리아 | 전국중앙 선거사무국 | 5명 | 불특정 | - | 정부가 임명 | 하위선거법 제12조 |
| | 내무부(선거관리) | | | | | |
| 라트비아 | 중앙선거위원회 | 9명 | 4년 | - | 의회가 임명 | 중앙선거 위원회법 제1조 |
| 룩셈부르크 | 비상설정부기관 | - | - | 주 정부 공무원 중 국무 총리의 추천을 받아 정부 위원회(정부)가 구성 | 위원들 중 정부위원회 (정부)가 임명 | 선거관할 기관에 관한 법 제1,2조 |
| 리투아니아 | 중앙선거위원회 | 16명 | 4년 | - | 의회가 임명 | 중앙선거 위원회법 제7조 |
| 멕시코 | 연방선거청 | 11명 | 9년 | - | 의회가 임명(하위2/3표결) | 연방선거법 제3~10조 |
| 네덜란드 | 선거위원회 | 7명 | 4년, 연임가능 | - | 정부가 임명 | 선거법 제A5조 |
| 노르웨이 | 행정부 | | | | | 헌법 제43조 |
| 뉴질랜드 | 선거위원회 | 3명 | 불특정 | - | 정부가 임명 | 선거법 제4D조 |
| 폴란드 | 선거위원회 | 9명 | 불특정 | - | 위원중에서 선출(호선) | 선거법 제157,158조 |
| 포르투갈 | 전국선거위원회 | 10명 | 입법부 임기 | - | 대법원이 임명 | 선거법 제3,4조 |
| 슬로바키아 | 중앙선거위원회 | 5명 | 비상설 | - | 의회가 임명 | 선거법 제14조 |
| 슬로베니아 | 선거위원회 | 6명 | 4년 | - | 대법원이 임명 | 선거법 제22조 |
| 터 키 | 최고선거위원회 | 7명 | 6년 | - | 위원 중에서 선출(호선) | 선거기본법 제11,15,18조 |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Comparative Data.

Number of EMB members.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EM013> (검색일 2019. 4.4.)

Term of EMB members.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EM006> (검색일 2019. 4.4.)

5) OSCE보고서. 'Belgium, Federal Elections, 26 May 2019: Needs Assessment Mission Report' p.8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belgium/416432?download=true> (검색일 2019.10.7.)

<표 1-12> 의무투표제 실시 주요 국가 현황

| 국가명 (도입연도) | 기권 시 제재내용 | 최종투표율 | 근거 규정 | |
|---------------|-------------------|---|------------------------------------|--------------------------------|
| 유럽 국가 | 벨기에 (1892년) |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절차로 불참 가능 • 벌금(1회 위반 €5~10의 벌금, 2회 위반 시부터 €10~25까지) • 15년 이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4번 이상 불참 시 10년 동안 투표권 박탈, 공직제한 | 2019년 88.38%(의) | 헌법 제62조 선거법 제180,210조 |
| | 그리스 (1952년) | • 1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여권 발급과 운전면허증 발급중지 ※ 2001년 헌법개정시 투표불참 시 제재 내용이 빠져 사실상 의무투표제는 유명무실화되었음 | 2019년 57.91%(의) | 헌법 제51조 선거법 제117조 |
| | 룩셈부르크 (1919년) | • 1회 위반 시 €100~250, 5년 이내 재위반 시 €500~1,000 벌금(75세이상 제외) | 2018년 89.66%(의) | 선거법 제89,90조 |
| | 리히텐슈타인 (1922년) | • 벌금(20 CHF, €18) | 2017년 77.82%(의) | 시민권리법 제3조, 제90조제2항 |
| | 스위스 (1904년) | • 26개 주 중 1개 주(샤프하우젠)가 실시하고 있으며, 벌금(약 €5.26)이 부과됨 | 2015년 48.51%(의) | 주법에 규정 |
| 중남미 국가 | 브라질 (1988년) | • 그 지역 최저임금의 3~10%의 벌금이 부과되고, 공직제한, 여권발급 등이 금지 | 2018년 79.50%(의) 2018년 79.67%(대) | 헌법 제14조 선거법 제6,7조 |
| | 페루 (1993년) | • 벌금(20 Soles) 부과, 은행계좌 신설금지, 공공행정거래 금지 | 2016년 81.88%(의) 2016년 80.09%(대) | 헌법 제31조 선거법 제9조 |
| | 아르헨티나 (1912년) | • 벌금(10~20 Pesos) 부과, 3년간 공직제한 | 2017년 76.74%(의) 2015년 80.77%(대) | 헌법 제37조 선거법 제12조 |
| | 에콰도르 (1936년) | • 벌금(200~500 Sucre) 부과 | 2017년 81.74%(의) 2017년 81.69%(대) | 헌법 제62조 선거법 제11조 |
| | 볼리비아 (1952년) | • 벌금 부과, 선거일부터 90일 동안 은행에서 월급 인출 불가, 공직 불가, 은행 거래 금지, 여권 발급 불가 | 2019년 88.47%(의) 2019년 88.31%(대) | 헌법 제26조 선거법 제43조 |
| | 우루과이 (1933년) | • 벌금 부과 | 2014년 89.62%(의) 2014년 88.57%(대) | 헌법 제77조 |
| 기타 국가 | 호주 (1924년) | • 벌금(A\$20) 부과, 벌금 미납 시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 | 2016년 91.01%(의) | 연방선거법 제245조 |
| | 태국 (1997년) | • 정치적 권리: 법안발의, 탄핵, 선출직 공직을 박탈당함. | 2019년 74.69%(의) | 헌법 제50조 |
| | 싱가포르 (1959년) | • 선거인명부에서 제명 또는 벌금 부과, 대통령 또는 의회의원 피선거권 박탈 | 2015년 93.56%(의) 2011년 94.65%(대) | 의회선거법 제43조 |
| | 터키 (1986년) | • 벌금(1만 Liras) 부과 | 2018년 86.22%(의) 2018년 86.24%(대) | 헌법 제175조 선거법 제63조 |

※ 이 밖에도 콩고민주공화국, 도미니카공화국, 이집트, 가봉, 온두라스, 레바논, 나우루, 파나마, 파라과이, 불가리아(2016년 도입, 제재조치는 없음)에서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음.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Comparative data.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LF004> (검색일 2019.4.2.)

IDEA. Compulsory Voting International.

<https://www.idea.int/data-tools/data/voter-turnout/compulsory-voting> (검색일 2019.4.3.)

IDEA. Voter Turnout Database International.

<https://www.idea.int/data-tools/data/voter-turnout> (검색일 2019.4.16.)

<표 1-13> OECD국가의 연도별 선거 투표율(%)

| 국가명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비고 |
|-------|------------------------------|--------------|--------------|--------------|------------------------------|------------------------------|--------------|--------------|------------------------------|------------------------------|--------------|------------------------|
| 영국 | - | - | 65.77 (의) | - | - | - | - | - | - | 68.93 (의) | - | |
| 미국 | 64.36 (의) 70.33 (대) | - | 41.59 (의) | - | 67.59 (의) 67.95 (대) | - | 42.50 (의) | - | 65.44 (의) 65.44 (대) | - | - | |
| 프랑스 | - | - | - | - | 55.40 (의) 80.35 (대) | - | - | - | - | 42.64 (의) 74.56 (대) | - | |
| 일본 | - | 69.27 (의) | - | - | 59.3 2(의) | - | 52.66 (의) | - | - | 정보 없음 | - | |
| 독일 | - | 70.78 (의) | - | - | - | 71.53 (의) | - | - | - | 76.15 (의) | - | |
| 스페인 | 75.32 (의) | - | - | 68.94 (의) | - | - | - | 73.20 (의) | 69.84 (의) | - | - | |
| 스웨덴 | - | - | 84.63 (의) | - | - | - | 85.81 (의) | - | - | - | 87.18 (의) | |
| 스위스 | - | - | - | 49.10 (의) | - | - | - | 48.51 (의) | - | - | - | 의무 투표 (1개 칸톤) |
| 캐나다 | 59.52 (의) | - | - | 61.11 (의) | - | - | - | 68.28 (의) | - | - | - | |
| 호주 | - | - | 93.22 (의) | - | - | 93.23 (의) | - | - | 91.01 (의) | - | - | 의무 투표 |
| 오스트리아 | 78.81 (의) | - | 53.57 (대) | - | - | 74.91 (의) | - | - | 72.75 (대) | 80.00 (의) | - | |
| 벨기에 | - | - | 89.22 (의) | - | - | - | 89.37 (의) | - | - | - | - | 의무 투표 |
| 체코 | - | - | 62.60 (의) | - | - | 59.48 (의) 59.08 (대) | - | - | - | 60.84 (의) | 61.88 (대) | |
| 칠레 | - | 87.67 (의) | 86.94 (대) | - | - | 41.98 (대) 49.35 (의) | - | - | - | 46.53 (의) 46.70 (대) | - | |
| 덴마크 | - | - | - | 87.74 (의) | - | - | - | 85.89 (의) | - | - | - | |
| 에스토니아 | - | - | - | 63.53 (의) | - | - | - | 64.23 (의) | - | - | - | 63.67 (19'의) |
| 핀란드 | - | - | - | 67.37 (의) | 68.86 (대) | - | - | 66.85 (의) | - | - | 66.76 (대) | |
| 그리스 | - | 70.92 (의) | - | - | 62.47 (의) | - | - | 63.94 (의) | - | - | - | 의무 투표 |
| 헝가리 | - | - | 64.38 (의) | - | - | - | 61.84 (의) | - | - | - | 69.67 (의) | |

| 국가명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비고 |
|-------|--------------|--------------|--------------|------------------------------|------------------------------|--------------|---------------|------------------------------|------------------------------|--------------|------------------------------|----------|
| 아이슬란드 | - | 85.12 (의) | - | - | 69.32 (대) | 81.44 (의) | - | - | 79.18 (의) 75.67 (대) | - | - | |
| 아일랜드 | - | - | - | 69.90 (의) 56.11 (대) | - | - | - | - | 65.09 (의) | - | 43.87 (대) | |
| 이스라엘 | - | 64.72 (의) | - | - | 67.77 (의) | - | - | 72.34 (의) | - | - | - | |
| 이탈리아 | 80.54 (의) | - | - | - | - | 75.19 (의) | - | - | - | - | 72.93 (의) | |
| 라트비아 | - | - | 64.72 (의) | 59.49 (의) | - | - | 58.80 (의) | - | - | - | 54.58 (의) | |
| 리투아니아 | 48.59 (의) | 51.76 (대) | - | - | 52.93 (의) | - | 47.37 (대) | - | 50.64 (의) | - | - | |
| 룩셈부르크 | - | 90.93 (의) | - | - | - | 91.15 (의) | - | - | - | - | 89.66 (의) | 의무 투표 |
| 멕시코 | - | 44.61 (의) | - | - | 62.45 (의) 63.14 (대) | - | - | 47.72 (의) | - | - | 63.21 (의) 63.43 (대) | |
| 네덜란드 | - | - | 75.40 (의) | - | 74.56 (의) | - | - | - | - | 81.93 (의) | - | |
| 노르웨이 | - | 76.37 (의) | - | - | - | 78.23 (의) | - | - | - | 78.22 (의) | - | |
| 뉴질랜드 | 79.46 (의) | - | - | 74.21 (의) | - | - | 76.95 (의) | - | - | 79.75 (의) | - | |
| 폴란드 | - | - | 55.31 (대) | 48.92 (의) | - | - | - | 50.92 (의) 55.34 (대) | - | - | - | |
| 포르투갈 | - | 59.68 (의) | - | 58.03 (의) 46.52 (대) | - | - | - | 55.84 (의) | 48.70 (대) | - | - | |
| 대한민국 | 46.01 (의) | - | - | - | 54.26 (의) 75.84 (대) | - | 56.81 (지방) | - | 58.03 (의) 77.20 (대) | - | - | |
| 슬로바키아 | - | 51.67 (의) | 58.84 (의) | - | 59.11 (의) | - | 50.48 (대) | - | 59.82 (의) | - | - | |
| 슬로베니아 | 63.10 (의) | - | - | 65.60 (의) | 42.41 (대) | - | 51.73 (의) | - | - | - | 52.64 (의) | |
| 터 키 | - | - | - | 87.59 (의) | - | - | 74.13 (대) | 85.18 (의) | - | - | 86.22 (의) 86.24 (대) | 의무 투표 |

※ 의회의원 선거(의), 대통령 선거(대)

출처: IDEA. Voter Turnout Database.

<https://www.idea.int/data-tools/data/voter-turnout> (검색일 2019.3.27.)

<표 1-14> OECD국가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 시 공개 내용

| 국가명 | 공개 내용 | 근거규정 |
|-----|--|---|
| 영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위임기관 • 날짜 및 방법 • 모집단, 표본규모 및 조사대상 지역 • 질문내용 •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는 웹 주소 등 | 영국여론조사위원회 지침 ※ 법규정은 없음. 자율적 규제로 실시 |
| 미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위임자 • 조사기간, 일시 • 표본추출방법, 모집단, 표본크기 • 조사방법, 질문순서 등 | 전미여론조사협의회 공표의 원칙 ※ 법규정은 없음. 자율적 규제로 실시 |
| 프랑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론조사를 의뢰한 개인이나 기관 • 표본의 크기 • 조사 발주자의 이름과 자질 • 조사가 이루어진 날짜 • 대중의 더 많은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명시한 서술 | 여론조사의 공표 및 전파에 관한 법률 |
| 독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 조사시점 • 조사 의뢰자 • 질문 내용 및 여론 조사 결과 대표성 여부 | 독일언론평의회 언론강령 ※ 법규정은 없음. 자율적 규제로 실시 |
| 일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방법 등 | 일본 TV 도쿄 방송 보도 윤리지침 ※ 법규정은 없음. 자율적 규제로 실시 |
| 스페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론조사를 의뢰한 개인이나 기관 • 표본특징 • 표본크기 • 오차범위 • 표본 구성방법, 오차범위, 대표수준, 조사대상자와 조사종료일 선택 방법 • 질문내용과 미응답자 수 | 선거법 제69조 |
| 스웨덴 | - | - |
| 스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론조사 의뢰자 • 조사지역 • 표본특징 • 표본크기 • 오차범위 • 조사기간 | 스위스 언론기관의 투표 이전 보도되는 선거 및 투표 에 관한 여론조사에 관한 강령 ※ 법규정은 없음. 자율적 규제로 실시 |
| 캐나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론조사를 의뢰한 개인이나 기관 • 조사지역 • 표본의 크기 • 오차범위 • 여론조사 결과가 방송 이외의 수단으로 발표될 때 조사를 시행한 사람이나 기관명, 질문 내용 | 선거법 제326조 |

| 국가명 | 공개 내용 | 근거규정 |
|-------|---|--|
| 호 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론조사기관 명칭, 의뢰 기관 명칭 • 질문내용 • 표본크기 • 조사기간, 장소 • 조사분석기법 등 | 호주시장사회조사협회·호주 언론협회의 자율규제지침 ※ 법규정은 없음. 자율적 규제로 실시 |
| 아일랜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일자 • 의뢰인 또는 단체명 • 조사 실시 업체 또는 단체명 • 표본크기 등 | 아일랜드 방송위원회(BAI) 내부지침 ⁶⁾ |
| 이스라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뢰인 또는 단체명 • 조사 실시 업체 또는 단체명 • 조사일자 • 표본크기 • 오차범위 등 | 선거운동법 제16조 제B,H항 |
| 이탈리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 •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 • 표본 추출 기준 • 정보수집 및 정보처리 방식 • 응답자 수 • 질문내용 • 각 질문별 답변율 • 조사 일자 등 | 선거미디어법 제8조 |
| 멕시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선거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여론조사 지침 및 관련 양식에 따라야 함. | 연방선거법 제32,213조 |
| 포르투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기관명 • 조사 의뢰자의 신분 • 조사의 목적, 조사 대상, 대상자의 수 및 지리적 구성 • 응답자와 미응답자 수, 응답률, 무응답 편향지표 • 무응답률(투표의향을 묻는 경우에는 포기사항자의 비율 포함) • 사용된 표본 추출 방법 및 무작위 표본의 경우 획득한 응답률 • 정보 수집 및 상술 방법 • 표본오차 및 통계적 유의미성 정도 • 질문내용 등 | 여론조사법 제7조 |
| 슬로베니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론조사자 • 조사방법 • 조사 의뢰자 | 선거운동법 제5조제2항 |

※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칠레,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터키는 여론조사 관련 규정 없음.

6) 아일랜드 방송위원회(BAI; Broadcasting Authority of Ireland; BAI) Rule 27 of the BAI Code of Fairness, Objectivity and Impartiality in News and Current Affairs p.8 'opinion polls'
https://www.bai.ie/en/media/sites/2/dlm_uploads/2018/09/Rule27_ElectionGuide_vFinal_English.pdf (검색일 2019. 8.27.)

<표 1-15> 주요 국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내용

| 구분 | 공무원의 정치활동 내용 | 정당가입 | 정치자금 기부 | 근거규정 |
|-----|--|------|---------|--|
| 영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공무원들은 근무 중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공무원인 현업 및 비사무직급은 전국·지역단위 정치활동 가능 정치적으로 제한된 공무원인 고위공무원단 등은 모든 형태의 전국단위 정치활동 금지 | 가능 |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0년 헌법개혁 및 거버넌스 법 공무원복무규정, 각료 규정, 공무원운영규정 |
| 미국 | <p>정치문제 및 후보자에 대한 의견표시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정당자금의 유치와 제공유도금지(자발적 납부가능) 특정정당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특정 정당의 직위보유금지 | 가능 |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83년 펜들턴법 1939년, 1940년 제1차, 2차 해치법 (규제범위 확대) 1974년 연방선거운동법 개정(완화) 1993년 해치법 개정(완화) |
| 프랑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의 의원 출마 가능 당선되어도 공무원 신분 보장 | 가능 |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46년 일반공무원법 |
| 독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상원의 경우 공무원 겸직허용 연방수상 및 장관은 겸직금지 하원의원 출마 시 낙선되면 공무원 신분 유지, 당선되면 사임하되 연금 보장 | 가능 |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53년 연방공무원법 |
| 일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불가 정당, 기타 단체의 임원 등이 될 수 없음.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기부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 | 가능 | 불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45년 국가공무원법 1949년 인사원 규칙 |
| 스페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의 경우 중립성을 유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규정 외에 정치활동에 관한 규제가 없음. | 가능 |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기본법 |
| 스웨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적 활동에 제약이 없지만, 업무에 있어 정치적 편견이 개입되는 것을 사회적으로 경계함. | 가능 | 가능 | - |
| 스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상, 근로관계상 기관의 비밀유지 규정 공무원도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정치적 비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공무원이라는 지위로 인해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가능 |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0년 연방인사법 |
| 캐나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면 개인의 정치활동은 자유로움.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 가능 |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법 |
| 호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은 비정치적이어야 함.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사직해야 함. 선거운동 중에 공무원 유니폼을 입거나 공무와 관련 있어 보이게 해서는 안 됨. | 가능 |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9년 공무원법 |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표 2-1> 각국의 선거권 연령

| 연령 | 국가명 | | 비고 |
|-----|-----------------------------------|--|----|
| 16세 |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브라질, 쿠바, 에콰도르, 니카라과 | | 6 |
| 17세 | 그리스, 인도네시아, 북한, 동티모르 | | 4 |
| 18세 | 아시아 |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콜롬비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 22 |
| | 중동 | 아르메니아, 이집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팔레스타인, 카타르, 시리아, 터키, 예멘 | 11 |
| | 아프리카 |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앙골라, 베냉, 부탄,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감비아, 가봉,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리셔스,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시에라리온,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에스와티니, 탄자니아, 토고, 튀니지,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 50 |
| | 유럽 | 알바니아, 안도라,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벨기에,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린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⁷⁾ ,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몰타, 몰도바,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우크라이나, 영국 | 46 |
| | 중·남·북미 |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그레나다,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멕시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푸에르토리코,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미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29 |
| | 오세아니아 | 호주, 피지, 키리바시, 마셜군도, 미크로네시아, 뉴칼레도니아, 뉴질랜드,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투발루, 바누아투 | 12 |
| 19세 | 한국 | | 1 |
| 20세 | 바레인, 카메룬, 나우루, 대만 | | 4 |
| 21세 |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사모아, 싱가포르, 통가 | | 6 |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Comparative Data.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VR001> (검색일 2019.4.3.)

7) 이탈리아의 경우 하원의원 선거권은 18세, 상원의원 선거권은 25세임.

<표 2-2> 최근 선거연령 조정국가 현황

| 조정 현황 | 해당 국가 |
|-----------------|---|
| 15세 → 18세 | 이란(2011) |
| 19세 → 18세 → 16세 | 오스트리아(2007) |
| 20세 → 19세 | 한국(2005) |
| 21세 → 18세 | 세네갈, 보츠와나, 코트디부아르, 가봉, 키프로스, 시에라리온, 볼리비아, 레소토, 온두라스, 튀니지, 말레이시아(2019) |
| 20세 → 18세 | 일본(2015) |
| 18세 → 17세 | 그리스(2016) |
| 18세 → 16세 | 아르헨티나(2012) |

<표 2-3> OECD국가의 민법상 성년연령 및 선거권 연령 비교

| 연령 | 민법상 성년연령 | | 선거권 연령 | |
|-----|----------|---|--------|---|
| | 국가수 | 국가 | 국가수 | 국가 |
| 16세 | - | - | 1 | 오스트리아 ※ 독일, 스위스 일부 주는 지방선거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규정 |
| 17세 | - | - | 1 | 그리스 |
| 18세 | 33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덴마크, 룩셈부르크, 미국(주별로 다름), 멕시코, 벨기에,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체코, 칠레, 캐나다, 터키, 프랑스, 핀란드, 포르투갈, 폴란드, 호주, 헝가리 | 33 | 뉴질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덴마크, 룩셈부르크, 미국, 멕시코, 벨기에,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체코, 칠레, 캐나다, 터키, 핀란드,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호주, 헝가리, 일본 |
| 19세 | 1 | 한국 | 1 | 한국 |
| 20세 | 2 | 뉴질랜드, 일본(2022년 18세로 하향) | - | - |

출처: 민법상 성년연령(age of majority in civil law)

https://en.wikipedia.org/wiki/Age_of_majority#Age_18 (검색일 2019.4.23.)

<표 2-4> 각국의 선거권 요건(연령 제외)

| 구분 | 국가명 |
|--|---|
| 시민권 (Citizenship) |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안도라,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로루시, 벨기에, 벨리즈, 베냉,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미얀마,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캐나다,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콩고공화국, 쿡제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쿠바, 체코, 코트디부아르,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가이아나, 가봉, 감비아, 조지아, 독일, 가나, 그리스, 그레나다, 과들루프,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키리바시, 북한, 한국,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라트비아,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디브, 말리, 몰타, 마셜제도, 모리타니, 모리셔스,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몰도바, 모나코, 몽골, 몬테네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나우루, 네팔, 네덜란드,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니우에, 노르웨이, 오만, 파키스탄, 팔라우, 팔레스타인,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레위니옹,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산마리노,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군도,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리랑카, 수단, 수리남, 에스와티니, 스웨덴, 스위스, 시리아,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 동티모르, 토고, 통가,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우간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
| 거주 기간 (Period of Residence) |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오스트레일리아,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바레인, 바베이도스, 벨리즈, 부탄, 보츠와나, 불가리아, 미얀마, 카메룬, 칠레, 코모로, 콩고공화국, 쿡제도, 쿠바, 키프로스, 덴마크, 도미니카,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가봉, 독일, 그레나다, 가이아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자메이카, 일본, 리히텐슈타인, 말라위, 말레이시아, 말리, 몰타, 모리타니, 모리셔스, 미크로네시아, 몬테네그로,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니우에,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필리핀,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솔로몬군도, 수단, 수리남, 에스와티니, 스웨덴, 태국, 트리니다드토바고, 투발루, 우루과이 |
| 부모의 시민권 취득 (Citizenship of Parents) | 나미비아, 사모아, 산마리노 |
| 귀화 (Naturalization) | 아르헨티나, 벨리즈,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미얀마, 콩고공화국, 쿡제도, 코스타리카, 이집트, 가이아나, 일본, 쿠웨이트, 레바논,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니제르, 오만, 세네갈, 태국, 예멘 |
| 기타 |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안도라,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바레인, 베냉, 보츠와나, 브라질,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미얀마, 카메룬, 캐나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콜롬비아,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코스타리카, 체코, 코트디부아르,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가봉, 감비아, 가나, 그리스,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아이티, 헝가리, 인도, 이란, 이라크,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라트비아, 레소토,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크로네시아, 몰도바, 몽골,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팔레스타인,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폴란드, 르완다, 사모아,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슬로바키아, 수단, 태국, 동티모르, 토고, 통가, 튀니지, 투발루, 아랍에미리트, 영국, 잠비아 |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Comparative Data.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VR002> (검색일 2019.4.23.)

<표 2-5> OECD국가의 선거권 도입연도

| 국가명 | 남성 | 여성 | 보통선거권 |
|---------------------|------|------|-------|
| 영국 | 1918 | 1928 | 1928 |
| 미국 | 1856 | 1920 | 1965 |
| 프랑스 | 1848 | 1944 | 1945 |
| 독일 | 1871 | 1919 | 1919 |
| 일본 | 1925 | 1947 | 1947 |
| 스페인 | 1977 | 1977 | 1977 |
| 스웨덴 | 1909 | 1919 | 1945 |
| 스위스 | 1848 | 1971 | 1971 |
| 캐나다 | 1920 | 1920 | 1960 |
| 호주 | 1901 | 1902 | 1967 |
| 오스트리아 | 1896 | 1918 | 1918 |
| 벨기에 | 1893 | 1948 | 1948 |
| 칠레 | 1970 | 1970 | 1970 |
| 체코 / 슬로바키아 | 1896 | 1918 | 1918 |
| 덴마크 | 1849 | 1915 | 1915 |
| 에스토니아 | 1917 | 1918 | 1918 |
| 핀란드 | 1906 | 1906 | 1906 |
| 그리스 | 1844 | 1952 | 1952 |
| 헝가리 | 1918 | 1918 | 1918 |
| 아이슬란드 ⁸⁾ | 1920 | 1920 | 1920 |
| 아일랜드 | 1918 | 1923 | 1923 |
| 이스라엘 | 1948 | 1948 | 1948 |
| 이탈리아 | 1912 | 1945 | 1945 |
| 라트비아 | 1919 | 1919 | 1919 |
| 리투아니아 | 1922 | 1922 | 1922 |
| 룩셈부르크 | 1919 | 1919 | 1948 |
| 멕시코 | 1917 | 1953 | 1953 |
| 네덜란드 | 1917 | 1919 | 1919 |
| 뉴질랜드 | 1879 | 1893 | 1893 |
| 노르웨이 | 1898 | 1913 | 1913 |
| 폴란드 | 1918 | 1918 | 1918 |
| 포르투갈 | 1974 | 1974 | 1974 |
| 슬로베니아 ⁹⁾ | 1848 | 1848 | 1920 |
| 터키 | 1876 | 1934 | 1934 |

※ 남성, 여성: 문자해독력, 부,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특정 연령 이상의 모든 남성, 여성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해

※ 보통선거권: 성별, 부, 사회적 지위, 종교, 인종 또는 민족 차별이 없는 선거권

1. 보통선거권의 무효화를 다시 선언한 경우(스페인 1936년~1976년)와 제한선거의 흔적 등(호주의 원주민에게는 1962년부터 비로소 선거권이 주어짐)은 표시되지 않았음.
2. 미국은 1965년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 of 1965)에 따라 문자 해독 시험, 인두세의 납부요건 폐지되어 실질적인 보통선거권이 가능해짐.

출처: Wikipedia. 'Universal suffrage'

https://en.wikipedia.org/wiki/Universal_suffrage#Dates_by_country (검색일 2019.4.29.)

8) Wikipedia. 'Women in Iceland'

https://en.wikipedia.org/wiki/Women_in_Iceland (검색일 2019.10.17)

9) Wikipedia. 'Women's suffrage in Slovenia'

https://sl.wikipedia.org/wiki/%C5%BDenska_volilna_pravica (검색일 2019.10.17)

<표 2-6> OECD국가의 선거권 현황

| 구분 국가명 | 선거 연령 | 시민권 요건 | 국내 거주요건 | 선거구 거주요건 | 해외거주자 선거권 | 정신박약자 선거권 | 수감자 선거권 | 근거규정 |
|-----------|----------|-----------|------------|---------------------------------------|-----------------------|--------------|------------|--|
| 영 국 | 18세 | ○ | × | 3개월 (북아일랜드) | ○ | × | × | 2000년 국민대표법 제11조 |
| 미 국 | 18세 | ○ | × | 주마다 상이 (10일~50일) | ○ | × | × | (중범죄, 선거법) 수정헌법 제26조 |
| 프랑스 | 18세 | ○ | × | 6개월 (선거인명부 등록요건, 선거권 제한은 아님) | ○ | × | × | (특정범죄) 선거법 제2,5,6조 |
| 독 일 | 18세 | ○ | 3개월 | × | ○ | ○ | ○ | 연방선거법 제12,13조 |
| 일 본 | 18세 | ○ | × | × | (지방선거 3개월) | ○ | ○ | (특정범죄) 공직선거법 제9,11조 |
| 스페인 | 18세 | ○ | × | × | ○ | × | × | (특정범죄) 선거법 제2,3조 |
| 스웨덴 | 18세 | ○ | × | × | ○ | × | ○ | 헌법 제3절 제4조 |
| 스위스 | 18세 | ○ | × | × | ○ | × | ○ | 헌법 제36조제1항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2조 |
| 캐나다 | 18세 | ○ | ○ | × | ○ (5년 이내 국외체류시) | ○ | ○ | 선거법 제3,8,9조 |
| 호 주 | 18세 | ○ | ○ | ○ | ○ | × | × | (3년 이상 형량) 연방선거법 제93조제1,8항 제99조제1항 |
| 오스트리아 | 16세 | ○ | × | × | ○ | ○ | ○ | (1년 이상 구금은 ×) 헌법 제26조 의회선거법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8,66,74조 |
| 벨기에 | 18세 | ○ | × | × | ○ | × | × | 선거법 제1조 제1,2,3,4항 제7조제1항, 제180조 |
| 체 코 | 18세 | ○ | × | × | ○ | × | ○ | 헌법 제18조제3항 선거법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 제b,c호 |
| 칠 레 | 18세 | ○ | ○ | × | ○ | × | × | 헌법 제13,14,16조 |

| 구분 국가명 | 선거 연령 | 시민권 요건 | 국내 거주요건 | 선거구 거주요건 | 해외거주자 선거권 | 정신박약자 선거권 | 수감자 선거권 | 근거규정 |
|-----------|---|-----------|------------|-------------|--|--------------------|--------------------|--|
| 덴마크 | 18세 | ○ | ○ | ○ | ○ | × | × | 헌법 제29조제1,2항 선거법 제1,2,15조, 제54조제3항 |
| 에스토니아 | 18세 | ○ | × | × | ○ | × | × | 선거법 제4,49조 |
| 핀란드 | 18세 | ○ | ○ | × | ○ | ○ | ○ | 헌법 제14조 선거법 제2조 |
| 그리스 | 17세 | ○ | ○ | ○ | × ¹⁰⁾ | × | × (특정범죄) | 헌법 제51조 선거법 제4조제1항 제5조제a,b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69조제2항 |
| 헝가리 | 18세 | ○ | × | × | ○ | △ (법원결정에 따라) | △ (법원결정에 따라) | 헌법 제23조 선거법 제13/A,102조 |
| 아이슬란드 | 18세 | ○ | ○ | × | ○ | - | × (중범죄) | 헌법 제33,34조 의회선거법 제1,5조 |
| 아일랜드 | 18세 | ○ | ○ | ○ | ○ (18개월 이내 국외체류시) ¹¹⁾ | ○ | ○ | 헌법 제16조제1항 선거법(1992) 제8조제1항 제a,b호, 제12조 |
| 이스라엘 | 18세 | ○ | × | × | × (공무수행자, 외항선 등 제외) | × | ○ | 의회기본법 제5조 선거법 제2,3,116조 |
| 이탈리아 | 18세 (하위) ¹²⁾ 25세 (상위) | ○ | × | × | ○ | ○ | × (특정범죄) | 헌법 제48,58조 |
| 라트비아 | 18세 | ○ | × | × | ○ | × | × | 헌법 제8조 선거법 제1,3조, 제8조제1항, 제451,452조 |
| 리투아니아 | 18세 | ○ | × | × | ○ | × | ○ | 의회선거법 제2,27,67조 |
| 룩셈부르크 | 18세 | ○ | ○ | × | ○ | × | × | 헌법 제52조 선거법 제1,6조 |

| 구분 국가명 | 선거 연령 | 시민권 요건 | 국내 거주요건 | 선거구 거주요건 | 해외거주자 선거권 | 정신박약자 선거권 | 수감자 선거권 | 근거규정 |
|-----------|----------|-----------|------------|---------------------------------------|--------------|--------------------|--------------------|---|
| 멕시코 | 18세 | ○ | × | × | ○ | × | × | 헌법 제34,35조 선거법 제7조제1항, 제9조제a,b항, 제128조, 제280조제5항 |
| 노르웨이 | 18세 | ○ | ○ | ○ | ○ | ○ | × | 헌법 제53조 선거법 제2-1조, 제2-7조 |
| 네덜란드 | 18세 | ○ | × | × | ○ | - | × | 선거법 제B1조제1항, 제B5,D2조 |
| 뉴질랜드 | 18세 | ○ | 1년 | 1개월 (선거인명부 등록요건, 선거권 제한은 아님) | ○ | × | × | 선거법 제74,80,82조 |
| 폴란드 | 18세 | ○ | × | × | ○ | △ (법원결정에 따라) | △ (법원결정에 따라) | 헌법 제62조 선거법 제10,35조 |
| 포르투갈 | 18세 | ○ | × | × | ○ | × | ○ | 헌법 제49조, 선거법 제1,2,79,79b조 |
| 슬로바키아 | 18세 | ○ | × | × | ○ | × | × | 헌법 제30조 선거법 제3,4,45,59,60조 |
| 슬로베니아 | 18세 | ○ | × | × | ○ | × | ○ | 의회선거법 제7,47조 |
| 터 키 | 18세 | ○ | × | × | ○ | × | × | 헌법 제67조 선거기본법 제6,7,8조 |

※ EU회원국 정신박약자 선거권에 대해서는 각주자료 확인¹³⁾

10) 헌법 제51조제4항에 ‘해외에서의 선거권 행사에 관한 사안은 의회 의원 2/3 이상의 동의하에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시행할 구체적인 선거법이 없음.

11) 아일랜드 외무부 홈페이지

<https://www.dfa.ie/global-irish/support-overseas/voting-in-referendums/> (검색일 2019.8.9.)

12) 헌법 제48조제1항: 선거권자는 성년(Age of Majority; 18세)에 달한 모든 시민으로 규정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9-564-8565?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firstPage=true&bhcp=1](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9-564-8565?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firstPage=true&bhcp=1) (검색일 2019.9.6.)

13)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https://fra.europa.eu/en/publication/2014/indicators-right-political-participation-people-disabilities/legal-capacity> (검색일 2019.8.8.)

<표 2-7> 각국의 피선거권 연령(하원의원 기준)

| 연령 | 국가명 |
|-----|---|
| 17세 | 북한, 동티모르 |
| 18세 | 알바니아, 안도라, 앙골라,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벨리즈,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카보베르데, 캐나다, 중구, 코모로, 크로아티아, 쿠바, 덴마크, 에콰도르,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레나다,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안, 헝가리, 아이슬란드, 케냐, 레소토,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몰디브, 몰타, 모리셔스, 몬테네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몰도바, 상투메프린시페,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트리니다드토바고, 터키, 우간다, 영국 |
| 20세 | 나우루 |
| 21세 | 앤티가 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브라질, 브루나이,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칠레, 코스타리카, 체코공화국, 도미니카, 에스토니아, 가봉, 감비아, 조지아, 가나,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자메이카, 키리바시,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라트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말리, 마셜제도, 멕시코, 나미비아, 니카라과, 니제르, 파나마, 폴란드, 러시아, 르완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사모아, 산마리노,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문군도, 남수단, 수리남, 통가, 투발루, 우크라이나, 탄자니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잠비아, 짐바브웨 |
| 23세 | 카메룬, 지부티, 루마니아, 튀니지 |
| 25세 |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베냉, 부탄, 부룬디, 캄보디아, 차드, 콜롬비아, 콩고공화국, 코트디부아르, 키프로스, 콩고민주공화국, 도미니카 공화국, 이집트, 엘살바도르, 적도기니, 그리스, 아이티, 인도, 이탈리아, 일본, 카자흐스탄, 레바논, 라이베리아, 리투아니아, 모리타니, 모나코, 몽골,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한국, 세네갈, 소말리아, 타지키스탄, 태국,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아랍에미리트, 미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예멘 |
| 30세 | 바레인, 이란,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미크로네시아, 나이지리아,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

출처: New Parline. IPU's open data platform.

https://data.ipu.org/compare?field=chamber%3A%3Afield_min_age_member_parl&structure=any_lower_chamber#map (검색일 2019.4.30.)

<표 2-8> 각국의 피선거권 요건

| 구분 | 국가명 |
|---------------------------|--|
| 나이 (Age) | <p>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안도라,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로루시, 벨기에, 베냉,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미얀마,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캐나다,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모로,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쿡제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쿠바, 키프로스, 체코, 코트디부아르,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핀란드, 프랑스, 기아나, 가봉, 감비아, 조지아, 독일, 가나, 그리스, 그레나다, 과들루프,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키리바시, 북한, 한국,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라트비아,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디브, 말리, 몰타, 마셜제도, 모리타니,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몰도바, 모나코, 몽골, 몬테네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나우루,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니우에, 노르웨이, 오만, 파키스탄, 팔라우, 팔레스타인,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레위니옹,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사모아, 산마리노,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군도,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리랑카, 수단, 수리남, 에스와티니, 스웨덴, 스위스, 시리아,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 동티모르, 토고, 통가,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우간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p> |
| 시민권 (Citizenship) | <p>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안도라,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로루시, 벨기에, 벨리즈, 베냉,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미얀마,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캐나다,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모로,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쿡제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쿠바, 키프로스, 체코, 코트디부아르,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기아나, 가봉, 감비아, 조지아, 독일, 가나, 그리스, 그레나다, 과들루프,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키리바시, 북한, 한국,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라오, 라트비아,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디브, 말리, 몰타, 마셜제도, 모리타니, 모리셔스,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몰도바, 모나코, 몽골, 몬테네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나우루,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니우에, 노르웨이, 오만, 파키스탄, 팔라우, 팔레스타인,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레위니옹,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산마리노,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군도,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리랑카, 수단, 수리남, 에스와티니, 스웨덴, 스위스, 시리아,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 동티모르, 트리니다드토고, 통가, 토바고, 튀니지,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우간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p> |
| 출생국 (Country of Birth) | <p>안도라, 아르헨티나, 캄보디아, 코트디부아르, 도미니카공화국, 에티오피아,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쿠웨이트, 멕시코, 모잠비크, 니카라과, 페루, 필리핀,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태국, 토고</p> |
| 거주 (Residence) | <p>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기에, 벨리즈, 볼리비아, 보츠와나,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미얀마, 부룬디, 캄보디아, 캐나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칠레, 코모로, 콩고공화국,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피지, 감비아, 조지아, 가나,</p> |

| 구분 | 국가명 |
|---|---|
| | 기니,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자메이카, 카자흐스탄, 라오스, 레소토,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말리, 모리셔스,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몰도바, 나우루,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우에, 팔라우, 팔레스타인,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루마니아,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사모아, 산마리노, 상투메프린시페, 세르비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스리랑카, 수리남, 타지키스탄, 태국, 토바고,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미국,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
| 부모의 시민권 취득 (Citizenship of Parents) | 버마, 엘살바도르, 마셜제도,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세인트키츠네비스 |
| 등록 (Registration) | 알바니아, 안도라, 바레인,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미얀마,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콩고, 쿡제도, 키프로스,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피지, 조지아, 가나, 그리스,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이라크, 케냐, 한국, 레바논, 레소토, 리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르, 말리, 몰타, 마셜제도,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모로코, 모잠비크, 나우루, 뉴질랜드, 니우에, 파키스탄, 팔라우, 팔레스타인,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포르투갈, 르완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사모아, 산마리노, 세네갈,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에스와티니, 스위스, 태국, 동티모르, 토고, 통가, 투발루, 우간다, 우크라이나, 잠비아, 짐바브웨 |
| 민족 집단 (Nationality Group) | 콩고공화국, 마셜제도 |
| 최저 교육수준 (Minimum level of Education) | 부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칠레,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 인도네시아, 케냐, 리비아, 나이지리아, 오만, 파키스탄, 소말리아, 타지키스탄, 태국, 튀니지, 우간다 |
| 최저 수준의 문해력 (Minimum level of literacy) | 바레인, 보츠와나, 브라질,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기니, 인도네시아, 이란, 쿠웨이트, 레소토, 리비아, 말라위, 필리핀, 카타르, 세인트루시아,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수단, 시리아, 탄자니아, 토고, 통가, 아랍에미리트, 베네수엘라, 잠비아, 예멘 |
| 기타 |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앤티가 바부다, 벨기에, 브라질,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콜롬비아, 콩고, 쿡제도, 쿠바, 키프로스, 코트디부아르,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가봉, 감비아, 가나, 그리스, 캐나다, 과테말라, 기니, 아이티,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케냐, 키리바시, 북한,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라이베리아, 마케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몰디브, 말리, 몰타, 마셜제도, 모리셔스,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모나코, 몽골, 몬테네그로, 네팔,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오만,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러시아, 르완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사모아, 세르비아, 세이셸, 슬로바키아, 소말리아, 스페인, 수단, 수리남, 에스와티니, 스웨덴, 시리아, 탄자니아, 태국, 통가, 튀니지,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루과이, 예멘, 잠비아 |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Comparative Data.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PC003> (검색일 2019.4.22.)

<표 2-9> OECD국가의 피선거권 현황

| 구분 국가명 | 연령 | 시민권 요건 | 국내거주 요건 | 근거규정 |
|-----------|----------------------|--------------------------|---|------------------------|
| 영국 | 18세 | 시민권자 | - | 선거행정법 제17,18조 |
| 미국 | 30세(상원) 25세(하원) | 시민권 9년(상원) 시민권 7년(하원) | 대통령 14년, 상원 9년, 하원 7년 | 연방헌법 제1장 제2,3조 |
| 프랑스 | 24세(상원) 18세(하원) | 시민권자 | 귀화국민 혹은 결혼으로 국적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취득 후 거주기간 10년 이상 | 선거법 제127,296조 |
| 독일 | 18세 | 시민권자 | - | 선거법 제15조 |
| 일본 | 30세(참의원) 25세(중의원) | 시민권자 | 都·道·府·縣의회의원은 해당 도·도·부·현에, 市·町·村의회의원은 3월 이상 당해 시·정·촌에 주소를 가진 자 | 공직선거법 제10조 |
| 스페인 | 18세 | 시민권자 | - | 선거법 제6조 |
| 스웨덴 | 18세 | 시민권자 | - | 헌법 제3절 제4조 |
| 스위스 | 18세 | 시민권자 | - | 헌법 제143조 |
| 캐나다 | 30세(상원) 18세(하원) | 시민권자 | 상원의 경우 해당 주 거주 | 선거법 제65조 |
| 호주 | 18세 | 시민권자 | - | 연방선거법 제163조 |
| 오스트리아 | 18세 | 시민권자 | - | 헌법 제26조제4항, 의회선거법 제41조 |
| 벨기에 | 21세 | 시민권자 | 국내에 거소를 가진 자 | 헌법 제64조 |
| 체코 | 40세(상원) 21세(하원) | 시민권자 | - | 헌법 제19조제1,2항 |
| 칠레 | 35세(상원) 21세(하원) | 시민권자 | 상원: 없음 하원: 선거 1일 전까지 선거구 내 2년 이상 거주 | 헌법 제48,50조 |
| 덴마크 | 18세 | 시민권자 | - | 헌법 제30조제1항 |
| 에스토니아 | 21세 | 시민권자 | - | 선거법 제4조제4항 |
| 핀란드 | 18세 | 시민권자 | - | 헌법 제27조 선거법 제3조 |
| 그리스 | 25세 | 시민권자 | - | 헌법 제55조 선거법 제29조 |
| 헝가리 | 18세 | 시민권자 | - | 헌법 제23조 |
| 아이슬란드 | 18세 | 시민권자 | 국내에 거소를 가진 자 | 의회선거법 제1,4조 |

| 구분 국가명 | 연령 | 시민권 요건 | 국내거주 요건 | 근거규정 |
|-----------|--------------------|---------------------------------|--------------------------------------|------------------------------|
| 아일랜드 | 21세(상원) 21세(하원) | 시민권자 | - | 헌법 제16,18조제2항 |
| 이스라엘 | 21세 | 시민권자 (이중국적자는 타 국적 포기해야 함) | - | 의회기본법 제6조제a항, 제16A조 |
| 이탈리아 | 40세(상원) 25세(하원) | 시민권자 | - | 헌법 제56,58조 |
| 라트비아 | 21세 | 시민권자 | - | 헌법 제9조 |
| 리투아니아 | 25세 | 시민권자 | 국내에 거소를 가진 자 | 선거법 제2조 제2항 |
| 룩셈부르크 | 18세 | 시민권자 | 국내에 거소를 가진 자 | 선거법 제127조 |
| 멕시코 | 35세(상원) 25세(하원) | (상원)시민권자 (하원)시민권자 국내출생자 | 선거구 내 6월 이상 거주 | 헌법 제55,58조 선거법 제10조제1항 |
| 노르웨이 | 18세 | 시민권자 | - | 헌법 제61조 선거법 제2-1,3-1조 |
| 네덜란드 | 18세 | 시민권자 | - | 헌법 제56조 |
| 뉴질랜드 | 18세 | 시민권자 | 국내에 적어도 1년 이상 거주하며 선거구내 1개월 이상 거주 | 선거법 제47,74조 |
| 폴란드 | 30세(상원) 21세(하원) | 시민권자 | - | 헌법 제99조 선거법 제11조 |
| 포르투갈 | 18세 | 시민권자 | - | 선거법 제1,4조 |
| 슬로바키아 | 21세 | 시민권자 | 국내에 거소를 가진 자 | 헌법 제74조제2항 |
| 슬로베니아 | 18세 | 시민권자 | - | 선거법 제7조 |
| 터 키 | 18세 ¹⁴⁾ | 시민권자 | - | 헌법 제76조 |

14) 2018년 헌법 개정으로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 18세로 변경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표 3-1> OECD국가의 의원 1명당 인구수

| 국가명 | 총인구수 | 의원수 | | | 의원 1명당 인구수 | |
|-------|----------|-------|-------|--------|------------|-------|
| | | 상원의 수 | 하원의원수 | 총의원수 | 하원의원기준 | 총의원기준 |
| 한 국 | 5,116만 명 | 단원제 | | 300명 | - | 17만 명 |
| 에스토니아 | 131만 명 | | | 101명 | - | 1만 명 |
| 아이슬란드 | 34만 명 | | | 63명 | - | 1만 명 |
| 룩셈부르크 | 59만 명 | | | 60명 | - | 1만 명 |
| 라트비아 | 193만 명 | | | 100명 | - | 2만 명 |
| 리투아니아 | 288만 명 | | | 141명 | - | 2만 명 |
| 스웨덴 | 998만 명 | | | 349명 | - | 3만 명 |
| 덴마크 | 575만 명 | | | 179명 | - | 3만 명 |
| 핀란드 | 554만 명 | | | 200명 | - | 3만 명 |
| 노르웨이 | 535만 명 | | | 169명 | - | 3만 명 |
| 그리스 | 1,114만 명 | | | 300명 | - | 4만 명 |
| 뉴질랜드 | 475만 명 | | | 120명 | - | 4만 명 |
| 포르투갈 | 1,029만 명 | | | 230명 | - | 4만 명 |
| 슬로바키아 | 545만 명 | | | 150명 | - | 4만 명 |
| 헝 가 리 | 969만 명 | | | 199명 | - | 5만 명 |
| 이스라엘 | 845만 명 | | | 120명 | - | 7만 명 |
| 터 키 | 8,191만 명 | | | 600명 | - | 14만 명 |
| 아일랜드 | 480만 명 | 60명 | 158명 | 218명 | 3만 명 | 2만 명 |
| 슬로베니아 | 208만 명 | 40명 | 90명 | 130명 | 2만 명 | 2만 명 |
| 스위스 | 854만 명 | 46명 | 200명 | 246명 | 4만 명 | 3만 명 |
| 오스트리아 | 875만 명 | 61명 | 183명 | 244명 | 5만 명 | 4만 명 |
| 체 코 | 1,065만 명 | 81명 | 200명 | 281명 | 5만 명 | 4만 명 |
| 벨기에 | 1,150만 명 | 60명 | 150명 | 210명 | 8만 명 | 5만 명 |
| 영 국 | 6,657만 명 | 775명 | 650명 | 1,425명 | 10만 명 | 5만 명 |
| 이탈리아 | 5,929만 명 | 321명 | 630명 | 951명 | 9만 명 | 6만 명 |

| 국가명 | 총인구수 | 의원수 | | | 의원 1명당 인구수 | |
|------|------------|-------|-------|------|------------|-------|
| | | 상원의 수 | 하원의원수 | 총의원수 | 하원의원기준 | 총의원기준 |
| 프랑스 | 6,523만 명 | 348명 | 577명 | 925명 | 11만 명 | 7만 명 |
| 폴란드 | 3,810만 명 | 100명 | 460명 | 560명 | 8만 명 | 7만 명 |
| 스페인 | 4,639만 명 | 266명 | 350명 | 616명 | 13만 명 | 8만 명 |
| 캐나다 | 3,695만 명 | 105명 | 338명 | 443명 | 11만 명 | 8만 명 |
| 네덜란드 | 1,708만 명 | 75명 | 150명 | 225명 | 11만 명 | 8만 명 |
| 칠레 | 1,820만 명 | 50명 | 155명 | 205명 | 12만 명 | 9만 명 |
| 호주 | 2,477만 명 | 76명 | 150명 | 226명 | 17만 명 | 11만 명 |
| 독일 | 8,230만 명 | 69명 | 598명 | 667명 | 14만 명 | 12만 명 |
| 일본 | 1억2,719만 명 | 242명 | 465명 | 707명 | 27만 명 | 18만 명 |
| 멕시코 | 1억3,076만 명 | 128명 | 500명 | 628명 | 26만 명 | 21만 명 |
| 미국 | 3억2,676만 명 | 100명 | 435명 | 535명 | 75만 명 | 61만 명 |

출처: worldpopulation by country. 2018.

<http://worldpopulationreview.com/countries/> (검색일 2019.5.1.)

New Parline. IPU's open data platform.

https://data.ipu.org/compare?field=chamber%3A%3Afield_statutory_members_number&structure=any__lower_chamber#map (검색일 2019.3.31.)

<표 3-2> OECD국가의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비율

| 국가명 | 총의원수 | | 지역구 의원수 | 비례대표 의원수 | 총정수 대비 비례대표의원 비율 | 지역구의원 대비 비례대표의원 | |
|-------|--------|-----|---------|----------|------------------|-----------------|--------|
| 한 국 | 300명 | | 253명 | 47명 | 15.67% | 5.38:1 | |
| 뉴질랜드 | 120명 | | 70명 | 50명 | 41.67% | 1.40:1 | |
| 헝가리 | 199명 | | 106명 | 93명 | 46.73% | 1.14:1 | |
| 리투아니아 | 141명 | | 71명 | 70명 | 49.64% | 1.01:1 | |
| 그리스 | 300명 | | 8명 | 292명 | 97.33% | 0.03:1 | |
| 덴마크 | 179명 | | 4명 | 175명 | 97.77% | 0.02:1 | |
| 핀란드 | 200명 | | 1명 | 199명 | 99.5% | 0.005:1 | |
| 에스토니아 | 101명 | | - | 101명 | 100% | - | |
| 스웨덴 | 349명 | | - | 349명 | 100% | - | |
| 아이슬란드 | 63명 | | - | 63명 | 100% | - | |
| 이스라엘 | 120명 | | - | 120명 | 100% | - | |
| 룩셈부르크 | 60명 | | - | 60명 | 100% | - | |
| 라트비아 | 100명 | | - | 100명 | 100% | - | |
| 노르웨이 | 169명 | | - | 169명 | 100% | - | |
| 포르투갈 | 230명 | | - | 230명 | 100% | - | |
| 슬로바키아 | 150명 | | - | 150명 | 100% | - | |
| 터 키 | 600명 | | - | 600명 | 100% | - | |
| 영 국 | 1,425명 | 상원 | 775명 | 임명 | - | - | - |
| | | 하원 | 650명 | 605명 | - | - | - |
| 미 국 | 535명 | 상원 | 100명 | 100명 | - | - | - |
| | | 하원 | 435명 | 435명 | - | - | - |
| 프랑스 | 925명 | 상원 | 348명 | 간선 | - | - | - |
| | | 하원 | 577명 | 577명 | - | - | - |
| 캐나다 | 443명 | 상원 | 105명 | 임명 | - | - | - |
| | | 하원 | 338명 | 338명 | - | - | - |
| 멕시코 | 628명 | 상원 | 128명 | 96명 | 32명 | 25% | 3:1 |
| | | 하원 | 500명 | 300명 | 200명 | 40% | 1.5:1 |
| 일 본 | 707명 | 참의원 | 242명 | 146명 | 96명 | 39.37% | 1.52:1 |
| | | 중의원 | 465명 | 289명 | 176명 | 37.85% | 1.64:1 |
| 독 일 | 667명 | 상원 | 69명 | 간선 | - | - | - |
| | | 하원 | 598명 | 299명 | 299명 | 50% | 1:1 |

| 국가명 | 총의원수 | | 지역구 의원수 | 비례대표 의원수 | 총정수 대비 비례대표의원 비율 | 지역구의원 대비 비례대표의원 | |
|-------|------|----|------------------|----------|------------------|-----------------|---------|
| | 상원 | 하원 | | | | | |
| 이탈리아 | 951명 | 상원 | 321명 (6명은 간선) | 116명 | 199명 | 61.99% | 0.58:1 |
| | | 하원 | 630명 | 232명 | 398명 | 63.17% | 0.58:1 |
| 스위스 | 246명 | 상원 | 46명 | 46명 | - | - | - |
| | | 하원 | 200명 | 5명 | 19명 | 97.5% | 0.03:1 |
| 스페인 | 616명 | 상원 | 266명 | 208명 | 58명 (간선) | - | - |
| | | 하원 | 350명 | 2명 | 348명 | 99.43% | 0.006:1 |
| 슬로베니아 | 130명 | 상원 | 40명 | 간선 | - | - | - |
| | | 하원 | 90명 | 2명 | 88명 | 97.78% | 0.02:1 |
| 호 주 | 226명 | 상원 | 76명 | - | 76명 | 100% | - |
| | | 하원 | 150명 | 150명 | - | - | - |
| 오스트리아 | 244명 | 상원 | 61명 | 간선 | - | - | - |
| | | 하원 | 183명 | - | 183명 | 100% | - |
| 벨기에 | 210명 | 상원 | 60명 | 간선 | - | - | - |
| | | 하원 | 150명 | - | 150명 | 100% | - |
| 칠 레 | 205명 | 상원 | 50명 | - | 50명 | 100% | - |
| | | 하원 | 155명 | - | 155명 | 100% | - |
| 체 코 | 281명 | 상원 | 81명 | 81명 | - | - | - |
| | | 하원 | 200명 | - | 200명 | 100% | - |
| 아일랜드 | 218명 | 상원 | 60명 | 간선 | - | - | - |
| | | 하원 | 158명 | - | 158명 | 100% | - |
| 네덜란드 | 225명 | 상원 | 75명 | 간선 | - | - | - |
| | | 하원 | 150명 | - | 150명 | 100% | - |
| 폴란드 | 560 | 상원 | 100명 | 100명 | - | - | - |
| | | 하원 | 460명 | - | 460명 | 100% | - |

출처: New Parline. IPU's open data platform.

https://data.ipu.org/compare?field=chamber%3A%3Afield_statutory_members_number&structure=any_lower_chamber#map (검색일 2019.3.25.)

<표 3-3> 각국의 선거구획정기구

| 담당기구 | 국가명 |
|-------------------|--|
| 의회-하원 (65) | 알제리, 앙골라, 벨기에, 베냉, 브라질, 캄보디아, 카메룬,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칠레, 콜롬비아, 코모로, 쿡제도, 크로아티아, 체코, 도미니카, 이집트, 적도기니, 가봉, 그리스, 과들루프, 기니, 기니비사우,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이라크, 아일랜드,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키리바시, 쿠웨이트, 라오스, 라트비아, 레바논, 리비아, 룩셈부르크, 말리, 마셜제도, 아이슬란드, 모리타니, 미크로네시아, 몽골, 모잠비크, 나우루, 니카라과, 니제르, 니우에,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폴란드, 레위니옹, 사모아, 상투메 프린시페, 슬로베니아, 스웨덴, 토고, 투발루, 아랍에미리트, 영국, 베트남 |
| 의회-상원 (12) | 알제리, 벨기에, 캄보디아, 칠레, 콩고공화국, 체코,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모리타니, 필리핀, 폴란드, 영국 |
| 행정부 (16) |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레인, 바베이도스, 불가리아, 카메룬, 캐나다,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그레나다, 마다가스카르, 몰도바, 나미비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에스와티니, 투발루 |
| 선거구획정위원회 (36) | 앤티가바부다, 호주, 바하마,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리즈, 부탄, 보츠와나, 캐나다, 도미니카, 에리트레아, 프랑스, 독일, 그레나다, 인도, 아일랜드, 대한민국, 레소토, 말라위, 모리셔스, 몰도바, 네팔, 뉴질랜드, 파키스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솔로몬 군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통가, 트리니다드토바고, 영국, 미국 |
| 선거관리기관 (55) |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호주,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볼리비아, 부르키나파소, 미얀마, 콩고민주공화국, 쿠바, 체코, 코트디부아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에티오피아, 가봉, 감비아, 조지아, 가나,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케냐, 라이베리아,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몰타, 멕시코, 나이지리아, 팔레스타인, 러시아, 르완다,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소말리아, 수단,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간다,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
| 정부부서 또는 기관 (9) | 아프가니스탄,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에콰도르, 이집트, 이탈리아, 팔레스타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
| 기타 (19) | 안도라, 아르헨티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모로코, 나우루, 네덜란드, 노르웨이, 파라과이, 푸에르토리코, 카타르, 슬로바키아, 스페인, 수리남, 스위스, 튀니지, 미국, 바누아투 |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Comparative Data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BD005> (검색일 2019.4.30.)

<표 3-4> OECD국가의 선거구획정절차

| 구분 국가명 | 선거구획정기관 (소속) | 획정주기 | 획정절차 및 안 작성 | 근거규정 |
|-----------|--|---------------|--|----------------------------------|
| 영국 |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선거구획정위원회 (상설 독립기관) | 5년 | ①위원회가 획정안을 내무장관에게 제출 ②내무장관은 획정안을 의회에 제출 ③의회는 가·부만을 결정, 수정불가 (의회에서 획정안을 부결한 선례 없음.) | 선거구획정법 제3,4조 |
| 미국 | 주 의회, 주 선거구획정위원회 등 주별로 다름. | 10년 (인구조사) | ①10년마다 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별 의석수 배정 ②주 의회, 주 선거구획정위원회 등에서 주 별로 주 법으로 선거구 획정 | 헌법 제1장제2조제 3항 주 선거법 |
| 프랑스 | 선거구획정조정위원회 (비상설 독립적 지문기구) | 비정기 | ①헌법평의회가 선거구획정 지침 마련 ②내무부에서 선거구획정안 마련 ③선거구획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견 제시 ④국사원(최고행정재판소)에 자문 ⑤내각회의에 획정안 제출 ⑥의회에서 행정명령 인준, 헌법평의회에서 법령 발효 | 선거구획정 조직법령 (행정명령) |
| 독일 | 선거구획정위원회 (상설 독립기관) | 4년 | ①위원회가 연방내무장관에게 선거구획정안 제출 ②연방내무장관이 획정안을 하원에 제출 ③하원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방관보에 공표 | 연방선거법 제3조제2항 |
| 일본 | 중의원의원 선거구획정심의회 (내각부 산하) | 10년 (국세조사) | ①획정심의회가 총리에게 획정안 제출 ②총리가 획정안을 의회에 보고 ③의회에서 선거구 획정 | 중의원의원 선거구획정 심의회설치법 |
| 스페인 | 의회 | 4년 | ①행정구역이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함. ②선거 때 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당 선거구의 의석수를 결정함. | 선거법 제161조 |
| 스웨덴 | 중앙선거청 | 4년 | ①원칙적으로 행정구역이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함. ②중앙선거청이 선거연도 4월 30일까지 인구수를 기준으로 각 선거구의 의석수를 결정함. | 기본법 제3절 제6조 선거법 제4절 제3조 |
| 스위스 | 의회 | 4년 | ①각 주가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함. ②선거이후 첫 해 인구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해당 선거구의 의석수를 결정함. | 헌법 제149조제4항 |
| 캐나다 | 주 선거구획정위원회 | 10년 (인구조사) | ①위원회가 획정안을 작성 선거관리청에 보고 ②선거관리청장이 하원에 획정안 제출 ③하원의 승인을 거쳐 총독이 행정명령으로 공표 (하원에서 획정안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주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재심의 요청) | 선거구획정 조정법 |
| 호주 | 주 선거구획정위원회 (연방선거위원회 하부기관) | 비정기 | ①위원회가 획정안을 작성하고 일반인에게 공개 ②공개된 획정안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가 이의제기 가능 ③선거구획정안 결정을 위한 확대선거위원회가 이의를 심사하고 최종결정 ④확대선거위원회의 선거구획정 결정안을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이 의회에 제출 | 연방선거법 제60,68~70조 |

| 구분 국가명 | 선거구획정기관 (소속) | 획정주기 | 획정절차 및 안 작성 | 근거규정 |
|-----------|-----------------|---------------|--|---|
| | | | ⑤의회는 확대선거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하거나 수정할 권한은 없음. | |
| 오스트리아 | 내무부 | 10년 (인구조사) | ①인구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해당 선거구별 인구비례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 ②배분된 의석수를 내무부 장관이 연방관보에 공표 | 의회선거법 제2~5조 |
| 벨기에 | 의회 | 10년 (인구조사) | ①행정구역 경계가 해당 선거구를 구성함. ②벨기에 전체 인구수 나누기 하원의원 수(150)을 기준으로 각 선거구의 인구비례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함. ※ 왕은 인구조사 결과를 6개월 이내에 공표하고, 공표 후 3개월 이내에 의석수를 결정함. | 헌법 제63조 제1,2,3항 선거법 제87,88조 |
| 체코(15)16) | 의회 | 4년 | ①선거연도 인구수 증감률 조사를 기초로 하원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심의해 상원으로 송부 ※ 인구수, 행정구역 변경, 상하원 선거구와 지방의회 선거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의 상황이 있을 때 재획정함. ②상원에서 해당 획정안을 의결해 확정 ③국가선거위원회는 재외선거 등 특별선거구 획정에 관한 획정안 제출 (상원이 선거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하원은 해당 결정에 대해 재투표를 할 수 없음) | 선거법 제3조제1항 제8조제2항 제i호 제26,59조 지방선거법 제26,27조 |
| 칠레 | 선거위원회 | 10년 | ①선거위원회가 최신 통계청 공식 인구조사를 기반으로 의석수 배정 ②인구조사 실시연도 다음해 4월 세 번째 근무일에 선거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소집되며 인구조사가 의원선거와 같은 해 이루어지는 경우 상임위원회는 그 앞선 해 4월의 세 번째 근무일에 소집 ③선거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소집 후 10일 내로 획정안을 작성해 48시간 내로 하원에 통보 ④공표 5일 이내 시민은 누구든지 법원에 획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⑤필요한 경우 법원은 10일 이내로 획정안을 승인 또는 수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항소는 불가 ⑥최종 획정 내용은 해당 연도 2월 1일부터 10일간 관보에 게재 | 헌법 제47조 선거법 제121, 187~190조 |
| 덴마크 | 경제내무부 | 5년 | ①매 5년마다 1월 1일 인구통계를 발표 ②경제내무부장관이 지역 및 선거구별 의석수를 결정하고 발표 | 선거법 제8,10조 |
| 에스토니아 | 선거위원회 | 4년 | ①선거일이 공표된 달의 1일에 인구등록부상 총 인구수에 비례해 해당 선거구의 의석수를 배분 ②선거위원회가 공표 | 선거법 제2,6,7조 |
| 핀란드 | 정부 | 4년 | ①선거일 6개월 전 마지막 날 인구정보시스템상의 선거구별 인구수에 비례해 의석수를 배분 ※ 선거연도 행정구역 변경을 반영 ②정부가 법령으로 공표 | 헌법 제24조 선거법 제5,6조 |

| 구분 국가명 | 선거구획정기관 (소속) | 획정주기 | 획정절차 및 안 작성 | 근거규정 |
|----------------------|-----------------|---------------|--|--|
| 그리스 | 의회 | 10년 (인구조사) | ①행정구역이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함. ②인구조사결과에 비례해 선거구별 의석수를 조정 (단, 아테네 등 일부 도시 제외) | 선거법 제1,2조 |
| 헝가리 | 의회 | 4년 | ①선거구별 선거권자 수가 평균 선거권자수에 근접하게 획정 ②선거법 별지에 규정 | 기본법 제2조제3항 의회선거법 제4조 |
| 아이슬란드 | 선거위원회 | 4년 | ①기본적으로 선거구가 고정됨. ②선거일 5주 전 선거구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의석수 배정함. | 의회선거법 제7조 |
| 아일랜드 ¹⁷⁾ | 선거구획정위원회 | 5년 (인구조사) | ①중앙통계청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선거구별 의석수를 배정 ②위원회는 소집 6개월 이내로 확정안을 작성하여 하원에 제출 ③위원회는 확정안 제출 이후 해산 ④하원의 의결을 거쳐 선거구 확정 | 헌법 제16조제2항 선거법(1997) 제6조제2항, 제9조 |
| 이스라엘 ¹⁸⁾ | - | - | 기본법에 따라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로 고정 | 의회기본법 제4조 선거법 제9,57조 |
| 이탈리아 | 내무부 | 10년 (인구조사) | 내무부 장관이 최근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선거구별 의석수를 조정 | 하원선거법 제3조 |
| 라트비아 | 중앙선거위원회 | 10년 (인구조사) | ①선거법에 따라 5개의 선거구로 고정 ②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선거구별 의석수 배정 ③중앙선거위원회가 선거법에 명시된 계산식에 등록된 선거권자 수를 대입하여 의원정수를 변경해 선거구 당 의석 수 결정 | 선거법 제7조제1,2항 제8조제1,2항 |
| 리투아니아 ¹⁹⁾ | 선거위원회 | 10년 (인구조사) | ①기본적으로 선거구가 고정됨. ②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의석수 배정 | 선거법 제9조제1항 |
| 룩셈부르크 | 의회 | 비정기 | 선거구 및 의원정수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선거구 조정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 | 헌법 제51,114조 선거법 제117,132, 197조 |
| 멕시코 ²⁰⁾ | 연방선거위원회 | 5년 (인구조사) | 연방선거위원회가 최신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안 작성 | 헌법 제52,53조 연방선거법 제32조제1항 제a호제II목, 제214조 |
| 노르웨이 ²¹⁾ | 지방정부현대화부 | 8년 | ①19개 선거구가 고정되어 있음. ②지방정부현대화부 장관은 8년마다 선거구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의석수를 배분하고 의회에 통보 | 선거법 제11-1,11-3 조 |

| 구분 국가명 | 선거구획정기관 (소속) | 획정주기 | 획정절차 및 안 작성 | 근거규정 |
|-----------|-----------------|--------------|--|--|
| 네덜란드 | - | - | 행정구역을 경계로 하는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함. ※ 선거구를 선거법 별지로 규정 | 선거법 제E1조 |
| 뉴질랜드 | 선거구획정위원회 | 5년 (인구조사) | ①위원회가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획정안을 작성 ②총독에게 보고하고 관보에 게시 ③일반인 등의 이의제기 가능 ④위원회가 이를 심사하고 최종 결정 | 선거법 제28,35, 38,40조 제77조제4항 |
| 폴란드 | 의회 | 비정기 | ①행정구역의 변경, 인구변화의 이유로 선거구 변경을 선거위원회가 의회에 제안 ②의회는 선거 공표일 3개월 이전까지 획정 ③선거법 별지에 규정하고 선거위원회가 공지 및 게시 | 선거법 제201~203조 |
| 포르투갈 | - | 10년 | ①최신 인구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인구수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 ②선거위원회는 선거일 60~55일 이전까지 관보에 공표 | 선거법 제12,13,16조 |
| 슬로바키아 | - | - |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로 고정 | 선거법 제44조 |
| 슬로베니아 | 의회 | 비정기 | 의원 3분의2의 찬성으로 의회에서 의결 | 의회선거법 제20,21조 |
| 터 키 | 최고선거위원회 | 비정기 | ①헌법에 따라 최고선거위원회가 모든 선거 관련 업무를 담당 ②선거법에 따라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구역과 선거구 일치 ③최신 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수 변동을 고려하여 의석수 변경 ④변경 결과는 인구조사 결과 발표 후 6개월 이내 최고선거위원회가 관보, 라디오, TV를 통해 발표 | 헌법 제79조 선거기본법 제3조 의회선거법 제4,5조 |

- 15) 베니스위원회 보고서 - 선거구 획정
[https://www.venice.coe.int/webforms/documents/default.aspx?pdffile=CDL-AD\(2017\)034-e](https://www.venice.coe.int/webforms/documents/default.aspx?pdffile=CDL-AD(2017)034-e) (검색일 2019.8.9.)
- 16) 체코 입법 절차
http://www.psp.cz/files/okv/en_Legislative_process_bill.pdf (검색일 2019.5.17.)
- 17) 아일랜드 의회.
https://www.citizensinformation.ie/en/government_in_ireland/national_government/houses_of_the_oireachtas/dail_cireann.html (검색일 2019.7.30.)
- 18) 이스라엘 사법부 ‘National: The entire country constitutes a single electoral constituency.’
<https://knesset.gov.il/constitution/ConstMGovt.htm> (검색일 2019.5.17.)
- 19) OSCE보고서. ‘Republic of Lithuania Parliamentary Elections. Election Assessment Mission Final Report.’ p.6.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lithuania/251681>(검색일 2019.7.29.)
- 20) 멕시코 통계청 인구조사
<https://en.www.inegi.org.mx/temas/estructura/> (검색일 2019.9.17.)
- 21) 노르웨이 지방정부현대화부(The Ministry of Local Government and Modernization)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norway/360336?download=true> (검색일 2019.9.16.)

<표 3-5> OECD국가의 선거구획정기준

| 구분 국가명 | 획정기준 및 인구편차 | 근거규정 |
|-----------|--|------------------------------|
| 영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선거구 평균선거권자수(electorate quota)에 가능한 한 근접하게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평균선거권자수는 전체 선거권자수를 선거구 수로 나눈 값으로 선거구당 선거권자 수가 95%미만이거나 105%를 초과해서는 안 됨. • 선거구의 크기, 모양, 접근성 등 지정학적 고려 및 지방정부의 경계, 현행 선거구의 경계 등을 고려함. | 선거구획정법 부칙 2 |
| 미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3만 명 당 1명을 배정하되, 각 주에 최소 1명의 하원의원이 있어야 하며, 조밀성, 인접성, 행정구역, 이익공동체, 이전 구역 존중등을 기준으로 함. • 1962년 연방대법원은 선거구획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전통을 깨고 인구비례를 위배한 선거구획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Baker v. Carr). • 1964년 선거구간 3:1의 인구편차를 위헌으로 판결(Wesberry v. Sanders). • 1969년 선거구간 1.06:1의 인구편차를 위헌으로 판결(Kirpatrick v. Preisler). • 1973년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1.1:1(±5%)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결(White v. Weiser). • 1983년 선거구간 0.6984%의 인구편차를 위헌으로 판결 (Karcher v. Daggett). • 1997년 선거구간 0.35%의 인구편차를 합헌으로 판결 (Abrams v. Johnson). • 연방의회 선거는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라 0에 최대한 가깝게 인구편차를 줄여야 함. 다만, 주 의회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대체로 10%정도까지 허용되며, 이를 크게 초과할 경우에는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가 필요함. 참고로, 1992년 버몬트 주 하원 선거구 간 인구편차는 17.6%였으며, 이는 주법원에서 승인됨. ※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연방의회 선거구와 주의회 선거구가 모두 구속을 받음. | 헌법 제1장제2조 제3항 |
| 콜로라도 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인구가 많은 선거구와 적은 선거구의 인구차는 5% 미만 • 인구 밀접성, 선거구 인접성을 고려하고, 동일한 행정구역에 서로 다른 선거구에 속하도록 해서는 안 됨. | 주 헌법 제46~48조 |
| 프랑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도 내부에서의 선거구획정시에는 평균인구의 상하 20%(1.5:1)이내의 편차에서 이루어져야 함. • 20%의 인구편차는 충분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설정할 수 있음. • 프랑스 본토내의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1:3.6에서 1:2 감소함. | 선거구획정 조직법규 |
| 독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선거구의 인구수는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로부터 상하 15/100(1.35:1) 초과하는 편차를 보여서는 안 됨. • 편차가 25/100을 초과한다면 새로운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져야 함. | 연방선거법 제3조제1항제3호 |
| 일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선거구의 인구 중 그 최다의 것을 최소의 것으로 나누어 얻은 수가 2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함[2:1(±33%)]. | 중의원선거구획정 심의회설치법 제3조제1항 |
| 스페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 구성 | 선거법 제161조 |
| 스웨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선거구의 선거권자 수를 전국 선거권자 수의 310분의 1로 나눈 몫의 정수에 해당하는 의석을 배분함. • 전체 선거구 의석이 위 방법에 의해 배분되지 못하고 잔여의석이 발생하는 경우 위 방법으로 계산 후 나머지 수의 크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분함. • 선거권자 수는 선거연도 3월 1일 국세청 인구등록을 기준으로 함. | 선거법 제4절 제1,3조 |

| 구분 국가명 | 획정기준 및 인구편차 | 근거규정 |
|-------------------|--|---------------------------------------|
| 스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조사법에 따라 지난 선거 이후 첫 해의 인구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함. 스위스 거주 인구를 200으로 나눈 몫에 따라 주별 인구수에 비례 1,2,3차 할당과정을 거쳐 각 주의 선거구당 의석수를 확정함. | 헌법 제149조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16조 |
| 캐나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주의 인구수를 각 주의 의원정수로 나누어 선거구의 선거권자 기준수를 산출 평균인구수 편차 $\pm 25\%$ (1.67:1)을 초과하지 못함. 주 내 동일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 선거구의 역사적 형태, 인구 희박지역 등을 고려함. | 선거구획정조정법 제15,51조 |
| 호 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구획정이 시작되는 날 등록되어 있는 선거권자 수를 의원정수로 나눈 수인 선거권자 기준수를 산출 평균인구수 편차 $\pm 10\%$ (1.22:1)을 초과하지 못함. | 연방선거법 제65,66조 |
| 오스트리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행정구역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고, 행정구역의 크기에 따라 수개의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음 선거구 인구 비례에 따라 의석수를 조정 | 헌법 제26조제2항 의회선거법 제3,4조 |
| 벨기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주(Province)는 기본적으로 한 개의 선거구를 이루며, 브뤼셀도 한 개의 선거구를 이룸. 선거구는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될 수 있음. 또는 한 개의 행정구역이 여러 선거구로 나누어질 수 있음. 행정구역은 이 법에 규정된 분할표에 따라 선거구로 나뉘며, 국왕은 선거구 안의 지자체의 경계를 변경하거나 지방법원의 위치를 다른 선거구로 옮기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행정구역·선거구 구성을 변경할 수 있음. 선거구별 의석 배분은 선거구 인구/연방제수 결과값에 따라 국왕이 결정하며, 잔여 의석은 인구가 많은 순위에 따라 배분 ※ 연방제수(the Federal Divisor): 벨기에 총인구/150(총의원수) Brabant주의 경우 프랑스어 및 네덜란드어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칙을 법에 따라 정할 수 있음. | 헌법 제63조제1,2,3항 선거법 제87,88조 |
| 체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와 자연발생적인 경계를 바탕으로 선거구 구성 프라하 수도권 지역은 별도 선거구로 편성 선거인 수 1,000명당 1개 선거구를 설정하되, 지역경계변경, 선거인수 1/3 변동, 상원·지방의원 선거구와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변경 가능 | 선거법 제3조 지방선거법 제26,27조 |
| 칠레 ²²⁾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신 통계청 공식 인구조사를 기반으로 선거법 제121조 계산식에 따라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각의 28개 선거구 당 3석 이상 8석 이하의 의석수 배정 | 선거법 제187,188,189, 190,121조 |
| 덴마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을 인구, 직전선거의 선거권자 수, 선거구면적(km²)$\times 20$을 합한 값을 기준으로 선거구에 133석을 배분(보른홀름 지역은 최소 2석 보장). 전국을 3개 지방으로 나눔(Metropolitan Copenhagen, Sealand-Southern Denmark, Northern and Central Jutland). Metropolitan Copenhagen 지역은 4개 중선거구로, Sealand-Southern Denmark 와 Northern and Central Jutland 지역은 각 3개 중선거구로 나눔. ※ 의석은 175석이고, 그 중 135석이 선거구석이고, 40석이 보정의석 (총의석 179석/페로제도 2석, 그린란드 2석) | 선거법 제7,10조 |
| 에스토니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행정구역을 12개의 선거구로 고정하고 선거구 인구 비례에 따라 의석 수를 조정 | 선거법 제6,7조 |
| 핀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핀란드 행정지역 구분과 인구규모에 따라 최소 12~ 18개의 선거구를 획정 (올란드 제도 지역은 별도 선거구로 편성해야 함, 2019년 현재 14개선거구) | 헌법 제25조 |

| 구분 국가명 | 획정기준 및 인구편차 | 근거규정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구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배분 | 선거법 제5,6조 |
| 그리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구별로 최신 인구통계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 ※ 그리스 자체 인구수를 선거구별로 나눈 몫에 비례하여 선거구별 의석수를 배분 | 선거법 제2조제2항 |
| 헝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운티 경계와 부다페스트 경계를 넘지 않고 인접한 지역이어야 함. • 평균선거권자수는 편차 $\pm 15\%$(1.35:1)을 초과하지 못함. • 지리적, 민족적, 역사적, 종교적 및 기타 지역 특성과 인구의 동태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가 가능함. | 의회선거법 제4조 |
| 아이슬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일 5주 전 선거위원회가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 • 선거구는 의석 당 배정된 선거권자 수, 보정의석을 고려 | 의회선거법 제7조 |
| 아일랜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정수 164명 이상 168명 이하 조항을 고려해 각 선거구별 3~5석의 의석수를 배정 • 지역,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획정안 작성 | 헌법 제16조제4항 선거법1997 제6조제4항 |
| 이스라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함. | 의회기본법 제4조 |
| 이탈리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구별 인구 및 공화국 총인구/의석수(618) 나눗셈의 몫과 나머지 값에 비례해 배분 ※ 상원) 총의석 315석 중 해외선거구 6석을 제외한 309석에 대해 의석 배분 하원) 총의석 630석 중 해외선거구 12석을 제외한 618석에 대해 의석 배분 | 헌법 제56,57조 상원선거법 제1조 하원선거법 제1조제2항 |
| 라트비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일로부터 4개월 전 제공된 인구등록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거구별 인구통계에 비례해 계산식에 따라 의석을 배분함. | 선거법 제8조 |
| 리투아니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을 71개 선거구로 나누고 선거구 당 인구와 이전 선거 선거구 의석수, 행정구역을 고려하여 획정 • 평균인구수 편차 $\pm 10\%$(0.9~1.1)를 초과하지 못함. • 한 선거구당 5,000명 이상 초과하지 못함. | 선거법 제9조 |
| 룩셈부르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구별 인구 규모에 따라 선거구당 의석수를 배분하여 법에 고정 | 헌법 제51조 선거법 제117조 |
| 멕시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통계에 따라 인구 100,000명~200,000명 당 1석을 배분 ※ 하원) 소선거구 300개, 비례대표 선거구 5개 / 상원) 권역별 비례대표 선거구 128개 | 헌법 제52조 연방선거법 제14조 |
| 노르웨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개 선거구가 선거법에 고정되어 있고 선거일 2년 전을 기준으로 선거구별 인구수에 선거구 면적(km²)$\times 1.8$의 값을 더하고, 생-라게(Saint-Large Method) 방식으로 나눈 그 몫을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 ※ 의석 배정 기준: [선거구 면적(km²)$\times 1.8$]+[선거 2년 전 인구] 분배값 산출 | 선거법 제11-1,2,11-3조 |
| 네덜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관리 목적의 선거구가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 선거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단일 선거구 | 선거법 제E1조 |
| 뉴질랜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에 비례해 선거구를 구분하며 기존 행정구역과, 문화,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함. (2019년 현재 64개의 일반 선거구, 7개의 마오리 선거구로 구성) • 마오리족은 일반 선거구와 마오리 선거구 중 선택이 가능함. 인구통계조사 이후 2개월의 선택 기간 이후에 마오리 선거구의 인구를 확정 • 평균인구수 편차 $\pm 5\%$(1.1:1)을 초과하지 못함. | 선거법 제35,36,76,77,269조 |

| 국가명 | 구분 | 획정기준 및 인구편차 | 근거규정 |
|-------|----|---|------------------------|
| 폴란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구당 7명 이상의 의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구수에 비례해 획정 •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함. | 선거법 제201조 |
| 포르투갈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구역을 선거구로 고정하고 선거구 인구 비례에 따라 의석수를 조정 | 선거법 제12조 |
| 슬로바키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법에 따라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함 • 인구 1,000명 당 1개 투표권역 설정 | 선거법 제8조제2항 선거법 제44조 |
| 슬로베니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누고 선거구 당 11석을 배정 • 각 권역을 11개의 선거구로 나누어지며 1개 선거구에서 의원 1명을 선출 • 인구와 지리적, 문화적, 기타 특징 등을 고려 • 선거구는 의석당 선거권자 비율은 거의 동일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름. • 이탈리아, 헝가리 소수자 집중거주지역을 위한 특별선거구 배정 | 선거법 제20조 |
| 터 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법에 따라 하나의 행정구역이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함 • 각 행정구역 당 1명의 의원정수를 배치하고 인구수에 비례하여 추가 의원정수 할당 • 의원정수 18명까지 1개 선거구로 설정하며 의원정수 19명 이상 35명 이하까지는 2개, 36명 이상부터 3개 선거구로 분할 • 추가 의원정수 할당을 위한 인구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선거구는 다른 선거구의 잔여 인구수를 합산하여 계산 | 선거기본법 제4조 의회선거법 제4조 |

22) 칠레 선거위원회

<https://www.servel.cl/votaciones-y-escrutinios/> (검색일 2019.8.12.)

제4장 선거일과 선거인명부

<표 4-1> OECD국가의 의회 선거소집

| 구분 국가명 | 선거일 | 선거간격 | 선거공고 | 근거규정 |
|-----------|------------------------------|-------|---|---------------------------------------|
| 영 국 | 5월 첫째 목요일 | 최대 5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가 해산되면 국왕이 선거소집령 발부(실질적으로 수상이 결정) • 의회해산 후 25일 이후 실시 | 고정임기법 제1,2조 1983년 국민대표법 제23조, 부칙 1 |
| 미 국 | 11월 첫 번째 화요일 | 2년 | 각 주의회에서 결정 | 연방법 제2편 제1장 제7조 |
| 프랑스 | 선거소집령이 발부되는 날로부터 일곱 번째 일요일 | 최대 5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만료일 전 60일 이내 • 의회해산 후 20일 이후 40일 이내 실시 | 헌법 제12조 선거법 제122,173조 |
| 독 일 | 일요일 또는 법정공휴일 | 최대 4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만료의 경우 임기가 개시된 때부터 46개월 이후 48개월 이내 • 의회해산 후 60일 이내 실시 | 기본법 제39조 선거법 제16조 |
| 일 본 | 선거일은 늦어도 12일 전에 공시 | 최대 4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내 • 의회해산 후 40일 이내 실시 | 공직선거법 제31조 |
| 스페인 | 선거소집령 발부 후 54일이 되는 날 | 최대 4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만료 25일 전에 국왕령으로 선거소집령 발부 • 의회해산 시 선거소집령 발부 후 54일째가 선거일이 됨. | 선거법 제167조 |
| 스웨덴 | 9월 둘째 주 일요일 | 최대 4년 | • 의회해산 시 정부가 선거일 결정 | 선거법 제1절 제3조 |
| 스위스 | 10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일요일 | 최대 4년 | • 연방의회가 선거일 결정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10조 |
| 캐나다 | 10월 세 번째 월요일 | 최대 4년 | • 선거소집령 발부 후 4일 이내에 선거일 공시 | 선거법 제57조 |
| 호 주 |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23일 이후 31일 이내 토요일 | 최대 3년 | • 임기만료 또는 의회 해산 후 10일 이내에 선거소집령 발부 | 연방선거법 제151,157조 |
| 오스트리아 | 일요일 또는 공휴일 | 최대 5년 | • 의회해산시 100일 이내 정부가 관보에 선거일 공표 | 헌법 제27,29조 의회선거법 제1조제2항 |
| 벨기에 | 임기만료 40일 이내 첫 번째 일요일 | 최대 5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해산시 2달 이내 • 내무부는 선거일 2주전까지 관보에 선거일 공표 | 헌법 제46,65조 선거법 제105조 |

| 구분 국가명 | 선거일 | 선거간격 | 선거공고 | 근거규정 |
|-----------|--|-------|--|---------------------------------|
| 체코 | 금요일, 토요일 | 최대 4년 | • 선거일로부터 90일 이전에 대통령이 선거 소집 | 선거법 제1조 |
| 칠레 | 11월 세 번째 일요일 | 최대 4년 | - | 헌법 제26,47조 선거법 제183조 |
| 덴마크 | - | 최대 4년 | • 국왕(총리)이 선거소집령 발부 • 선거일 10일 전까지 경제내무부 장관이 별도 공고 | 헌법 제32조제1,2항 선거법 제21조 |
| 에스토니아 | 3월 첫 번째 일요일 | 최대 4년 | • 의회해산시 대통령의 선거 소집 최소 20일 이후 최대 4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함 | 헌법 제60,78조 |
| 핀란드 | 4월 세 번째 일요일 | 최대 4년 | • 의회해산시 대통령이 소집령을 발부하며 선거는 소집령 50일 이후 75일 이내 일요일에 실시 되어야 함 | 헌법 제24,26조 선거법 제107조 |
| 그리스 | 일요일 | 최대 4년 | • 의회 해산일로부터 30일 이내 | 선거법 제31,50조 |
| 헝가리 | 4월 또는 5월의 일요일 선거소집일로부터 70~90일 이내 | 최대 4년 | • 대통령은 해산 명령과 동시에 선거일을 확정 | 헌법(STATE) 제2조제3항 선거절차법 제6,8조 |
| 아이슬란드 | 선거주기(electoral term-4년) 이내에 실시할 것을 규정 | 최대 4년 | • 내무부가 선거일 공표 | 헌법 제45,79조 의회선거법 제20조 |
| 아일랜드 | - | 최대 5년 | • 의회 해산 이후 의회 사무처장이 선거 소집령을 발부하며 환경부 장관이 선거 소집령 발부 18일 이후 25일 이내로 선거일을 결정하여 공표 | 선거법(1992) 제96조 |
| 이스라엘 | 2월 셋째 주 화요일 | 최대 4년 | • 의회 해산일로부터 150일 이내 | 의회 기본법 제9,35조 |
| 이탈리아 | 내각 결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공고 | 최대 5년 | • 임기만료일 70일 이내 실시 선거일 45일 전 관보에 공표 | 헌법 제60,61조 하원선거법 제12조 |
| 라트비아 | 10월 첫 번째 토요일 | 최대 4년 | • 중앙선거위원회가 관보에 선거일 공고 | 헌법 제10,11조 선거법 제8조 |
| 리투아니아 | 10월 두 번째 일요일 | 최대 4년 | • 대통령이 임기만료 6개월 전에 • 해산시 3개월 이내에 선거 공표 | 헌법 제55,57,58조 선거법 제6조 |
| 룩셈부르크 | 6월 첫 번째 일요일 | 최대 5년 | • 의회 해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헌법 제74조 선거법 제134조 |
| 멕시코 | 6월 첫 번째 일요일 | 최대 3년 | - | 헌법 제52,56조 연방선거법 제208조 |

| 구분 국가명 | 선거일 | 선거간격 | 선거공고 | 선거규정 |
|-----------|---|-------|---|---------------------------------------|
| 노르웨이 | 9월 중 월요일 | 최대 4년 | • 국왕이 선거일을 월요일로 고정 • 선거위원회가 선거일투표 장소시간을 공표 | 헌법 제54조 선거법 제9-1,9-2조, 제9-3조제3항 |
| 네덜란드 | 후보자등록일 43일 후 후보자 등록일은 1월 18일 에서 24일 사이의 화요일 | 최대 4년 | • 해산시 칙령(Royal decree)으로 선거일 결정 | 헌법 제54조 선거법 제C1,F1,F2조 |
| 뉴질랜드 | 일요일 | 최대 3년 | • 총독은 해산 또는 임기만료 7일 이내에 선거소집령발부 | 헌법(1986) 제17조 선거법 제125,139조 |
| 폴란드 | 임기만료 30일 이내 공휴일 | 최대 4년 | • 의회 임기만료 90일 이전에 대통령이 소집하고 5일 이내에 관보에 게시 | 선거법 제194조 |
| 포르투갈 | 9월 14일에서 10월 14일 사이 | 최대 4년 | • 공화국 대통령이 선거일 60일 이전, 해산의 경우 55일 이전까지 선거일 공표 | 선거법 제19조 |
| 슬로바키아 | 토요일 | 최대 4년 | - | 선거법 제20조 |
| 슬로베니아 | 선거 소집일로부터 60일 이후 90일 이내 | 최대 4년 | • 대통령이 임기만료 135일 이전부터 및 75일 이전까지 선거를 소집 • 해산시 선거는 소집일로부터 40일 이후 | 헌법 제14조 선거법 제12-15조 |
| 터 키 | 10월 두 번째 일요일 | 최대 5년 | - | 헌법 제77조 의회선거법 제5,6조 |

※ 의원내각제는 집권당의 총수가 의원해산을 결정하거나 의회 내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되었을 경우 또는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의회 총선거를 실시하게 됨. 반면, 대통령제는 의원 임기가 끝날 때 의회총선거를 실시함.

<표 4-2> 각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관

| 구분 | 국가명 |
|--|--|
| 중앙정부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 (24) | 안도라, 아르메니아, 불가리아, 콩고공화국, 키프로스, 적도기니,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란, 쿠웨이트, 레바논, 마다가스카르, 미크로네시아연합, 몽골, 모로코, 나우루, 노르웨이, 포르투갈, 세네갈, 세르비아,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시리아, 투발루 |
| 지역정부 (Regional Government) (1) | 인도네시아 |
| 지방정부 (Local Government Authority) (28) | 알제리, 오스트리아, 벨기에, 중국, 코모로, 체코, 덴마크, 프랑스, 가이아나, 가봉,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한국, 라오스,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니우에, 폴란드, 러시아, 슬로바키아, 스위스, 영국, 베트남 |

| | |
|--|---|
| <p>선거관리기관 (Election Management Body) (124)</p> | <p>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아르헨티나, 호주,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리즈, 베냉,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미얀마,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캐나다,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칠레,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도미니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피지, 감비아, 조지아, 가나, 그리스, 그레나다,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인도, 이라크,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케냐, 키리바시, 키르기스스탄,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몰타, 마셜군도, 모리타니, 모리셔스, 멕시코, 몰도바,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팔,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오만, 파키스탄, 팔라우, 팔레스타인,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루마니아, 르완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사모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솔로몬군도,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수단, 수리남, 에스토니아, 스웨덴,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 동티모르, 토고, 통가,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간다,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p> |
| <p>기타 (11)</p> | <p>바레인, 벨라루스, 쿡제도, 쿠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모나코, 산마리노, 스페인, 우즈베키스탄, 미국</p> |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Comparative Data.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VR004> (검색일 2019.5.1.)

<표 4-3> OECD국가의 선거인명부 작성 현황

| 국가명 | 등록 방법 | 작성 형식 | 담당 기관 | 근거규정 |
|-------|----------------------|---------------------------------|--------------------|--------------------------|
| 영 국 | 신청등록제 (개별선거등록제) | 정기등록명부제 (1년마다 작성) | 선거등록관 | 1983년 국민대표법 제9조, 부칙 2 |
| 미 국 | 정기 신청등록제 (대부분의 주) | 영구명부제 (대부분의 주) | 주공공사무소 | 선거인등록법 제20503조 |
| 프랑스 | 신청등록제 | 영구명부제 | 투표구행정위원회 | 선거법 제11,16조 |
| 독 일 | 직권등록제 | 수시명부제 | 케마인데 행정청 | 연방선거법 제17조 |
| 일 본 | 직권등록제 | 영구명부제 (3·6·9·12월 작성) | 시·정·촌 선거관리위원회 | 공직선거법 제19조 |
| 스페인 | 직권등록제 | 영구명부제 (매월 갱신) | 선거인명부관리국 | 선거법 제31~33조 |
| 스웨덴 | 직권등록제 | 수시명부제 (선거일 30일 전 기준으로 작성) | 중앙선거청 | 선거법 제5절 제1조 |
| 스위스 | 직권등록제 | 영구명부제 | 주 행정당국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4조 |
| 캐나다 | 신청등록제 | 수시명부제 | 선거관리청장 | 선거법 제44조 |
| 호 주 | 신청등록제 | 영구명부제 | 선거위원회 | 연방선거법 제90조 |
| 오스트리아 | 직권등록제 | 수시명부제 | 지방자치단체 | 의회선거법 제23,34조 |
| 벨기에 | 직권등록제 | 수시명부제 | 지방자치단체 | 선거법 제10,15조 |
| 체 코 | 직권등록제 | 영구명부제 | 지방자치단체(시 당국) | 선거법 제5,6조 |
| 칠 레 | 직권등록제 | 영구명부제 | 선거위원회 | 선거인등록법 제3,5조 |
| 덴마크 | 직권등록제 | 수시명부제 | 지방자치단체 | 선거법 제18조제1,2항, 제19조 |
| 에스토니아 | 직권등록제 | 수시명부제 | 인구등록관리국 (내무부산하) | 선거법 제22조 |
| 핀란드 | 직권 등록제 | 수시명부제 | 인구등록관리국 (재정부산하) | 선거법 제18조 |
| 그리스 | 직권등록제 | 정기등록명부제 |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 선거법 제9,10조 |
| 헝가리 | 직권등록제 | 영구명부제 | 선거위원회 | 선거절차법 제76조제2항, 제82조 |
| 아이슬란드 | 직권등록제 | 수시명부제 | 지방자치단체 | 의회선거법 제22조 |
| 아일랜드 | 신청등록제 ²³⁾ | 정기등록명부제 (1년마다 작성) | 지방자치단체 | 선거법(1992) 제8,13조 |

| 국가명 | 등록 방법 | 작성 형식 | 담당 기관 | 근거규정 |
|-------|-------|----------------------|----------------------|---------------------|
| 이스라엘 | 신청등록제 | 수시명부제 | 내무부 | 선거법 제26조제A,D항 |
| 이탈리아 | 직권등록제 | 영구명부제 | 지방자치단체 | 선거인등록법 제3조 |
| 라트비아 | 직권등록제 | 수시명부제 | 중앙선거위원회 | 선거인등록법 제3,7,8,9조 |
| 리투아니아 | 직권등록제 | 수시명부제 | 중앙선거위원회 | 선거법 제26조 |
| 룩셈부르크 | 직권등록제 | 영구명부제 | 지방자치단체 | 선거법 제7,11,14조 |
| 멕시코 | 직권등록제 | 영구명부제 (1년마다 작성) | 연방선거위원회 | 연방선거법 제132,133,138조 |
| 노르웨이 | 직권등록제 | 수시명부제 | 내무부 | 선거법 제2-3조 |
| 네덜란드 | 직권등록제 | 수시명부제 | 지방자치단체 | 선거법 제D1,D2조 |
| 뉴질랜드 | 신청등록제 | 정기등록명부제 (1년마다 갱신) | 선거등록관 | 선거법 제22,82,89D조 |
| 폴란드 | 직권등록제 | 영구명부제 | 선거위원회 | 선거법 제18,19조 |
| 포르투갈 | 직권등록제 | 영구명부제 | 내무부 관리국 | 선거인등록법 제1,11조 |
| 슬로바키아 | 직권등록제 | 영구명부제 | 지방자치단체 | 선거법 제9,11조 |
| 슬로베니아 | 직권등록제 | 영구명부제 | 지방자치단체와 내무부 | 선거인등록법 제4,22조 |
| 터 키 | 직권등록제 | 정기등록명부제 (1년마다 작성) | 최고선거위원회 선거권자등록사무국 | 선거기본법 제28,33조 |

23) 아일랜드 시민정보포털 ‘선거권자 등록’

https://www.citizensinformation.ie/en/government_in_ireland/elections_and_referenda/voting/registering_to_vote.html#182302 (검색일 2019.10.24.)

제5장 후보자

<표 5-1> 각국의 무소속 후보자 출마가능 선거

| 구분 | 국가명 |
|----------------------|--|
| 출마 불가 | 앙골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캄보디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기니, 가이아나, 이스라엘, 요르단, 모나코,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리남, 스웨덴, 탄자니아,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
| 대통령선거 | 베냉,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카보베르데, 차드, 크로아티아, 지부티, 기니비사우, 아이슬란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뉴칼레도니아, 팔레스타인, 파나마,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동티모르, 트리니다드토바고 |
| 하원의원선거 | 앤티가바부다, 호주, 바하마, 바레인, 바베이도스, 벨기에, 벨리즈, 보츠와나, 미얀마, 캐나다, 쿡제도, 쿠바, 덴마크,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피지, 독일, 그린란드, 그레나다, 이라크,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쿠웨이트, 라오스, 레소토,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타, 마셜제도, 모리셔스, 모로코, 네덜란드, 뉴칼레도니아, 뉴질랜드, 니우에, 오만,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사모아, 산마리노, 세네갈, 시에라리온, 솔로몬군도, 스페인, 에스와티니, 타지키스탄, 통가, 트리니다드토바고, 아랍에미리트, 영국, 베트남, 잠비아 |
| 상원의원선거 | 호주, 부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카자흐스탄, 네덜란드, 뉴칼레도니아, 스페인, 태국 |
| 대통령선거, 의원선거 모두 가능 |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칠레, 콜롬비아, 코모로,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키프로스, 체코, 코트디부아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핀란드, 프랑스, 기아나, 가봉, 감비아, 조지아, 가나, 그리스, 과들루프,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인도, 이란, 아일랜드, 케냐, 한국, 레바논, 라이베리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마다가스카르, 몰디브, 말리, 모리타니,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몰도바, 몽골, 몬테네그로, 나우루, 네팔, 니제르, 파키스탄, 팔라우,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푸에르토리코,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레위니옹,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소말리아, 스리랑카, 수단, 스위스, 토고, 튀니지,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간다, 우크라이나, 미국,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예멘, 짐바브웨 |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Comparative Data.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PC008> (검색일 2019.5.3.)

<표 5-2> OECD국가의 후보자 등록 신청방법

| 국가명 | 후보자 등록 신청방법 | 근거규정 |
|-------|---|------------------|
| 영 국 | • 각 후보자는 본인 또는 제안자(Proposer)나 찬성자(Seconder)의 지명을 받아 지명서를 선거관리관에게 제출 | 1983 국민대표법 부칙1 |
| 미 국 | • 입후보하려는 자는 입후보선언서(declaration of candidacy)를 주무장관(secretary of state)등의 주 담당기관에 제출 | 주 선거법 |
| 프랑스 | • 후보자는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및 직업을 기재하고 서명한 등록신청서를 제출 | 선거법 제154,298조 |
| 독 일 | • 지역구의원) 후보자의 이름이 기재된 선거구후보자추천서에는 최소한 선거구내의 200명 이상의 선거권자 자필서명을 받아 선거구선거위원회에 제출 • 비례대표의원) 정당의 명칭 및 순위대로 후보자의 이름을 기재한 주명부를 주의 선거권자 총수 1,000분의 1 이상(2,000인 이하의 범위 내) 서명을 받아 주선거위원회에 제출 | 연방선거법 제19,20,27조 |
| 일 본 | • 지역구의원) 정당(또는 정치단체)의 강령·당규·규약, 후보자 동의서,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없다는 해당 후보자의 선서서 등의 문서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 비례대표의원) 정당의 명칭, 본부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과 중의원명부등재자의 이름·본적·주소·생년월일 및 직업을 기재하고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문서와 정당 등의 강령·당규·규약 등을 기재한 문서, 후보자 동의서, 피선거권에 결격이 없다는 후보자의 선서서 등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 공직선거법 제86조,86조의2 |
| 스페인 | • 정당 및 정당연합의 명칭, 약칭, 심벌 및 후보자명부에 포함된 후보자 이름을 명확히 표시한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후보자승낙 선서서, 피선거권에 결격사유가 없다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거위원회에 제출 | 선거법 제45,46조 |
| 스웨덴 | • 정당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별로 각 후보자가 입후보를 승인한 선언이 포함된 후보자 신고서를 중앙선거청 또는 광역자치구행정청에 제출 | 선거법 제2장제9조 |
| 스위스 | • 후보자의 이름, 성별, 출생일, 직업, 집 주소 및 출생지를 기재하고, 각 후보자가 서면으로 추천을 수락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후보자명부를 주 당국에 제출 | 선거법 제21,22조 |
| 캐나다 | •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 1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의 이름·주소·직업 및 소속정당명, 추천자의 서명, 후보자의 지명승낙 서명 등이 포함된 후보자등록신청서를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관에게 제출 | 선거법 제66조 |
| 호 주 | • 후보자는 이름, 주소 및 직업 등을 기재하고 등록된 정당의 추천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는 동의, 호주 시민인지 여부에 관한 진술 등이 포함된 후보자추천서를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관에게 제출 | 연방선거법 제166,170조 |
| 오스트리아 | • 정당은 정당명, 약칭, 후보자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의원 3명 이상 혹은 지역별로 규정된 수 이상의 선거권자 지지서명이 있는 후보자명부를 후보자 동의서와 함께 선거일 58일 전까지 지역선거관리기관에 제출 | 하원선거법 제42,43조 |
| 벨기에 | •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 최소 200명 이상의 추천(선거구의 인구수가 100만 명 이상인 경우 500명, 인구수가 50만에서 100만 명 사이인 경우 400명, 그 외 200명, 또는 최소 3명의 사임하는 의원의 서명)을 받고, 투표용지에 표기 할 정당의 약칭, 상징 및 후보자명부에 포함된 후보자 이름, 생년월일, 성별, 직업, 거주지 주소를 명확히 표시한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후보자의 동의서를 중앙선거위원회에 제출 | 선거법 제116조 |
| 체 코 | • 하원) 각 정당 또는 연합은 선거일로부터 최소 66일 이전에 위임대표자를 통해 후보자명부를 선거구 관할 선거당국에 제출 | 선거법 제31,32조 |

| 국가명 | 후보자 등록 신청방법 | 근거규정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명부는 후보자별 선거구, 소속 정당 또는 연합의 명칭과 구성원, 이름 성별, 나이, 직위, 거주지 정보를 기재 후보자등록 동의서에는 후보자의 성별, 생년월일, 거주지 정보 등을 기재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위) 각 정당 또는 연합은 선거일로부터 최소 66일 이전에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선거구 관할 선거당국에 제출. 후보자등록신청서에는 후보자의 이름, 성별, 연령, 주소, 직업, 선거구, 소속 정당 또는 연합 명칭을 기재 후보자등록신청서에는 출마 선거구 의원 정수를 표기하며, 소속 정당 또는 연합 위임 대표의 서명을 기재. 체코 시민권 증빙서류, 해당 후보자가 서명한 후보자 성명서를 함께 제출 | 선거법 제60,61조 |
| 칠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정당은 정당 간 electoral pact를 구성할 수 있으며 무소속 후보자를 포함시킬 수 있음. electoral pact에는 해당 선거구에 적법하게 출마할 자격이 있는 후보자만 등록 가능 후보자성명서는 상하원 관계없이 정당 대표 또는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거나 선거권자 5명의 동의를 받고, 후보자 이름, 국적, ID번호를 명기하여 당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선거위원회에 선거일로부터 90일 24시간 전까지 자산신고서와 함께 제출 | 선거법 제3,4,7,10조 |
| 덴마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 총선에서 의석을 얻은 정당은 총선에 참가할 자격이 있음. 선거에 처음 참가하는 정당은 선거일 15일 전 정오까지 경제내무부에 등록 신청 등록신청서 제출 시 지난 선거 총 유효투표수 1/175에 해당하는 수의 선거권자 서명을 동봉 정당후보자는 정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후보자등록은 해당 선거구 선거위원장에게 경제내무부 양식으로 후보자 본인 이름, 주민등록번호(CRS), 직업, 주소를 제출 후보자는 1개 당 소속으로 1개 선거구에만 출마할 수 있음. | 선거법 제12,33,33a조 |
| 에스토니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은 이름, 주민번호, 소속정당, 직업과 지위, 연락처 등이 포함된 후보자 지원서, 담보지불증명 사본, 후보자명부(전국구, 선거구별)를 선거일 45일 전까지 선거위원회에 제출 | 선거법 제26,28,30조 |
| 핀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름, 직업, 직위, 주민번호가 기재된 후보자명부와 후보자 추천 및 의원으로서 책임에 대한 동의서를 대표자가 확인하고 서명하여 선거일 40일 전까지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제출 | 선거법 제120~122조 |
| 그리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는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 선거권자 12명 이상의 추천과 소속 정당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함 후보자등록신청서에는 본인과 아버지의 이름, 직업, 소속 정당 주소를 기재 후보자추천 또는 후보자추천 수용 시 추천인 또는 수용인의 선언문을 첨부 추천서 제출 시 세무서에 €146.74를 납부한 영수증 첨부(금액은 내무부 및 유관 당국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음)²⁴⁾ | 선거법 제32조 |
| 헝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구의원 선거는 후보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와 후보지명과 겸직금지에 대한 동의 내용을 기재하여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500명 이상의 선거권자 추천 서명(추천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와 자필서명)을 받아 선거위원회에 제출 비례대표의원 선거는 후보자들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후보지명과 겸직금지에 대한 후보자의 동의가 포함된 후보자명부를 선거위원회에 제출 | 의회선거법 제6조 선거절차법 제120,129조 |
| 아이슬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는 이름, 개인식별번호, 직업, 거주지 주소를 명확히 표시하고 각 후보자가 서면으로 추천을 수락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후보자명부를 선거위원회에 제출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의 이름, 개인식별번호, 거주지 주소가 명확히 표시된 후보자 지지선언문을 선거위원회에 제출 | 의회선거법 제7장 제30,32조 |

| 국가명 | 후보자 등록 신청방법 | 근거규정 |
|-------|--|------------------------------|
| 아일랜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후보자는 본인 또는 제안자의 지명을 받아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음 ※ 제안자(Prosper): 지명하고자 하는 후보자 선거구의 선거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 후보자지명서에는 후보자의 이름, 주소, 직업, 성별, 소속 정당명을 기재하여 해당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제출 | 선거법 제46조 |
| 이스라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명부 등록자 수는 12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후보자명부에는 후보자의 성, 명, 주민등록ID번호, 주소를 기재 • 2개 이상 정당 연립 시 후보자 별 소속 정당명 기재 • 후보자명부는 정당 대표자 또는 정당법 제19B조에 따른 대리인의 이름을 날인하며 2개 이상 정당 연립 시 각 정당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을 날인 • 각 정당은 후보자명단을 선거일 47일 22:00시까지 중앙선거위원회에 대표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 | 의회기본법 제5A,6조 선거법 제57조 |
| 이탈리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에 참여하려는 정당 또는 정치단체는 후보자 식별표지를 내무부에 제출 ※ 필요한 선거권자 추천 수는 하원선거법 제18조의2와 동일(해당 선거구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선거권자 1,500명 이상 2,000명 이하의 서명) • 후보자명부 제출 시 대표 2명, 대리후보 2명의 이름을 병기하여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서기국에 제출 | 상원선거법 제8,9조 하원선거법 제18조의2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에 참여하려는 정당 또는 정치단체는 후보자 식별표지를 내무부에 제출 • 후보자명부 제출 시 해당 선거구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선거권자 1,500명 이상 2,000명 이하의 서명을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만료일 120일 전 하원이 해산하는 경우에 추천 선거권자 수는 위 숫자의 1/2로 함. • 입후보 등록은 시장, 공증인 또는 1990년 3월 21일 법 제53호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중 하나로부터 서명 및 증명된 선언문에 의해 승인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거주자의 서명 확인은 해당 국가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요청 • 후보자명부 제출 시 대표 2명, 대리후보 2명의 이름을 기재하여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서기국에 제출 | 하원선거법 제14조 제18조의2 제20조 |
| 라트비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명부는 선거일전 1년 전에 창당되었고 당원 500명 이상인 적법한 정당에 의해서만 제출될 수 있음. • 각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은 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하는 부서에서 임명한 자를 통해 중앙선거위원회 절차에 따라 제출 • 후보자명부는 선거일 8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중앙선거위원회에 제출 • 후보자명부 등록자 수는 선거구 할당 의원정수 +3을 초과할 수 없음. • 각 정당 또는 연합은 후보자명부와 함께 본인이 서명한 후보자등록 동의서, 후보자 성명서, 공용어 언어구사 증빙서, 국가의무 이행완료 확인서,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ID번호, 해외 시민권, 거주지, 직위/직업 등 정보, 학력증명서, 구소련 또는 구 라트비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나 해외 정보 또는 방첩기관과 직간접적으로 접촉 또는 협력했거나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신원조회 결과 서류 등을 제출 | 선거법 제9,10,11조 |
| 리투아니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등록신청서, 선거대리인 허가서, 해당 선거구에서 지명된 후보자 명단, 당선된 경우 국회의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기타활동에 대한 해임 동의서, 세무조사관의 승인을 득한 소득세 신고서와 주 세무조사관에게 제출된 재산 신고서의 기본 자료, 중앙선거위원회의 양식에 따른 뇌물공여 금지 서약서, 기탁금을 지불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기탁금 환급 계좌, 선거운동의 자금 조달에 관한 보고서 사본(후보자가 지난 선거에 출마했을 경우), 정당에서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당월 1일까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계좌를 중앙선거위원회에 제출 | 선거법 제38조 |
| 룩셈부르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추천은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 100명, 해당 선거구의 현 의원이나 다른 선거구 | 선거법 |

| 국가명 | 후보자 등록 신청방법 | 근거규정 |
|------|---|-------------------|
| | <p>의원 3명에 의해 이루어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구별 후보자명부는 각 정당 또는 후보자단체가 작성하며 후보자는 성명서 서명을 통해 선거구 후보자 자격을 획득함. • 본인 또는 대리 제출자의 이름, 직업, 거주지 정보가 포함된 본인이 서명한 출마성명서를 선거일로부터 최소 60일 전에 각 선거구의 지정기관에 제출 • 후보자와 제출자의 이름은 1개 선거구에만 등록될 수 있음. • 후보자명부 등록자 수는 선거구 의원정수를 초과할 수 없음. • 각 선거구 선거위원장은 선거일로부터 최소 65일 전 증인입회하 후보자명부 제출을 위한 일자, 시간, 장소 등을 공표하고, 접수 | 제135,136조 |
| 멕시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연도 2월 15일부터 22일까지 7일 간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구 하원의원 후보자: 선거구위원회 - 비례대표 하원의원 후보자: 연방선거위원회 - 상원의원 후보자: 해당 지역위원회 - 비례대표 상원의원 후보자: 연방선거위원회 • 후보자는 정당 또는 정치단체명, 부모의 이름, 출생지, 출생년월, 거주지 주소, 직업, 선거증 번호, 입후보 대상 직위명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 • 재출마 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서 제출 시 입후보 대상 직위 재임 기간과 헌법에서 명시한 재임횟수를 표기 • 후보자등록신청서 제출 시 입후보수락 선언문, 출생증명서 등본 및 선거증 등본을 첨부 • 출마 후보자 소속 정당은 서면을 통해 해당 후보자가 정당 정관에 따라 선출되었음을 밝혀야 함. | 연방선거법 제237,238조 |
| 노르웨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가 있는 해 3월 31일 오후 12시까지 후보자명부를 해당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제출 • 같은 당 또는 그룹은 각 선거구마다 하나의 후보자명부만 올릴 수 있음. • 후보자명부에는 일정 수의 사람들이 서명을 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선거에서 한 선거구에서 500표 이상을 득표하거나 전국에서 5,000표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후보자명부: 해당 선거구 지구당 집행위원회 위원 2명 이상의 서명 - 그 외: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 500명 • 후보자명부와 함께 후보자의 생년월일, 서명인의 생년월일과 거주지 주소, 후보자의 국내거주 또는 출마 선거구 선거인명부 등록여부에 대한 정보 | 선거법 제6-1,6-3,6-4조 |
| 네덜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은 후보자명부, 선거권자의 추천서명(이전 선거에서 의석이 없는 정당의 경우, 의석 39석 이상인 선거구의 경우 최소 30명, 19~38석인 경우 최소 20명, 19석 미만인 경우 최소 10명), 후보자 동의서, 기탁금 지급증명, 후보자 신분증명서를 선거위원회에 제출 | 선거법 제H1,H3,H4,I2조 |
| 뉴질랜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이 일괄로 후보자를 등록(bulk nomination)하는 경우 정당대표는 후보자의 이름, 추천에 대한 후보자 동의, 선거권자임을 증명하는 법적진술, 대표의 확인을 포함한 후보자 등록신청서류를 선거위원회에 제출 • 개별 등록(individual nomination)은 지역구에 등록된 선거권자 2명 이상의 추천서명, 후보자의 이름과 동의, 정당의 등록로고를 첨부한 후보자등록신청서류를 선거위원회에 제출 | 선거법 제143,146D조 |
| 폴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이나 연합은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 5,000명 이상의 추천 서명과 이름, 직업, 거주지, 국적, 주민번호, 후보자의 동의, 적격한 후보자임을 확인하는 문구를 기재한 후보자명부를 선거일 40일 전까지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제출 | 선거법 제208~212조 |
| 포르투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와 후보자명부 대표의 신원정보(이름, 나이, 소속, 직업, 시민증번호, | 선거법 |

| 국가명 | 후보자 등록 신청방법 | 근거규정 |
|-------|---|---------------|
| | 주거지 등)가 포함된 후보자명부와 등록정당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증명서 사본, 후보자·대표의 선거인등록 증명서, 후보자 신고서(후보자가 부적격사항이 없고 한 선거구에만 지원하였으며, 후보자 추천을 받아들이고, 대표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를 선거일 41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 | 제23,24조 |
| 슬로바키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 또는 연합은 선거일로부터 최소 90일 이전에 정당명 또는 정당연합체 명칭, 후보자 성명, 후보자명부 제출 시점의 직위, 생년월일, 거주지, 모든 후보자의 명부상 기호 순번, 제출자의 이름, 직위, 서명, 정당 또는 연합 직인이 날인된 후보자명부를 후보자 본인이 서명한 후보자성명서 및 기탁금 납입확인서 등을 동봉하여 서면 및 전자우편으로 국가선거위원회에 제출 후보자명부 등록자 수는 15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선거법 제50조 |
| 슬로베니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의 동의서, 선거구명, 후보자 정보(이름, 생년월일, 직업, 주소, 대리인의 주소)가 기재된 후보자등록신청서와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최소 100명의 추천이 필요하며, 해당 선거구에서 지명된 후보자의 명단 그리고 그 후보자 명단이 결정된 회의록, 후보자 결정과 관련된 정당의 규칙을 해당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제출 | 선거법 제44,51조 |
| 터 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 간 합의를 통한 합동후보자명부 제출은 허용되지 않음. 당원이 아닌 자도 정당의 서면인가가 있을 경우 정당 소속으로 출마 가능 1개 이상의 정당 소속으로 1개 이상의 선거구에 출마할 수 없음. 정당은 각 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자명부를 최고선거위원회에 제출 | 의회선거법 제16,20조 |

24) 그리스 내무부 홈페이지. 후보자등록

<https://www.ypes.gr/en/elections/national-elections/parliamentary-elections/information-for-the-candidates> (검색일 2019.9.18.)

<표 5-3> OECD국가의 무소속 후보자 등록방법

| 국가명 | 등록방법 | 근거규정 |
|-------|---|--------------------------|
| 영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의 후보자 등록이나 무소속 후보자 등록을 구분하고 있지 않음. 투표용지에도 정당명칭이 표시되지 않음. | 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및 부록 서식 |
| 미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주에서 무소속입후보가 가능하나 주에 따라 추천인의 수가 다름.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연방하원 및 주 상·하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 하는 자는 이전 총선거 유효투표총수의 1% 또는 500명 중 적은 수(최고 1,000명)의 선거권자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캘리포니아 주 선거법 제8400조 |
| 프랑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등록에는 입후보등록신청서의 제출외에 정당의 추천이나 무소속 후보자를 구분하고 있지 않음. 상원과 하원은 서명, 이름, 성별, 날짜, 출생지, 거주지, 직업을 표기한 선거 출마 신청서만 있으면 됨. | 선거법 제154조 |
| 독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하원이나 주의회에 5명 이상의 의원을 보유하지 못한 정당이나 무소속으로 입후보하는 자는 200명 이상의 선거권자의 자필서명을 얻어야 함. | 연방선거법 제20조 |
| 일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선거권자의 추천으로 무소속으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음. | 공직선거법 제86조 |
| 스페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의 최소 1% 서명 필요 | 선거법 제169조제1항 |
| 스위스 | - | - |
| 스웨덴 | - | - |
| 캐나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소속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의 등록 요건이 동일함. 모든 후보자는 선거권자 100명(일부 주는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선거법 제66조 |
| 호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의 1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선거법 제166조제1항 |
| 오스트리아 | - | - |
| 벨기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구의 인구수가 100만 명 이상인 경우 500명, 인구수가 50만에서 100만 명 사이인 경우 400명, 그 외의 경우 최소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또는 최소 3명의 사임하는 의원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선거법 제116조 |
| 체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하원 모두 정당추천 후보자와 등록 요건이 동일하나 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출마 선거구 선거권자 1,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첨부(선거권자의 이름, 생일, 거주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유효하지 않음) | 선거법 제31,32,60,61조 |
| 칠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하원 모두 정당추천 후보자와 등록 요건이 동일하나 일반 선거권자 공증인이 서명한 무소속 후보자의 후원인 명부를 첨부해야 함. ※ 일반선거권자 공증인은 법률상 선거권자로서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정당과의 법적 관계가 없음을 선언하고 상원 또는 하원 선거구 선거인명부에 주소지가 등록된 자여야 함. • 최소추천인 수를 선거위원회 위원장이 별도 지정하는 마감일자로부터 7개월 전에 | 선거법 제3,11,13,14조 |

| 국가명 | 등록방법 | 근거규정 |
|-------|---|--------------------|
| | 관보에 게재 ※ 상하원의 지난 총선 선거구 선거권자 수의 0.5% 이상의 서명 | |
| 덴마크 | • 무소속 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에서 150명 이상 200명 이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함. | 선거법 제32조 |
| 에스토니아 | • 후보자등록신청서, 담보지불증명서 사본, 후보자지원서를 선거위원회에 제출 | 선거법 제27조, 제30조제4항 |
| 핀란드 | • 선거권자 100명 이상이 선거구 연합을 설립하여 정당에 등록되지 않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음. • 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이름, 직업과 직위, 거주지역과 회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선거권자임을 확인하는 서명, 대표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명시된 문서를 작성해야 함. • 후보자 등록절차는 정당추천 후보자와 동일하나 문서를 함께 제출 | 선거법 제119,124조 |
| 그리스 | • 정당소속 후보자와 동일 | 선거법 제34조 |
| 헝가리 | • 지역구의원 선거에만 참여 가능하며 정당추천 후보자와 동일하게 최소 500명 이상의 선거권자의 추천서명을 선거위원회에 제출 | 의회선거법 제5,6조 |
| 아이슬란드 | • 의회선거에서는 무소속후보자 출마 불가 ※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권자 1,500명 이상 3,0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의회선거법 제32조, 헌법 제5조 |
| 아일랜드 | • 각 후보자는 본인 또는 제안자의 지명을 받아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음. ※ 제안자(Prosper): 지명하고자 하는 후보자 선거구의 선거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 후보자지명서에는 후보자의 성명, 주소, 직업, 성별을 기재 • 소속 정당이 없을 경우 해당 선거구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선거인 30명의 동의를 받아 지명서를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 위원에게 제출 | 선거법 제46조 |
| 이스라엘 | • 무소속후보자 출마 불가 | 기본법(의회) 제5A조 |
| 이탈리아 | • 무소속후보자 출마 불가 | - |
| 라트비아 | • 무소속후보자 출마 불가 | - |
| 리투아니아 | • 무소속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의 선거권자 1,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선거법 제37조 |
| 룩셈부르크 | •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단독 후보자명부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²⁵⁾ | 선거법 제135조 |
| 멕시코 | • 정당소속 후보자와 동일 | 연방선거법 제232조 |
| 노르웨이 | • 무소속후보자 출마 불가 | - |
| 네덜란드 | • 정당후보자와 동일하게 후보자명부, 선거권자 추천서명(의석 39석 이상인 선거구의 경우 최소 30명, 19~38석인 경우 최소 20명, 19석 미만인 경우 최소 10명), 후보자 본인동의서를 선거위원회에 제출 | 선거법 제H1,H3,H4조 |
| 뉴질랜드 | • 지역구의원 선거에만 참여 가능하며 해당 선거구의 선거권자 2명 이상의 추천서명과 후보자의 동의, 후보자 이름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류를 제출 | 선거법 제144조 |
| 폴란드 | • 무소속 후보자는 정당, 연합이 작성한 후보자명부에 포함될 수 있음. • 선거권자들이 모인 단체를 통해 등록 가능 | 헌법 제100조제1항 |

| 국가명 | 등록방법 | 근거규정 |
|-------|---|------------------------|
| | ※ 선거권자 단체는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 1,000명 이상의 추천서명으로 후보자추천위원회를 설립 가능 | 선거법 제204조제6항 제212조제3항 |
| 포르투갈 | • (단독 혹은 연합) 정당의 후보자명부에 무소속 후보자를 포함시켜 작성 가능하므로 무소속 후보자도 선거참여 가능 | 선거법 제21조제1항 |
| 슬로바키아 | • 무소속 후보자 출마 불가 | 선거법 제50조 |
| 슬로베니아 | •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는 선거권자 최소 100명의 추천을 받아야 함. | 헌법 제80,96조 선거법 제44조 |
| 터 키 | • 무소속 후보자는 1개 이상의 선거구에 출마할 수 없음. •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신청서와 출마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 • 터키 재무부 산하부서 최고위급 공무원 월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탁금으로 납부 • 무소속 후보자가 정당과 서면으로 동의했을 시 해당 정당 선거구 후보자명부에 등록할 수 있음. | 의회선거법 제16,21조 |

25) Independent candidates are considered as forming their own list.

<https://guichet.public.lu/en/citoyens/citoyennete/elections/elections-legislatives/candidat-election-legislatives.html>
(검색일 2019.9.18)

<표 5-4> OECD국가의 공무원 입후보 및 사직기한

| 국가명 | 공무원 입후보 및 사직기한 | 근거규정 |
|-------|--|------------------------------|
| 영 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공직자, 판사, 외국대사, 정규군인, 경찰, 공기업, 잉글랜드 은행장 등 | 하원의원 부자격법 |
| 미 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직자의 경우 입후보 10일 전 사직해야 함. | 플로리다 주 선거법 제99.012조 |
| 프랑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지사 및 도지사(Préfet)는 재직 중 및 재직 후 3년간 직무를 수행한 지역과 전부 또는 일부가 겹치는 모든 선거구에서는 하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음. 부지사(sous-préfet), 도사무국장(secrétaires généraux de prefecture), 각급 판사 및 지역사무소장, 군인·경찰 공무원, 대학총장, 의료기관장 등의 지역 행정기관장 등은 재직 중이거나 재직 후 1년간 근무한 도내의 모든 선거구내에서는 하원의 피선거권이 없음. | 선거법 제132조 |
| 독 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고용원, 직업군인, 일시적 지원병, 법관의 피선거권은 법률로 제한할 수 있음. 연방 주의 각료직, 연방회계청의 직원, 법관, 상원의원은 하원의원 겸직이 금지 | 기본법 제137조제1항 |
| 일 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 또는 특정독립행정법인, 특정지방독립행정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재직 중 공직후보자가 될 수 없음. 내각총리대신 및 기타 국무대신, 내각관방부장관, 내각총리대신 보좌관, 부대신(국무대신 직을 가지고 그 장을 맡을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는 각 청의 부장관을 포함) 및 대신정부관은 공무원 입후보제한의 예외로 규정하여 재직 중 공직선거 입후보 가능 ※ 입후보제한직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입후보하는 경우 등록신청은 수리되지만 입후보신청일과 동시에 해당 공무원직을 사임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직을 상실하게 됨(공직선거법 제90조). | 공직선거법 제89조 |
| 스페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 상원의원, 연방 하원의원, 연방평의회 구성원은 연방법원의 법관직을 겸직할 수 없음 | 연방헌법 제144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국사원장, 감사원장 및 헌법 제131조제2항에 명시된 위원회 위원장 등은 피선거권이 없음. | 선거법 제6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정부의 공무원, 연방의회사무국 공무원은 연방의회의원 겸직 금지 | 연방의회에 관한 법 제14조 |
| 스웨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의장이나 내각의 장관이 된 경우 겸직금지 | 헌법 제4절 제9조 |
| 스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정부 공무원, 연방대법원 판사는 연방의회의원 겸직 금지 | 헌법 제144조 |
| 캐나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지사, 주의회의원, 보안관, 군의 검사, 총독이 임명한 모든 판사, 선거공무원은 연방의회의원선거 피선거권이 없음. | 선거법 제65조 |
| 호 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공적기감을 받은 자, 직업 군인 등 | 연방선거법 제164조 |
| 오스트리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 의회나 상원, 하원 의원직은 겸직할 수 없음 판·검사, 군인, 경찰이나 공공보안, 재정, 토지평가 관련 등 객관적이고 중립적일 수 없는 행정 업무는 겸직할 수 없음.²⁶⁾ | 헌법 제59조 공직자 청렴법 제2,6a조 |
| 벨기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하원의원 겸직 금지 왕이 장관으로 임명시 상·하원 의원직 정지(장관직 소멸시 의원 복귀) 연방정부가 유급직으로 임명한 경우 상·하원 의원직 상실 지방의회 의원은 상·하원의원 겸직 금지 | 헌법 제49~51조 제119조 |
| 체 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하원 의원직은 겸직할 수 없음. 대통령, 판사는 법령에 따라 의원직을 겸직할 수 없음. | 헌법 제21,22조 |

| 국가명 | 공무원 입후보 및 사직기한 | 근거규정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은 대통령직이나 판사직 또는 상·하원 의원직을 겸직할 수 없음. | |
| 칠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리, 주지사, 시장, 지방의회 의원, 시의원, 정무장관, 중앙은행 위원회 위원, 대법원 판사, 경력법관, 헌법재판소 판사, 선거법원 판사, 지방법원 판사, 감사원장, 노동조합 또는 유사단체 관리자급 직위에 있는 자, 국가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장, 검사, 지방검사, 내무공안부 수사관, 육해공군 총사령관, 경찰총장, 수사경찰 사무총장 등은 하원 및 상원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음. | 헌법 제57조 |
| 덴마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 선거 입후보에 정부 허가 필요 없음. | 헌법 제30조제2항 |
| 에스토니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과 겸직할 수 없음. • 군복무 중인 자는 입후보할 수 없음. | 헌법 제63조 선거법 제4조제6항 |
| 핀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관련 공무원, 행정감찰관, 법무부장관, 대법원 또는 최고행정법원판사, 검찰총장은 의원직을 겸직할 수 없으며 대통령에 선출되거나 겸직 불가능한 업무에 임명될 경우에는 사직해야 함. | 헌법 제27조 |
| 그리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군인, 보안업체 직원, 지방 공무원, 공공법무인, 지방정부기관, 주지사, 부지사 등은 선거에 출마하기 전까지 사직해야 함. | 헌법 제56조 |
| 헝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헌법 재판소 재판관, 특정 공직과 법무직, 판사, 경찰, 군인은 의원직을 겸직할 수 없음. | 헌법(STATE) 제24,26,29,30, 45,46조 |
| 아이슬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 판사는 피선거권 없음. | 헌법 제34조 |
| 아일랜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위원회 위원, 유럽사법재판소 판사, 법무감, 유럽감사원재판소 판사, 경찰, 군인, 공무원법상 출마 허가가 명시되지 않은 공무원 등은 피선거권이 없음. | 선거법(1992) 제41조 |
| 이스라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유대교 최고지도자 랍비 2인, 판사, 종교재판관, 이스라엘국방군 참모총장, 임기 내 행정부 각 부처 장관 및 랍비,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고위공무원 및 고위 장교,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고위 경찰간부 및 고위 교도관,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공기업 고위 근로자 등은 의회 총선 후보자명부 제출일 이전 또는 법령에 의해 정해진 일자 이전에 사직해야함. • 각 직렬 최고위급 공무원, 3급 이하 공무원, 이스라엘국방군 장교, 경찰, 교도관 등은 선거법 제56조에서 정하는 기간 이전에 사직해야 입후보할 수 있음. | 의회기본법 제7조 선거법 제56조 |
| 이탈리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의회의장, 인구 20,000명이 넘는 자치시의 시장, 경찰서장 및 부서장과 공안담당 검사장, 내각 각 부처의 장관, 사르데냐 자치주 정부 대표, 중앙정부 조정관 등,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공무원 및 부지사, 일정한 영역에서 명령권을 갖고 있는 장군 이상의 장교는 임기 만료일 전 180일 이전에 사직해야 입후보할 수 있음. • 법관(고등기관에서 근무하는 법관을 제외)은 후보자등록일 현재 6개월 이상 같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경우, 그 관할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 이전에 휴직이나 면직이 되어 있어야 함. • 명예직 외교관을 제외한 일반 외교관 등 • 국가와 업무상의 계약이나 하청 등의 관계에 있는 사기업이나 회사의 대표자 등 | 하원의원선거법 제7,8,9,10조 |
| 라트비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감사원장 또는 감사위원, 특명전권대사 또는 전권대사, 헌법재판소 판사, 검사, 군인, 경찰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후보자명부 등록 후 사임해야 하며 등록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 관련 서류를 제출 • 유럽의회 의원이 의회 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의회의원 선서와 동시에 유럽의회 의원 자격을 상실 • 시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의회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당선 확정과 동시에 지방의원 자격을 상실 • 헌법재판소가 아닌 일반 법원 판사가 의회 의원에 당선될 경우 당선 확정과 동시에 판사 자격을 상실함. | 선거법 제6조 |

| 국가명 | 공무원 입후보 및 사직기한 | 근거규정 |
|-------|---|-----------------------------|
| 리투아니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지방의회의원 후보자가 될 수 없음. • 공직에서 사임한 지 4년 이후에 출마 가능 | 공무원법 제44조제2항 선거법 제2조 제5항 |
| 룩셈부르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국가직 근로자, 정부 또는 지자체 및 지자체 산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근로자, 철도공사 근로자, 국가위원회 행정기구 근로자(사임 제외), 판사, 회계위원회 위원, 군 복무자 등은 피선거권이 없음. | 선거법 제129조제1항 |
| 멕시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인, 헌병대, 경찰, 장·차관, 대법원 치안 판사, 선거법원 판사 주지사, 연방선거위원회 위원, 상하원지방의회 의원 및 의장, 지방정부 및 정치-행정기구의 장(長), 종교지도자 등 • 상하원 의원은 연속해서 출마할 수 없고, 다음 선거에 출마 가능(즉, 연임 불가) ※ 주지사의 경우 선거일 90일 전 사임하더라도 관할지역에 해당하는 선거구에 출마할 수 없음. ※ 선거법원 판사, 주지사, 연방선거위원회 위원, 지방정부 및 정치-행정기구의 장(長)의 경우 선거절차 개시일로부터 3년 전 사임해야 함. | 헌법 제55,58,59조 연방선거법 제10조 |
| 노르웨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행정부처의 공무원(장관, 정치고문 제외), 대법원 판사, 외교관 또는 영사직원은 선거일 당일까지 위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 입후보 제한 | 선거법 제3-1조 |
| 네덜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원, 하원 의원직은 겸직할 수 없음. • 장관, 국무장관, 국무위원, 회계법원 판사, 국가 행정 감찰관 또는 부감찰관, 대법원 판사 또는 대법원의 검찰 총장, 법무장관 겸직 금지 | 헌법 제57조 |
| 뉴질랜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위원회의 위원과 부위원, 선거관리관은 입후보 할 수 없음. • 공무원과 경찰 혹은 국가법에 따라 고용된 사람은 휴직 상태에서만 입후보 할 수 있음. | 선거법 제47A조 제53조 |
| 폴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상원, 하원 의원직은 겸직할 수 없음. • 국립은행장, 시민권위원장, 아동권리위원장, 금융통화위원회, 전국 라디오TV연합회위원, 외교대사, 판사, 검사, 공무원(행정부 장관은 제외), 현역군인, 경찰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원은 겸직이 불가 | 헌법 제102,103조 |
| 포르투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현직판·검사, 현직군인, 현직외교관, 선거위원회 위원 • 세무서의 장·책임자, 사법권을 갖는 종교 성직자는 그들이 활동하는 지역의 선거구에 후보자가 될 수 없음. | 선거법 제5,6조 |
| 슬로바키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사, 검사, 국선 변호인, 군인, 경찰, 유럽의회의원과 겸직할 수 없음. • 의원이 정부 관료 직위에 임명될 경우 당사자의 의원직위는 소멸되지 않으나 행사되지는 않음. | 헌법 제77조 |
| 슬로베니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공무원은 피선거권이 없으며, 후보자 출마 시 법률에 따라 퇴직됨. | 의회선거법 제25조 |
| 터 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사, 검사, 대법원 판사, 고등교육위원회 위원, 기타 공무원, 시장, 군 장교, 부사관, 라디오TV고등위원회 위원, 지방의회의원 및 주의회의원, 지방 각 주 및 이하 행정단위의 정당 행정위원회 이사 및 위원에 해당하는 직위를 가진 자는 사임해야 함. | 헌법 제76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선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주선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입후보를 위해 총선 또는 중간선거 1개월 전 또는 재선거 공표 후 7일 이내로 사임해야 함. | 의회선거법 제17,18조 |

출처: New Parline. IPU's open data platform

<http://archive.ipu.org/wmn-e/classif.htm> (검색일 2019.5.7.)

26) 오스트리아의회.

<https://www.parlament.gv.at/ENGL/PERK/NRBRBV/NR/ABGNR/index.shtml> (검색일 2019.8.5)

<표 5-5> OECD국가의 후보자 사퇴 시한

| 국가명 | 사퇴 시한 | 비고 |
|------|--|------------------|
| 영 국 | 후보자등록일 마감 전까지 | 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
| 미 국 | 예비선거에서 추천된 후보자는 총선거에서 사퇴 불가 | 캘리포니아 선거법 제8801조 |
| 프랑스 | 후보자등록일 마감 전까지 | 선거법 시행규칙 제100조 |
| 독 일 | 후보자추천서 제출 후 추천서 승인기간 전까지 | 선거법 제23,24조 |
| 일 본 | 후보자등록일 마감 전까지 | 공직선거법 제86조 |
| 캐나다 | 후보자등록일 마감 전까지 | 선거법 제74조 |
| 호 주 | 후보자등록일 마감 전까지 | 연방선거법 제177조 |
| 헝가리 | 선거일 전까지 | 선거법 제137조 |
| 멕시코 | 선거일 전 30일까지 ※ 선거일 7월 첫 번째 일요일 입후보등록기간: 3.15~3.22 또는 4.22~4.29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기간 다음날부터 선거일 3일전까지로 90일, 70일) | 선거법 제227조 |
| 뉴질랜드 | 후보자등록일 마감 전까지 | 선거법 제146조 |

※ OECD국가(36개국) 중 비례대표제 실시국가 23개국을 제외한 다수대표제로 지역구 후보자를 뽑는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

<표 5-6> 각국의 여성 의회의원 비율

| 순위 | 국가명 | 하원 및 단원 | | | | 상원 | | | |
|----|----------|------------|-----|------|-------|------------|-----|------|-------|
| | | 선거일 | 의석 | 여성의원 | % | 선거일 | 의석 | 여성의원 | % |
| 1 | 르완다 | 2018.9.3 | 80 | 49 | 61.3% | 2011.9.26 | 26 | 10 | 38.5% |
| 2 | 쿠 바 | 2018.3.11 | 605 | 322 | 53.2% | - | - | - | - |
| 3 | 볼리비아 | 2014.10.12 | 130 | 69 | 53.1% | 2014.10.12 | 36 | 17 | 47.2% |
| 4 | 멕시코 | 2018.7.1 | 500 | 241 | 48.2% | 2018.7.1 | 128 | 63 | 49.2% |
| 5 | 스웨덴 | 2018.9.9 | 349 | 165 | 47.3% | - | - | - | - |
| 6 | 그레나다 | 2018.3.13 | 15 | 7 | 46.7% | 2018.4.27 | 13 | 4 | 30.8% |
| 7 | 나미비아 | 2014.11.29 | 104 | 48 | 46.2% | 2015.12.8 | 42 | 10 | 23.8% |
| 8 | 코스타리카 | 2018.2.4 | 57 | 26 | 45.6% | - | - | - | - |
| 9 | 니카라과 | 2016.11.6 | 92 | 41 | 44.6% | - | - | - | - |
| 10 | 남아프리카공화국 | 2014.5.7 | 393 | 168 | 42.7% | 2014.5.21 | 54 | 19 | 35.2% |
| 11 | 세네갈 | 2017.7.30 | 165 | 69 | 41.8% | - | - | - | - |
| 12 | 핀란드 | 2015.4.19 | 200 | 83 | 41.5% | - | - | - | - |
| 13 | 스페인 | 2016.6.26 | 350 | 144 | 41.1% | 2016.6.26 | 266 | 98 | 36.8% |
| 14 | 노르웨이 | 2017.9.11 | 169 | 69 | 40.8% | - | - | - | - |
| 15 | 뉴질랜드 | 2017.9.23 | 120 | 48 | 40.0% | - | - | - | - |
| 16 | 프랑스 | 2017.6.11 | 577 | 229 | 39.7% | 2017.9.24 | 348 | 112 | 32.2% |
| 17 | 모잠비크 | 2014.10.15 | 250 | 99 | 39.6% | - | - | - | - |
| 18 | 아르헨티나 | 2017.10.22 | 255 | 99 | 38.8% | 2017.10.22 | 72 | 30 | 41.7% |
| 19 | 에티오피아 | 2015.5.24 | 547 | 212 | 38.8% | 2015.10.5 | 153 | 49 | 32.0% |
| 20 | 북마케도니아 | 2016.12.11 | 120 | 46 | 38.3% | - | - | - | - |
| 21 | 아이슬란드 | 2017.10.28 | 63 | 24 | 38.1% | - | - | - | - |
| 22 | 벨기에 | 2014.5.25 | 150 | 57 | 38.0% | 2014.7.3 | 60 | 26 | 43.3% |
| 23 | 에콰도르 | 2017.2.19 | 137 | 52 | 38.0% | - | - | - | - |
| 24 | 세르비아 | 2016.4.24 | 247 | 93 | 37.7% | - | - | - | - |
| 25 | 덴마크 | 2015.6.18 | 179 | 67 | 37.4% | - | - | - | - |
| 26 | 오스트리아 | 2017.10.15 | 183 | 68 | 37.2% | - | 61 | 22 | 36.1% |
| 27 | 탄자니아 | 2015.10.25 | 393 | 145 | 36.9% | - | - | - | - |
| 28 | 부룬디 | 2015.6.29 | 121 | 44 | 36.4% | 2015.7.24 | 39 | 18 | 46.2% |
| 29 | 튀니지 | 2014.10.26 | 217 | 78 | 35.9% | - | - | - | - |

| 순위 | 국가명 | 하원 및 단원 | | | | 상원 | | | |
|-----|----------|------------|-----|------|-------|------------|-----|------|-------|
| | | 선거일 | 의석 | 여성의원 | % | 선거일 | 의석 | 여성의원 | % |
| 30 | 이탈리아 | 2018.3.4 | 630 | 225 | 35.7% | 2018.3.4 | 320 | 110 | 34.4% |
| " | 포르투갈 | 2015.10.4 | 230 | 82 | 35.7% | - | - | - | - |
| 32 | 우간다 | 2016.2.18 | 459 | 160 | 34.9% | - | - | - | - |
| 33 | 벨라루스 | 2016.9.11 | 110 | 38 | 34.5% | 2016.9.13 | 56 | 17 | 30.4% |
| 34 | 동티모르 | 2018.5.12 | 65 | 22 | 33.8% | - | - | - | - |
| 35 | 모나코 | 2018.2.14 | 24 | 8 | 33.3% | - | - | - | - |
| 36 | 네 팔 | 2017.11.26 | 275 | 90 | 32.7% | 2018.2.7 | 59 | 22 | 37.3% |
| 37 | 스위스 | 2015.10.18 | 200 | 65 | 32.5% | 2015.10.18 | 46 | 7 | 15.2% |
| 38 | 안도라 | 2015.3.1 | 28 | 9 | 32.1% | - | - | - | - |
| 39 | 영 국 | 2017.6.8 | 650 | 208 | 32.0% | - | 789 | 208 | 26.4% |
| 40 | 가이아나 | 2015.5.11 | 69 | 22 | 31.9% | - | - | - | - |
| " | 짐바브웨 | 2018.7.30 | 270 | 86 | 31.9% | 2018.7.30 | 80 | 35 | 43.8% |
| 42 | 네덜란드 | 2017.3.15 | 150 | 47 | 31.3% | 2015.5.26 | 75 | 27 | 36.0% |
| 43 | 카메룬 | 2013.9.30 | 180 | 56 | 31.1% | 2018.3.25 | 100 | 26 | 26.0% |
| 44 | 엘살바도르 | 2018.3.4 | 84 | 26 | 31.0% | - | - | - | - |
| 45 | 라트비아 | 2018.10.6 | 100 | 31 | 31.0% | - | - | - | - |
| 46 | 트리니다드토바고 | 2015.9.7 | 42 | 13 | 31.0% | 2015.9.23 | 31 | 11 | 35.5% |
| 47 | 독 일 | 2017.9.24 | 709 | 219 | 30.9% | - | 69 | 27 | 39.1% |
| 48 | 앙골라 | 2017.8.23 | 220 | 66 | 30.0% | - | - | - | - |
| 49 | 호 주 | 2016.7.2 | 150 | 45 | 30.0% | 2016.7.2 | 76 | 30 | 39.5% |
| 50 | 페 루 | 2016.4.10 | 130 | 39 | 30.0% | - | - | - | - |
| | ∴ | | | | | | | | |
| 121 | 한 국 | 2016.4.13 | 298 | 51 | 17.9% | - | - | - | - |

출처: New Parline. IPU's open data platform.

<http://archive.ipu.org/wmn-e/classif.htm> (검색일 2019.5.7.)

<표 5-7> 각국의 여성할당제

| 구분 | 상원의원 선거 | 하원의원 선거 | 지방의원 선거 |
|--|---|--|--|
| 지정의석 할당제 (Reserved Seats) | 아프가니스탄, 부룬디, 아이티, 케냐, 파키스탄, 르완다, 남수단, 에스와티니 |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방글라데시, 부룬디, 중국, 지부티,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라크, 요르단, 케냐, 모리타니, 모로코, 네팔, 니제르, 파키스탄, 르완다,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에스와티니, 대만, 탄자니아, 우간다, 짐바브웨 |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방글라데시, 부룬디, 지부티, 에리트레아, 기니, 인도, 이라크, 요르단, 케냐, 레소토, 리비아, 모리타니, 모리셔스, 모로코, 니제르,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필리핀, 르완다,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대만, 탄자니아, 동티모르, 우간다, 바누아투 |
| 후보자추천 관련 법정할당제 (Legislated Candidate Quotas) | 아르헨티나, 벨기에,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프랑스, 이탈리아, 모리타니, 멕시코, 파라과이, 콩고공화국, 스페인, 우루과이, 짐바브웨 | 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벨기에,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카보베르데, 칠레, 콜롬비아,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프랑스, 그리스, 기니, 가이아나,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이라크, 아일랜드, 이탈리아, 케냐, 한국, 키르기스스탄,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마케도니아, 말리, 모리타니, 멕시코, 몰도바, 몽골, 몬테네그로, 니카라과, 팔레스타인,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콩고공화국, 르완다, 산마리노, 세네갈,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솔로몬군도, 스페인, 태국, 동티모르, 토고, 튀니지,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 알바니아, 알제리,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벨기에,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카보베르데,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프랑스, 그리스,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한국, 키르기스스탄, 라이베리아, 마케도니아, 말리, 멕시코, 몰도바, 몽골, 몬테네그로, 나미비아, 네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콩고공화국, 르완다,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
| 정당자율 할당제 (Voluntary Party Quotas) |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볼리비아, 보츠와나, 브라질, 카메룬, 캐나다, 칠레, 코트디부아르,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엘살바도르, 적도기니,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프랑스, 독일, 과테말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케냐, 한국,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라위, 말리, 몰타, 멕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노르웨이, 파라과이, 필리핀,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탄자니아, 태국, 터키, 영국, 우루과이, 짐바브웨 | | |
| 기타 | 조지아 | 정당후보자명부의 30%를 여성으로 할당할 경우 보조금 지급 (정치 연합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제7항) | |
| | 일본 | 정당의 후보자 선정 시 남녀 성비가 가능한 균등해지는 것을 지향해야 함. 단 의무사항은 아님(정치분야의 남녀 공동참여 추진에 관한 법 제2조) | |

※ 지정의석 할당제: 헌법이나 선거법에 여성만이 차지할 수 있는 의석 수를 규정
 후보자추천 관련 법정할당제: 선거법에 각 정당의 후보자 추천시 성비 비율이나 추천 순번을 규정
 정당자율할당제: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성비 비율이나 순번에 대해 결정

출처: IDEA, Gender Quotas Database.

<https://www.idea.int/data-tools/data/gender-quotas/country-overview> (검색일 2019.5.7.)

Atlas of Electoral Gender Quotas. 2014.

<https://www.idea.int/sites/default/files/publications/atlas-of-electoral-gender-quotas.pdf> (검색일 2019.5.7.)

<표 5-8> 지정의석할당제 국가 현황

| 국가명 | 해당선거 | 규정 내용 | 근거규정 |
|--------|-------|--|---|
| 아프가니스탄 | 상원 | 의원 중 2/3는 간선제로 선출 대통령이 임명하는 1/3의 의원 중 50%를 여성으로 임명 | 헌법 제84조 |
| | 하원 | 249석 중 68석을 여성에게 할당 선거 결과가 할당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다 득표한 여성 후보를 추가로 선출(best loser system) | 헌법2004 제83조 선거법2010 제20,23조 |
| | 지방 | 지방의회 의석 중 20%를 여성에게 할당 선거 결과가 할당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다 득표한 여성 후보를 추가로 선출(best loser system) | 선거법 제30조제2항 |
| 방글라데시 | 의회 | 350석 중 50석을 여성에게 할당 비례대표선거결과에 따라 정당에게 여성지정의석을 할당 | 헌법 제65조(3A) |
| | 지방 | 광역지방의석은 기초지방의회에서 간선으로 25%를 할당 기초지방의회에서는 3개의 기초 단위 선거구를 하나의 여성전용선거구로 하여 여성 의원을 선출 | 헌법 제9조 |
| 부룬디 | 상원 | 의석 중 30%를 여성에게 할당 후보자명부에서 최소 5% 이상 득표한 여성 후보를 추가로 선출(best loser system) | 헌법2005 제180조 선거법2014 제142조 |
| | 하원 | 의석 중 30%를 여성에게 할당 후보자명부의 4명 중 한 명은 여성이어야 함. 후보자명부에서 최소 5% 이상 득표한 여성 후보를 추가로 선출(best loser system) | 헌법 2005 제164조제1항, 제168조 선거법 제108조제1항, 제127조제4항 |
| | 지방 | 간선제 공동 평의회 15명 중 30%를 여성에게 할당 선거 결과가 할당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독립기관인 선거위원회가 최다 득표한 여성 후보를 추가로 선출(best loser system) | 선거법 제182조제2항, 제177조제2항, 제181조제2항, 제191조 |
| 지부티 | 의회 | 의석 중 25%를 여성에게 할당 비례대표선거결과에 따라 정당에게 여성지정의석을 할당 | 선거법 219/AN/18/7ème L 제1조 |
| 에리트레아 | 의회·지방 | 의석 중 30%를 여성에게 할당 별도 시행 규정 없음. | 선거법 제12조제4항 선거법 제17조제2항 |
| 아이티 | 상원·하원 | 의석 중 30%를 여성에게 할당 별도 시행 규정 없음. | 헌법 제17조제1항, 제30조제1항1 |
| 기 니 | 지방 | 지방의회 의석 중 33%, 공동평의회 의석의 30%를 여성에게 할당 별도 시행 규정 없음(할당 충족 시 정당에 보조금 지원) | 선거법 제103조 선거법 제115조 |
| 인 도 | 지방 | 소도시, 마을의회 의석 중 33%가 여성에게 할당되도록 별도의 선거구를 순환방식으로 지정해 선출 | 헌법 제243조D제2,3항 제243t조 |
| 이라크 | 의회 | 의석 중 25%를 여성에게 할당 선거 결과가 할당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여성 후보자를 추가로 선출(best loser system) | 헌법 제49조4 선거법 26(2009) 제3조제3항 |
| | 지방 | 3명의 당선자 중 마지막 한명은 최다 득표한 여성 후보자로 선출(best loser system). | 선거법 제13조제2항 |

| 국가명 | 해당선거 | 규정 내용 | 근거규정 |
|------|-------|--|----------------------------------|
| 요르단 | 하원 | 108석 중 15석을 여성에게 할당 선거 결과가 할당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국적으로 탈락한 여성 후보자들의 해당 지역구에서 얻은 득표의 비율을 계산해서 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선출(best loser system) | 선거법 제51조 |
| | 지방 | 지방의회 970석 중 297석을 여성에게 할당 | |
| 케냐 | 상원 | 47석 중 18석을 여성에게 할당 비례대표선거결과에 따라 정당에게 여성지정의석을 할당 | 헌법 제98조 |
| | 하원 | 47개의 카운티마다 여성 전용 단일선거구를 구성하여 47석의 여성의석을 할당 | 헌법 제27조제8항, 제81조 |
| | 지방 | 각 카운티 마다 배정된 의석의 1/3을 여성에게 할당 비례대표선거결과에 따라 정당에게 여성지정의석을 할당 | 헌법 제175조(C), 제177조(1:b), 197조제1항 |
| 레소토 | 지방 | 시, 도, 지방의회의 의석의 30%를 여성에게 할당 비례대표선거결과에 따라 정당에게 여성지정의석을 할당 | 지방선거법(2011) |
| 리비아 | 지역 | 지방의회 의석 중 일부를 여성에게 할당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별도 시행 규정은 없음. | 선거법 제1조제20항, 제46조제2항 |
| 모리타니 | 하원 | 여성후보 별도 명부를 통해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하여 20석의 여성의석을 할당 | 선거법 제3조 |
| | 지역 | 지방의회 의석 중 20%를 여성에게 할당 비례대표선거결과에 따라 정당에게 여성지정의석을 할당 | 선거법제2,3조 |
| 모로코 | 하원 | 395석 중 60석을 여성에게 할당 여성후보 별도 명부를 통해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하여 비례대표 방식으로 선출 | 선거법20-16 제23조제2항 |
| | 지방 | 광역지방의회 의석 중 1/3을 여성에게 할당 기초지방의회에서는 여성전용선거구를 지정해야 함. | 지방의회의원선거에 관한 법59-11 제76,77,143조 |
| 네 팔 | 하원 | 의석 중 1/3은 여성에게 할당 의장과 부의장 중 한 명은 여성이 선출되어야 함. | 헌법 제84조제8항, 제91조제2항 |
| 니제르 | 의회·지방 | 의석의 남녀 성비가 각각 적어도 10% 이상이어야 함. 별도 시행 규정 없음. | 선거법 2008/08 제3조 |
| 파키스탄 | 상원 | 간선제 104석 중 17석을 여성에게 할당 | 헌법 제59조 |
| | 하원 | 342석 중 60석을 여성에게 할당 비례대표선거결과에 따라 정당에게 여성지정의석을 할당 | 헌법 제51조 |
| | 지방 | 지정의석의 수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비례대표선거결과에 따라 정당에게 여성지정의석을 할당 | 헌법 제32조, 제106조제1,3항 |
| 르완다 | 상원 | 간선제와 임명을 통해 의석 중 30%를 여성에게 할당 | 헌법 제9조제4항, 제82조 |
| | 하원 | 80석 중 24석을 여성에게 할당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도(province)와 키갈리시티(City of Kigali)에서 각 2명씩 선출(간선) 정당은 여성후보자를 30% 이상 추천해야 함. | 헌법 제9조제4항, 제76조 선거법 제5,109조 |

| 국가명 | 해당선거 | 규정 내용 | 근거규정 |
|-------------|------|--|--|
| | 지방 | 모든 지역에서 1명의 여성의원과 1명의 남성의원을 직접 선거로 선출 | 선거법27/2010 제155,156조 |
| 사모아 | 의회 | 의석 중 10%를 여성에게 할당 선거 결과가 할당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다 득표한 여성 후보를 추가로 선출(best loser system) | 헌법 제44조 |
| 사우디 아라비아 | 의회 | 의석 중 20%를 국왕이 여성으로 임명 | 의회법 국왕령 A/91 |
| 시에라리온 | 지방 | 구 개발 위원회 10석 중 5석을 여성에게 할당 별도 시행 규정 없음. | 지방자치법 제95조 |
| 남수단 | 상원 | 간선제와 임명을 통해 의석 중 25%를 여성에게 할당 | 헌법 제16조4:a 선거법 제60조제3항 |
| | 하원 | 의석 중 25%를 여성에게 할당 여성후보 별도 명부를 통해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하여 비례대표 방식으로 선출 | 헌법 제16조4:a 선거법 제60조제2항 |
| | 지방 | 각 주의 의석 중 25%를 여성에게 할당 여성후보 별도 명부를 통해 비례대표 방식으로 선출 | 헌법 제162,163조 선거법 제61조 |
| 수 단 | 하원 | 의석 중 25%를 여성에게 할당 여성후보 별도 명부를 통해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하여 비례대표 방식으로 선출 | 선거법 제29조, 제33조제7항 |
| 에스와티니 | 상원 | 30석 중 13석을 여성에게 할당 5명은 의회에서 간선을 통해 선출되며 8명은 국왕에 의해 임명됨. | 헌법 제94조 |
| | 하원 | 의석 중 50%는 국왕이 여성으로 임명 총선 이후에 여성의원의 수가 전체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4명 이하의 여성의원을 추가로 선출 | 헌법 제86,95조 |
| 탄자니아 | 하원 | 의석 중 30%를 여성에게 할당 비례대표선거결과에 따라 정당에게 여성지정의석을 할당 | 헌법 제66조1:b, 제78조제1항 선거법 제86A조제2항 |
| | 지방 | 의석 중 33%를 여성에게 할당 비례대표선거결과에 따라 정당에게 여성지정의석을 할당 | |
| 동티모르 | 지방 | 지방의회 3석을 여성에게 할당 별도 시행 규정은 없음. | 지방선거법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
| 우간다 | 의회 | 238선거구 중 112개 여성전용선거구를 통해 투표자들이 여성 의원을 직접 선출 | 헌법 제78조제1항 선거법 제8조 |
| | 지방 | 지방의회 의석의 1/3을 여성에게 할당 여성후보 별도 명부를 통해 선출 | 헌법 제180조2:b 선거법 제108조제3항 |
| 바누아투 | 지방 | 각 지방의회 의석 중 1석을 여성에게 할당 | 도시법 개정(2013) |
| 짐바브웨 | 하원 | 210석의 기존 의석에 여성 지정의 60석을 별도로 추가 비례대표선거결과에 따라 정당에게 여성지정의석을 할당 | 헌법 제124조 |

출처: IDEA. Gender Quotas Database.

<https://www.idea.int/data-tools/data/gender-quotas/country-overview> (검색일 2019.6.14.)

<표 5-9> OECD 국가의 후보자 추천 관련 여성할당제와 제재 현황

■ 선거법에 규정이 있는 국가

| 국가명 | 해당선거 | 규정 내용 | 불이행시 법적제재 |
|------|--------------|---|--|
| 프랑스 | 상원선거 | 후보자 각각의 성비 50%, 남녀교호순번제 (선거법 제299조제1항, 제300조제1항), ※ 헌법 제1조제2항, 제4조제2항 | 행정법원에 제소 (선거법 제303조) 후보자명부 등록 거부 (선거법 제301조) |
| | 하원선거 | 소속 정당 추천 후보자 전체에서 후보자의 성비의 차이가 2%를 미만이어야 함. (정치생활의 재정투명화 법률 88-227 제9-1조) ※ 헌법 제1조제2항, 제4조제2항 | 할당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에 따라 정당보조금 삭감 (정치생활의 재정투명화 법률 88-227 제9-1조) |
| | 지방선거 | 도의원선거) 선거인은 투표지 남녀 후보 각 1명에게 투표 (선거법 제191조) 인구 1,000명 이상 코뮌 비례선거, 광역의원 및 코르시카 하원의원 선거) 남녀교호순번제 (선거법 제264조, 제346조제1항) | - 후보자명부 등록 거부 (선거법 제265조, 제350조) |
| 일본 | 의회선거 지방선거 | 남녀 후보자의 수가 가능한 균등해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정치 분야의 남녀 공동참여 추진에 관한 법 제2조) | 제재 규정 없음 |
| 스페인 | 상원선거 | 후보자 각각의 성비 50%. 명부 순서의 5명마다 할당이 유지되어야 함. (선거법 제44조2의제2항, 제4항) | 후보자명부 등록 거부 (선거법 제47조제2,4항) |
| | 하원선거 지방선거 | 후보자 각각의 성비가 최소 40% 이상이어야 함. 명부 순서의 5명마다 할당이 유지되어야 함. (선거법 제44조2의제1항, 제2항) | |
| 벨기에 | 상원선거 하원선거 | 후보자 각각의 성비 50%, 남녀 교호순번제 (선거법 제117조) | 후보자명부 등록 거부 (선거법 제119조) |
| | 지방선거 | 후보자 각각의 성비 50% (지방선거법 제23조제9항) | 후보자명부 등록 거부 (지방선거법 제26조제2항) |
| 칠레 | 상원선거 하원선거 | 각각의 성비는 후보자의 60% 이상을 차지할 수 없음. 남녀 교호순번제 | 후보자명부 등록 거부 (선거법 제4조) |
| 그리스 | 의회선거 | 후보자 각각의 성비가 33% 이상이어야 함. (선거법시행령 26/2012 제34조) ※(헌법 제116조제2항) | 후보자명부 등록 거부 (선거법시행령 26/2012 제35조) |
| | 지방선거 | 후보자 각각의 성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33% 이상이어야 함. (선거법 3852/2010 제18조제3항) ※ 헌법 제116조 | 후보자명부 등록 거부 (선거법 3852/2010 제19조제6항) |
| 아일랜드 | 하원선거 | 후보자 각각의 성비가 최소 30% 이상이어야 함. (선거법 1997 정당과 성 평등의 국고보조에 관한 장) ※ 2012에 개정되어 최초 선거 시 30% 이상이지만 첫 선거 실시 후 7년 이내에 40%까지 할당을 해야 함. | 정당 국고보조금 50% 삭감 (선거법 1997 정당과 성 평등의 국고보조에 관한 장 제42조제c항) |

| 국가명 | 해당선거 | 규정 내용 | 불이행시 법적제재 |
|-------|--------------|---|----------------------------------|
| 이탈리아 | 상원선거 | 남녀 교호순번제 (선거법 165/2017 제3조제3항) ※ 헌법 제51조 | - |
| | 하원선거 | 각각의 성비는 후보자의 60% 이상을 차지할 수 없음. (선거법 165/2017 제3조3.1) ※ 헌법 제51조 | |
| | 지방선거 | 연방헌법에 따라 20개주 각 지방법으로 할당제 규정 (연방헌법 제117조) | 지역별 규정 |
| 멕시코 | 상원선거 하원선거 | 후보자 각각의 성비가 최소 45% 이상이어야 함. 후보자명부 순서의 5명마다 할당이 유지되어야 함. (선거법 제219,220,232조) ※ 헌법 제41조 | 후보자명부 등록 거부 (선거법 제221조) |
| | 지방선거 | 각 주별로 규정 | 각 주별로 규정 |
| 폴란드 | 하원선거 | 후보자 각각의 성비가 최소 35% 이상이어야 함. (선거법 제211조제3항) | 후보자명부 등록 거부 (선거법 제215조제5항) |
| | 지방선거 | 후보자 각각의 성비가 최소 35% 이상이어야 함. 후보자명부의 순서 3명마다 1명은 다른 성별로 구성되어야 함. (선거법 제425조제3항, 제457조제2항) | 후보자명부 등록 거부 (선거법 제431조) |
| 포르투갈 | 의회선거 지방선거 | 후보자 각각의 성비가 최소 40% 이상이어야 함. 후보자명부의 2명마다 1명은 다른 성별로 구성되어야 함. (평등에 관한 법 1/2019 제1조, 제2조제1,2항) | 후보자명부 등록 거부 (평등에 관한 법 제4조) |
| 슬로베니아 | 하원선거 | 후보자 각각의 성비가 최소 35% 이상이어야 함. (의회선거법 2006 제43조제6,7항) | 후보자명부 등록 거부 (의회선거법 제56조) |
| | 지방선거 | 후보자 각각의 성비가 최소 40% 이상이어야 함. 후보자명부의 순서 3명마다 1명은 다른 성별로 구성되어야 함. (지방선거법 2005 제70조) | 후보자명부 등록 거부 (지방선거법 2005 제70조) |

■ 선거법에 규정이 없는 국가

| | |
|--------------------|---|
| 정당자율 할당제 실시 국가 |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독일, 헝가리,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
| 여성할당제 관련 조치가 없는 국가 |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라트비아, 미국 |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관련 각국의 헌법 규정 내용

| | | |
|------|-------------|--|
| 프랑스 | 헌법 제1조제2항 |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선거직과 선출직 및 직업적, 사회적 직책에 동등한 진출을 보장한다. |
| | 헌법 제4조제2항 | 정당 및 정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조제2항에서 정한 원칙의 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 |
| 그리스 | 헌법 제116조제2항 | 남성과 여성간의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의 채택은 성별에 근거한 차별이 아니다. 국가는 특히 여성에게 불리한 실제로 존재하는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이탈리아 | 헌법 제51조 |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은 법률의 규정된 조건에 따라 동등하게 공직과 선출직에 진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남녀 기회균등을 촉진하는 구체적 조치를 채택한다. |
| | 헌법 제117조 | 주법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생활에서의 완전한 남녀평등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남성과 여성의 선출직에 대한 기회 균등을 촉진한다. |
| 멕시코 | 헌법 제41조 | 정당의 목적은 국민의 민주주의 참여를 촉진하고, 대의제 통합에 기여하고, 시민이 프로그램과 원칙 및 사상에 따라 보통·자유·비밀 및 직접 선거를 통하여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며, 성별과 연방 및 지방의원 사이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

출처: IDEA. Gender Quotas Database.

<https://www.idea.int/data-tools/data/gender-quotas/country-overview> (검색일 2019.5.13.)

Atlas of Electoral Gender Quotas. 2014.

<https://www.idea.int/sites/default/files/publications/atlas-of-electoral-gender-quotas.pdf> (검색일 2019.5.13.)

Wikipedia. Women in government.

https://en.wikipedia.org/wiki/Women_in_government (검색일 2019.5.17.)

New Parline: IPU's open data platform. 'Electoral quota for women'

https://data.ipu.org/compare?field=chamber%3A%3Afield_is_electoral_quota_women&structure=any_lower_chamber#map (검색일 2019.5.17.)

<표 5-10> OECD국가의 후보자 기탁금액 및 반환기준

| 국가명 | 기탁금액 | 반환기준 | 근거규정 | 비고 |
|-------|---|--|---|---|
| 영국 | £500(하원) (한화 913,000원) | 유효투표총수의 5% 이상 득표 시 | 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9호 부칙 4. 제53호 | - |
| 일본 | ¥300만 (중의원·참의원 선거구) (한화 30,000,000원) |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득표 시 | 공직선거법 제92조 | 중의원·참의원 비례대표선거: 1명당 ¥600만 |
| 호주 | A\$2,000 (한화 ,000원) | 제1순위 지지 총투표수의 4% 이상 득표 시 | 연방선거법 제170,173조 | - |
| 체코 | 20,000CZK(상원) (한화 1,020,000원) | 유효투표총수의 6% 이상 득표 시 | 선거법 제61조 | 유효투표총수의 6% 이하 득표 시 국고에 귀속됨. 기탁금 거치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는 반환되지 않으며 국고에 귀속됨. |
| | 19,000CZK(하원) (한화 1,000,000원) | | 선거법 제31조 | |
| 에스토니아 | 선거가 있는 해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금액 | 당선자가 있거나 기준수의 1/2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5% 이상 득표 시 | 선거법 제30조제5항, 62,77조 | 기준수(simple quota)는 유효투표총수/의석수를 의미 |
| 그리스 | €146.74 (한화 195,000원) | 기탁금 반환 안됨 | 선거법 제32조 | - |
| 아일랜드 | €500 (한화 666,000원) | 선거구 할당 1/4 (25% 이상) 득표 시 | 선거법 제47,48조 | 그 외 기탁금 반환기준 • 선거법 제54조에 따른 사퇴 • 투표 종료 이전 사망 • 후보지명기 간 내 결격사유 발생 시 • 당선 |
| 라트비아 | €1,400 (한화 1,861,000원) | 유효투표총수의 2% 이상 득표 시 | 선거법 제12조 | 유효투표총수 2% 이하 득표 시 국고 에 귀속됨. |
| 리투아니아 | (소선거구)가장 최근에 발표된 국가경제 월평균 임금 (중대선거구)가장 최근에 발표된 국가경제 월평균 임금의 10배 | 유효투표총수 3% 이상 득표 시 | 의회선거법 제41조제1,2,5항 | - |
| 네덜란드 | €11,250(하원) (한화 약1,491,000원) | 정당이 기준수의 75% 이상 득표 시 | 선거법 제H12조, 제P5조 | 다만, 기탁금 납부는 모든 정당이 아닌 처음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혹은 지난 선거에서 의석을 획득 하지 못한 정당만 해당 기준수(electoral quota)는 유효투표총수/의석수를 의미 |

| 국가명 | 기탁금액 | 반환기준 | 근거규정 | 비고 |
|-------------------|---|------------------------|---------------------|--|
| 뉴질랜드 | NZ\$300 (한화 243,000원) | 유효투표총수의 5% 이상 득표 시 | 선거법 제144조 | 비례대표는 기탁금 없음. |
| 슬로바키아 | €17,000 (한화 22,620,000원) | 유효투표총수의 2% 이상 득표 시 | 선거법 제50조 | 유효투표총수 2% 미만 득표 시 국고에 귀속 |
| 터키 ²⁷⁾ | (무소속)재무부 산하 고위직 공무원 월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2015 총선 기준 €3,500 상당(10,167TRY, 한화 4,700,000원) |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득표 시 | 의회선거법 제21,33,41조 | 정당소속후보자는 기탁금 없음. 10% 미만 득표 시 국고에 귀속 |

※ 미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칠레,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는 기탁금 납부제도가 없음.
 ※ 다만, 오스트리아의 경우 투표용지 제작비용 명목으로 모든 정당은 해당 선거구위원회에 435유로를 납부해야 함(의회선거법 제43조제4항).

27) 의회선거법상 정당 소속 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규정은 없음.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turkey/177926?download=true> (검색일 2019.7.9.)

<표 5-11> 각국의 기탁금 반환요건

| 기탁금 반환요건 | | 국가명 |
|-----------------------------------|--------|---|
| 유효투표총수 1% 이상 | | 피지 |
| 유효투표총수 2% 이상 | | 아프가니스탄 상원, 부룬디(전국유효투표총수대비), 아이티(반액),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
| 유효투표총수 3% 이상 | | 아프가니스탄 하원 |
| 유효투표총수 4% 이상 | | 아르메니아, 호주(1순위 지지투표) |
| 유효투표총수 5% 이상 | | 보츠와나, 카메룬 하원(전국유효투표총수대비), 중앙아프리카공화국(반액), 지부티, 키르기스스탄, 모리타니, 모로코 하원, 뉴질랜드, 타지키스탄 상원, 토고, 영국 하원 |
| 유효투표총수 6% 이상 | | 체코 하원 |
| 유효투표총수 7% 이상 | | 카자흐스탄 하원 |
| 유효투표총수 10% 이상 | | 부르키나파소, 중앙아프리카공화국(전액), 차드,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일본 중의원, 쿠웨이트, 레소토 하원, 모리셔스, 몰타, 시에라리온, 수단 |
| 유효투표총수 12% 이상 | | 가나 |
| 유효투표총수 20% 이상 | | 레바논 |
| 유효투표총수 1/8(12.5%) 이상 | | 트리니다드토바고, 방글라데시, 도미니카, 그레나다, 자메이카, 일본 참의원, 말레이시아 하원, 파키스탄 하원,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하원,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싱가포르, 스리랑카 |
| 유효투표총수 1/6(16.7%) 이상 | | 바하마, 바베이도스, 인도 |
| 기준수 (Hare quota; 유효투표수/의원수) | 1/4 이상 | 아일랜드 하원 |
| | 1/3 이상 | 키프로스 |
| | 75% 이상 | 네덜란드 |
| 당선자 | | 리투아니아, 세이셸, 우크라이나 |
| 기타 | 감비아 | 당선 되었거나, 당선자 득표수의 20% 이상 |
| | 캐나다 | 선거비용회계보고서 제출 시 |
| | 쿠웨이트 | 10표 이상 획득 |
| | 파푸아뉴기니 | 해당 선거구 당선자 득표수의 1/3 이상 |

출처: PARLINE. database on national parliaments.

<http://archive.ipu.org/parline-e/mod-electoral.asp> (검색일 2019.5.14.)

제6장 선거운동

<표 6-1> OECD국가의 선거운동기간

| 국가명 | 선거운동기간 | 근거규정 |
|--------------------|--|-------------------|
| 영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해산일로부터 17일 이내에 실시되는 선거일까지 이므로 대개 선거 기간은 3~4주.* 사전선거운동제한은 없음. | 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
| 미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운동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전선거운동개념이 없음. | - |
| 프랑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일 전까지 대선은 12일 간, 총선은 20일간 진행됨. - 이 기간동안 선거용 포스터 게시장이 설치되며, 선거운동위원회가 설치 (선거법 제166조) - 선거일 2주전 월요일부터 시작하고 선거일 전일 자정에 종료함. 2차 투표의 선거운동기간은 1차 선거일 익일부터 시작하고 선거일 전일 자정에 종료함 (선거법시행령 제26조) ※ 다만, 전자통신 이용 선거운동 메시지 배포는 선거일 전일 오전 0시부터 제한됨(선거법 제49조). | 선거법 제164조 |
| 독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운동 기간 등 법적 규정이 없으며, 선거운동이 자유로움. 일반적으로 각 정당은 대개 선거일 약 3개월 전에 선거사무소를 개설하고 선거체에 들어감 - 실제로 선거운동 개시시기, 선거운동총비용액 등 정당간의 협정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선거운동이 전개되고 있음 | - |
| 일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운동은 후보자 신고가 있는 날부터 선거기일 전일까지 할 수 있음. - 참의원의원선거: 17일간 - 중의원의원선거: 12일간 ※ 보궐선거 선거운동기간도 위 기간과 같음. | 공직선거법 제129조 |
| 스페인 | 선거소집일 후 38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15일 동안 | 선거법 제53조 |
| 스웨덴 | 규정 없음. | - |
| 스위스 | 규정 없음. | - |
| 캐나다 ²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기간(election period)을 선거소집령의 발행일로부터 선거일 또는 선거소집령이 철회되거나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까지로 함. 선거기간을 고려하면 최소선거운동기간은 36일이며, 최대 50일까지임. 선거운동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으므로 사전선거운동의 개념도, 기간도 명시적 규정이 없음. | 선거법 제2,57조 |
| 호주 | 규정 없음. | - |
| 오스트리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58일 이전까지 (선거운동기간에 관한 특별 규정은 없음) | 하원선거법 제42조 |
| 벨기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일전 4개월부터 선거일까지 | 선거비용제한법 제4조 |

| 국가명 | 선거운동기간 | 근거규정 |
|----------------------|---|---|
| 체코 | • 상하원 선거일을 공표한 날부터 상하원 선거 최종결과 발표 시까지 | 선거법 제16조제3항 |
| 칠레 | • TV를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30일 전부터 선거일 3일 전까지 • 언론 및 라디오를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3일 전까지 | 선거법 제31,32조 |
| 덴마크 ²⁹⁾ | • 선거법에서 선거운동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총리가 선거실시를 공표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이 시작되며 선거일 당일까지 선거운동가능(투표소 내부 제외) | 덴마크 의회 |
| 에스토니아 | • 규정없음 | - |
| 핀란드 ³⁰⁾ | • 선거운동기간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없음 | - |
| 그리스 | • 선거 소집은 의회 임기 종료 또는 해산 30일 전 내각의 승인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선거운동은 선거소집 대통령령 공표 또는 의회 임기 종료 12일 전부터 시작 가능 | 선거법 제31조제1,3항 |
| 헝가리 | • 선거일 전 5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 가능 | 선거절차법 제139조 |
| 아이슬란드 ³¹⁾ | • 관련규정 없음. ※ 공식적 선거운동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으며 선거일까지 가능 | - |
| 아일랜드 | • 선거벽보는 선거일 30일 전 또는 선거일 확정 공표일로부터 선거일까지 두 가지 중 짧은 것으로 함. • 모든 선거벽보는 선거일 종료 후 7일 이내로 제거 | 쓰레기처리에 관한 법 ³²⁾ 제19조제7항제c호 |
| 이스라엘 | •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 선거운동법 제2조 |
| 이탈리아 ³³⁾ | • 선거 공표는 의회 임기 종료일로부터 70일 이내로 내각 결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표 • 선거 공표일로부터 선거일 24시간 전까지 | 헌법 제61조 하원선거법 제11조 선거선전규율규정 제212호 제9조 |
| 라트비아 | •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가능. • 의회, 지방의회 해산 또는 주민소환, 재선거 공표 시 해당 공표일자로부터 선거일까지를 선거운동기간으로 함. | 사전선거운동법 제1조제4항 |
| 리투아니아 | • 선거 실시 공고일부터 선거기간이 끝날 때까지 ※ 단, 선거일에는 직간접적으로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선거권자에 대한 지지호소 및 투표의 대가로 선물이나 기타 보상을 제공하는 행위)금지 | 의회선거법 제5조 |
| 룩셈부르크 ³⁴⁾ | • 선거운동 기간을 규정하는 법률이 없음. • ‘일반적으로’ 선거일 5주 전부터 시작 | - |
| 멕시코 | • 대통령과 상원의원, 하원의원의 선거운동은 선거실시연도에 90일간 • 하원 임기만료로 인한 하원의원 선거는 60일간 이루어짐 • 각 정당의 선거운동은 당해 선거 후보자등록일의 익일부터 선거일 3일전까지 • 선거일과 선거일전 3일 사이의 기간에는 선거운동이 금지 | 연방선거법 제251조 |
| 노르웨이 ³⁵⁾ | 규정 없음. | - |
| 네덜란드 | • 후보자 등록 44일 이후에 선거가 실시됨. (선거운동기간에 관한 특별 규정은 없음.) | 선거법 제11조 제1항 |
| 뉴질랜드 ³⁶⁾ | • 일반적인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가능 | 방송법 |

| 국가명 | 선거운동기간 | 근거규정 |
|-------|--|------------------------|
| | • 다만 TV나 라디오를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소집일(writ day)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가능 | 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 |
| 폴란드 | • 선거일을 공표한 때부터 선거일 24시간 전까지 | 선거법 제104조 |
| 포르투갈 | • 선거일 14일 이전부터 선거일 전날 자정까지 | 선거법 제53조 |
| 슬로바키아 | • 선거일 공표일로부터 선거일 48시간 전까지 | 선거운동법 제2조제2항 |
| 슬로베니아 | •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 24시간 전까지 ※ 선거일과 선거일 전 24시간 이후부터는 선거운동이 금지됨. | 의회선거법 제5조 선거운동법 제2조 |
| 터 키 | • 선거일 10일 전 오전부터 선거일 전날 18:00시까지 | 선거기본법 제49조 |

※ 토요일, 일요일, 성탄일 전일 및 성탄일, 세족목요일 및 성금요일(Maundy Thursday, Good Friday: 예수의 수난일로 부활절 직전의 목요일과 금요일을 의미), 일반공휴일(bank holiday: 연 7회의 법정휴일) 및 공공의 축제일 또는 국장일 제외

- 28) 캐나다 선거관리청 홈페이지
<https://www.elections.ca/content.aspx?section=vot&dir=faq&document=faqelec&lang=e> (검색일 2019.5.17.)
- 29) OSCE. ‘덴마크 2019 총선보고서’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denmark/419231?download=true> (검색일 2019.9.20.)
 덴마크 의회. 총리, 6월 5일 선거 소집
<https://www.ft.dk/da/aktuelt/nyheder/2019/05/udskrivelse-af-valg> (검색일 2019.9.24.)
 미국 하원 도서관. Constitution Day and Election Day in Denmark
<https://blogs.loc.gov/law/2019/06/constitution-day-and-election-day-in-denmark/> (검색일 2019.9.24.)
- 30) OSCE. ‘핀란드 총선보고서’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finland/411758> (검색일 2019.5.17.)
- 31) OSCE. ‘아이슬란드 총선보고서’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iceland/348621?download=true> (검색일 2019.7.29.)
- 32) Litter Pollution Act 1997, as substituted by section 9 of the Electoral(Amendment)(No.2) Act 2009
<https://www.ucd.ie/t4cms/The%20Law%20on%20Election%20Posters.pdf>
<http://www.irishstatutebook.ie/eli/2009/act/9/section/9/enacted/en/html#sec9> (검색일 2019.8.13.)
<https://www.dca.gov.ie/en-ie/environment/topics/waste/litter/Pages/Election-Posters0331-3567.aspx> (검색일 2019.8.14.)
- 33) OSCE. ‘이탈리아 2018 총선보고서’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italy/369086?download=true> (검색일 2019.9.20.)
- 34) 룩셈부르크 행정부 홈페이지
<https://elections.public.lu/en/support/faq/faq-legislatives.html> (검색일자 2019.6.7.)
- 35) OSCE. ‘노르웨이 총선보고서’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103545?download=true> (검색일 2019.9.23.)
- 36) 뉴질랜드선거위원회.
<https://elections.nz/guidance-and-rules/for-candidates/campaign-rules-for-candidates/> (검색일 2019.7.29.)

<표 6-2> OECD국가의 무료 방송시간 및 무료 인쇄물 배정방법

| 국가명 | 배정방법 | 근거규정 |
|----------------------|--|-------------------------------|
| 영 국 | Broadcaster's Liaison Group이 각 정당에 배정 |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제11조 |
| 미 국 | 해당 없음. | - |
| 프랑스 | 의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을 대상으로 Supreme Council for Audiovisual Services가 각 정당에 배정 | 선거법 제L167-1조 |
| 독 일 | 선거에 참여한 정당은 방송관련 비용을 보전 받음. | 주간(州間) 방송 협정 제42조 |
| 일 본 | 선거에 참여한 정당·무소속 후보자는 TV,라디오, 신문광고를 무료로 할 수 있음. | 공직선거법 제149,150조 |
| 스페인 | 선거에 참여한 정당·연정·연합 및 선거인 단체의 총 득표수에 따라 배정 | 선거법 제61,64,65,67조 |
| 스웨덴 ³⁷⁾ | 해당 없음. | - |
| 스위스 | 해당 없음. ※ 방송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은 금지 | 라디오·텔레비전법 제10조 ³⁸⁾ |
| 캐나다 | • 각 정당의 하원의석수와 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 • 각 정당의 출마 후보자 수에 따라 추가 방송시간 배정 | 선거법 제338,339조 |
| 호 주 ³⁹⁾ | • 두 개의 주요정당에게는 동일 시간 배정 • 소수당이나 무소속 후보자는 득표수나 의석수를 기준으로 할당 | - |
| 오스트리아 | 해당 없음. | - |
| 칠 레 | 의원선거에서 각 정당에 대한 방송시간은 이전 선거 결과를 기준으로 배정되며, 이전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가장 적은 득표수를 가진 정당과 동일한 시간을 배정받음 | 선거법 제32조 |
| 체 코 | 모든 정당에 동일한 시간 배정 | 선거법 제16조제8항 |
| 덴마크 ⁴⁰⁾ | 모든 정당에 동일한 시간 배정 | 정당법 제10조 |
| 에스토니아 ⁴¹⁾ | 해당 없음. | - |
| 핀란드 ⁴²⁾ | 선거 결과를 기준으로 배정 | - |
| 그리스 | Inter-party Committee of Elections와 National Council for Radio and Television가 선거 결과를 기준으로 배정 | 정당자금지원법 제10조제1항 |
| 헝가리 | 모든 정당에 동일한 시간 배정 | 헌법(Foundation) 제9조 |
| 아이슬란드 ⁴³⁾ | 모든 정당에 동일한 시간 배정 | - |
| 아일랜드 | 해당 없음. | 방송법 제39조제2항 |
| 이스라엘 ⁴⁴⁾ | • 선거에 참여한 모든 정당에 동일한 시간 할당 • 다만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추가 할당 | - |
| 이탈리아 | 모든 정당에 동일한 시간 할당 | 통합방송법 제7조제2항 |
| 리투아니아 | 모든 정당에 동일한 시간 할당 | 선거법 제51조제1항 |
| 룩셈부르크 | 모든 정당에 동일한 시간 할당 | - |

| 국가명 | 배정방법 | 근거규정 |
|---------------------|---|-------------------|
| 멕시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자금의 30%는 모든 정당에 동일한 시간 배정 • 70%는 이전 선거 결과를 기준으로 배정 | 선거법 제167조 |
| 노르웨이 ⁴⁵⁾ | 법적인 할당은 없으나 방송사들 자체 규정을 통해 배정 | - |
| 네덜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총선에서 1석이상 획득 정당에게 연간 시간 배정 • 모든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게 배정 | 미디어법 제6조제1,2항 |
| 뉴질랜드 | 선거위원회가 배정 | 방송법 제73조 |
| 폴란드 | 1/2이상의 선거구에 출마한 모든 정당에 동일한 시간 배정 1/2미만의 선거구에 출마한 정당은 후보자 수에 비례하여 배정 | 선거법 제253조 |
| 포르투갈 | 각 정당의 출마한 후보자 수에 비례해 정당에 배정 | 선거법 제63조제1항 |
| 슬로바키아 | 해당 없음. ※ 유료방송 할당 기준만 선거법에 있음. | 선거법 제15,24조 |
| 슬로베니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석이 있는 정당에 동일하게 배정 • 총 방송 시간의 1/3은 의석이 없는 정당에게 동등하게 배정 | 라디오·텔레비전 방송법 제12조 |
| 터 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에 참여한 정당에게 배정 • 의석수 등에 따라 추가 배정 | 선거인 등록기본법 제52조 |

※ 벨기에, 라트비아는 해당 정보 없음.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Comparative Data.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ME037> (검색일 2019.10.8.)

- 37) OSCE. 스웨덴 총선보고서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70947> (검색일 2019.10.8.)
- 38) Federal Law of 24 March 2006. regulating radio and television(Loi fédérale sur la radio et la télévision) <https://www.admin.ch/opc/fr/classified-compilation/20001794/index.html> (검색일 2019.10.8.)
- 39) 호주선거위원회. https://www.aec.gov.au/About_AEC/Publications/backgrounders/authorisation.htm (검색일 2019.10.8.)
- 40) 덴마크 의회선거제도. p.21 https://www.thedanishparliament.dk/~media/pdf/publikationer/english/the-parliamentary-system-of-denmark_2011.ashx (검색일 2019.10.8.)
- 41) OSCE. 에스토니아 총선보고서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estonia/409202?download=true> (검색일 2019.10.8.)
- 42)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ME037>
- 43) 아이슬란드 법무부. 2010 ‘아이슬란드 Greco 권장사항 진행보고서’ p.8 <https://www.stjornarradid.is/media/innanrikisraduneyti-media/media/Skyrslur/GRECO---Progress-report-on-RC-I-II-Iceland-%28Theme-I%29.pdf> (검색일 2019.10.8.)
- 44) LA 이스라엘 총영사관. ‘2015 이스라엘 선거정보’ <https://embassies.gov.il/la/Pages/FAQ-Elections-in-Israel.aspx> (검색일 2019.10.8.)
- 45) OSCE. 노르웨이 총선보고서.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norway/333011> (검색일 2019.10.8.)

<표 6-3> OECD국가의 선거운동방법

| 국가명 | 주요 선거운동방법 | 관련규정 |
|----------------------|---|-------------------|
| 영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스터, 전단, 호별방문, 선거인사문 송부, 스티커, 신문광고 등 선거운동방법에 제한이 없음. 정당에 의한 정책위주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 의한 선거운동 신문·잡지 등은 자유롭게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정치적인 견해를 표명할 수 있음. | 1983년 국민대표법 제91조 |
| 미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스터, 가정배달 우편물, 광고전단, 안내 팸플릿, 스티커, 정당기관지, 신문광고, 방송광고, 전화 및 PC이용선전, 호별방문, 좌담·연설회, 광고게시판 등 선거운동방법에 제한이 없음. | - |
| 독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운동에 대해 특별한 법적 규제가 없어 자유롭게 선거운동 선거일에 투표소 건물구내와 입구에서의 구호, 음향, 문서 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와 서명, 수집활동 등의 금지 이외에는 선거운동방법의 제한이 없으며, 신문광고, 벽보첩부, 선전물, 공개집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 | - |
| 프랑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전벽보, 집회고지벽보, 회람장, 투표용지송부, 방송연설(TV, 라디오), 선거집회 전단 등 정당 및 정치단체는 라디오·TV 등 공공방송을 통하여 정해진 시간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 법에 규정된 벽보판에는 개인용 포스터 게시가 가능하며, 벽보·전단 홍보물은 인쇄자의 주소·이름을 기재하여 배부할 수 있음. | 선거법 제51조 |
| 일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상엽서, 선거운동용 전단(2종 이내), 포스터, 문서·도화의 게시, 신문광고(5회 이내), 정견방송, 경력방송, 개인연설회, 가두연설, 선거공보, 공개장소방문, 전화 등의 선거운동방법이 가능함. | 공직선거법 제13장 |
| 스페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집회, 현수막, 벽보설치, 선거비용의 20% 내에서 민간소유의 정기간행인쇄물 및 라디오방송을 통한 홍보 등 선거운동을 위해 공영방송매체 무료 이용이 가능함. | 선거법 제54,58,64조 |
| 스웨덴 ⁴⁶⁾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운동에 대해 특별한 법적 규제가 없어 자유롭게 선거운동 선거벽보, 선전물, 호별방문, 대중집회, 라디오·TV토론, 인터넷, 소셜 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등을 이용한 다양한 선거운동이 가능 | - |
| 스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음. | - |
| 캐나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스터, 전단, 가두배포물, 라디오·TV방송, 선거집회, 간판, 현수막 등 선거운동방법 제한 없음(제81조는 아파트 호별방문 또는 다세대주거단지 공동구역에서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함). | 선거법 제81조, 제325조의1 |
| 호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광고, 전단, 팸플릿 및 선거표지(신문광고에 의한 고지와는 성격이 다름), 비디오 영상물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 매체의 변화에 따라 전화, 문자메시지, 보이스콜(bulk voice call), robocall⁴⁷⁾ 등 새로운 선거운동 방법이 활용되고 있음. | - |
| 오스트리아 ⁴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TV토론, 인쇄매체광고, 간판 및 선거벽보, 가두 배포물, 호별 방문, 온라인과 소셜미디어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이 넓게 허용 | 정당자금법 제4조제2항 |
| 벨기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문, TV 및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정치적 논고, 공공방송에서의 토론, 인쇄매체를 이용한 정치적 선전, 선거권자들과의 만남, 호별방문을 통한 유세활동 등 | 선거비용제한법 제4조 |
| 체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디어를 사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의뢰인 및 제작자의 신원을 공개해야 함 | 선거법 |

| 국가명 | 주요 선거운동방법 | 관련규정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 연합,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운동 시 이름, 정당약칭을 기재해야 하며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성, 이름을 기재 | 제16조제4,6,8항 |
| 칠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문광고, 라디오, TV, 사진, 시청각 미디어, 유인물, 선거벽보, 깃발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 공원, 공공장소에서 선거운동 가능 공공장소에 2m²를 초과하는 대형 부착물을 게시하는 것은 금지 영화관 등에서의 선거운동, 항공기를 사용한 선거운동은 금지 | 선거법 제31,32,35조 |
| 덴마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소 선거운동 금지 이외에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규정 없음. | 선거법 제50조, 제61조제8항, 제107조 |
| 에스토니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TV, 라디오, 온라인, 옥외광고, 신문광고, 선전물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규정은 없음 | 정당법 제12'조제9항 |
| 핀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문, 무료신문, 정기간행물, 라디오, 텔레비전, 네트워크 등의 미디어를 통한 홍보, 옥외광고, 자체 발행한 선거홍보물, 기타 인쇄물을 통한 선거운동 및 호별방문, 공공장소에서 연설, 토론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 | 선거자금법 제6조제3항 |
| 그리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외 광고, TV/라디오 광고, TV/라디오 토론 프로그램 출연, 배너, 포스터 및 기타 관측물 및 홍보자료 게시, 선거공보 배포, 선거사무실 설치, 선거연설 사전 선거운동기간에는 대부분 제한됨 | 선거법 제44~48조 |
| 헝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 벽보, 스티커 등 인쇄물 첨부, 거리유세,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직접 홍보, TV나 극장에서의 선거광고, 인터넷 미디어의 활용, 선거집회 등의 다양한 방법이 허용 | 선거절차법 제140~149조 |
| 아이슬란드 ⁴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법적규제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거리를 다니며 선거권자를 만나는 등의 유세활동과 호별방문, 방송, 인쇄 매체 및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 - |
| 아일랜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벽보를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 특별한 규정 없음.⁵⁰⁾ | 쓰레기처리에 관한 법 제19조 |
| 이스라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벽보, 전단, 신문광고, 집회, 라디오·TV 등의 수단을 사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선거운동법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야 함. | 선거운동법 제2a~c,5,7,10, 12,15,15a, 16a~d조 |
| 이탈리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서·포스터의 게시 장소, 선거일 전일 및 선거일 집회금지, 라디오·방송이용 제한 외에 선거운동방법 규정 없음. | 선거선전 규제규범 제212호 제1,3조 상·하원의원 선거운동규제 제515호 제2조 |
| 라트비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TV, 라디오, 온라인 매스미디어, 인터넷, 공공장소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방법이 가능 | 사전선거운동법 제2~6장 |
| 리투아니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헌법과 선거법, 도덕성, 공정성 등에 위반되지 않는 한 다양한 형태와 방식(비디오, 오디오, 인쇄물 공공장소, 건물, 차량 등 이용)으로 선거운동 가능 중앙선거위원회에서 후보자명단 발표 후, 후보자는 공영방송매체(TV, 라디오) 무료사용 가능 | 의회선거법 제51조 |

| 국가명 | 주요 선거운동방법 | 관련규정 |
|---------------------|--|---------------------|
| 룩셈부르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을 규정하는 법률이 없으며 정당 간 합의에 의해 규칙을 정함. • 선거일에도 선거운동이 가능 | - |
| 멕시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장소 집회, 가두행진, 서면문구, 사진자료, 녹화물, 프로젝트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 | 연방선거법 제242,243조 |
| 노르웨이 ⁵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규정 없음. | - |
| 네덜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운동에 대해 특별한 법적 규제가 없어 자유롭게 선거운동 • TV나 소셜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 호별방문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선거운동 등 | - |
| 뉴질랜드 ⁵²⁾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법상 선거운동은(election advertisement) 선거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는 모든 수단으로 정의되어 있음. • 신문, 벽보, 게시판, 기타 인쇄물, 옥외광고, TV, 라디오 등을 통한 선거운동으로 광범위하게 허용 • 선거위원회에 선거운동의 정의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음. | 선거법 제3A조, 제204I조 |
| 폴란드 ⁵³⁾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벽보, 전단지, TV나 라디오를 통한 후보자토론회, SNS 등 미디어를 활용한 선거운동 가능 | 선거법 제110,117조 |
| 포르투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법은 자유로운 선거활동에 대해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중립성과 형평성, 표현과 정보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규정 • 방송, 선거벽보, 옥외·옥내 집회, 가두연설 등 | 선거법 제53~66조 |
| 슬로바키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 TV, 라디오, 선거벽보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 | 선거운동법 제10,12,13,16조 |
| 슬로베니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라디오, 전자간행물, 전자통신, 대중집회, 포스터, 전단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 선거운동법 제1조제5항 |
| 터 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회 금지장소, 확산기 이용, 선전물 또는 인쇄물 배포 및 부착장소, 공직자 선거유세 참여 관련 규정 등을 제외한 선거운동 방법 제한 없음 | 선거기본법 제49~66조 |

- 46) OSCE. 스웨덴 2018 총선보고서. p.6.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383934?download=true> (검색일 2019.8.9.)
- 47) <https://www.sbs.com.au/news/what-political-parties-can-and-can-t-get-away-with-during-the-election-campaign>
(검색일 2019.7.31.)
- 48) OSCE. 오스트리아 총선보고서.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austria/370866?download=true> (검색일 2019.7.29.)
- 49) OSCE. 아이슬란드 2017 총선보고서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iceland/348621?download=true> (검색일 2019.7.29.)
- 50) https://merrionstreet.ie/MerrionStreet/en/News-Room/Releases/Discussion_Paper_%E2%80%93_Regulation_of_Online_Political_Advertising_in_Ireland.pdf (검색일 2019.8.14.)
- 51) OSCE 노르웨이 2017 총선 보고서.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norway> (검색일 2019.9.23.)
- 52) 뉴질랜드 선거위원회. <https://elections.nz/guidance-and-rules/for-candidates/campaign-rules-for-candidates/> (검색일 2019.9.23.)
- 53) OSCE. 폴란드 총선보고서.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poland/426566?download=true> (검색일 2019.9.23.)

제7장 선거운동 제한·금지사항

<표 7-1> OECD국가의 확성기 사용제한

| 국가명 | 제한 내용 | 관련규정 |
|-------|---|--------------------------|
| 영국 |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 소음법 ⁵⁴⁾ |
| 독일 | 주거지역에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13시-15시 | 노스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지침 |
| 일본 |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 야간 가두연설회 금지 | 공직선거법 제164조의6 |
| 캐나다 | 선거일에 금지 | 선거법 제165조 |
| 호주 | 선거일에 금지 | 연방선거법 제340조 |
| 덴마크 | 선거법 상 제한 없음. ※ 다만, 법무부 장관은 도로나 광장에서 질서를 방해하는 선거운동을 규제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에 따라 벌금 등의 처벌내용을 명시하는 규칙을 정할 수 있음. | 선거법 제107조 |
| 에스토니아 | 선거법 규정은 없으나 지방법에 따라 공무수행의 일반적인 소음규제법이 있음. 수도인 탈린시티의 경우 오후 11시에서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 탈린시티 공공기관 설립 및 질서 규정 제3조 |
| 그리스 | 내무부, 행정부 장관은 협의를 통해 투표소, 정당 사무소 및 차량 및 기타 장소에서의 확성기 운용시간 및 최대 음량을 규정하며, 시에스타(공중 휴식시간) 및 학교나 병원과 인접한 장소에 사용 금지 | 선거법 제46,47조 |
| 아이슬란드 |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기 사용 금지 | 의회선거법 제117조제c항 |
| 이스라엘 | 합법적 집회, 회의 등에서 후보자 목소리 증폭용도 외 확성기 사용 금지 선거일 전일 19시부터 확성기 사용 금지 | 선거운동법 제4조 선거법 제129조 |
| 이탈리아 | 자동차의 확성기 사용은 선거선전 집회와 연설이 열리는 시간과 장소를 공고하는 경우에 한하며, 집회일과 그 전날 9시부터 21시30분까지로 제한 | 선거선전 규제규범 제130호 제7조 |
| 네덜란드 | 확성기가 부착된 차량은 일요일이나 공휴일 운행이 금지 평일에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제한 | 일반지방규칙 제4:6조 |
| 뉴질랜드 | 선거일에 금지 | 선거법 제197조제1항c |
| 포르투갈 | 음성을 통한 선거운동은 허가가 필요 없이 자유롭게 가능함 제한 규정은 없음 | 선거법 제66조 |

| 국가명 | 제한 내용 | 관련규정 |
|-----|---|------------|
| 터 키 | 정당의 요청에 따른 확성기 사용을 위한 장소, 시간, 기타 사항들은 각 지역구 선거위원회가 결정 정당은 각 지역구 선거위원회 운영방침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고 지방자치단체 확성기 시설을 사용할 수 있음. ※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자의 실내의 선거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됨. | 선거기본법 제56조 |

※ 미국,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칠레, 핀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의 경우 관련 규정 없음.

54) 소음법(Noise Act. 1996)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96/37/contents> (검색일 2019.10.31.)
<http://www.environmentlaw.org.uk/rte.asp?id=70> (검색일 2019.10.31.)

<표 7-2> OECD국가의 선거일 선거운동 가능 여부

| 국가명 | 가능 여부 | 관련규정 |
|-------|--|----------------------------------|
| 영국 | 선거운동 가능(주로 투표참여 위주) | - |
| 미국 | 선거운동이 가능하나 투표소로부터 일정거리 내에서는 금지 ※ 앨라배마 주는 9m이내에서 금지 | 주 법 |
| 프랑스 | 불 가(선거일 시청각 통신수단에 의한 선거운동 규제) | 선거법 제49조 |
| 독일 | 불 가(투표소 내부 및 입구에서 선거인에게 영향 미치는 행위 금지) | 연방선거법 제32조제1항 |
| 일본 | 불 가(투표소에서 300m 밖에 선거사무소는 설치가능) | 공직선거법 제129조 |
| 스페인 | 불 가(선거운동은 선거일 전일 24시까지만 가능) | 선거법 제93조 |
| 스웨덴 | 투표소 인근에서 선거인의 투표를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 기타활동을 금지 | 선거법 제8절 제3조 |
| 캐나다 | 선거일 확성장치 사용 금지, 투표소 내·외부 선전물 등 금지 | 선거법 제165,166조 |
| 호주 | 선거일 투표소의 출입구 6m 이내의 공·사유지에서 투표를 위한 유세, 특정 후보자 지지행위 등 금지 | 연방선거법 제340조 |
| 오스트리아 | 선거일 투표소와 일정 반경 내에서는 직접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홍보물의 부착이나 배부, 집회 등 모든 종류의 선거운동이 금지 | 의회선거법 제58조 |
| 벨기에 | 투표소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금지 | 선거법 제111조 |
| 체코 | 상하원 선거 최종결과 발표시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나 투표소가 위치한 건물 내부 또는 인근에서의 정당, 연합, 후보자 연관 선거운동 금지 | 선거법 제16조제3,9항 |
| 칠레 | 불 가(각 정당의 선거운동은 선거일 3일 전에 종료되어야 함) | 선거법 제35조 |
| 덴마크 | 투표소 선거운동 금지 | 선거법 제50조, 제61조제8항, 제107조 |
| 에스토니아 | 투표소 내부의 선거운동 금지 | 의회선거법 제5조제3항 |
| 핀란드 | 인쇄물의 배포나 게시, 연설 등 선거권자의 투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투표소 주변, 투표소 내에서 금지 | 선거법 제72조 |
| 그리스 | 선거일 전일과 당일 모든 선거운동 금지 | 선거법 제48조 |
| 헝가리 | 선거일 당일 미디어를 통한 정치 광고를 방송하거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금지 투표소 주변의 150m이내이거나, 선거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는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 | 선거절차법 제143조, 제145조제1항, 제147조제4a항 |
| 아이슬란드 | • 투표소 등 투표시설에서 연설하거나, 정치적 주장이 드러나는 연설문, 광고판 등을 노출하는 행위 금지 • 투표시간 중 정당의 휘장, 기호 등 정당을 식별하는 표기를 가진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확성기를 사용한 선전이 금지됨 | 의회선거법 제117조 |

| 국가명 | 가능 여부 | 관련규정 |
|-------|--|----------------------------------|
| 아일랜드 | 불 가(선거일 전날 14:00부터 선거 당일까지) ⁵⁵⁾ | BAI Rule 27 ⁵⁶⁾ |
| 이스라엘 | 불 가 선거일 전날 19:00부터 선거 당일까지 집회, 행진, 확성기, 방송, TV를 사용한 선거운동 금지 | 선거법 제129조 |
| 이탈리아 | 선거일 전일과 당일에는 집회, 벽보, 선전물, 현수막을 비롯한 직간접적 선거선전 금지 ※ 투표소 입구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선거운동 금지 | 선거선전규율규정 제212호 제9조 |
| 라트비아 | 투표소 건물 내부 및 출입구 반경 50m 이내 선거운동 금지 선거일 당일 라디오, 방송, 공공장소 이용, 인터넷 등 선거운동 금지 | 선거법 제19조제1항 사전선거운동법 제32조제1,2항 |
| 리투아니아 | 불 가(선거 개시 시각 30시간 전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 ※ 투표소가 위치한 건물 주변 50m 이내에 시각 및 음성 선거운동 자료 게시 금지 | 선거법 제56조 |
| 룩셈부르크 | 선거운동 기간을 규정하는 법률이 없으며 정당 간 합의에 의해 규칙을 정함. | OSCE ⁵⁷⁾ |
| 멕시코 | 불 가(각 정당의 선거운동은 선거일 3일전에 종결되어야 함.) | 연방선거법 제251조제3항 |
| 노르웨이 | 규정 없음. ⁵⁸⁾ | - |
| 네덜란드 | 투표소 내에서 선거인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금지 | 선거법 제J36조 |
| 뉴질랜드 | 선거 당일 투표소 안이나 주변에서 선거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의 접근 금지 시위 또는 행렬, 확성기·방송·영화 장비 등을 이용한 홍보 또는 성명서나 정당명, 슬로건, 로고 등의 첩부, 전시, 배포 금지 | 선거법 제197조 |
| 폴란드 | 선거일의 24시간 전부터 투표가 마감 될 때까지 집회, 행렬, 연설, 전단지 배포, 후보자 지지를 선동하는 행위나 투표소와 투표소 주변에서의 모든 형태의 선거운동은 금지 | 선거법 제107조 |
| 포르투갈 | 투표소 500미터 이내에서 후보자명부의 상징, 약자, 기호 등의 선전을 포함한 모든 선거운동 금지 | 선거법 제92조 |
| 슬로바키아 | 불 가(각 정당의 선거운동은 선거일 48시간 전에 종료되어야 함) | 선거운동법 제2조제2항 |
| 슬로베니아 | 불 가(선거일 투표소 구내에서는 모든 형태의 선거운동 금지) ※ 선거일 최소 24시간 전에 선거운동 종료 | 선거법 제5,65조 |
| 터 키 | 불 가(각 정당의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날 18:00에 종료되어야 함) | 선거기본법 제49조 |

※ 스위스는 선거운동 관련 규정이 선거법에 없음.

55) Broadcasting Authority of Ireland(BAI; 아일랜드 방송위원회). 'Rule 27 Guidelines.'

56) BAI(Broadcasting Authority of Ireland; BAI). Rule 27 of the BAI Code of Fairness, Objectivity and Impartiality in News and Current Affairs Guideline section 10 'Moratorium' (p.10) (검색일 2019.8.27.)

57) <https://www.osce.org/odihr/389582?download=true> (검색일 2019.8.26.)

58) OSCE. 노르웨이 2013 총선 보고서.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103545?download=true> (검색일 2019.9.24.)

<표 7-3> 각국의 여론조사 결과공표 제한 기간

| 구분 | 국가명 |
|----------------|---|
| 선거일 전일부터 |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불가리아, 캐나다, 차드, 콜롬비아, 프랑스, 기니비사우, 이라크, 라트비아, 리비아, 몰타, 미크로네시아, 노르웨이, 팔라우, 폴란드, 포르투갈, 사모아, 산마리노, 슬로바키아 |
| 선거일 전 2일~3일부터 |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호주, 부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코스타리카, 체코공화국, 조지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루마니아, 레위니옹, 남아프리카공화국, 동티모르,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
| 선거일 전 4일~5일부터 | 알바니아, 벨라루스, 캄보디아, 이집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몰도바, 러시아, 스페인, 타지키스탄 |
| 선거일 전 6일~7일부터 | 볼리비아, 키프로스, 피지, 한국, 몽골, 페루, 터키, 베네수엘라 |
| 선거일 전 8일~9일부터 | 아르헨티나, 가봉 |
| 선거일 전 10일 이상부터 | 카보베르데, 칠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리스,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탈리아, 레바논, 몬테네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파나마, 파라과이, 싱가포르, 대만, 튀니지 |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Comparative Data.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ME062> (검색일 2019.5.28.)

<표 7-4> 각국의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기간 변동 현황

| 국가명 | 1996 | 2002 | 2012 | 2017 |
|------------|------|------|------|------|
| 아르헨티나 | 0 | 1 | 15 | 2 |
| 아제르바이잔 | - | - | 0 | 1 |
| 볼리비아 | 2 | 2 | - | 30 |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 | 0 | 1 | 2 |
| 브라질 | 0 | 0 | 2 | 7 |
| 불가리아 | 1 | 7 | 0 | 1 |
| 캐나다 | 3 | 2 | 3 | 1 |
| 콜롬비아 | 7 | 1 | 7 | 7 |
| 코스타리카 | - | 2 | 7 | 3 |
| 키프로스 | 0 | 7 | 7 | 7 |
| 체코공화국 | - | 7 | 3 | 3 |
| 에콰도르 | - | - | 15 | 8 |
| 엘살바도르 | - | - | 1 | 15 |
| 프랑스 | 7 | 1 | 0 | 2 |
| 그리스 | 0 | 15 | 15 | 1 |
| 조지아 | - | 0 | - | 2 |
| 온두라스 | - | 0 | 45 | 30 |
| 인도 | 0 | 0 | 0 | 2 |
| 인도네시아 | 21 | 0 | 0 | 7 |
| 이스라엘 | 0 | 1 | 0 | 5 |
| 이탈리아 | 28 | 15 | 15 | 14 |
| 카자흐스탄 | 1 | 0 | 0 | 5 |
| 쿠웨이트 | - | - | 3 | 0 |
| 라트비아 | 0 | 0 | 0 | 1 |
| 룩셈부르크 | 30 | 30 | - | 5 |
| 마케도니아 | 0 | 5 | 5 | 1 |
| 멕시코 | 7 | 7 | 3 | 4 |
| 네 팔 | 0 | 1 | 0 | 0 |
| 노르웨이 | 0 | 0 | 1 | 1 |
| 니카라과 | 0 | 0 | - | 3 |
| 파나마 | - | 1 | - | 20 |

| 국가명 | 1996 | 2002 | 2012 | 2017 |
|----------|------|------|------|------|
| 파키스탄 | - | 0 | 0 | 1 |
| 팔레스타인 | - | - | 0 | 1 |
| 페 루 | 15 | 7 | 7 | 7 |
| 폴란드 | 12 | 1 | 1 | 1 |
| 포르투갈 | 7 | 1 | 1 | 1 |
| 루마니아 | - | 2 | 7 | 2 |
| 러시아 | 2 | 0 | 5 | 6 |
| 세르비아 | - | - | 2 | 1 |
| 싱가포르 | - | - | 1 | 14 |
| 스리랑카 | - | - | 7 | 0 |
| 슬로바키아 | - | 14 | 0 | 14 |
| 슬로베니아 | 1 | 7 | 0 | 1 |
| 대 만 | 0 | 0 | 10 | 10 |
| 트리니다드토바고 | - | - | 0 | 1 |
| 우크라이나 | 0 | 0 | 15 | 1 |
| 우루과이 | 15 | 7 | 2 | 4 |
| 베네수엘라 | 15 | 2 | 7 | 7 |

※ -: 설문에 참여하지 않은 해

출처: Esomar. Wapor. 2017. 'Freedom to Conduct Opinion Polls'

https://www.esomar.org/uploads/public/library/news/ESOMAR-WAPOR_Freedom-to-Conduct-Opinion-Polls.pdf (검색일 2019.10.1.)

<표 7-5> OECD국가의 여론조사 결과공표 제한

| 국가명 | 제한 여부 | 근거규정 |
|-------|--|--|
| 프랑스 | 2002년 법개정을 통해 선거일 바로 전날과 선거당일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 및 보도 금지 ※ 2002년 법 개정 전에는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가 선거 1주일 전부터 금지되어 있었는데 2001년 이러한 규정이 『유럽인권협약』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음. |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 제11조 |
| 스페인 | 선거일 전 5일부터는 어떤 방송매체를 통해서도 선거여론조사의 고시 또는 방송 금지 | 선거법 제69조 |
| 스위스 | 선거일 전 10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법적 규제는 아니나 언론인들 자체적인 규정) | 투표 이전 보도되는 선거 및 투표에 관한 여론조사에 관한 강령 제5조 |
| 캐나다 |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규제는 없음. | - |
| 호 주 | 선거법상 규제는 없음. 방송사는 선거일 전 수요일 정시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간까지 선거운동 제한 기간을 준수해야 함. | 방송법 schedule 2. part 2-3(2) |
| 체 코 | 의회 선거일 3일 전부터 투표 종료 시까지 모든 형태의 사전선거 또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 선거법 제16조제7항 |
| 칠 레 | 선거일 15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 선거법 제37조 |
| 그리스 | 선거 15일 전부터 투표 마감시까지 투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해당 기간 동안 미디어, 정당, 후보자는 여론, 정당, 직위, 인물 또는 경제·사회 주제에 대해 진행된 모든 형태의 여론조사 결과 및 선호도 공표 금지 선거 2주전 정당 의뢰로 진행된 여론조사는 내부용도로만 사용 가능 | 선거법 제49조제1,3항 |
| 헝가리 |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규제는 없으나, 출구조사는 선거 당일 공표 금지 | 선거절차법 제150조 |
| 이스라엘 | 선거 전날부터 선거 종료 시까지 신규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선거 전날부터 선거 종료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해당기간 이전에 발표된 여론조사결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최신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적어야 함. | 선거운동법 제16조 제B,H항 |
| 이탈리아 | 선거일 15일 전부터 선거결과에 대한 여론조사 공표 금지 ※ 해당기간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라 할지라도 공표 금지 | 선거미디어법 제8조 |
| 라트비아 | 선거일 22:00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 사전선거운동법 (의회및유럽의회) 제14조 |
| 룩셈부르크 | 선거일 5일 전부터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 관련자료 배포나 논평 금지 | 정치여론조사에 관한법 제3조 |
| 멕시코 | 선거일 3일 전부터 투표 마감시까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 연방선거법 제32,213조 |
| 뉴질랜드 | • 선거일 이전에 선거권자의 투표선택에 대한 여론조사 금지 • 선거일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금지 | 선거법 제197조제1항d호 |
| 폴란드 | 선거일 24시간 전부터 투표 마감시까지 여론조사 금지 | 선거법 제115조 |

| 국가명 | 제한 여부 | 근거규정 |
|-------|--|------------------------------------|
| 포르투갈 | 선거일 전날과 선거일 투표 마감시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 선거법 제53,141조 여론조사법 제7조, 제10조제1항 |
| 슬로바키아 | 선거일 투표 마감시까지 여론조사 공표 금지 | 의회선거법 제24조제14항 |
| 슬로베니아 | 선거일 전 7일부터는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2011.3.24.) | 선거운동법 제5조제2항 |
| 터 키 | 선거일 18:00까지 라디오 및 방송사는 선거 관련 뉴스나 결과예측, 논평 금지 (라디오)18:00부터 21:00까지 최고선거위원회에서 제공한 뉴스 및 발표 방송 가능 21:00부터 모든 방송 가능 | 선거기본법 제80조 |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네덜란드는 여론조사결과 관련 공표 금지 규정이 없음.

출처: WAPOR. 'The freedom to publish opinion poll results(A worldwide update of 2012).' p.7 Table.2
https://wapor.org/wp-content/uploads/WAPOR_FTP_2012.pdf (검색일 2019.7.29.)

<표 7-6> OECD국가의 출구조사 규제 현황

| 국가명 | 제한 여부 | 관련규정 |
|--------------------|---|-----------------------------------|
| 영국 | 투표마감 전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 1983년 국민대표법 제66A조 |
| 미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차원에서 출구조사에 관한 법적 규제 없으나, 주별로 출구조사 거리제한 규정이 있음. 위스콘신 주: 투표소 입장부터 투표를 마칠 때까지의 투표과정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출구조사를 투표가 실시되는 건물 현관 밖에서 하도록 하고 투표소 출입 등을 방해 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1988년 연방항소법원에서 300피트 이내에서 출구조사를 금지한 위싱턴 주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 | 위스콘신 주법 제5조제35항제5호 ⁵⁹⁾ |
| 프랑스 | 투표마감 전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 선거법 제52-2조 |
| 독일 | 투표마감 전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 선거법 제32조 |
| 일본 | 출구조사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인기투표의 공표 금지조항에 따라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출구조사 결과 공개는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됨. | 공직선거법 제138조의3 |
| 스페인 | 선거일 5일 전부터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 선거법 제69조 |
| 스웨덴 ⁶⁰⁾ | 언론들이 자체적으로 투표마감 전에 출구조사 결과 공표하지 않음 | - |
| 스위스 | 언론들이 자체적으로 투표마감 전에 출구조사 결과 공표하지 않음 | - |
| 캐나다 | 투표마감 전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 선거법 제328조 |
| 호주 | 법적 제재 규정은 없으나 출구조사가 거의 실시되지 않음 (문제가 많았던 출구조사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 경험과 공식선거결과 발표가 빨라졌기 때문) | - |
| 체코 | 투표마감 전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 선거법 제16조제7항 |
| 칠레 | 투표마감 전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 선거법 제37조 |
| 그리스 | 투표마감 전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 선거법 제49조제2항 |
| 헝가리 | 투표마감 전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 선거절차법 제150조 |
| 이탈리아 | 투표마감 전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 출구조사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여론조사의 공표 금지조항에 따라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출구조사 결과 공개는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됨. | 선거미디어법 제8조 |
| 라트비아 | 투표마감 전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 사전선거운동법 (의회및유럽의회) 제14조 |
| 리투아니아 | 투표마감 전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 선거법 제85조제2항 |
| 룩셈부르크 | 투표마감 전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 정치여론조사에 관한법 제3조 |
| 멕시코 | 투표마감 전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 연방선거법 제213조 |
| 노르웨이 | 투표마감 전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 선거법 제9-9조 |

| 국가명 | 제한 여부 | 관련규정 |
|-------|--|----------------|
| 폴란드 | 투표마감 전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 선거법 제115조 |
| 포르투갈 | 투표마감 전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자료 수집만을 위해 가능 투표소 내에서 조사 금지 | 여론조사법 제10,11조 |
| 슬로바키아 | 투표마감 전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 의회선거법 제24조제14항 |
| 슬로베니아 | 투표마감 전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 선거일 전일부터 선거일까지 | 선거운동법 제5조제2항 |
| 터 키 | 투표마감 전에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 선거기본법 제80조 |

※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네덜란드는 출구조사 결과 공표에 관한 규정이 없음(덴마크⁶¹), 아일랜드⁶²), 이스라엘⁶³)은 개표 집계 전에도 계속 발표 가능함).

※ 이외 투표마감 전에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국가: 키프로스, 크로아티아, 케냐, 모로코, 마케도니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인도, 필리핀

출처: ARTICLE 19 Global Campaign for free Expression. 2003. ‘*Comparative Study of Laws and Regulations Restricting the Publication of Electoral Opinion Polls*’
<http://www.article19.org/pdfs/publications/opinion-polls-paper.pdf> (검색일 2019.5.16.)

59) 위스콘신 선거법

<http://elections.state.wi.us/docview.asp?docid=2474&locid=47> (검색일 2019.5.16.)

60) T. Bale. 2002. ‘Restricting the Broadcast and Publication of Pre-Election and Exit Polls: Some Selected Examples.’ in Representation., Vol.39. No.1. p.19 (검색일 2019.5.16.)

61) THE LOCAL(dk) ‘Danish election: New government for Denmark as left tops poll.’
<https://www.thelocal.dk/20190606/live-denmark-awaits-results-of-general-election> (검색일 2019.9.25.)

62) RTE News ‘Full details of RTÉ Exit Poll published.’
<https://www.rte.ie/news/election-2016/2016/0304/772641-rte-exit-poll-election-2016/> (검색일 2019.8.16.)

63) Haarets ‘Israel Election 2019: Netanyahu Ties With Gantz, but Has Clear Path to Form Next Government.’
<https://edition.cnn.com/middleeast/live-news/israel-election-results-2019-dle-intl/index.html>
<https://www.haaretz.com/israel-news/elections/netanyahu-elections-gantz-vote-updates-results-1.7105719> (검색일 2019.8.16.)

<표 7-7> 각국의 선거 관련 허위사실에 대한 대응 현황

| 구분 국가명 | 대응 형태 | 중점사항 | 대응 내용 |
|-----------|---|-------------------------------------|--|
| 호 주 | 정부 테스크포스 | 외국으로부터의 허위정보 유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 7월, 외무부로부터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정보 당국의 지속적인 경고 끝에 국내 선거에 사이버공격 탐지를 위해 내무부가 지휘하는 4개 부처 합동 테스크포스를 신설 |
| 브라질 | 정부 테스크포스 20개 법안 초안 플랫폼사업자 협약 | 선거 허위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 1월, 연방 경찰은 10월에 있을 대선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가짜뉴스를 작성하는 자들을 색출 및 처벌하겠다고 발표(트위터) 2018년 5월, 의회는 선거를 앞두고 허위정보를 배포하는 사안을 불법화 하는 법안 20여개의 초안을 제출. 그러나 의원들 사이에 허위뉴스 제작자, 유포자, 정보 제공자 가운데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음. 정부는 페이스북, 구글과 '제3자에 의한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협약을 체결 |
| 캐나다 | 정부 테스크포스 미디어정보 해독능력 캠페인 | 미디어정보 해독능력 외국으로부터의 허위정보 유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1월, 연방정부는 하반기 연방총선을 앞두고 허위정보 유포 감시 및 대응을 위해 외무부 신속대응프로토콜과 더불어 5명의 비정치인이 지휘하는 '선거사안 대응 프로토콜' 그룹을 신설하여 운영하기로 결정 연방정부는 IT기업의 투명한 허위정보 방지 및 광고정책을 다루는 법률 C-76을 근거로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들에게 선거철 허위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 연방정부는 온라인상 허위정보에 대한 자국민들의 의식 재고를 위한 프로젝트에 7백만 불의 예산을 책정 |
| 덴마크 | 테스크포스, 미디어정보 해독능력 캠페인, 정부 조치계획 | 허위정보 및 미디어정보 해독능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웨덴과 허위정보 대응에 있어 공조 2017년, 정부는 오보 및 외국으로부터의 허위정보 유포 대응을 위해 외무부 산하에 테스크포스를 신설 정부는 허위정보 대응을 위해 스웨덴에서 제작한 미디어정보 해독능력 함양을 위한 유인물을 재제작하여 배포 중 2019 총선에 대한 외부개입 방지를 위한 정책에 경찰, 군 정보당국 역량 강화를 비롯해 각 언론사 및 정당과의 협력 강화 등을 포함. |
| 프랑스 | 법률 | 선거 허위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 11월 22일, 하원에서 '가짜 뉴스(fake news)'를 정의⁶⁴⁾ 하고 선거운동기간 동안 언론에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정보조작 대응에 관한 법 (la lutte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이 통과됨. ※ 가짜뉴스란? 투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부정확한 혐의나 비방 또는 사실을 허위로 전달하는 보도(Inexact allegations or imputations, or news that falsely report facts, with the aim of changing the sincerity of a vote)." 해당 법안은 상원에서 2차례 부결⁶⁵⁾됐던 바 있음.⁶⁶⁾ 2018년 12월 20일, 정보조작 대응에 관한 법이 프랑스 헌법평의회를 통과하여 23일부터 시행 법원의 상대적 판단에 따라 선거 전 허위정보 콘텐츠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음. 해당 법안을 기반으로 정부는 선거 3개월 전부터 소셜미디어상의 허위정보를 제거하거나 웹사이트 자체를 차단할 수 있으며, 스폰서 콘텐츠의 재무정보 투명성을 강제할 수 있음.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는 누가 스폰서 콘텐츠 또는 캠페인 광고를 어떤 가격에 구매했는지 공개해야 하며, 이는 기존 TV 및 라디오에 대해 존재하는 기준을 소셜미디어에 적용하는 미국의 |

| 구분 국가명 | 대응 형태 | 중점사항 | 대응 내용 |
|-----------|-----------------------|-----------------|--|
| | | | <p>정직한광고법(Honest Ads Legislation)과 유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법안은 미디어 감시기구인 프랑스 고등방송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CSA)에 '해외 국가의 영향력을 받는 프랑스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을 법을 토대로 일방적으로 규제할 권한을 부여함. |
| 독 일 | 법률 | 헤이트 스피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1월, 온라인 플랫폼에서 '명백한 불법' 콘텐츠를 제거하기 위한 소셜 네트워크 법집행법⁶⁷⁾(Netzwerkdurchsetzungsgesetz; NetzDG)을 제정 • NetzDG는 2백만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콘텐츠를 24시간 내로 삭제하도록 강제하며 위반 시 최대 5천만€의 벌금을 부과 • '타이타닉'이란 월간지가 일부 모욕을 포함했다는 이유로 트위터 이용이 정지되었으며 NetzDG 초안 작성에 참여했던 연방법무장관도 트위터 이용이 정지되는 등 NetzDG는 지나치게 엄격하여 과도할 정도로 많은 콘텐츠들을 차단한다는 비판이 있음. • 2018년 3월, 이러한 비판으로 인해 사용자들이 잘못 삭제된 콘텐츠를 복구하거나 소셜미디어플랫폼 사업자가 NetzDG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심의하는 기구를 두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률 개정을 고려되고 있음. |
| 인도네시아 | 정부 데스크톱, AI기반 웹사이트 탐지 | 선거 허위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1월, 중반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련 허위정보 단속을 위해 정보기관과 법 집행기관을 보조할 신설 국가사이버암호청(BSSN) 청장에 전 국가암호기구(LSN) 의장을 임명 • 소셜미디어 기업들 또한 가짜뉴스를 비롯한 가짜 콘텐츠와 더불어 포르노와 같은 불법콘텐츠 차단과 제거를 위해 정부와 협력하고 있음. • 2018년 1월 말, 정부는 '자동으로' 가짜 뉴스를 배포하는 웹사이트를 추적 및 보고하는 프로그램을 배포함. • 2018년 10월, 정부는 4월 총선을 대비하여 통신부 산하에 온라인 허위정보 탐지 및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70여명의 엔지니어로 구성된 소셜미디어 트래픽 감시팀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법률 2008호를 근거로 가짜 뉴스를 확산시키는 게시물들을 삭제하고 있음. • 정부는 국민들이 가짜 뉴스를 신고하거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함. • 9월, 통신부는 가짜 뉴스로 인한 오류 정정을 위한 주간 보고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함. • 4월,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허위정보 차단에 실패할 경우 페이스북을 폐쇄시키겠다고 경고 • 11월, 경찰 당국이 소셜미디어 상에 허위정보를 퍼뜨린 유포자 12명 이상을 체포함. 관련법에 의한 해당 행위의 최소 형량은 4년임. |
| 네덜란드 | 대중인식 캠페인 | 미디어정보 해독능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2월, 정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에는 허위정보가 많이 퍼져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대중인식 캠페인을 시작함. |
| 스웨덴 | 정부 당국, 유인물 | 외국으로부터의 허위정보 유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국가처럼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실기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정부의 가짜 뉴스 대응 기조임. • 2018년 1월, 가을 총선을 앞두고 스테판 뢰프벤 스웨덴 총리는 외국으로부터의 허위정보 확산과 외부로부터의 영향력 확대 시도 대응을 위한 전달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발표. 정확한 출범 일자는 미정 • 시민안전청과 의회 국방위원회와 함께 해당 기구는 방해환경 하에서도 사실기반 정보전달 보장을 위해 허위정보 판별, 분석, 대응 업무에 주력 |

| 구분 국가명 | 대응 형태 | 중점사항 | 대응 내용 |
|-----------|---|---|---|
| | | | <p>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시민안전청은 긴급준비태세 유인물 내용에 허위정보 관련 부분을 수정하여 배포 |
| 영 국 | 의회 보고서, 정부 테스크포스 | 허위정보, 외국으로부터의 허위정보 유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 산하 디지털, 문화, 미디어, 스포츠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가짜 뉴스’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거부와 현존하는 미디어 규제들을 온라인 뉴스에 적용하는 방안, 허위정보 확산경로 연구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 등을 제안 • 정부는 ‘국가 및 기타 행위자에 의한 허위정보 유포 대응’을 위한 국가통신안전청을 설립 • 그러나 세부적으로 매우 미흡하며 냉전시대 전략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 미 국 | 연방법률, 플랫폼사업자 증언 주 미디어정보 해독 관련법, 위협 평가, 소송 | 정치광고, 외국으로부터의 허위정보 유포, 일반적인 오보, 미디어정보 해독능력 및 딥페이크 비디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10월, 하원은 페이스북이나 구글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하여금 광고주가 누구인지, 얼마를 지불했는지,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았으며 이는 TV 및 라디오에 적용되는 광고규제를 소셜미디어 사업자들에게도 적용하는 차원이었음. • 2017년 11월,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기업 대리인들은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에 출두하여 선거기간 중 허위정보 확산에 대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증언함. • 2018년 9월,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교육부 주관으로 학교에서의 미디어 정보 해독능력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해당 법안은 최소 24개주에서 시행됐었던 또는 시행중인 미디어정보 해독능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폰서 콘텐츠와 뉴스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스탠포드대학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함. • 2018년 중반,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정보 당국에 2018년 말까지 딥페이크 기술로 벌어질 수 있는 잠재적인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보고서를 하원에 제출하라 요청. 의원들은 외부 세력이 딥페이크 비디오를 이용하여 잠재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음. • 2019년 1월, 가짜 소셜미디어 프로필 생성으로 수익을 올린 기업이 뉴욕 주 법 위반 판결을 받음. |
| 기 타 | 캄보디아 | | • 2018년 5월, 7월 선거를 앞두고 정부 주도고 담당기관이 허위정보 게시물을 차단하고 유포자에게 징역 2년 또는 1천불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법안 통과 |
| | 이스라엘 | | • 2019년 3월, 4월 총선을 앞두고 무기명 인터넷광고 차단 |
| | 이탈리아 | | • 2018년 1월, 3월 총선을 앞두고 시민들이 허위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 개설 |
| | 말레이시아 | | • 2018년 4월, 동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허위정보 유포를 범죄로 규정 |
| | 러시아 | | • 2018년, 연방 하원에서 주요 언론 및 방송사를 제외한 온라인 등 모든 미디어에서 인명, 보건,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 교통 및 사회기반, 에너지, 통신시설에 대한 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불분명한 정보를 차단하고 위반 시 5천불의 벌금과 재범시 징역 15일에 처하는 법안이 통과됨. |
| | 우간다 | | •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능력이 있는 국민에게 200우간다 실링(0.05\$)의 세금을 부과 ※ 우간다는 2016년 선거에서 소셜미디어를 차단한 사례가 있음. |

출처: Poynter. 세계 허위정보 대응현황

<https://www.poynter.org/ifcn/anti-misinformation-actions> (검색일 2019.6.13.)

64) 프랑스 법령정보센터. 정보조작 대응에 관한 법(Diffusion de fausse nouvelle)

<표 7-8> OECD국가의 후보자 등 비방금지 관련 규정

| 구분 국가명 | 금지 내용 | 근거규정 |
|-----------|---|-------------------|
| 영 국 | 후보자에 관한 허위진술 금지 | 1983년 국민대표법 제106조 |
| 미 국 | 사실관계의 위조 및 거짓 진술 금지 | 연방선거운동법 제1001조 |
| 프랑스 | 새로운 위조물, 비방 또는 그 외의 기만적인 술책으로 선거인 | 선거법 제97조 |
| 독 일 | 정치인에 대한 비방 및 중상 금지 | 형법 제188조 |
| 일 본 | 허위사실 공표 금지 | 공직선거법 제235조 |
| 스페인 | 후보자 비방금지 | 선거법 제148조 |
| 스위스 | 후보자 비방 금지, 허위사실 공표 금지 | 형법 제280조 |
| 캐나다 | 허위사실 공표 금지 | 선거법 제91,92조 |
| 호 주 | 현혹 또는 기만적 공표 금지 | 연방선거법 제329조 |
| 오스트리아 | 허위사실 공표 금지 | 형법 제264조 |
| 체 코 | 정당, 연합 또는 개인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금지 | 선거법 제16조제5항 |
| 덴마크 | 선거법상 관련 규정 없음. ※ 형법에서 누구든지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성별 등을 공개적으로 비하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형법 제266b조 |
| 그리스 |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선거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등 유포 금지 | 선거법 제112조제2항 |
| 헝가리 | 허위사실 공표 금지 | 형법 제350조제1항d호 |
| 리투아니아 | 허위사실 공표 금지 | 선거법 제47조 |
| 멕시코 | 정당, 연합, 후보자는 타인을 중상하는 표현을 삼가야 함. | 연방선거법 제247조제2항 |
| 뉴질랜드 | 허위사실 공표 금지 | 선거법 제118조 |
| 폴란드 | 허위사실 공표 금지 | 의회선거법 제91조 |

※ 스웨덴, 벨기에, 칠레,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터키는 후보자 등 비방 금지 관련 규정 없음.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jsessionid=F0A0BCF9FDE3936D7C27902BF3059387.tplgrf21s_1?cidTexte=JORFTEXT000037847559&categorieLien=id (검색일 2019.6.13.)

65) 세계법령정보센터 연구보고서. 프랑스 입법절차 3.3~3.7

http://world.moleg.go.kr/web/wli/rsrchReprt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CTS_SEQ=39404&AST_SEQ=107&ETC=3 (검색일 2019.6.13.)

66) <https://www.euronews.com/2018/11/22/france-passes-controversial-fake-news-law> (검색일 2019.6.13.)

67) 한국법제연구원. ‘가짜뉴스에 대처하기 위한 소셜네트워크 법집행법’ 최신외국법제정보. 2018. 제4호. 외국법제동향.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약식표기: 소셜네트워크 법집행법, 약자표기: NetzDG

<표 7-9> OECD국가의 선거운동 규제방법

| 국가명 | 주요 선거운동 규제방법 | 근거규정 |
|---------------|---|-------------------------------|
| 영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주의 원칙 하에 비용규제, 정당중심의 선거운동 선거비용은 선거기간 중의 비용뿐만 아니라 선거기간 전이라도 후보(예정)자의 당선이나 지지를 위한 지출은 엄격히 제한함. 유료 정치방송은 금지되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함. | 1983년 국민대표법 제92,93,110조 |
| 미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운동방법과 기간에 제한이 없는 대신 선거비용과 수입의 제한으로 선거운동 전체를 규제함. 광고·문서·도화 배포 등에 책임자의 명의 및 자금출처 공개가 있어야 함. 선거운동에 대해 연방법에서는 선거운동의 기부에 대한 제한, 선거에 관한 자금의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외에는 각 주가 정하는 주 법에 의해 규제됨(자유주의). | 연방선거운동법 제30120조 |
| 독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비용은 법률상 규제는 없으나 정당 간 협정에 의하여 선거비용 지출을 자율적으로 규제(자유주의) 투표시간 중 투표소 내부와 입구에서 음향, 문서, 화보 등을 통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선거운동행위 금지 | 연방선거법 제32조 |
| 프랑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한 규제주의, 비용규제 선거실시 예정인 달의 3개월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신문, TV 등을 통한 상업광고 금지 선거실시 예정인 달의 3개월 전부터는 공식게시판이외의 장소에는 개인용포스터 게시를 금지하며, 법에 규정된 벽보·전단 홍보물외의 선거선전 출판물은 금지 | 선거법 제52-1조 |
| 일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개별적 규제주의 호별방문금지, 서명운동 금지, 인기투표 공표금지, 연호행위금지, 자동차위에서 선거운동 금지, 이사장 금지, 타연설회 금지, 야간가두연설 금지(오후 8시까지) 등 선거운동용 자동차·선박 등의 사용제한, 신문·잡지의 불법이용제한, 선거운동방송의 제한 등 | 공직선거법 제3장 |
| 스페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사회적 다원성의 보장 선거운동기간의 제한 인쇄물, 시설물 및 선거홍보광고 시간에 대한 규제가 존재함. | 선거법 제60조 |
| 스웨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운동에 관한 제한·금지규정 없음. | - |
| 스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운동에 관한 제한·금지규정 없음. | - |
| 캐나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캐나다정부의 송신망을 사용한 선거광고 금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제한, 선거광고의 방해 및 침해 금지, 선거결과 조기 전송금지, 캐나다 국외에서 방송금지, 외국인의 선거관여 금지, 외국인 기부금 사용 금지, 선거집회 방해 금지 등 | 선거법 제330,480조 |
| 호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회에서 무질서한 행위 금지 | 연방선거법 제347조 |
| 오스트리아 (6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회 및 결사, 표현의 자유가 있으나 공공집회 개최 48시간 전에 당국에 통보 금지법(Verbotsgesetz: Prohibition act)을 위반하는 공개 성명서를 작성하거나 행위를 할 수 없음. | 집회법 제2조제1항 |
| 벨기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업용 광고판 및 포스터 사용 금지 4m²를 초과하는 비상업용 포스터 사용금지 유료방송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라디오, TV 및 극장의 상업광고 이용 등) 선물(인쇄물을 제외한 모든 물건 포함) 제공 금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선거비용제한법 제5조 |

| 국가명 | 주요 선거운동 규제방법 | 근거규정 |
|--------------------|---|--|
| 체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광고 광고주체 표시의무, 타 정당 또는 후보자 비방 금지 • 여론조사결과 사용에 대한 제한 • 라디오·TV 등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16일 전부터 48시간 전까지로 제한 • 선거구 및 정당별 선거운동 포스터 부착을 위한 장소 제한 | 선거법 제16조제4-8항 |
| 칠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선거광고 시간제한, 신문광고 및 라디오는 자유로운 계약이 가능하나 선거별 광고비용 책정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함. • 극장 등 시청각 선전물 방영금지장소 제한 • 선전물 크기 제한 •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여론조사결과 발표 가능기간 제한 | 선거법 제31,32,36,37조 |
| 덴마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소 선거운동 금지 이외에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제한 없음. | 선거법 제50조, 제61조제8항, 제107조 |
| 에스토니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소 선거운동 금지 이외에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제한 없음. | 선거법 제5조 |
| 핀란드 ⁶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이루어지나, 표현의 자유법, 집회법, 기금모금법, 도로교통법 등과 같은 일반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사적영역에서의 선거운동은 토지 소유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집회시에는 5일 이전에 경찰에 알려야 하고, 도로광고는 도로안전법상 안전규정을 준수해야 함. • 공공기관, 방송기관은 모든 정당들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함. | 집회법 제13,14조 도로교통법 제52조 정당법 제10조 |
| 그리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 선전물 크기, 부착 장소에 대한 제한규정 • TV 및 라디오 방송국의 중립의무 •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위치와 관계없이 3개소 이상 개설 불가 • 후보자의 TV 및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출연 및 토론 횟수 제한 • 확성기를 사용한 선거운동의 제한 | 선거법 제44~48조 |
| 헝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소유자 및 건물, 관공서, 문화유산, 자연보호 지정 구역에 선거벽보를 첨부할 수 없으며, 다른 후보자 벽보를 제거하거나 가리지 않아야 함. • 관공서에서 공공집회 금지 | 선거절차법 제144,145조 |
| 아이슬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소 선거운동 금지 이외에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제한 없음. • 투표소 등 투표시설에서 연설하거나, 정치적 주장이 드러나는 연설문, 광고판 등을 노출하는 행위 금지 • 투표시간 중 정당의 휘장, 기호 등 정당을 식별하는 표기를 가진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확성기를 사용한 선전이 금지됨. | 의회선거법 제117조 |
| 아일랜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 또는 후보자 홍보를 목적으로 한 공고, 벽보, 포스터, 각종 문서 등은 출력·유통 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해야 함. • 포스터와 서면광고의 경우 각각 쓰레기처리에 관한 법과 선거법에 따른 지출비용 제한 세부규정에 따라야 함. • 투표 개시 전후 30분간 투표소 50m 이내 벽보 게시 금지 ※ 이외 선거운동 관련 특별한 제한사항 없음⁷⁰⁾. | 선거법(1992) 제140조 제147조제2항 쓰레기처리에 관한법 제19조 |

68) OSCE/ODIHR Election Assessment Mission Final Report. REPUBLIC OF AUSTRIA EARLY PARLIAMENTARY ELECTIONS 2017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austria/370866?download=true> (검색일 2019.8.12.)

| 국가명 | 주요 선거운동 규제방법 | 근거규정 |
|-------|--|---|
| 이스라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및 군인의 선거운동 참여 금지, 정부 또는 공기업 소유 시설물, 정부나 공기업이 경영에 관여하거나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동산 또는 부동산 사용 금지 연극, 영화, 예술 관련 사업을 통한 선거운동 금지 언론을 통한 선거운동 시 홍보물 규격 제한 타 정당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형태의 선거운동 금지 선박 및 항공기 동원 금지 병원, 선박, 감옥·수용소 등 특수시설 내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 벽보 및 기타 자료 훼손 금지 | 선거운동법 제2a~c,3,5, 6,8,10,15A조 선거법 제116,126,130조 |
| 이탈리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장소 외 벽보 및 선전물 게시 금지 의회감시위원회가 라디오, TV를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 인구별 옥외광고물 게시장소 제한 선거일 전일 및 선거일 벽보, 선전물 게시, 집회 금지, 라디오·방송이용 제한 확성기를 사용한 선거운동의 제한 | 선거선전 규제규범 제212호 제1,2,3,9조 제130호 제7조 상·하원의원 선거운동규제 제515호 제1조 |
| 라트비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디오·TV 등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 시간제한 정부와 지방정부는 정당, 정치단체의 공공장소 배정과 관련하여 유불리하게 해서는 아니함. | 사전선거운동법 (의회및유럽의회) 제1,3장 |
| 리투아니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행정 및 국가기관 관련 장소에서의 옥외 선거운동 금지 고속도로 및 도로주변에서 도로표지판을 가리는 등 교통이용에 위험을 유발하는 행위 금지 조각품이나 기념비적 건축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투표소가 있는 건물 주변 50m 이내에서 선거운동 금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유지에서 선거운동 금지 누구든지 주 또는 시 기관 및 대중매체에서 자신의 공식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하는 행위 금지(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제51조 국영방송토론의 경우 제외) | 선거법 제51조제9항 제54조제1항 |
| 룩셈부르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운동에 관한 제한·금지규정 없음. | - |
| 멕시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결과 발표시까지 선거, 교육, 보건, 기타 시민안전 및 비상관리 당국의 정보제공활동을 제외한 연방 및 지방정부, 기타 공공기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중지 모든 선거운동관련 인쇄물은 재활용이 가능해야 함. 선거홍보물 자택배송 금지, 부착 및 설치 가능 장소 제한, 철거기간 준수 | 연방선거법 제209,250조 |
| 노르웨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운동에 관한 제한·금지규정 없음. | - |
| 네덜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지방법(APV)에 따라 연단을 사용하는 행사 진행시 혹은 스피커가 부착된 차량 사용 시에는 허가가 필요하며 도로 안전 규정 등에 위반이 없어야 함. | 일반지방법 제4:6조 |
| 뉴질랜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선거광고는 발행인의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야 함. 제3자가 정당이나 후보자의 유료 광고를 지원하거나 광고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며 비용규정을 준수해야 함.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정당, 후보자, 제3자의 선거비용을 상세히 규제하고 있음(비용규제주의). | 선거법 제204D조 ~제204F조 제205F조 |

69) VAALITVAL Election advertising. <https://vaalit.fi/vaalimainonta> (검색일 2019.8.14.)

70) https://merrionstreet.ie/MerrionStreet/en/News-Room/Releases/Discussion_Paper_%E2%80%9393_Regulation_of_Online

| 국가명 | 주요 선거운동 규제방법 | 근거규정 |
|-------|--|----------------------------|
| 폴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군부대 및 경찰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선거운동이 금지 • 선거벽보는 정부건물,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첩부할 수 없으며 문화유산, 환경보호, 도로 안전 등을 고려해야 함. •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으로 기부행위(복권, 경품 및 주류제공)금지 | 선거법 제108조 |
| 포르투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이나 공공장소에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날짜와 시간을 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시장은 3일전까지 모든 후보자와 정당에 공정한 날짜와 시간을 고지해야 함. | 선거법 제65조 |
| 슬로바키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디오·TV 등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 시간제한 • 집회도구(포스터, 깃발 등) 사용방법 및 가능 품목, 사용 장소, 배포에 대한 제한 • 여론조사결과 사용에 대한 제한 등 | 선거운동법 제10,12,16,17조 |
| 슬로베니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일 일주일 전 후보자, 정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 선거일 투표소 내에서는 모든 형태의 선거운동 금지 • 다른 후보자의 포스터 위에 포스터를 덧붙이거나 훼손하는 행위 금지 •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구내, 종교단체 구내에서는 사전선거운동 금지 ※ 해당 장소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홀이 있는 다른 건물이 없을 경우 예외 | 의회선거법 제65조 선거운동법 제5,10조 |
| 터 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장소, 실내 집회장소 제한 • 라디오·TV 등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 시간제한 • 확성기를 사용한 선거운동의 제한 • 벽보 등 인쇄물 사용방법 및 가능 품목 제한, 사용 장소·배포에 대한 제한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규정(총리, 장관 등 고위공무원 및 군인 등) | 선거기본법 제50~55A, 56,60~66조 |

제8장 선거비용

<표 8-1> 각국의 선거비용 지출에 대한 제한

| 구분 | 국가명 |
|----------------------|---|
| 정당의 선거비용에 제한을 두는 국가 |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벨기에, 베냉, 부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캐나다, 카보베르데,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조지아, 그리스, 과테말라, 기니,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케냐, 한국,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멕시코, 몽골, 몬테네그로, 미얀마, 네팔, 뉴질랜드, 파나마, 파라과이, 필리핀, 포르투갈, 러시아, 산마리노, 상투메프린시페,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수단, 탄자니아, 태국, 토고, 영국, 미국 |
| 후보자의 선거비용에 제한을 두는 국가 |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기에, 베냉, 부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불가리아, 캐나다, 카보베르데, 칠레,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에콰도르, 이집트, 프랑스, 조지아, 기니,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카자흐스탄, 케냐, 한국,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레바논,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몰타, 모리타니, 모리셔스, 멕시코, 몰도바, 모나코, 몽골, 몬테네그로, 모로코, 미얀마, 네팔,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파나마,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연방, 산마리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제도, 대만, 탄자니아, 태국, 토고, 통가,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영국 |

출처: IDEA. Political Finance Database.

<https://www.idea.int/data-tools/data/political-finance-database> (검색일 2019.5.20.)

<표 8-2> 각국의 선거비용 보고서 제출 및 공개여부 현황

| 구분 | 국가명 |
|------------------|---|
| 정당이 정기적 회계 보고 국가 | 알바니아, 알제리, 안도라, 앙골라,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방글라데시, 벨기에, 베냉,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캐나다, 카보베르데, 칠레,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가나, 그리스,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한국,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몰디브, 말리, 몰타, 모리타니, 멕시코, 몰도바, 몽골, 몬테네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미얀마, 나미비아,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파키스탄,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콩고공화국,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산마리노,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군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리랑카, 수단, 수리남, 스웨덴, 대만,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 동티모르, 토고, 튀니지, 터키, 우간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예멘 |

| 구분 | 국가명 |
|-----------------|--|
| 정당이 선거비용 보고 국가 | 알바니아, 안도라, 앙골라, 안티가바부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벨기에, 베냉,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캐나다, 카보베르데,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핀란드, 가봉, 조지아, 가나, 그리스,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이라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카자흐스탄, 케냐, 한국,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멕시코, 몰도바, 몽고, 몬테네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팔,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군도, 스페인, 수단, 수리남, 시리아, 대만,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 토고, 튀니지, 우간다(의회선거),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 후보자가 선거비용 보고 국가 |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안도라, 앙골라,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기에, 베냉, 부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캐나다,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콰도르, 이집트, 에스토니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그리스,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카자흐스탄, 케냐, 한국,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레반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몰디브, 몰타, 모리타니, 모리셔스, 멕시코, 몰도바, 모나코, 몽골, 몬테네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미얀마, 네팔,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파키스탄, 팔라우,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군도, 수단, 수리남, 스웨덴, 시리아, 대만,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 동티모르, 토고, 통가,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우간다(대통령선거),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 보고서 공개 국가 |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안도라, 앙골라,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가나, 그리스,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카자흐스탄, 케냐, 한국,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몰디브, 말리, 몰타, 멕시코, 몰도바, 몽골, 몬테네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미얀마,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제르,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파키스탄, 팔라우,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연방, 상투메프린시페, 세르비아,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수단, 수리남, 스웨덴, 대만, 타지키스탄, 태국, 동티모르, 토고,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우간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

출처: IDEA, Political Finance Database.

<https://www.idea.int/data-tools/data/political-finance-database> (검색일 2019.5.27.)

<표 8-3> OECD국가의 선거비용 제한액 현황

| 국가명 | 비용 제한액 | 근거규정 |
|-------|---|--------------------------|
| 영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county)선거구: £7,150+선거권자 1인당 5펜스 - 구(borough)선거구: £8,700+선거권자 1인당 7펜스 ※ 보궐선거시는 선거구당 £100,000 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구당 £30,000 정당은 선거의 전·중·후를 불문하고 선거의 실시나 관리에 관하여 제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1983년 국민대표법 제76조 |
| 미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 제한액 없음. 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에서 1명 선출하는 경우 투표연령인구×2센트+물가상승률 감안금액 또는 20,000달러+물가상승률 감안 금액 중 많은 금액 - 2명 이상 선출하는 경우 후보자당 10,000달러(한화 1,200만 원정도) | 연방선거운동법 제30116조(d)(3) |
| 프랑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8,000+선거구인 1명당 €0.15를 가산한 금액 회계보고시에는 선거가 실시될 달의 1년 전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 후보자에 의해, 후보자를 위해 지출되거나 지출이 약속된 비용 전부를 기입해야 함. | 선거법 제52-11조 |
| 독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상 규제는 없으나 정당 간 협정에 의해 선거비용지출을 자율적으로 규제 선거별 선거운동비용의 상한액은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음 선거운동비용의 사용액은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규정 | - |
| 일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통선거구 ¥1,910만+(선거구내 선거인명부 등재자수/선거구내의 의원정수)×¥15(2억 2,100만 원 정도) 회계책임자는 선거일 공고 전까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일 경과 후에 기부 및 수입·지출에 대하여는 이를 정산하여 선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 | 공직선거법 제194,196조 |
| 스페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권을 가진 주민총수에 €0.37를 곱한 금액 두개 이상의 보통·직접선거가 실시될 경우 공동 참여하는 정당, 연합, 연맹 및 단체는 국회의원 선거에 허용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5% 이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선거경비로 지출할 수 없음. | 선거법 제131,175조 |
| 스웨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법에는 선거비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선거비용은 주로 후보자 개인이 아닌 정당들이 부담하고 있음. | - |
| 스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정 없음. | - |
| 캐나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권자 최초 15,000명까지: 1명당 C\$2.1735 이후 10,000명에 대하여: 1명당 C\$1.092 나머지 선거권자에 대하여: 1명당 C\$0.546 (선거구당 평균 6,200만 원 정도) | 선거법 제477조의49~52 |
| 호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선거법에서 선거비용 지출에 대한 한도액 폐지 | - |
| 오스트리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 €15,000 정당: 각 정당 €700만 | 정당자금법 제4조제1항 |

| 국가명 | 비용 제한액 | 근거규정 |
|---------------------|--|-----------------------------|
| | - 두개 이상의 정당이 동일한 후보자명부를 지지한다면 각 정당 제한액의 합산 총액 | |
| 벨기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 당: €1,000,000 후보자: €8,700+선거권자 1명당 €0.035 ※ €0.035×후보자가 출마한 선거구의 지난 선거 선거권자 수 | 정치자금법 제2조제1,2항 |
| 체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 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원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 1명당 2,000,000CZK(VAT 포함, 한화 약 1억 원), 1차선거만 참여시 ·후보자 1명당 2,500,000CZK(VAT 포함, 한화 약 1억 3천만 원), 1,2차선거 모두 참여시 - 하원선거: 90,000,000CZK(VAT 포함, 한화 약 46억 원) | 선거법 제16c조제2항 |
| 칠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 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원선거: {(후보자 1명당 1,500UF⁷¹)+(해당 선거구 선거권자 최초 200,000명까지×15,000UF×1/200)}+(정당 투입가능비용: 후보자 1명 총 선거비용의 1/3) - 하원선거: {(후보자 1명당 700UF)+(해당 선거구 선거권자 수×15,000UF)}+(정당 투입가능비용: 후보자 1명 총 선거비용의 1/3) ※ 1UF: 2016 기준 25,855.14CLP(한화 약 5만 원)⁷², UF값은 선거비용 제한액 결정일을 기점으로 유효함. ※ 법률에서 규정한 선거구획정기준과 선거비용 산출 공식에 따라 선거위원회가 선거구를 확정하고 선거구별 선거비용 제한액을 선거구별로 산출하여 공시 ※ 2017 상하원 선거 최대 제한액⁷³ - 상원: 최대: 1,504,380,077CLP(한화 약 25억 원) 최소: 52,881,656CLP(한화 약 9,000만 원) - 하원: 최대: 9,633,161,000CLP(한화 약 163억 원) 최소: 414,950,312CLP(한화 약 7억 원) | 선거비용제한 및 투명성법 제4,5조 |
| 덴마크 ⁷⁴) | • 규정 없음. | - |
| 에스토니아 | • 규정 없음. | - |
| 핀란드 | • 규정 없음. | - |
| 그리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 기본금 €150,000×출마하는 선거구별 계수[1:1, 2~7:0.5, 8~:0.1] ※ 계수(coeffcient)는 조정될 수 있음. ※ Cyclades, Dodecanese 선거구 계수값은 0.5로 고정 정 당: 모든 정당에 제공되는 국고보조금(regular funding) 최대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정치자금법 ⁷⁵ 제13,14조 |
| 헝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 5,000,000HUF을 기준으로(법 시행 이후 첫 총선 실시연도부터) 해당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을 반영하여 산정 정 당: 정당이 등록된 후보자 수에 비례하여 산정 | 선거자금법 제7조 |
| 아이슬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 2,000,000ISK+선거권자 1명당 140~320ISK ※ 18세 이상 주민 5만 명 이상 거주하는 선거구: 1명당 140ISK 증액 18세 이상 주민 4만 명 이상 5만 명 미만 거주하는 선거구: 1명당 185ISK 증액 18세 이상 주민 2만 명 이상 3만 명 미만 거주하는 선거구: 1명당 230ISK 증액 18세 이상 주민 1만 명 이상 2만 명 미만 거주하는 선거구: 1명당 275ISK 증액 18세 이상 주민 1만 명 미만 거주하는 선거구: 1인 320ISK 증액 | 정치자금법 제7조 |
| 아일랜드 | • 후보자 | 선거법(1997) |

| 국가명 | 비용 제한액 | 근거규정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수 3석 선거구: £14,000(한화 약 1,900만 원) - 의원수 4석 선거구: £17,000(한화 약 2,300만 원) - 의원수 5석 선거구: £20,000(한화 약 2,700만 원) - 정당 또는 후보자 회계담당자는 선거일부터 56일 이내에 지출내역 보고서를 선거비용 지출 회계검토를 담당하는 공직기준위원회⁷⁶⁾에 제출 | 제32조제1항제a호, 제36조제1항제a호 |
| 이스라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 당: 정당연합 또는 신진 정당연합의 경우 70FU를 초과하는 비용을 사용할 수 없음. - 5명 미만 의석 정당: 10FU - 5명 이상 11명 미만 의석 정당: 2FU×의석 • 11명 이상 의석 정당: 10명까지 2FU, 그 이상은 1.5FU ※ 상한액 1FU 당 1,368,100NIS(한화 약 4억 5천만 원)⁷⁷⁾ | 정치자금법 제7조제A~D항 |
| 이탈리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 (선거구 당 고정비 €52,000)+(선거권자 수×€0.01) • 정 당: 전국 상·하원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선거권자 수×€1.00 | 상·하원의원 선거운동규제 제515호 제7,10조 |
| 라트비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 당: 지난 선거의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 1명 당 월평균 총 근로소득(유로화 기준)×0.0004(계수)에 해당하는 금액한도 이내 ※ 월평균 총 근로소득은 중앙통계국에서 발표한 전년도를 기준으로 함. | 사전선거운동법 제5조제1항 정치자금법 제84조제1항 |
| 리투아니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 - 선거인명부 등록자 수×€0.29 ※ 결과값 가장 앞 유효숫자 2자리에서 반올림(맨 앞 세 번째 숫자 반올림) ※ 결과값이 €5,792보다 작은 경우, 선거비용은 €5,792로 고정 ※ 2016년 총선 기준 선거비용 제한액 €740,000⁷⁸⁾ | 정치자금법 제14조제2,3항 |
| 룩셈부르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비용 지출에 대한 한도액 규정 없음.⁷⁹⁾ | - |
| 멕시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 원: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300 • 상 원: 하원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의 합×상원의원선거 선거구 수 (단, 상원의원선거 선거구 수는 20개를 넘지 못함) ※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각 정당별 국고보조금의 20% | 연방선거법 제243조 제4항제a,b호 |
| 노르웨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선거비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 정당법 제22조제2항 정당규제규정 제3-5,3-6조 |
| 네덜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없음. | |
| 뉴질랜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선거비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 정당법 제22조제2항 정당규제법 제3-5,3-6조 |
| 폴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 원: 비용제한=전국 선거권자 수×0.18PLN(약 55원)×정당이 후보자를 등록한 선거구의 수/100(상원의원총수) • 하 원: 비용제한=전국 선거권자 수×0.82PLN(약 250원)×정당이 후보자를 등록한 선거구에서 뽑힌 의원의 수/460(하원의원총수) | 선거법 제136,199, 200,259조 |

| 국가명 | 비용 제한액 | 근거규정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담당장관은 물가 상승률이 5% 이상인 경우 비용제한액을 조정해야 함. • 방송광고비용은 선거운동비용제한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
| 포르투갈 | • 후보자(개인) 및 정당: IAS×60에 해당하는 금액(IAS- Indexante dos apoios sociais 사회 보장 금액 기준, 2019 IAS=€435.76) | 정당자금법 제20조 |
| 슬로바키아 | • 정 당: 최대 €3,000,000(VAT 포함, 한화 약 40억 원) | 선거운동법 제3조제1항 |
| 슬로베니아 | • 정당 및 후보자: 선거권자 1명당 €0.4 | 선거운동법 제23조 |
| 터 키 ⁸⁰⁾ | • 선거비용을 제한하는 법률상의 규정이 없음. | - |

- 71) unidades de fomento: an amount fixed in UF –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받지 않는 칠레 회계단위
https://data.moneypoliticaltransparency.org/countries/CL/?expand=true#indicator_17 (검색일 2019.6.21.)
- 72) 칠레 선거위원회
<https://www.servel.cl/limites-del-gasto-electoral/> (검색일 2019.6.21.)
- 73) <https://www.servel.cl/servel-determina-limites-de-gasto-de-partidos-en-campanas-2017/> (검색일 2019.6.24.)
- 74) OSCE 2019 덴마크 총선보고서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denmark/419231?download=true> (검색일 2019.9.26.)
- 75) OSCE 2019 그리스 총선보고서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greece/420839?download=true> (검색일 2019.9.26.)
- 76) 공직기준위원회(SIPO; Standards in Public Office Commission)
<https://www.sipo.ie/en/> (검색일 2019.6.21.)
- 77) 2015년 기준 1회계단위(FU) 금액
https://www.loc.gov/law/help/campaign-finance-regulation/israel.php#_ftnref18 (검색일 2019.6.19.)
- 78)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lithuania/296446?download=true> (검색일 2019.8.2.)
- 79) OSCE 2018 룩셈부르크 총선 보고서 <https://www.osce.org/odihr/389582?download=true> (검색일 2019.6.19.),
- 80) OSCE 2018 터키 총선 보고서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turkey/381448> (검색일 2019.8.23.)

<표 8-4> OECD국가의 선거비용 관련 위반 시 제재내용

| 국가명 | 위반 시 제재내용 | 근거규정 |
|-------|---|--|
| 영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패행위(매수·향응제공, 비용허위보고), 위법행위(위법고용, 교통시설 등 위법대차, 선거비용 규정 위반): 당선무효 선거비용 관련 보고서 미제출 등: 벌금 부과 | 1983년 국민대표법 제85조 |
| 미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의로 연중 총액 2,000달러 이상을 기부 및 지출 위반 시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선거비용 회계보고서 보고의무 위반 시 벌금형이나 징역형 또는 양자의 병과 | 연방선거운동법 제30109조(d) |
| 프랑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비용자금모금규정을 위반해 고품을 모금 또는 수수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지출 한 경우, 선거운동비용회계보고서의 작성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 €45,000의 벌금 및 3년의 징역에 처함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의 경우 초과액 상당액 국고납입(형사상 제재 부가) | 선거법 제52-15, 113-1조 |
| 일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시: 3년 이하 금고 또는 ¥50만 이하 벌금 출납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 위반으로 형에 처해진 때는 당선무효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일정기간 정지(벌금형: 5년, 금고이상: 형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누범자는 10년) |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251조의2 |
| 스페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비용 관련 회계 위조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함 | 선거법 제149조 |
| 캐나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시 초과분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 회계책임자 선임 불이행, 영수증 등 미제출 시 벌금형이나 징역형 또는 양자의 병과 | 선거법 제496,500조 |
| 호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내 회계보고 미제출시 벌금 부과 | 연방선거법 제309조 |
| 오스트리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과 지출 회계 장부의 기록·보고의무 위반: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00,000 이하의 벌금 기부금의 모집 및 기록·보고 의무 위반: 최대 €20,000 이하의 벌금, 당선 의원이나 후보자가 위법한 기부금을 받은 경우는 벌금과 함께 해당 기부금 몰수 | 정당자금법 제10조제6항, 제12조 |
| 벨기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후보자의 경우 제한액 초과분의 벌금형을 부과 또는 €25,000에서 최대 월 급여 4배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하고 정당의 경우 €1,000 이상 250,000 이하의 벌금(재범의 경우 2배)부과 보고서관련 위반: €1,000 이상 €30,000 이하의 벌금 부과 | 정치자금법 제14조 선거법 제181조 |
| 체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 정당연합이나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할 경우 최소 10,000CZK(한화 약 51만 원)~최대 [선거비용 제한액×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 | 선거법 제16C조제2항, 제16G조제2항제J호, 제4항제D호 |
| 칠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해 UF를 기준으로 선거위원회에서 금액을 산출하여 벌금을 부과 30% 미만 범위 내 초과액: 초과금액×2 30% 이상 50% 미만 범위 내 초과액: 초과금액×3 50% 이상 범위 내 초과액: 초과금액×5 | 선거비용제한 및 투명성법 제29조 |
| 에스토니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금의 모집 및 선거비용기록·보고 의무 위반: 최대 €15,000 이하의 벌금 위반된 기부금의 주정부 납부가 규정일 보다 연체된 경우, 납부액의 0.85%를 매 일일 마다 가산 정당 회계의 기록 보고·의무 위반: 정당, 후보자가 위반한 경우 최대 300 벌금단위 | 정당법 제12 ¹² 조, 제12 ¹⁴ 조~제12 ¹⁶ 조 |

| 국가명 | 위반 시 제재내용 | 근거규정 |
|-------|---|---|
| | (trahviühikut: 에스토니아의 벌금 기준 단위, 현재 €4), 법인이 위반한 경우 최대 €15,000 이하의 벌금 | |
| 핀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의 사용, 선거운동자금과 기부의 조달보고 및 운영계획에 관한 보고의무가 올바르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감사원의 처벌위원회가 벌금을 부과하거나 정당보조금의 지급중지 또는 회수를 명령할 수 있음. | 정당법 제9e,11조 선거자금법 제10조 감사원법 제15조 |
| 그리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 초과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 • 정 당: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초과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50% 이상인 경우 벌금과 더불어 다음 해 국고보조금(regular funding)지급을 하지 않음. | 정치자금법 제24조제6항 제25조제5항 |
| 헝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에 대한 회계보고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보조금의 2배를 재무부에 반환 •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시 초과지출 금액의 2배를 정부에 반환 • 감사원이 정당 자금의 위법을 감사하여 재무부에 보고하고 위법에 따른 지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금을 부과 | 선거자금법 제8조제3항 제8A조제3항 제9조제4항 |
| 아이슬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내 회계보고 미제출시 벌금 부과 • 후보자의 경우 선거비용 지출액이 550,000ISK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보고의무 면제 • 정당에 대한 선거비용제한액 규정 없음.⁸¹⁾ | 정치자금법 제10,13조 |
| 아일랜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 금액을 선거비용 보전금액에서 삭감 • 선거비용 지출내역 보고서 제출기한 위반 시 £1,000(한화 약 131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제출기한 초과 1일마다 최대 £100의 벌금을 부과 • 선거비용 지출내역, 지출용도 보고서 문서작성 담당자가 해당문서를 위조할 시 최대 £20,000의 벌금과 법원 재량에 따라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음. | 선거법(1997) 제40조제a,b항 제43조제2항제d호 제3항제c호 제5항제a~c호 |
| 이스라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한 경우, 지출을 명령한 자 또는 정당연합이나 후보자로부터 지출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징역 1년 또는 형법 제 61조제a항제3호⁸²⁾에 따라 67,300NIS(한화 약 2,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 정치자금법 제9A조제c항 |
| 이탈리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초과액 이상: 3배 이하의 행정벌금 ② 초과액이 선거비용제한액 2배 이상인 경우 ①의 벌금과 함께 후보자 자격 상실 • 정 당: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50% 이상 3배 이하의 행정벌금 | 상·하원의원 선거운동규제 제515호 제15조제9,16항 |
| 라트비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방지국(KNAB)은 선거비용제한액 초과를 적발할 경우 해당 정당 또는 정치연합의 선거비용지출 제한액 초과분을 30일 이내로 국고로 귀속시킴. • 해당 정당 또는 정치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부패방지국은 초과분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을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 | 정치자금법 제10조 제21항 |
| 리투아니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비용제한액을 10% 이상 초과할 경우 선거법 위반 •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한 경우 정치자금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함. • 선거운동비용 회계보고서 위조에 대한 벌금 외에 선거법상 처벌규정이 없음.⁸³⁾ ※ 위반사항에 대하여 중앙선거위원회가 2년간 선거비용 직접지원 자격 박탈, 과태료 부과 등을 부과할 수 있음.⁸⁴⁾ | 정치자금법 제23,24조 |
| 멕시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시 연방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 연방선거법 |

| 국가명 | 위반 시 제재내용 | 근거규정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 당: 행위의 경중에 따라 현행 최저임금×10,000일에 해당하는 벌금(재범 시 2배 징수), 국고보조금 지급액 50% 삭감 후보자: 행위의 경중에 따라 현행 최저임금×5,000일에 해당하는 벌금, 후보자등록 취소 후보자(무소속): 행위의 경중에 따라 현행 최저임금×5,000일에 해당하는 벌금, 후보자등록 취소, 선거비용 미신고 또는 미반납시 연속 2회 선거출마 금지 | 제443조제f항 제456조제1항 제a,c,d호 |
| 노르웨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의무 위반 시 국고보조금 삭감 | 정당법 제28조 |
| 네덜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의 수입과 지출, 채무 기록·보고 의무 위반: 최대 €25,000 정당이 벌금을 선고 받을 경우 보조금 지급을 일정 기간 중단. (€1,125 미만의 벌금-1년, €2,250 미만의 벌금-2년, €3,375 미만의 벌금-3년, 그 이상의 경우 4년간 보조금 지급 중단) | 정당자금법 제37,39조 |
| 뉴질랜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운동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문서, 계정을 선거일 이후 3년까지 보관해야함. 선거비용보고서를 규정기간까지 보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NZ\$40,000 이하의 벌금 선거비용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NZ\$40,000 이하의 벌금 선거비용보고서가 허위 또는 잘못 기재되거나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시, - 위법 의도가 없고,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최선의 과정을 거쳤을 경우 재정담당관이나 당대표는 NZ\$40,000 이하의 벌금, 그 외 당사자의 경우 NZ\$10,000 이하의 벌금 - 위법 사실을 인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 | 선거법 제204E,205F,205N, 205O,206D조 선거자금법 제106,143,144조 |
| 폴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의 회계 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1년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고, 작성의무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벌금 및 2년 이하의 징역 선거자금이 아닌 정당자금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선거자금의 목적 외 사용 1,000PLN 이상 100,000PLN 이하의 벌금 규정에 초과된 기부를 수락하거나 위법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한 경우 벌금 또는 징역 | 정당법 제34c조, 제49c조~ 제49h조 |
| 포르투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자금조달, 선거비용제한액 위반: 1년 이상 3년 미만의 징역 정치자금 관련 위반: 기부금, 경상보조금 등 - 정당: 최소 IAS의 10배 최대 IAS 400배 미만에 해당 하는 벌금 - 개인: 최소 IAS의 2배 최대 IAS 5배 미만에 해당 하는 벌금 수입과 지출 비용에 대한 차별, 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정당과, 법인의 이사, 개인 별로 벌금을 규정 (IAS-Indexante dos apoios sociais사회 보장 금액 기준, 2019 IAS=€435.76) | 정당과 선거운동자금법 제28,29조 |
| 슬로바키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거나 재무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을 시 내무부가 해당 정당에 €10,000~100,000(한화 약 1,400~1억3,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 선거운동법 제19조제2항 제a호 |
| 슬로베니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한 경우 €7,000 이상 €12,500 이하의 벌금 부과 | 선거운동법 제39조제1항 |

※ 독일,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룩셈부르크, 터키는 정당이나 후보자 모두 선거비용지출에 대한 제한 규정 없음.

81)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iceland/374101?download=true> (검색일 2019.8.1.)

82) 이스라엘 형법 제4장 벌금 제61조제a항제3호: 죄목에 대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형의 경우 최대 67,300NIS를 부과(Penal Law 5753-1977 6th Edition)

83) https://ifes.org/sites/default/files/brijuni18countryreport_finaledited1_0.pdf (검색일 2019.8.1.)

<표 8-5> 각국의 선거비용 직접지원 현황

| 구분 | 국가명 |
|---------------------------|--|
| 정기적 경상 보조금 지원 국가 | 알제리, 앙골라,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불가리아, 부룬디,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키프로스, 덴마크, 지부티,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이라크,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라트비아, 레소토,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몰디브, 말리, 몰도바, 모로코, 나미비아, 네덜란드, 니제르, 노르웨이, 파푸아뉴기니, 페루, 폴란드, 콩고공화국, 루마니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이셸, 솔로몬제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웨덴, 대만, 탄자니아, 태국, 동티모르, 터키, 영국, 우루과이, 예멘, 짐바브웨 |
| 선거 보조금 지원 국가 | 호주, 부탄, 캄보디아, 캐나다, 카보베르데, 엘살바도르, 네팔, 뉴질랜드, 니카라과,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튀니지, 미국, 베네수엘라 |
| 경상 보조금과 선거 보조금 모두 지원하는 국가 |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헨티나, 베냉, 부르키나파소, 칠레,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체코,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조지아, 독일,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자메이카, 한국, 리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몽골, 몬테네그로, 모잠비크, 파나마, 파라과이, 포르투갈, 러시아, 르완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토고, 우간다,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

출처: IDEA. Political Finance Database.

<https://www.idea.int/data-tools/question-view/548> (검색일 2019.5.30.)

84)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lithuania/296446?download=true> (검색일 2019.8.2.)

<표 8-6> 각국의 정당 활동 관련 간접비용 보조 현황

| 구분 | 국가명 |
|--|---|
| 교통 (Free or subsidised transport) |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카자흐스탄, 멕시코, 스위스,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
| 출판(인쇄, 우편) (Free or subsidised postage cost/ printing campaign materials) | 지부티, 핀란드, 프랑스, 과테말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산마리노, 스페인, 스리랑카, 스위스 |
| 미디어 (Free or subsidised access to media) | 알바니아, 앙골라, 알제리, 안도라, 앤티가바부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기에, 베냉,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캐나다,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칠레,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핀란드, 프랑스, 가봉, 감비아, 조지아, 독일, 가나, 그리스,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아이티, 온두라스, 아이슬란드, 인도,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레소토,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몰타, 모리셔스, 멕시코, 몽골, 모잠비크, 미얀마, 나미비아, 네덜란드,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포르투갈, 콩고공화국,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세인트루시아, 산마리노,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리랑카, 스위스, 타지키스탄, 태국, 타지키스탄, 태국, 토고, 터키, 튀니지, 투르크메니스탄,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
| 세금혜택 (Tax relief) | 앙골라, 아르헨티나, 호주, 바베이도스, 베냉, 부탄, 볼리비아,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덴마크,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적도기니,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핀란드, 프랑스, 감비아, 조지아, 독일, 기니비사우,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말리, 몰타, 멕시코, 몬테네그로, 미얀마, 네덜란드, 니카라과, 노르웨이,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포르투갈, 루마니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산마리노, 세이셸, 시에라리온, 슬로바키아, 수단, 스위스, 태국, 동티모르, 터키,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
| 선거운동장소 (Premises for campaign meeting) | 알바니아, 앤티가바부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보츠와나, 브라질, 카보베르데, 에티오피아, 프랑스, 조지아, 과테말라, 이탈리아, 일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레소토, 리투아니아, 몰디브, 몽골, 모로코, 모잠비크, 나우루, 뉴질랜드, 러시아, 세인트루시아, 산마리노,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타지키스탄, 태국 |
| 선거물품보관장소 (Space for campaign materials)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부룬디, 카보베르데, 코모로, 체코, 지부티, 프랑스, 가봉, 조지아, 과테말라, 기니비사우,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미크로네시아, 니제르, 필리핀, 산마리노,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태국, 토고,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
| 기타 (Others) | 바베이도스, 보츠와나, 아일랜드, 세르비아, 우간다 |

출처: IDEA. Political Finance Database.

<https://www.idea.int/data-tools/question-view/552> (검색일 2019.6.5.)

<https://www.idea.int/data-tools/question-view/555> (검색일 2019.6.5.)

<표 8-7> OECD국가의 선거비용 직접지원 현황

| 국가명 | 종류 | 지급요건 | 금액 | 근거규정 |
|-------|--------|---|--|-----------------------|
| 영국 | 지원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비용 혹은 정당운영에 대한 국고 보조금 제도는 없으나 하원 야당에 대한 보조금(short money)과 상원 야당에 대한 보조금(cranborne money)이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원야당지원금=(획득 의석수×£13,890)와 득표수(득표한 매 200표 당×£27.74) 상원야당지원금(상원 야당 리더와 야당 원내총무 급여로 사용)은 2007년에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에 각각 £457,540와 £228,445 지급 | - |
| 미국 | 선거보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 선거, 정당에 대한 지원 미비 대통령 선거(지출한도 존재)에 대한 지원은 존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년 대통령선거 예비선거 실질 지출 한도 \$23,821,100 | 내국세법 제95장 제9004조 |
| 프랑스 | 선거보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총수의 5% 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비용제한액의 50% | 선거법 제52-11-1조 |
| 독일 | 경상보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의회의원선거·연방하원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0.5% 주의회의원선거에서 1% 이상 득표 또는 해당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의회, 유럽의회, 주의회의 경우 유효득표수 1표 당 €0.85 2019년 국가보조금 최대한도액 €1억 9천 | 정당법 제18조 |
| 일본 | 경상보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정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원수비례할당금과 득표수비례할당금을 합산 | 정당조성법 제4,8조 |
| 스페인 | 선거보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하원, 유럽의회의원 및 시의회의 원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연합, 연정 또는 단체 회계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하원의원 각 의석마다 €21,167.24 하원의석을 한 석 이상 확보한 후보자군이 득표한 각 1표당 €0.81 상원의석을 한 석 이상 확보한 후보자군이 득표한 각 1표당 €0.32 | 선거법 제175조 |
| | 경상보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이 획득한 의석수와 득표수에 따라 배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은 최근 실시한 하원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이 획득한 의석수에 따라 배분 2/3은 해당 선거에서 얻은 득표수에 따라 배분 | 정당자금조달기본법 제3조 |
| 스웨덴 | 경상보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2회의 선거에서 전지역구 투표의 2.5% 이상을 얻거나 의석을 할당 받는데 필요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4% 이상을 얻은 정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의석 당 연간 333,000SEK 지급 의석을 획득하지 못한 정당의 경우 득표율 0.1%마다 173,000SEK 지급 | 정당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 |
| 스위스 | 규정 없음. | | | |
| 캐나다 | 선거보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 유효투표총수의 2%를 득표하거나,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5%를 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비용제한액의 50%를 보전 | 선거법 제477조의 73,74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 당선, 및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득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비용제한액의 30%를 보전 | 선거법 제444조 |
| 호주 | 선거보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순위투표에서 4% 이상 득표한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당 A\$2,73454 제공 | 연방선거법 제293조 |
| 오스트리아 | 경상보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석 이상을 얻은 정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218,000를 1,3분기에 지급 | 정당지원법 |

| 국가명 | 종류 | 지급요건 | 금액 | 근거규정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석을 얻은 정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머지 금액을 득표수에 비례하여 1,3분기에 지급 | 제1조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석을 얻지 못했으나 의회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 이상을 득표한 정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획득한 득표 수당 €2.5를 의회선거 실시 후 6개월 내에 지급 | | |
| 벨기에 | 경상보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운동과 관련한 추가 보조금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정당에 대한 연간 보조금이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5,000 지난 총선에서 득표한 유효표 1표당 €1.25씩 추가 지급 | 정치자금법 제16조 | |
| 체코 | 경상보조금 ⁸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원선거에서 3% 이상 득표 의석획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 연간보조금 6,000,000CZK (한화 약 3억 원) 3% 이상 득표 시 0.1%마다 200,000CZK를 추가하되 5%까지(한화 약 1,000만 원) ※ 의석 연간보조금 1석 당 900,000CZK (한화 약 4,500만 원) | 정당법 제20조 제3,4,6,7항 | |
| 칠레 | 선거보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하원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 선거 득표수×20,000UF 지난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자는 경우 지난 선거 최저 득표 정당이 받은 금액을 지급 | 선거비용 제한및 투명성법 제15조 | |
| 덴마크 | 경상보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선거에 참가하고 총 유효투표수 1,000표 이상 득표한 정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표당 22.30DKK | 정당지원법 제2조 | |
| 에스토니아 | 경상보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선자가 있는 정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석수에 비례하여 매월 5일 배분 | 정당법 제12 ⁷ 조 제1,2항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효투표총수 중 득표수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인 정당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000 연간 지급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4%인 정당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000 연간 지급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4%~5%인 정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000 연간 지급 | | | | |
| 핀란드 | 정당보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석을 획득한 정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획득한 의석수에 따라 배분 | 정당법 제2조, 9조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효투표총수 2% 이상을 받은 정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석을 획득한 정당이 받은 의석 당 보조금의 1/3 | | |
| 그리스 | 경상보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 총선에서 의석을 얻은 정당 또는 연합 유효투표총수 1.5% 이상을 받은 정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연도 국가예산수입의 1.24~1.37%p | 정치자금법 제1조제5항 제2조제1항 | |
| | 선거보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 총선에서 의석을 얻은 정당 또는 연합(선거보조금의 경우 임기 중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유효투표총수 1.5% 이상을 받은 정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 실시연도 국가예산수입의 0.22~0.35%p | 정치자금법 제1조제4항 제2조제2항 | |
| 헝가리 | 경상보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례대표의석을 획득한 정당 유효투표총수 1% 이상을 획득한 정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의 25%를 동등하게 배분 보조금의 75%를 득표수에 비례하여 배분 | 정당법 제5조 | |
| | 선거보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구 후보자(개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0,000HUF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 선거자금법 | |

| 국가명 | 종류 | 지급요건 | 금액 | 근거규정 |
|-------|-------|--|--|--|
| | | (2% 이상 득표하지 못할 경우 반환) | 산정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례대표후보를 등록한 정당 (2% 이상 득표하지 못한 경우 반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를 등록한 선거구 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00,000HUF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 기준금액의 |
| | | | 27개 이상의 경우 | 15% |
| | | | 54개 이상의 경우 | 30% |
| | | | 80개 이상의 경우 | 45% |
| | | | 모든 선거구 | 60% |
| 아이슬란드 | 경상보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석을 얻은 정당 지난 총선에서 의회 의석을 얻거나 2.5% 이상 득표한 정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 12,000,000 ISK 득표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 ※ 3개 이상의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구당 750,000 ISK 선거비용 보전가능 | 정치자금법 제3조 |
| 아일랜드 | 경상보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 참여를 위해 등록된 정당 및 선거에서 2% 이상 득표한 정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직기준위원회의 중앙기금(Central Fund)을 정당별로 배분 배분기준은 정당의 1차 선호투표 수/전체 1차 선호투표 수에 대한 비율(%) ※ 공직기준위원회 2018 국고보조금 총 €5,963,992(한화 약 78억 6,000만 원)⁸⁶⁾ | 선거법 제16,17조 |
| 이스라엘 | 선거보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효투표총수 1% 이상 득표하고 의회 내 의석이 있는 정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보조금 처음 의석을 확보한 정당 : (의석 수×1FU⁸⁷⁾)+1FU 의회 내 기존 의석이 있는 정당 : (기존 의석 수+의석 수)/2)+1FU | 정치자금법 제2,3조 |
| | 경상보조금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보조금(매월 지급) • {(0.05FU×확보 의석 수)+0.05FU} | |
| 이탈리아 | - | - | - | - ⁸⁸⁾ |
| 라트비아 | 경상보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효투표총수의 2% 이상 득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표당 €4.5 지급 (5%이상 득표 시 €10만 지급) 총선 이듬해부터 4년간 매년 1월15일, 7월15일, 2회에 걸쳐 지급 | 정치자금법 제7조 |
| 리투아니아 | 경상보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득표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 | 정당법 제20,21조 |
| 룩셈부르크 | 선거보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석 이상 의석을 확보한 정당 또는 정당연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명 이상 4명 이하 의원 선출 정당: €50,000(한화 약 6,600만 원) 5명 이상 7명 이하 의원 선출 정당: €100,000(한화 약 1억 3,200만 원) 8명 이상 11명 이하 의원 선출 정당: €150,000(한화 약 2억 원) 12명 이상 의원 선출 정당: 12명까지 | 선거법 제91,93조 |

| 국가명 | 종류 | 지급요건 | 금액 | 근거규정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000(한화 약 2억6,400만 원) 의원 1명당 €10,000(한화 약 1,300만 원) 추가금액 지급 | |
| 멕시코 | 경상보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효투표총수 3% 이상을 획득한 정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된 선거인 수×해당 연방직할구 최저임금의 65%에 해당하는 금액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당별로 동일하게 지급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전선거 득표율에 따라 차등 지급 | 헌법 제41조 제2항 제a,b호 |
| | 선거보조금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 실시연도 각 정당별 경상보조금의 50% 비례대표만 선출하는 선거 실시연도의 경우 각 정당별 경상보조금의 30% | |
| 노르웨이 | 경상보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효투표총수 2.5% 이상을 획득한 정당 또는 1석 이상 의석을 얻은 정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득표수×1NOK)+(조건을 충족한 정당별 기본금)]=총경상보조금 구성: 득표수관련 90%, 기본금 10% | 정당법 제10조제1,2항 제11조 |
| 네덜란드 | 경상보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12 이상의 당비를 내고 투표권을 가진 당원이 1,000명 이상인 정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 기본금 €181,947와 의석당 기본금 €52,773 €1,992,218을 보조금을 받는 정당의 수로 나눈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 금액은 매년 1월 새로 정함 | 정당자금법 제7,8조 |
| 뉴질랜드 | 선거보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 광고를 위한 보조금을 등록된 정당과 후보자에 지급 방송 광고를 위한 보조금은 선거비용 제한액에 포함되지 않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별 득표수와 의석 수 등을 고려하여 배분 | 방송법 제74,79,80조 |
| 폴란드 | 경상보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효투표총수 3% 이상을 획득한 독립 정당 혹은 6% 이상을 득표한 정당연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5%에 해당하는 득표수×10PLN +5~10%에 해당하는 득표수×8PLN +10~20%에 해당하는 득표수×7PLN +20~30%에 해당하는 득표수×4PLN +30% 이상에 해당하는 득표수×1.5PLN | 정당법 제28,29조 |
| 포르투갈 | 경상보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선자가 있는 정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선거에서 획득한 득표수 * IAS의 1/135 (IAS=Indexante dos apoios sociais사회보장 금액 기준, 2019 IAS=€435.76) | 정당과선거 운동자금법 제4,5조 |
| | 선거보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선거에서 51%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정당 후보자를 등록한 정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액의 20%를 균등 분배 총액의 80%를 획득한 득표 비율에 따라 배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 총액 =IAS * 20,000 제17조제2,4항 제18조제1항 |
| 슬로바키아 | 선거보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효투표총수 3% 이상 득표한 정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보조금 - 1표당 평균임금의 1% (16 평균임금 기준 €800, 1표당 €8) | 정당법 ⁸⁹⁾ 제25~28조 |

| 국가명 | 종류 | 지급요건 | 금액 | 근거규정 |
|------------------|-------|--|---|-------------------------------|
| | 경상보조금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보조금 산출식과 동일 • 의석 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석 1석당 1년간 €24,000 (한화 약 3,200만 원) | |
| 슬로베니아 | 경상보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투표총수의 1% 이상 득표한 정당 • 두 정당이 하나의 후보자명부 제출하는 경우 1.2% 이상 득표 • 3개 이상의 정당이 하나의 후보자명부 제출하는 경우 1.5% 이상 득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당총액의 25%를 동일하게 배분 • 나머지 총액은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정당들 간의 득표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 ※ 정당지원금은 전년도 국민총생산의 0.01%를 초과해서는 안 됨. | 정당법 제24조 |
| 터 키 | 경상보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투표총수 3% 이상 득표한 정당 • 최고선거위원회가 선거 참여 자격을 부여했으며 지난 총선에서 유효투표총수 10% 이상 득표한 정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금액, 유효투표총수를 고려하여 산정하며 그 총액은 1,000,000TRY (한화 약 2억 원) 이상임. • 재무부가 산정하여 지급 | 의회선거법 제33조 정당법 제61조 부칙1 |
| 정당에 선거비용 직접지원 국가 | | <p>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바베이도스, 벨기에, 베냉, 부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캐나다, 카보베르데, 차드, 칠레, 콜롬비아, 콩고,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코트디부아르,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 동티모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적도기니,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핀란드, 프랑스, 가봉, 조지아, 그리스,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한국, 라트비아, 레소토,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유고슬라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몰디브, 말리, 멕시코, 모나코, 몽골, 몬테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노르웨이, 파나마, 과푸아뉴기니, 과라파이,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콩고공화국,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산마리노, 상투메 프린시페, 세르비아, 세이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리랑카, 시리아, 대만,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 토고, 튀니지, 터키, 우간다, 영국, 미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예멘, 짐바브웨</p> | | |

85) 체코 재무부 홈페이지

<https://www.mfcr.cz/cs/verejny-sektor/podpora-z-narodnich-zdroju/politicke-strany-a-hnuti/prispevek-na-cinnost-v-yplaceny-politicky-27233> (검색일 2019.6.10.)

86) 아일랜드 공직기준위원회(Standards in Public Office Commission; SIPO) 2018 정당 국고보조금 보고서 (Exchequer Funding)

<https://www.sipo.ie/en/Reports/State-Financing/Expenditure-of-State-Funding/2017-Exchequer-Funding-by-Political-Parties/Exchequer-Funding-Report-2017.pdf> (검색일 2019.6.25.)

87) 이스라엘 회계단위(Financing Unit)

88) 2014년 2월 21일 법 제13호에 따라 직접지원 폐지

<https://www.normattiva.it/atto/caricaDettaglioAtto?atto.dataPubblicazioneGazzetta=2014-02-26&atto.codiceRedazionale=14G00024> (검색일 2019.10.2.)

89) OSCE. 2016 슬로바키아 총선 보고서.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slovakia/235591?download=true> (검색일 2019.6.25.)

<표 8-8> OECD국가의 선거비용 간접지원 현황

| 국가명 | 교통 | 출판 (인쇄, 우편, 게시) | 라디오 & TV | 세금 혜택 | 근거규정 |
|--------------------|----|--------------------|------------------|------------------|---|
| 영국 | × | ○ | ○ | × | 1983년 국민대표법 제91,93조 |
| 프랑스 | × | ○ | ○ | × | 선거법 제166,167-1조 |
| 독일 | × | × | ○ | ○ | 소득세법 제10b,34g조 정당법 제5조 |
| 일본 | ○ | ○ | ○ | ○ | 공직선거법 제141조제7항, 제142조제5항, 제144조, 제149조제6항, 제150,151,176조 |
| 스페인 | × | ○ | ○ | × | 선거법 제55,64조 |
| 캐나다 | × | × | ○ | ○ | 선거법 제338조 |
| 호주 | ○ | × | ○ | × | 공영방송법 제79A조 |
| 오스트리아 | × | × | × | × | - |
| 벨기에 ⁹⁰⁾ | × | × | ○ | ○ | - |
| 체코 | × | × | ○ | × | 선거법 제16조제8항 |
| 칠레 | × | × | ○ | ○ | 선거법 제32,179조 |
| 덴마크 | × | × | × | ○ | 정당지원법 제13조 |
| 에스토니아 | × | × | × | ○ | 지방세법 제10조제3항 |
| 핀란드 | × | ○ ⁹¹⁾ | ○ | ○ | 정당법 제9b,10조 |
| 그리스 | × | × | ○ | × | 선거법 제45,46,130조 |
| 헝가리 | × | × | ○ | ○ ⁹²⁾ | 선거절차법 제147조 |
| 아이슬란드 | × | × | × | ○ | 소득세법 31조 제2항 |
| 아일랜드 | × | ○ | × | × | 선거법(1997) 제57조제1항 |
| 이스라엘 | ○ | × | ○ ⁹³⁾ | × | 정치자금법 제18조 선거운동법 제15조 |
| 이탈리아 | × | × | ○ | × | 미디어접근법 ⁹⁴⁾ 제2,3조 정치자금투명성법 ⁹⁵⁾ 제11조 |
| 라트비아 | × | × | ○ | × | 사전선거운동법 제6-9조 |
| 리투아니아 | × | × | ○ | × | 의회선거법 제51조 선거운동비용제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9항 |

| 국가명 | 교통 | 출판 (인쇄, 우편, 게시) | 라디오 & TV | 세금 혜택 | 근거규정 |
|-------|----|--------------------|----------|-------|--------------------------------------|
| 룩셈부르크 | × | ○ | × | × | 선거법 제92조 |
| 멕시코 | × | ○ | ○ | ○ | 연방선거법 제159조 정당법 제66,69조 |
| 노르웨이 | × | × | × | ○ | 소득세법 제2-32조 |
| 네덜란드 | × | × | ○ | ○ | 미디어법 제39g조 소득세법 제6.32조, 제6.33조 |
| 뉴질랜드 | × | × | ○ | × | 방송법 제74조 |
| 폴란드 | × | × | ○ | × | 선거법 제252조 |
| 포르투갈 | × | × | ○ | ○ | 정당과 선거운동자금법 제10조, 선거법 제69조 |
| 슬로바키아 | × | × |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 | 선거운동법 제6,8조 |
| 터 키 | × | × | × | ○ | 선거기본법 제60조 |

※ 미국, 스웨덴, 스위스는 선거법상 간접지원 관련 규정 없음.

90) OECD보고서

<http://www.oecd.org/gov/ethics/financing-democracy-framework-document.pdf> (검색일 2019.10.1.)

91) The Cost of Democracy p.16.

<https://www.idea.int/sites/default/files/publications/the-cost-of-democracy-EN.pdf> (검색일 2019.9.9.)

92) Greco. Evaluation Report on Hungary Transparency of Party Funding

<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16806c6b30>
(검색일 2019.9.10.)

93) Israel Ministry of Foreign Affairs FAQ: Elections in Israel 17

https://mfa.gov.il/MFA/AboutIsrael/State/Democracy/Pages/FAQ_Elections_Israel.aspx (검색일 2019.8.27.)

94) 2000년 2월 22일 법 제28호 미디어접근법

‘선거, 국민투표 및 정치 캠페인 기간 중 공정한 미디어 접근에 관한 규정’

95) 2014년 2월 21일 법 제13호 정치자금투명성법

‘직접지원 폐지, 정당 투명성 및 민주성 규정, 기부 및 간접지원 규정’

제9장 투표

<표 9-1> 각국의 투표요일

| 요일 | 국가명 | |
|-----|---|-------------------------|
| 월요일 | 노르웨이(공휴일), 필리핀, 캐나다(공휴일인 경우, 화요일에 실시) | |
| 화요일 | 이스라엘, 미국, 덴마크 | |
| 수요일 | 인도네시아(공휴일), 네덜란드 | |
| 목요일 | 영국 | |
| 금요일 | 아일랜드 | |
| 토요일 | 호주, 뉴질랜드, 대만, 키프로스, 라트비아, 몰타,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 |
| 일요일 |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벨기에,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불가리아,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레바논,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멕시코, 몬테네그로,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태국, 터키,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
| 기타 | 체코 |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 토요일 오후에 마칩. |
| | 인도 | 여러 날에 걸쳐 선거가 진행됨. |

※ 이탈리아는 전통적으로 이틀(일요일, 월요일)에 걸쳐 선거를 실시하지만, 2018년 총선의 경우 3월 4일 당일에 상·하원의 원선거를 동시에 진행하였음.

※ 미국은 주별로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도 함.

2018년 11월 6일 본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주 -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인디애나, 메릴랜드, 미시간, 몬태나, 뉴저지, 뉴욕, 로드아일랜드, 웨스트버지니아

※ 이스라엘은 법규상 화요일이지만 다른 요일에 열리는 경우도 많고,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왔으나 2019.4.9 조기총선에서는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음.

출처: Wikipedia. 'Election day.' https://en.wikipedia.org/wiki/Election_day (검색일 2019.5.28.)

timeanddate.com <https://www.timeanddate.com/holidays/us/election-day> (검색일 2019.5.30.)

<표 9-2> OECD국가의 투표요일, 선거일 수, 투표시간, 개표시간

| 국가명 | 투표요일 | 일수 | 투표시간 | 개표시간 | 관련규정 |
|-----|---------|----|--|-------------------|---|
| 영국 | 목요일(평일) | 1일 | 7시~22시(15시간) |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 선거행정법 2006년 Schedule1 Part3 제45조 선거관리관이 참관인과 합의한 경우 오후 7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개표를 중단할 수 있음. |
| 미국 | 화요일(평일) | 1일 | 5시~21시 사이 (보통 12시간) |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 주별로 다름 |
| 프랑스 | 일요일 | 1일 | 8시~18시(10시간) |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 선거법 시행규칙 제41조 |
| 독일 | 일요일 | 1일 | 8시~18시(10시간) |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 선거법 제47조 • 단, 주선거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투표 시간을 앞당길 수 있음. |
| 일본 | 일요일 | 1일 | 7시~20시(13시간) | 주간 또는 야간개표 | 공직선거법 제40조 • 단, 시·정·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편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도·도·부·현 선거관리위원회의 승낙을 얻어 투표소 여는 시각을 2시간 이내에서 앞당기거나 늦추거나 또는 닫는 시각을 4시간 범위 내에서 앞당길 수 있음. |
| 스페인 | 일요일 | 1일 | 9시~20시(11시간) |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 선거법 제84조 |
| 스웨덴 | 일요일 | 1일 | 8시~20, 21시(12~13시간) |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 선거법 제10장 제1조 • 단 투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시간 단축 가능 |
| 스위스 | 일요일 | 2일 | 제네바) 오후 12시부터~ 취리히) 10시~12시 (주별로 다름) | | 규정 없음. |
| 캐나다 | 월요일(평일) | 1일 | 9시30분~21시30분 (동부 지역) 7시30분~19시30분 (산악 지역) 7시00분~19시00분 (태평양 지역) |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 선거법 제128,129,130,131조 |
| 호주 | 토요일 | 1일 | 8시~18시(10시간) |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 선거법 제220조 |

| 국가명 | 투표요일 | 일수 | 투표시간 | 개표시간 | 관련규정 |
|-------|---|----|---|---------------------------------|--|
| 오스트리아 | 일요일 | 1일 | 지역별로 시작시간 상이 17시 이전에 종료는 규정 |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 의회선거법 제1,52,59,84조 |
| 벨기에 | 일요일 | 1일 | 8시~13시(5시간) (다른 종류의 선거가 동시에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연장가능) | 투표완료즉시 (오후 2시 이전까지 개표소구성) | 헌법 제65조 선거법 제142,152조 |
| 체코 | 금요일 토요일 | 2일 | 금)14시~22시(8시간) 토)8시~14시(6시간) | 주간 또는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 선거법 제1,40조 |
| 칠레 | 일요일 | 1일 | 8시~18시(10시간) ⁹⁶⁾ |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 선거법 제63,65,74,75,180조 |
| 덴마크 | 경제내무부 장관이 별도 공표 ⁹⁷⁾ | 1일 | 평일(8시~20시;12시간) 주말(9시~20시;11시간) ※ 공휴일은 주말과 동일 |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 선거법 제21,46,68조 |
| 에스토니아 | 일요일 | 1일 | 9시~20시(11시간) |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 선거법 제2,38,57조 |
| 핀란드 | 일요일 | 1일 | 9시~20시(11시간) |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 선거법 제68,78,107조 |
| 그리스 | 일요일 | 1일 | 7시~19시(12시간) |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 선거법 제50,90조 |
| 헝가리 | 일요일 | 1일 | 6시~19시(13시간) |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 선거절차법 제6,169,188조 |
| 아이슬란드 | 토요일 | 1일 | 9시~17시(8시간) (마지막 투표 후 30분 동안 추가 투표가 없을 경우 종료, 늦어도 22시에는 종료)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모든 선거권자가 투표한 경우 14시 종료 가능) |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 의회선거법 제70,89,97조 |
| 아일랜드 | 금요일 ⁹⁸⁾ (법령에 따름 ⁹⁹⁾) | 1일 | 7시~22시30분 사이에서 담당 장관이 12시간 이내로 정하여 선거 시 공표 | 주간개표 (오전9시부터) | 선거법(1992) 제2조, 제96조제1항, 제114조제1항 |
| 이스라엘 | 화요일 ¹⁰⁰⁾ | 1일 | 7시~22시(15시간) |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 의회기본법 제9조 선거법 제72,79조 |
| 이탈리아 | 일요일 | 1일 | 8시~22시(14시간) ¹⁰¹⁾ |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 하원선거법 제48,64,64의2,67조 |
| 라트비아 | 토요일 | 1일 | 7시~20시(13시간) |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 선거법 제17,29조 |
| 리투아니아 | 일요일 | 1일 | 7시~20시(13시간) |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 의회선거법 제6,62,76조 |

| 국가명 | 투표요일 | 일수 | 투표시간 | 개표시간 | 관련규정 |
|-------|---------------------|----|--|-----------------------------------|--------------------------------|
| 룩셈부르크 | 일요일 | 1일 | 8시~14시(6시간) | 주간개표 ¹⁰²⁾ (투표완료 즉시) | 선거법 제73,134조 |
| 멕시코 | 일요일 | 1일 | 8시~18시(10시간) |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 연방선거법 제208,209,287조 |
| 노르웨이 | 월요일 ¹⁰³⁾ | 1일 | 8시(~13시)~ (18시~)21시 ※ 선거위원회가 투표 시간과 장소를 발표 (최종 마감시각 21시 ¹⁰⁴⁾) |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 선거법 제9-1,9-2,9-3,10-4,10-5조 |
| 네덜란드 | 수요일 | 1일 | 7:30~21시(13시간30분) | 21시 | 선거법 제F1,J1,N1조 |
| 뉴질랜드 | 토요일 | 1일 | 9시~19시(10시간) |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 선거법 제139,161,174조 |
| 폴란드 | 일요일 | 1일 | 7시~21시(14시간) |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 선거법 제4,39,71조 |
| 포르투갈 | 일요일 | 1일 | 8시~19시 |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 선거법 제20,101조 |
| 슬로바키아 | 토요일 | 1일 | 7시~22시(15시간) |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 선거법 제20조제3항 제29조제3항 |
| 슬로베니아 | 토요일 | 1일 | 7시~19시(12시간) |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 의회선거법 제68,84조 |
| 터 키 | 일요일 | 1일 | 8시~17시(9시간) |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 의회선거법 제6조 선거기본법 제89,95,96조 |

- 96) 칠레 선거법 제63,65조: 선거일 오전 8시부터 투표소 관리위원들이 투표 준비를 시작하며 담당자 동의하에 투표 개시를 선언. 각 투표소는 관리위원 및 대표자, 참관인의 서명을 받아 투표 시작시간을 분 단위까지 표기하여 기록. 투표는 오전 8시 이전에 시작할 수 없음.
- 97) 선거일 10일 전에 경제내무부 장관이 전국 신문에 선거일과 시간을 공표함(선거법 제21조(1)).
- 98) 2016 아일랜드 총선(금요일)
<https://www.google.com/search?q=2016+irish+general+election&sa=X&ved=2ahUKewibyIrV7pfkAhVDyosBHaaialUQ6RMwIXoECA4QBA&biw=1328&bih=769> (검색일 2019.5.7.)
- 99) 아일랜드 선거법(1992) 제96조: 의회 해산 이후 의회 사무처장이 선거 소집 영장을 발부하며 담당 장관(환경부, 선거법 제2조 the minister)이 선거일을 공표함(선거소집영장 발부일로부터 18일 이후, 25일 이내에 선거일 결정)
- 100) 이스라엘 의회 기본법 제9조: 총선은 의원 임기가 끝나는 해 2월 셋째 주 화요일에 실시. 윤년일 경우 첫째 주 화요일에 실시
- 101) 2018.3.4. 이탈리아 총선 7시~23시
<https://www.marketwatch.com/story/when-will-italian-election-results-be-known-2018-02-28> (검색일 2019.10.4.)
- 102) 룩셈부르크 선거법에는 개표 시작 시점을 명시하지 않음.
<https://delano.lu/d/detail/news/luxembourg-legislative-elections-first-time-voters-guide/190056> (검색일 2019.5.7.)

<표 9-3> OECD국가의 투표용지 내용 현황

| 구분 국가명 | 투표용지 개수 | 기호 | 후보자 이름 | 후보자 사진 | 정당명 또는 상징 | 기타 | 근거규정 |
|-----------------------|----------|----|--------|--------|--------------|---------------------------------|----------------------|
| 영 국 | 선거인별 1장 | ○ | ○ | × | ○ | - | 1983년 국민투표법 부록 |
| 미 국 | 선거인별 1장 | × | ○ | × | ○ | - | 주법 |
| 프랑스 | 후보자 별 1장 | × | ○ | × | ○ | - | 선거법 제315조 |
| 독 일 | 선거인별 1장 | ○ | ○ | × | ○ | - | 연방선거법 제30조제2항 |
| 일 본 | 선거인별 1장 | × | × | × | × | 자서식 투표 | 공직선거법 제45,46조 |
| 스페인 | 정당별 1장 | × | ○ | × | ○ | - | 선거법 제172조 |
| 스웨덴 | 정당별 1장 | × | ○ | × | × | - | 선거법 제6절 제1조 |
| 스위스 | 정당별 1장 | × | ○ | × | ○ | - | - |
| 캐나다 | 선거인별 1장 | × | ○ | × | ○ | 이름이 동일한 경우 직업·주소 함께 기재 | 선거법 제117조 |
| 호 주 | 선거인별 1장 | ○ | ○ | × | ○ | - | 연방선거법 제209조 |
| 오스트리아 | 선거인별 1장 | ○ | ○ | × | ○ | 후보자의 생년 | 의회선거법 제75조 |
| 벨기에 | 선거인별 1장 | ○ | ○ | × | ○ | - | 선거법 제128,143조 |
| 체 코 | 정당별 1장 | ○ | ○ | × | ○ | 직업, 나이 | 선거법 제38조 |
| 칠 레 | 선거인별 1장 | ○ | ○ | × | ○ | - | 선거법 제24,25,26조 |
| 덴마크 | 선거인별 1장 | × | ○ | × | ○ | - | 선거법 제43조 |
| 에스토니아 ¹⁰⁵⁾ | 선거인별 1장 | × | × | × | × | 후보자 등록번호를 직접 기입 | 선거법 제39조 |
| 핀란드 | 선거인별 1장 | × | × | × | × | 자서식 (후보자 기호를 적음) | 선거법 제51조 |

| 국가명 | 구분 | 투표용지 개수 | 기호 | 후보자 이름 | 후보자 사진 | 정당명 또는 상징 | 기타 | 근거규정 |
|-------|------------|---------|----|--------|-------------------|----------------------|----|---|
| 그리스 | 후보자·정당별 1장 | × | ○ | × | ○ | - | - | 선거법 제72조 |
| 헝가리 | 선거인별 2장 | ○ | ○ | × | ○ | 후보자 이름이 동일한 경우 생년 기입 | - | 선거절차법 제157,158, 160조 |
| 아이슬란드 | 선거인별 1장 | ○ | ○ | × | ○ | - | - | - |
| 아일랜드 | 선거인별 1장 | × | ○ | ○ | ○ | - | - | 선거법(1992) 제66조 |
| 이스라엘 | 정당별 1장 | × | × | × | ○ | - | - | 선거법 제76조 |
| 이탈리아 | 선거인별 1장 | × | ○ | × | ○ | - | - | 1996.7.8. n368 별첨 |
| 라트비아 | 선거인별 1장 | ○ | ○ | × | × | - | - | 선거법 제14조 |
| 리투아니아 | 선거인별 2장 | × | ○ | × | × | - | - | - |
| 룩셈부르크 | 선거인별 1장 | ○ | ○ | × | ○ | - | - | 선거법 제143조 |
| 멕시코 | 선거인별 1장 | × | ○ | × | ○ | 부, 모의 이름 | - | 연방선거법 제266조 |
| 노르웨이 | 선거인별 1장 | ○ | ○ | × | ○ (상징, 로고는 불가) | 직업, 출생연도, 거주지 | - | 선거법 제7-3조 선거규칙 총리령 ¹⁰⁶ 제19조 선거메뉴얼 8.5 |
| 네덜란드 | 선거인별 1장 | ○ | ○ | × | ○ | - | - | 선거법 제J20조 |
| 뉴질랜드 | 선거인별 1장 | × | ○ | × | ○ | - | - | 선거법 제150조 |
| 폴란드 | 선거인별 1장 | ○ | ○ | × | ○ | - | - | 선거법 제224조 |
| 포르투갈 | 선거인별 1장 | × | × | × | ○ | - | - | 선거법 제95조 |
| 슬로바키아 | 선거인별 1장 | ○ | ○ | × | ○ | 직업, 나이, 거주지 | - | 선거법 제55조제3항 |
| 슬로베니아 | 선거인별 1장 | ○ | ○ | × | ○ | - | - | - |

| 국가명 \ 구분 | 투표용지 개수 | 기호 | 후보자 이름 | 후보자 사진 | 정당명 또는 상징 | 기타 | 근거규정 |
|----------|---------|----|--------|--------|-----------|---------|------------|
| 터 키 | 선거인별 1장 | × | ○ | × | ○ | 정당대표 이름 | 의회선거법 제26조 |

- ※ 투표용지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 선거인별 1장)우리나라처럼 한 장의 투표용지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명이나 정당명이 모두 적혀있는 형태는 선거인별로 1장의 투표용지를 받음.
 - 후보자·정당별 1장)후보자나 정당별로 각각 투표용지가 작성되는 형태의 경우 투표소나 기표소 안에 투표용지가 게시되어 있어 선거인은 선호하는 후보자나 정당의 투표용지를 투표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함.
 - 일본의 경우 백지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을 적음.

103) 공식 선거일 전인 일요일에도 투표소를 운영할 수 있음(선거법 제9-2조).

104) 노르웨이 선거사무국 홈페이지(The Norwegian Directorate of Elections)
<https://www.valg.no/en/polling-stations/polling-stations/polling-places/?cpid=42> (검색일 2019.10.10.)

105) 대통령 선거는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이 기입되어 있음(대통령선거법 제8조).

106) 노르웨이 지방정부현대화부 ‘의회, 지방의회, 시의회 선거 규칙’ 총리령
 Regulations on elections to the Storting, county councils and municipal councils (election regulations)
<https://lovdata.no/LTI/forskrift/2003-01-02-5> (검색일 2019.10.10.)

<표 9-4> OECD국가의 부재자투표 실시 현황

| 국가명 | 실시 여부 | 신청일 | 근거규정 |
|-------|--|--|---------------------------------|
| 영 국 | 우편투표(여행, 신체장애자등), 대리투표 | 선거일 11일 전까지 | 2000년 국민대표법 부칙 4. 제3호 |
| 미 국 | 우편투표(사업, 여행 등 선거구에 부재중인 학생, 질병, 신체장애) | 선거일 전 일정한 기간 이내 (주별로 다름) | 주 선거법 |
| 프랑스 | 대리투표(외항선원, 군인, 임산부 등 환자, 선거구 밖의 학생, 휴가로 거주지 떠난 자) | - | 선거법 제70~78조 |
| 독 일 | 우편투표(직업, 질병, 고령, 장애 등으로 해당 선거구에 없는 자) | 선거일 2일 전 18시까지 | 연방선거법 시행령 제25,28조 |
| 일 본 | 부재자투표소 투표 우편투표(질병, 신체장애 등) 선상투표(외항선) | • 부재자투표소 투표-선거일 전일까지 • 우편투표, 선거일 4일 전까지 | 공직선거법 시행령 제50,55,56조 |
| 스페인 | 부재자투표(우편투표), 선상투표(해군함, 상선 또는 어선 등) | 선거소집일로부터 선거일 10일 이전까지 | 선거법 제72조 |
| 스웨덴 | 우편투표(우체국, 외항선, 양로원, 형사보호시설), 대리인에 의한 투표 | 선거일 45일 전까지 | 선거법 제7절 제11~15조 |
| 스위스 | 우편투표 | 주법으로 정함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
| 캐나다 | 우편투표(재외거주자, 군인, 교도소에 거주하는 자 등) | 선거일 6일 전 | 선거법 제183,11,232조 |
| 호 주 | 우편투표, 특별투표소 투표(병원, 이동투표소) | 선거일 3일 전 수요일 18시까지 | 연방선거법 제184A,184,224, 227조 |
| 오스트리아 | 우편투표 특별투표소 투표 방문 투표(투표가 불가능한 병상의 환자, 수감자, 교통시설의 부재 등으로 투표가 불가능한 자) | • 서면 신청: 선거일 4일 전까지 • 구두 신청: 선거일 2일 전까지 | 의회선거법 제38,39,60, 72,73조 |
| 벨기에 | 대리인에 의한 투표(재외거주자, 여행, 공부 등으로 거주지 떠난 자, 질병 등) | 선거일 또는 선거일 전일까지 | 선거법 제147조의2 |
| | 우편투표(재외거주자) | 재외공관에 등록 시 투표방법 으로 우편투표를 선택한 사람 에게 선거일 전 24일까지 투표 용지 송부 | 선거법 제180조의2,7 |
| 체 코 | 부재자투표소 투표(선거구 부재자) | 선거소집일로부터 선거일 7일 전까지 | 선거법 제6(a)조 |
| 칠 레 | 부재자투표소 투표(재외선거인) ※ 대통령선거, 대통령 예비선거, 국민투표만 실시 | - | 헌법 제13조 |

| 국가명 | 실시 여부 | 신청일 | 근거규정 |
|-------|--|--|----------------------------------|
| 덴마크 | (107)재외거주자, 페로제도/그린란드 거주자) 특별투표소 투표(병원, 요양원, 사회복지시설, 구급시설) 선상투표(외항선 선원과 승객, 해상플랫폼 근로자) 방문투표(투표소에 갈 수 없는 자와 간병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재자투표소 투표: 상시 가능 하나 사전투표인 경우 3개월 전부터 특별투표소 투표: 선거일 3주 전부터 선상투표(선거일 3주 또는 3개월 전부터 방문투표선거일 12일 전까지 | 선거법 제54,56,57,58, 59,60조 |
| 에스토니아 | 부재자투표소 투표, 특별투표소 투표(구급시설, 병원, 24시간 사회복지 시설) 방문투표(건강상태, 고령, 교통수단의 부족) 인터넷투표, 우편투표(재외거주자), 선상투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편투표: 선거일 30일 전까지 방문투표: 선거일 오후 2시까지 | 선거법 제38조, 제40~45조, 제50조제5항, 제56조 |
| 핀란드 | 부재자 투표소 투표(사전투표, 재외투표) 우편투표(재외거주자) 특별투표소 투표(병원, 사회복지시설, 구급시설) 방문투표(투표소에 갈 수 없는 자와 간병인) 선상투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투표: 선거일 12일전까지 우편투표: 선거일 3개월 전부터 신청 | 선거법 제46,55조 제66a,66c조 |
| 그리스 | 부재자투표소 투표(군인, 경찰, 소방관, 외항선 선원, 항공기 승무원) ※ 40인 이상의 신청 시 설치 | 내무부 장관이 관보에 신청기간 게재(선거운동기간 시작 전까지) | 선거법 제27조제1,5항 제96조제1항 |
| 헝가리 | 방문투표: 건강상태, 장애, 구류로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가 불가능한 자 우편투표(재외거주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투표: 우편신청은 선거일 4일전까지, 직접신청은 2일전까지 투표구사무소 또는 선거위원회에 신청 우편투표: 선거일 25일 전까지 | 선거절차법 제103,266조 |
| 아이슬란드 | 사전투표(병원, 요양기관 거주자, 교도소 수용자, 재외거주자 등) 거소투표(질병, 장애, 출산 등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자, 재외거주자) 선상투표(외항선 선원, 승객 등) | 선거일 4일 전까지 신청 | 의회선거법 제56,57, 58,59,60조 |
| 아일랜드 | 우편투표(경찰, 군인, 선거구 부재자, 질병, 신체장애) | 선거소집일 2일 후부터 선거일 22일 전까지 ¹⁰⁸⁾ | 선거법(1992) 제14조 |
| 이스라엘 | 원칙적으로 부재자투표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해외에서 공무를 수행중인 공무원에 한해 실시 ¹⁰⁹⁾ 부재자투표소(대사관에 설치) 선상투표(외항선) 허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상투표 - 내무부는 선거소집일로부터 선거일 53일 전까지 선거위원회에 선박 목록 송부 - 선거위원회는 선거소집일로부터 선거일 42일 전까지 선박 목록 확정 - 선상투표는 선거 12일 전 실시 | 선거법 제96,97,99조 |

| 국가명 | 실시 여부 | 신청일 | 근거규정 |
|-------|---|---|--|
| 이탈리아 | 부재자투표소 투표(군인, 외항선 선원, 환자 등) 우편투표(재외거주자) ¹¹⁰⁾ | 선거일 3일 전까지(요양시설) 선거일 32일 전까지 | 하원선거법 제49~54조 재외국민투표법 제4조의2 |
| 라트비아 | 부재자투표소 투표(재외선거인) 우편투표(재외선거인) 선상투표(외항선) 특별투표소 투표(재소자, 군인) | 우편투표: 선거일 5개월 전부터 3주 전까지 | 선거법제43조 제3,4,5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5 ¹⁻³ 조 |
| 리투아니아 | 우편투표(의료기관, 보호기관, 군부대, 교도소 등) 선상투표(선원, 승객) | 선거일 전 수요일까지 | 선거법 제67-73조 |
| 룩셈부르크 | 우편투표 | 선거일 12주 전부터 25일 전까지 | 선거법 제168조 제171조 |
| 멕시코 | 우편투표(재외거주자) | 선거 전년도 9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 연방선거법 제329,330,331조 |
| 노르웨이 | 부재자투표소 투표(선거구 부재자,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우편투표(재외거주자) | 7월1일~8월9일 7월1일~선거일 17시(우편투 표) ¹¹¹⁾ | 선거법 제8-6조 의회및지방선거 관련 총리령 제24a,26,28조 |
| 네덜란드 | 우편투표 대리투표 | • 우편투표: 선거일 28일 전까지 • 대리투표: 선거일 5일 전까지 | 선거법 제D2,L7,L9,K7, M1,M3조 |
| 뉴질랜드 | 부재자투표소 투표 우편투표, 온라인투표 방문투표(병원, 요양원, 수감 중인 자) | • 사전투표는 2011년부터 신청없이 가능 • 우편투표와 방문투표 신청은 후보자명부등록 및 선거인명부 등록 마감 이후부터 | 선거법 제61조 선거규칙 제19,20,23, 24,27조 |
| 폴란드 | 특별투표소 투표(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구급시설) 우편투표(장애인, 60세이상, 의무격리자) 재외투표소 투표 선상투표 | • 우편투표: 선거일 15일 전까지 (의무격리자의 경우 5일 전까지) • 선상투표: 선거일 30일 전까지 | 선거법 제12조제4항 제14,15조 제53a,53b조 |
| 포르투갈 | 부재자투표소 투표 우편투표(재외거주자) 특별투표소 투표(병원, 교도소) | • 사전투표: 선거일 14~10일 전까지 • 특별투표: 선거일 20일 전까지 | 선거법 제84조, 제79a~79e조 |
| 슬로바키아 | 우편투표(선거구 부재자, 재외거주자) | 선거일 50일 전까지 | 선거법 제59,60조 |

| 국가명 | 실시 여부 | 신청일 | 근거규정 |
|-------|---|---|---------------------------------|
| 슬로베니아 | 사전투표 우편투표(재외거주자, 요양시설, 병원) 재외투표소 투표 거소투표(질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투표: 선거일 5일전까지 • 우편투표: 선거일 10일전까지 • 재외선거: 선거일 30일전까지 • 거소투표선거일 3일 전까지 | 의회선거법 제69,81,82, 83조 |
| 터 키 | 우편투표(재외선거인) | 선거일 75일 전까지 | 선거기본법 제33조 제94B조 제94C조 |

- 107) 덴마크 사회내무부 홈페이지.
<https://elections.sim.dk/advance-voting/advance-voting-for-voters-living-in-denmark/> (검색일 2019.10.15.)
- 108) 아일랜드 시민정보포털.
https://www.citizensinformation.ie/en/government_in_ireland/elections_and_referenda/voting/registering_to_vote.html#leb892(검색일 2019.7.8.)
- 109) 이스라엘 외무부 홈페이지.
https://mfa.gov.il/MFA/AboutIsrael/State/Democracy/Pages/FAQ_Elections_Israel.aspx (검색일 2019.7.8.)
- 110) 이탈리아 외무부 홈페이지.
‘재외거주 이탈리아 국민의 우편투표(POSTAL VOTING FOR ITALIAN CITIZENS RESIDENT ABROAD)’
https://www.esteri.it/mae/en/sala_stampa/archivionotizie/retediplomatica/elettori-temporaneamente-all-estero.html (검색일 2019.10.11.)
- 111) 노르웨이 선거위원회(The Norwegian Directorate of Elections) 홈페이지 ‘재외투표(Voting Abroad)’
<https://www.valg.no/en/municipal-and-county-council-elections-2019/voting-in-advance/voting-abroad/> (검색일 2019.10.11.)

<표 9-5> OECD국가의 특별투표제도 현황

| 구분 | 국가명 | 우편투표 (Postal voting) | 사전투표 (Advance voting) | 대리투표 (Proxy voting) | 보조투표 (Assisted voting) | 근거규정 |
|----|-------|-------------------------|--------------------------|------------------------|---------------------------|---|
| | 영 국 | ○ | × | ○ | ○ | 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39호 2000년 국민대표법 부칙 4. 제3호 |
| | 미 국 | ○ | ○ | × | ○ | 투표권법 제2조, 주 선거법 |
| | 프랑스 | × | × | ○ | ○ | 선거법 제64,71조 |
| | 독 일 | ○ | × | × | ○ | 연방선거법 제8조 연방선거법시행령 제57조 |
| | 일 본 | ○ | ○ | × | ○ | 공직선거법 제48조, 제48조의2 |
| | 스페인 | ○ | × | × | ○ | 선거법 제87조 |
| | 스웨덴 | ○ | ○ | ○ | ○ | 선거법 제7절 제3조 제10절 제2조 |
| | 스위스 | ○ | ○ | × | ○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5조제6항 |
| | 캐나다 | ○ | ○ | × | ○ | 선거법 제154,168,232조 |
| | 호 주 | ○ | ○ | × | ○ | 연방선거법 제184A,200AA,234조 |
| | 오스트리아 | ○ | ○ | × | ○ | 의회선거법 제38,60,66조 |
| | 벨기에 | ○ | × | ○ | ○ | 선거법 제143조 147조의2,180조의5, 180조의7 |
| | 체 코 | × ¹¹²⁾ | × | × | ○ | 선거법 제19조제1,6항 |
| | 칠 레 | × | × | ○ | ○ | 선거법 제67,171조 |
| | 덴마크 | ○ | ○ | × | ○ | 선거법 제49,53,54,61조 |

| 국가명 구분 | 우편투표 (Postal voting) | 사전투표 (Advance voting) | 대리투표 (Proxy voting) | 보조투표 (Assisted voting) | 근거규정 |
|-----------------------|-------------------------|--------------------------|------------------------|---------------------------|---|
| 에스토니아 | ○ (재외투표에 한함) | ○ | × | ○ | 선거법 제38조, 제39조제5항 제40,52조 |
| 핀란드 | ○ (재외투표에 한함) | ○ | × | ○ | 선거법 제46,66a,73조 |
| 그리스 | × | × | × | ○ | 선거법 제83조 |
| 헝가리 | ○ (재외투표에 한함) | × | × | ○ | 선거절차법 제181,266조 |
| 아이슬란드 | ○ | ○ | × | ○ | 의회선거법 제12장, 제63,86조 |
| 아일랜드 | ○ | ○ ※도서지역만 실시 | × | ○ | 선거법(1992) 제38,64,85,100,103조 |
| 이스라엘 | × | × | × | × | - |
| 이탈리아 | ○ (재외투표에 한함113)) | × | × | ○ | 하원선거법 제55조 재외국민선거법 제12조제5항 |
| 라트비아 | ○ (재외투표에 한함) | × | × | ○ | 선거법 제25,45조 |
| 리투아니아 | ○ | ○ | ○ | ○ | 의회선거법 제4,5,67,67조의1 |
| 룩셈부르크 ¹¹⁴⁾ | ○ | × | × | ○ | 선거법 제168조 |
| 멕시코 | ○ | × | × | ○ | 연방선거법 제279,329조 |
| 노르웨이 | ○ | ○ | × | ○ | 선거법 제8-1~8-6조, 제9-5조 의회및지방선거관련 총리령 제24a,26,28조 |
| 네덜란드 | ○ | × | ○ | ○ | 선거법 제M1조, 제L1조, 제J28조 |
| 뉴질랜드 | ○ | ○ | × | ○ | 선거법 제61,70조 선거규칙 제24,27조 |

| 국가명 구분 | 우편투표 (Postal voting) | 사전투표 (Advance voting) | 대리투표 (Proxy voting) | 보조투표 (Assisted voting) | 근거규정 |
|-----------|------------------------------|--------------------------|------------------------------------|---------------------------|----------------------------|
| 폴란드 | ○ (장애인, 60세 이상, 의무격리자) | × | ○ (장애인 또는 60세 이상 선거인만 가능) | ○ | 선거법 제53,53a,54조 |
| 포르투갈 | ○ (재외투표에 한함) | ○ | × | ○ | 선거법 제79b,79g,97조 |
| 슬로바키아 | ○ | × | × | ○ | 선거법 제24조제1,6,7항 제60조 |
| 슬로베니아 | ○ | ○ | × | ○ | 의회선거법 제9,69,81,79조 |
| 터 키 | × | × | × | ○ | 선거기본법 제93조 |

- 112) The Czech Republic's voting rules do not, for the time being, allow postal voting.
https://europa.eu/youreurope/citizens/residence/elections-abroad/home-country-elections/czechia/index_en.htm
(검색일 2019.7.1.)
- 113) 이탈리아 외무부 홈페이지 ‘이탈리아 재외국민의 우편투표(Voting for Italian citizens resident abroad)’
https://www.esteri.it/mae/en/sala_stampa/archivionotizie/retediplomatica/elettori-temporaneamente-all-estero.html
(검색일 2019.10.14.)
- 114) 룩셈부르크 행정부 <https://jepeuxvoter.public.lu/en/faq.html> (검색일 2019.7.9.)

제10장 재외선거

<표 10-1> OECD국가의 재외선거인 자격요건기간

| 국가명 | 기간 | 근거규정 |
|-------|--------|---------------------|
| 영 국 | 15년 |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제141조 |
| 독 일 | 25년 | 연방선거법 제12조제2항 |
| 캐나다 | 5년 | 선거법 제222조제1항제a호 |
| 호 주 | 6년 | 연방선거법 제94조 |
| 덴마크 | 4년 | 선거법 제16조제2항 |
| 아이슬란드 | 8년 | 선거법 제1조제a항 |
| 이탈리아 | 최소 3개월 | 재외국민선거법 제4조의2 |
| 노르웨이 | 10년 | 선거법 제2-7조제3항 |
| 뉴질랜드 | 3년 | 선거법 제80조제1항 |

※ 미국, 프랑스, 일본,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칠레,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노르웨이,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터키는 기간 제한 없음.

<표 10-2> OECD국가의 재외선거

| 국가명 | 선거권 부여요건 | 투표 방법 | 근거규정 | 비고 |
|-----|--|---|--|---|
| 영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국내 종전 거주지인 선거구에 등록된 자 • 선거일 11일 전 17시까지 부재자신고인명부 등록신청 또는 해외투표자로 등록된 자 • 공무로 국외에 거주하는 군인 대사관, 영사관 직원 및 이들의 배우자 ※ 1985년 국민대표법에 의하여 영국을 떠난 지 5년 이내인 해외거주 영국 국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고, 1989년에는 20년 이내의 자로 그 기간이 연장되었다가 2000년 15년으로 축소됨. 영국을 떠날 때 연소자로서 등록되지 못한 자에게까지 선거권이 확대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투표, 대리투표를 할 수 있음 ※ 공무근무 투표자로 등록된 자가 대리투표인을 지정한 경우 우편투표 불가 ※ 우편투표용지는 선거일 10일 전에 발송 | <p>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2</p> <p>1985년 국민대표법 1,2조</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근무 중인 군인, 외교관과 같은 공무원, 영국문화협회 직원 등과 그의 배우자는 기간의 제한 없이 투표권을 가짐. |
| 미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에 거주하는 미합중국 시민으로서 18세 이상의 자, 선거 전 최소 30일 동안 해당선거구에 거주한 자 - 합중국출국직전까지는 그 주의 주소를 두고 있는 자(해당 선거일 30일 전 이전까지 신청서 제출) ※ 연방선거에 한해 재외투표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 주에서도 인정하고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투표의 방법으로 투표 | <p>군인 및 재외부재자 투표법 제20310조</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8.1.1 「군인 및 재외부재자투표법」에 의해 해외거주일 반인에게도 부재자투표를 허용함. |
| 프랑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국민으로서 프랑스 영사관내 등록되어 있는 자, 군인은 신청에 의하여 시·읍·면에 등록할 수 있음(해상생활하는 선원 및 그 가족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생활하는 선원, 해외거주자는 대리투표의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음. ※ 대통령선거의 경우 공관투표 허용,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국가에 인접된 도내에 설치된 투표소 | <p>선거법 제172조</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투표권 행사는 선거일 1명이 선거인 5명까지 대리투표가 가능 • 위임장 작성 |
| 독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이상 독일시민으로서 일정 공무원만 허용하였으나 1985년 법개정으로 해외거주 독일국민도 선거권을 갖게 됨. • 출국전 계속해서 3개월 이상 국내주소, 거소를 갖고 출국한 후 2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우편투표를 위한 선서에 갈음하는 보증'에 서명한 다음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발송(우편요금은 무료),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어야 함. | <p>연방선거법 제1266조</p> <p>연방선거법 시행령 제16~18조</p> | |
| 일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이상 일본국민으로서 그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영사관 관할구역 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주소를 가진 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공관투표, 우편투표, 귀국투표 등 3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음(투표시 여권, 재외선거인증 필요) • 재외공관투표는 선거공시일부부터 선거일 5일까지 투표함. | <p>공직선거법 제4장의2</p> | |

| 국가명 | 선거권 부여요건 | 투표 방법 | 근거규정 | 비고 |
|-------|--|---|----------------------------|--------------------------------------|
| 스페인 | • 만 18세 이상의 스페인시민으로서 국내외 인구조사(CER 및 CERA)에 가입한 자 | • 우편투표 또는 재외공관 투표 | 선거법 제36,72조 | |
| 스웨덴 | • 18세 이상 스웨덴 국민(과거 스웨덴에 주민으로 등록된 자 포함.) • 특별선거인명부에 등재(국회의원 선거만)되어야 하며, 신청시기는 매년 6월 1일까지 - 신청서에는 스웨덴 국민임을 선서하는 취지의 서류 첨부 | • 해외공관 또는 외항선에서 투표 - 선거일 24일 전부터 투표가 가능하며 선거일 전일 오전 12시까지 중앙선거청에 도달되어야 함. - 스웨덴 외항선으로서 선거일 55일 전부터 승무원, 승객은 투표할 수 있음. | 선거법 제5절 제2,4조, 제10절 2,5,6조 | • 투표시는 여권, 투표증, 선원수첩 등 신분확인 가능서류가 필요 |
| 스위스 | • 스위스에 거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외국에 있는 스위스 대표부에 등록된 스위스인(18세 이상) | • 우편투표로 항공우편 통해 발송 (유럽에서는 육상으로도 발송) | 재외스위스인법 제3조 | |
| 캐나다 | • 5년 이내의 해외체류자(외교관, 군인, 정부의 다른 해외요원은 체류기간 제한 없음) | • 일시적으로 캐나다 외 지역에 거주자 중 신청자는 우편에 의한 투표 • 신청은 선거일 6일 전 오후 6시까지 접수(등록 및 특별투표신청서) • 선거일직전 금요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어야 함. | 선거법 제202조 | |
| 호주 | • 일정요건을 충족시키는 해외거주자 | • 우편투표 • 신청은 선거시행영장이 발부된 후 또는 예정선거일이 공포된 후 | 연방선거법 제194조 | |
| 오스트리아 | • 영구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거나 일시 체류하는 선거권자 | • 우편투표 • 선거일 오후 5시까지 도달되어야 함. | 헌법 제26조제6항 의회선거법 제60조 | |
| 벨기에 | • 외교관직이나 해외영사관이 보관하고 있는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있는 18세 이상의 벨기에 국민 • 해외 공관이나 영사관의 재외국민 등록부에 등록되고 국내법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 출국 전 국내 등록부에 등록된 자 - 또는 벨기에에서 태어난 자 - 또는 부, 모 중 1인이 국내 등록부에 등록된 자 - 또는 (3등급??) 친척이 국내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거나 선조가 벨기에에서 태어나고 국내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 | • 벨기에 영토 또는 본인이 등록된 해외 공관이나 영사관에서 직접 또는 대리 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음. | 선거법 제180조, 180조의2~7 | |
| 체코 | • 특별선거인명부에 등록된 국외에 체류 중인 체코 시민 | • 재외공관 투표 | 선거법 제6조제5항, 제3조제2항, 제27조 | • 2002년부터 재외투표 허용(115) 허 |

| 국가명 | 선거권 부여요건 | 투표 방법 | 근거규정 | 비고 |
|-------|---|--|---|--|
| 칠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된 국외에 체류 중인 칠레 시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외공관 투표 | 헌법 제13조 선거법 제205,206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년부터 재외투표 허용, 2017년 대선에서 처음 실시 대통령선거, 대통령 예비선거, 국민투표만 실시 |
| 덴마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근로자, 선원 등 국제기구, 구호단체, 교육, 보건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자 - 위 사람들의 법적 배우자 또는 출국 전에 공동주소지 등록을 마친 동거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외공관 투표 외향선 선원, 해상 플랜트 근로자 등은 해당 선박에서 투표 | 헌법 제29조제1,2항 선거법 제1,2,16조, 제57조제1,2항, 제58조 | |
| 에스토니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투표(인터넷투표, 사전투표) 우편투표-신청은 30일 이전까지 재외공관 투표, 선상투표 귀국투표 가능 | 선거법 제49,50,52, 54,56조 | |
| 핀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외에 거주하는 모든 핀란드 국민(1972년 모든 국민에게 부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외공관투표(사전투표기간)- 선거일 11일 전부터 8일 이전까지 투표 우편투표-선거일 31일 전부터 투표 가능 선상투표-선거일 18일 전부터 8일 이전까지 투표 | 선거법 제46,47,66a, 66d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편투표는 2019년 의회선거에서 최초 실시 |
| 그리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그리스 시민 | - | 헌법 제51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권 행사를 위한 선거법상의 구체적인 법령 없음. |
| 헝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일 25일 전까지 재외선거인 명부 등록을 신청한 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외공관투표-선거일 당일 현지 시각 기준 6시~19시 우편투표-선거일 전일 24시까지 선거위원회로 도달해야 함 | 선거법 제84,259,266, 269,279조 | |
| 아이슬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8세 이상의 아이슬란드 국민이며, 8년 이내의 해외 거주자(선거일 전 12월 1일부터 계산했을 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사관, 영사관, 공관 등에서 투표 외향선박의 승무원, 승객은 선상 투표 | 의회선거법 제1조제a항, 59,60조 | |
| 아일랜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에서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과 그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편투표 | 선거법(1992) 제12조제1항 | - |
| 이스라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에서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 군인, 유대기구¹¹⁶⁾ 종사자, 이스라엘 국적의 선박에 승선중인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자 위 사람들의 배우자, 20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외공관, 대표부 투표 외교부는 선거일 53일 전까지 선거위원회에 재외선거인명부 제출 재외공관, 대표부 투표는 선거일 12일 전에 실시 선상투표 내무부는 선거소집일로부터 선거일 53일 전까지 선거위원회 | 선거법 제96,97,116조 | - |

| 국가명 | 선거권 부여요건 | 투표 방법 | 선거규정 | 비고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 선박 목록 송부 - 선거위원회는 선거소집일로부터 선거일 42일 전까지 선박 목록 확정 | | |
| 이탈리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학업, 치료 등의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이탈리아 시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투표 | 재외국민선거법 제4조의2 제12조 제2,3,5항 | |
| 라트비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라트비아 시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공관 투표 • 우편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은 선거일 5개월 전부터 시작하여 3주 전 마감 - 의회 해산으로 인한 우편투표 시 선거공표일 1주일 이후로부터 선거일 2주 전까지 • 선상투표 | 헌법 제48조 선거법 제43조 제3,4,5항 제44,45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선거인명부는 수도 선거구 선거인 명부에 통합됨. |
| 리투아니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이상의 리투아니아 국민으로서 선거일 최소 15일 전 외교관이 선거위원회에 제출한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투표 또는 재외공관에서 투표 | 선거법 제31,33,70조 | |
| 룩셈부르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룩셈부르크 시민 • 선거인등록이 되어 있는 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은 선거일 12주 전부터 시작하여 40일 전 마감 - 투표지가 동봉된 봉투는 선거일 오후 2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여야 함.117) | 선거법 제168, 170,171,177조 | - |
| 멕시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멕시코 시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투표 또는 대사관, 대표부 등에 설치된 투표소에 인편으로 전달 | 연방선거법 제329조 제1,2,3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상원의원, 주지사, 연방기관 및 연방직할구의 장(長) 선거에만 적용됨. |
| 노르웨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노르웨이 시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공관 투표 | 선거법 제2-4,2-7, 8-1,8-3조 의회및지방선거 관련 총리령 제28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공관 투표가 불가능할 경우 본인이 등록된 선거구로 우편투표 발송 가능118) |
| 네덜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자 • 선거인등록이 되어 있는 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투표 신청은 선거일 28일 전까지 • 대리투표 신청은 선거일 6주 전까지 신청 • 귀국투표 가능 신청은 선거일 6주 전까지 | 선거법 제D2조 제L9조, 제K7조, 제M1조, 제M3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선거인 등록은 선거일 6주 전까지 |
| 뉴질랜드 11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 이내에 해외에 체류한 시민권자 • 해외거주 중인 공무원, 외교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공관투표 • 선거일 17일 이전부터 투표용지를 인터넷으로 다운 받아 작성 후 은 | 선거법 제80조 선거규칙 | |

| 국가명 | 선거권 부여요건 | 투표 방법 | 근거규정 | 비고 |
|-------|--|--|--------------------------|----|
| | 무역대표, 군인과 해당 가족 | 라인으로 업로드하거나 직접전달,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 | 제43~52조 | |
| 폴란드 | • 선거일 3일 전까지 재외선거인 명부 등록을 신청한 선거권자 | • 재외투표소 투표- 선거일 현지시각 7시~21시 사이에 실시 | 선거법 제14,35,39조 | |
| 포르투갈 | • 공사 해외 주재원 • 국가대표로 선발된 운동선수 • 고등교육기관 혹은 주관부서가 인정하는 연구 기관의 학생, 연구원, 교수 등 • 해외에서 치료 중인 환자 • 위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자 | • 재외공관 투표(사전투표) - 투표는 선거일 12일에서 10일전까지 실시 • 우편 투표 | 선거법 제79b조~ 제79g조 | |
| 슬로바키아 |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슬로바키아 시민 - 국내 영구거주자가 없는 국민은 내무부 특별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야 함. | • 우편투표 - 신청서는 투표 50일 전까지 내무부에 송부되어야 함. - 신청자는 선거일 1일 전까지 투표용지를 내무부로 송부 | 선거법 제45조, 제59조 제1,8항 | - |
| 슬로베니아 | • 만 18세 이상의 슬로베니아 시민으로서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으며 선거일 전 30일까지 선거위원회에 신고한 재외거주자 | • 영사관에서 투표 • 우편투표 | 선거법 제82조 | |
| 터 키 |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터 키 시민 | • 재외공관 투표(선거일 45일 전부터 3일 전까지) • 우편투표 - 재외선거위원회는 선거일 75일 전까지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송부함. -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선거일 17시까지 재외선거위원회에 송부해야 함. | 헌법 제67조 선거법 제94B,94C조 | - |

115) The first direct Presidential Elections in Czech Republic took place in 2013, and external voting was allowed. Data has been updated in 2017. <https://www.idea.int/data-tools/country-view/91/52> (검색일 2019.7.17.)

116) 세계시온주의자기구(World Zionist Organization), 유대국가펀드(the Jewish National Fund), 케렌 하예소드(keren Hayesod)

117) Ballot envelopes must arrive at the polling station at the latest before 2 PM on election day. <https://elections.public.lu/en/systeme-electoral/legislatives-mode-emploi/vote-correspondance.html> (검색일 2019.9.2.)

118) 노르웨이 선거위원회 홈페이지 ‘Voting abroad(재외투표)’
<https://www.valg.no/en/municipal-and-county-council-elections-2019/voting-in-advance/voting-abroad/> (검색일 2019.10.16.)

119) New Zealand Electoral Commission
<https://vote.nz/how-to-vote/voting-from-overseas/> (검색일 2019.9.2.)

<표 10-3> 해외선거구 도입 국가

| 국가명 | 해외의석수 | 내용 |
|---------|-------|--|
| 알제리 | 8 | 총의석 382석 중 8석을 배정(대부분 프랑스에 거주) |
| 앙골라 | 3 | 총의석 220석 중 3석을 배정하기로 입법했으나 아직 재외선거 미실시 |
| 카페 베르데 | 6 | 총의석 72석 중 아메리카, 아프리카에 2석, 유럽에 2석, 그 외 지역에 2석 배정 |
| 콜롬비아 | 1 | 총의석 166석 중 1석을 배정 |
| 크로아티아 | 6 | 총의석 152석 중 최대 6석을 배정 |
| 도미니카공화국 | 7 | 총의석 183석 중 2석은 캐리비안과 라틴아메리카, 2석은 유럽, 3석은 캐나다와 미국에 배정 |
| 에콰도르 | 6 | 총의석 130석 중 6석 배정 |
| 프랑스 | 11 | 총의석 중 11개 선거구에 11석을 배정 ※ 1구역(캐나다, 미국) 2구역(남미) 3·4·5·6·7·8구역(유럽), 9·10(아프리카), 11구역(아시아, 오세아니아) |
| 이탈리아 | 12 | 상원 총의석 315석 중 6석을 배정 하원 총의석 630석 중 12석을 배정 ※ 유럽(상원 2, 하원 6), 남미(상원 2, 하원 3), 북·중미(상원 1, 하원 2), 아프리카/아시아/오세아니아/남극(상원 1, 하원 1) |
| 마케도니아 | 3 | 총의석 123석 중 유럽/아프리카 1석, 아메리카 1석, 아시아/오세아니아에 1석씩 배정 |
| 모잠비크 | 2 | 총의석 250석 중 아프리카에 1석, 그 외 지역에 1석 배정 |
| 파나마 | 6 | 총의석 130석 중 6석을 배정하기로 입법했으나 아직 재외선거 미실시 |
| 포르투갈 | 4 | 총의석 230석 중 유럽에 2석, 그 외 지역에 2석 배정 |
| 튀니지 | 18 | 총의석 217석 중 18석을 배정 |

※ 해외선거구는 재외선거권자의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대표를 뽑을 수 있도록 해외에 선거구를 정해 재외국민대표를 선출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출처: IDEA. 'Voting from abroad.'

http://en.wikipedia.org/wiki/Overseas_constituency (검색일 2019.10.16.)

<http://www.ipu.org/parline-e/parlinesearch.asp> (검색일 2019.10.16.)

제11장 전자투표

<표 11-1> 주요 전자투표 방식

| 방식 | 유형 | 설명 | 사용 국가 |
|------|--|--|--|
| PSV | 터치스크린 방식 (touch screen syste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크린에 정해진 부분을 눌러 투표하는 방식 • 네덜란드 및 2000년 영국 지방선거에서 실험 |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벨기에, 부탄, 브라질, 불가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온두라스, 인도, 이란, 이라크, 일본, 키르기스스탄, 몽골, 나미비아, 파나마, 페루, 필리핀, 러시아,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미국, 베네수엘라 |
| | PC 기반 방식 (pc based technologie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자가 투표권 등록 및 투표를 위해 스크린과 키패드의 조합을 활용하는 기술 • 브라질에서 사용 중 | |
| | 이동키오스크 (static or mobile kiosk)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의 편의 증진을 위해 투표소가 아닌 선거구 내의 편리한 장소에 설치되거나, 직장, 병원, 양로원 등 다양한 장소로 이동이 가능하며 키패드나 터치스크린 기술 활용 • DREs(Direct Recording Electronic)로 지칭 | |
| RVEM | 전화투표 (telephone votin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선전화나 이동전화를 사용하여 투표하는 시스템 • 영국의 Milton Keynes, Bristol and Croydon 등의 주민투표에서 활용 | 아르메니아, 호주, 캐나다, 에스토니아, 프랑스, 뉴질랜드, 몽골, 파키스탄, 파나마, 스위스, 미국 |
| | SMS (short message service text votin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자메시지서비스 기능을 활용하여 이동전화로 투표하는 시스템 • 2002년 영국 지방선거에서 실험 | |
| | 인터넷 투표 (internet votin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을 이용하여 어느 장소에서나 투표 가능 • 미국 Arizona주 민주당 예비선거와 2002년 영국 지방선거에서 실험 | |
| | 디지털 TV방식 (interactive digital TV)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적으로 공공부문 선거에서 활용된 사례가 현재까지는 없음. | |

※ PSV: Poll site e-voting, 터치스크린 방식 등을 사용한 투표소 전자투표

RVEM: Remote Voting by Electronic Means, 인터넷 투표와 같은 원격 전자투표

출처: IDEA. ICTs IN ELECTIONS DATABASE

<https://www.idea.int/advanced-search?th=ICTs%20in%20Elections%20Database®ion=&question=>
(검색일 2019.6.26.)

<표 11-2> 각국의 전자투표 실시 현황

| 국가명 | 적용선거범위 | 전자투표방식 | 투표자 범위 | 비 고 |
|---------|--------------|--------------|---------------------|---|
| 아르헨티나 | 지방선거 | EBPs | 특정 선거구 투표자 |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코르도바, 살타 등의 지역에서 지방입법과 집행부 선거 등을 위해 실시 |
| 아르메니아 | 전국선거 | 인터넷 투표 | 재외투표자 군인투표자 | 선거법 제62조 |
| 호 주 | 지방선거 | 인터넷 투표 | 특정 선거구 투표자 군인투표자 | 해외 복무 중인 군인과 서부 지역에서 시각 장애인에 한해 실시 |
| 방글라데시 | 전국선거 | DREs /EBPs | 특정 선거구 투표자 | 2018 총선 6개 선거구에서 실시 국민 대표 명령 제26B조 |
| 벨기에 | 전국선거 지방선거 | EBPs | 특정 선거구 투표자 | 일부 코뮌에서 실시 자동투표에 관한 법률2014 |
| 부 탄 | 전국선거 지방선거 | DREs | 모든 투표자 | 선거법 제330조 |
| 볼리비아 | 기타선거 | DREs | 특정 선거구 투표자 | 공공서비스협동조합 선거에서 시스템 적합성을 테스트함. |
| 브라질 | 전국선거 | DREs | 모든 투표자 | 선거법 제59조 |
| 불가리아 | 전국선거 지방선거 | DREs | 모든 투표자 | 선거법 제268조 |
| 캐나다 | 지방선거 | 인터넷 투표 | 특정 선거구 투표자 | 일부 자치단체와 읍 단위에서만 실시 |
| 콩고민주공화국 | 전국선거 | EBPs | 모든 투표자 | 2018년 총선에서 처음 실시 |
| 도미니카공화국 | 전국선거 | OMR or OCR | 모든 투표자 | 개표수준에서의 전자투표 |
| 에콰도르 | 지방선거 | 기타 | 특정 선거구 투표자 | 기본선거법 민주주의 규정 |
| 에스토니아 | 전국선거 | 인터넷투표 | 모든 투표자 | 선거법 제7장 |
| 피 지 | 기타선거 | DREs EBPs | 특정 선거 해당 투표자 | 산업단체나, 학생협회의 선거에서 실시, 피지간호협회 선거가 최초 |
| 프랑스 | 전국선거 | 인터넷투표 | 특정 선거구 투표자 | 3,500 이상의 코뮌에서 전자투표 실시가 가능, 6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
| 온두라스 | 전국선거 | OMR or OCR | 특정 선거구 투표자 | 2017년 경선과 총선에서 실시 |
| 인 도 | 전국선거 지방선거 | DREs | 모든 투표자 | 국민대표법 |
| 이 란 | 지방선거 | DREs | 특정 선거구 투표자 | 2017년 시와 마을의회선거, 145개의 시에서 실시 |
| 이라크 | 전국선거 | OMR or OCR | 모든 투표자 | 2018년 첫 실시, 기계를 통해 투표용지 판독과 지문 채취를 함께 함. |
| 일 본 | 지방선거 | DREs | 특정 선거구 투표자 | 2002년에 처음 시범 실시 각 지방자치단체가 투표 방법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함. |

| 국가명 | 적용선거범위 | 전자투표방식 | 투표자 범위 | 비 고 |
|--------|----------------------|--------------------------|---------------------|--|
| 키르기스스탄 | 전국선거 | OMR or OCR | 모든 투표자 | 2017 대통령 선거에서 실시 |
| 몽 골 | 전국선거 지방선거 | OMR or OCR SMS문자투표 | 모든 투표자 | 자동화된 선거제도에 관한 법 제1조제1항, 제28조 2015년 국민투표에서 문자 투표를 처음 실시 |
| 나미비아 | 전국선거 | DREs | 모든 투표자 | 투표 대기시간이 길어져 이탈하는 선거 인이 많아 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함. |
| 뉴질랜드 | 전국선거 | 인터넷투표 | 재외투표자 | 투표용지를 다운 받아 다시 업로딩 함. |
| 파키스탄 | 전국선거 | 인터넷투표 | 재외투표자 | 재외투표에 있어 모든 국가에서 가능 |
| 파나마 | 전국선거 기타선거 | DREs | 재외투표자 특정 선거구 투표자 | 파나마 시티 1개의 선거구에서 시범 실시 |
| 페 루 | 전국선거 지방선거 | DREs | 특정 선거구 투표자 | 2016 선거에서 전자투표 실시 선거구를 30개에서 16개로 줄였고, 전자투표기가 고장 사례도 있어 투표소마다 선거권자 과다 현상이 나타남. |
| 필리핀 | 전국선거 지방선거 | OMR or OCR | 모든 투표자 | 공화국 법 No.8436 |
| 러시아 | 전국선거 지방선거 | DREs OMR or OCR | 특정 선거구 투표자 | 선거권 보장 및 국민 투표의 연방 시민 참여에 관한 연방법 제2, 61조 전국에서 약 10% 정도의 선거구에서 실시 |
| 스위스 | 전국선거 지방선거 기타선거 | OMR or OCR 인터넷투표 | 재외투표자 특정 선거구 투표자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조례 제27조 연방수상직의 전자투표에 관한 조례 |
| 아랍에미리트 | 전국선거 | DREs | 모든 투표자 | 2015 연방국민협의회에서 실시 |
| 미 국 | 전국선거 지방선거 | DREs OMR or OCR 기타 | 각 주 별로 상이 | 몇몇 주들은 해외와 군사 선거권자에게 전자적 투표용지 전송을 허용 |
| 베네수엘라 | 전국선거 | DREs | 모든 투표자 | 선거과정 기본법의 일반규칙 제301조 |

※ 기타선거-선거관리기관이 지원하거나, 관할하는 비공직선거

※ 직접기록전자시스템(DREs, Direct recording electronic systems)방식은 투표확인지발급기(VVPAT, voter-verified paper audit trail)를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표기하였음.

※ OMR, OCR(Optical Mark Recognition,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수기로 작성한 투표지를 광학 스캔 방식으로 데이터를 인식

※ EBPs(Electronic ballot printers) 개별 투표지를 프린터에 넣고 전자입력방식을 통해 후보자를 선택하면 선택지가 출력되고 이를 투표함에 넣는 방식

출처: IDEA. ICTS IN ELECTIONS DATABASE

<https://www.idea.int/data-tools/data/icts-elections> (검색일 2019.6.25.)

<표 11-3> 전자투표 비실시 국가 현황

| 구분 | 국가명 | 현황 |
|-----------------------|---------------------|--|
| 전자투표 시행 이후 폐지한 국가 | 핀란드 ¹²⁰⁾ | 2008년 지방선거 3개 선거구에서 실시되었으나 대법원은 결과를 무효로 선언하고 기존의 종이 투표 방식으로 선거를 재실시 하였음. 시범실시 실패 이후 전자투표 추진계획을 유보함. |
| | 프랑스 | 사이버공격의 위험성을 우려해 2017년 재외국민의 전자투표 계획을 폐지 |
| | 독 일 | 2005년까지 전자투표 사용 연방선거법 제35조는 전자투표를 규정하지만 2009년 현재의 시행령 위헌 판결 이후 사실상 폐지 |
| | 카자흐스탄 | 2004년, 2005년, 2007년 선거에서 사용되었으나 계속된 공공의 신뢰문제와 시스템 갱신의 이유로 2011년 대통령 선거와 2012년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전자투표제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 |
| | 네 팔 | 2008년 제1대 의회의원 선거와 2014년, 2015년의 제2대 의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사용되었으나, 2017년, 2018년의 선거에서는 사용되지 않음. |
| | 네덜란드 | “We do not trust voting computers” 캠페인의 결과로, 20년 넘게 시행되었던 전자투표를 2007년에 폐지 |
| | 노르웨이 | 2011년 지방선거에서 10개의 시도에서, 2013년 지방선거에는 12개의 시도에서 시범실시 됨. |
| | 파라과이 | 2001년 지방선거 7개의 시도에서 첫 실험적 시행이 있었음. 2번째 실험은 2003년 대통령 선거에서 33개의 선거구에서 시행되었음. |
| | 루마니아 | 2003년 국민투표에서 해외주둔 군인에 한하여 시행되었음. |
| 타당성 조사 및 실험을 수행 중인 국가 | 스페인 | 사이버보안의 우려 때문에 전자투표 실시를 보류하고 있음. |
| | 터 키 | 전자투표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 | 영 국 | 현재 총선에서는 전자투표가 금지되어있으나 지방선거와 유럽의회선거에서 17개 시범사업을 통해 실험되었음. |
| | 멕시코 | 2021년 멕시코 주 선거의 재외투표를 인터넷으로 시행하기 위해 준비 중 |
| | 알제리 | 2022년 의회선거부터 도입할 예정으로 준비 중 |
| | 바레인 | 자동투표기 사용계획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으나 최근 뉴스는 없음. |
| | 콜롬비아 | 2011년 법률 1475호에서 2014년 의회선거까지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되지 못하였음. |
| | 코스타리카 | 2018년에 전자 선거를 고려하였으나 높은 도입 비용의 문제로 시행되지 않음. 2002년부터 다양한 방법이 실험 되어 왔으나 널리 시행되지는 않고 있음. |
| | 과테말라 | 2017년 정부는 사이버 보안상의 문제로 전자투표의 지속적인 추진은 위험하다고 판단 |
| | 아이티 | 사용된 적은 없으나 꾸준히 제안이 있음. |
| | 아이슬란드 | 전자투표과정 전반에 대한 검토 중 |
| | 인도네시아 | 선거위원회에서 투표, 개표, 재개표 과정에서의 전자통신기술의 활용방안 연구 중 |

| 구분 | 국가명 | 현황 |
|----|----------|---|
| | 아일랜드 | 2002년 총선 3개의 선거구에서 전자투표기가 시범운영 되었고, 이후 도입비용과 보안에 대한 논쟁이 많았고 기존 전자투표기의 처분도 논의 중 |
| | 이탈리아 | 전자투표 시스템의 도입은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3000명의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실험을 시행하기도 함. |
| | 쿠웨이트 | 2016년 국회선거에서 도입을 논의한 적이 있음. |
| | 리투아니아 | 온라인 투표의 실험이 2012년 실시 되었고, 2019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 예정이지만, 정부는 보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음. |
| | 몰도바 |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인터넷 투표의 타당성 조사가 보고되고 예비 로드맵이 작성 되어있음. |
| | 나이지리아 | 전자투표의 사용에 대한 토론은 있지만, 시행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진행은 없음. |
| | 포르투갈 | 기존 선거방식과 병용이 가능한 모바일 투표에 대해 검토 |
| | 사모아 | 2021년 총선에서 선거인의 확인과 개표 등의 절차에서 전자적 방법을 도입할 예정 |
| | 시에라리온 | 2018년 선거기간 동안 향후 전자투표에서 잠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일부 지역에서 실험 |
| | 남아프리카공화국 | 선거위원회는 전자투표 시행을 준비 중이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 | 우크라이나 | 선거위원회가 전자투표에서 사용하기 위한 블록체인의 실험을 2018년 시행 |
| | 우루과이 | 이전의 전자투표 계획은 폐기되었으나, 향후 실시 가능성을 가지고 필요 예산을 추정 중임. |
| 기타 | 잠비아 | 선거인과 후보자의 등록, 선거결과 전송 등의 과정에서 전자통신기술을 실험하고 있음. |
| | 오스트리아 | 2009년 총학생회 선거에서 사용되었으며 내무부 등 공공기관의 특별 조사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음. |
| | 리히텐슈타인 | 장래에 전자투표가 승인될 수 있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만, 타당성 조사와 실험은 아직 실시되지 않음(국가적 정치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제8b조) |
| | 스리랑카 | 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토론이 있었고 이에 관한 언론보도가 있음. |

출처: IDEA. ICTs IN ELECTIONS DATABASE

<https://www.idea.int/advanced-search?th=ICTs%20in%20Elections%20Database®ion=&question=>
(검색일 2019.6.26.)

120) Wikipedia. 'Electronicvoting'

https://en.wikipedia.org/wiki/Electronic_voting#Finland (검색일 2019.7.1.)

제12장 개표

<표 12-1> OECD국가의 개표장소 및 개표참관인

| 국가명 | 구분 | 개표장소 | 개표참관인 | 정당감시인 입회여부 | 근거규정 |
|---------------------|----|------|--------------------|---------------|-------------------------|
| 영국 | | 개표소 | ○ | ○ | 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1 제44조 |
| 미국 | | 투표소 | ○ | ○ | 주 선거법 |
| 프랑스 | | 투표소 | ○ | ○ | 선거법 제65,67조 |
| 독일 | | 투표소 | ○ | × | 연방선거법 시행령 제67조 |
| 일본 | | 개표소 | ○ (10명 초과시 추첨) | ○ | 공직선거법 제63,65조 |
| 스페인 | | 투표소 | ○ | - | 선거법 제95조 |
| 스웨덴 | | 투표소 | ○ | - | 선거법 제11절 제13조 |
| 스위스 | | 투표소 | - | - | 정치적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19조 |
| 캐나다 | | 투표소 | ○ | ○ | 선거법 제283조 |
| 호주 | | 투표소 | ○ | ○ | 연방선거법 제264,265조 |
| 오스트리아 | | 투표소 | ○ (1명 이상) | ○ | 의회선거법 제15,84조 |
| 벨기에 | | 개표소 | ○ | - | 선거법 제150,151조 |
| 체코 ¹²¹⁾ | | 투표소 | - | × | 선거법 제14g,40조 |
| 칠레 | | 투표소 | ○ | ○ | 선거법 제75조 |
| 덴마크 | | 투표소 | ○ (5명 이상 9명 이하) | ○ | 선거법 제29,68조 |
| 에스토니아 | | 투표소 | ○ | ○ | 선거법 제18,57조 |
| 핀란드 | | 투표소 | ○ | ○ | 선거법 제78,184조 |
| 그리스 ¹²²⁾ | | 투표소 | - | ○ | 선거법 제24,90조 |
| 헝가리 | | 투표소 | ○ | ○ | 선거법 제28,187조 |
| 아이슬란드 | | 개표소 | - | ○ | 의회선거법 제97,98조 |
| 아일랜드 | | 개표소 | ○ | ○ | 선거법 제112,113조 |

| 국가명 | 구분 | 개표장소 | 개표참관인 | 정당감시인 입회여부 | 근거규정 |
|-------|----|--------------------------------|--------------|-------------------|---|
| 이스라엘 | | 투표소 | ○ | ○ | 선거법 제79조 |
| 이탈리아 | | 투표소 | ○ (2명 이상) | - | 하원선거법 제67,68조 |
| 라트비아 | | 투표소 | ○ | ○ | 선거법 제29조제1,2항 |
| 리투아니아 | | 투표소 | ○ (2명 이내) | - | 의회선거법 제61,75조 |
| 룩셈부르크 | | 투표소 ¹²³⁾ | ○ | ○ ¹²⁴⁾ | 선거법 제63,66,148조 |
| 멕시코 | | 투표소 | ○ (1명 이상) | ○ | 연방선거법 제217,287조 정당법 제23조제1항제a호 |
| 노르웨이 | | 투표소 ※ 선거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름. | ○ | - | 선거법 제10-4,15-10조 |
| 네덜란드 | | 투표소 | ○ | - | 선거법 제E4조, 제N2조,제N5조 |
| 뉴질랜드 | | 투표소 | ○ | ○ | 선거법 제160,174조 |
| 폴란드 | | 투표소 | ○ | ○ | 선거법 제70,71조 제103a,103b조 |
| 포르투갈 | | 투표소 | ○ | ○ | 선거법 제101조, 제102조,제106a조 |
| 슬로바키아 | | 투표소 | ○ | ○ | 선거법 제27조 |
| 슬로베니아 | | 투표소 | - | - | 의회선거법 제84조 |
| 터 키 | | 투표소 | ○ | ○ | 선거기본법 제72,95,98조 |

121) 일반 시민, 국제기구, 정당 소속 감시인 입회에 대한 조항 없음.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czech-republic/375073?download=true>

122) OSCE. ‘그리스 2019 총선 보고서.’

The election law does not provide for citizen or international observers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greece/420842> (검색일 2019.10.17.)

123) 룩셈부르크 행정부

<https://guichet.public.lu/en/entreprises/ressources-humaines/representation-personnel/delegation-personnel/organiser-elections-sociales.html> (검색일 2019.7.16.)

124) 룩셈부르크 행정부

<https://guichet.public.lu/en/citoyens/citoyennete/elections/elections-legislatives/candidat-election-legislatives.html> (검색일 2019.7.16.)

제13장 당선인

<표 13-1> OECD국가의 의회의원 임기개시와 임기만료

| 국가명 | 구분 | 임기개시 | 근거규정 | 임기만료 | 근거규정 |
|-----|-----|---|-----------------------------------|---|----------------------------------|
| 영국 | 상원 | 국왕에 의해 임명장 수여시 공직 선서시 | 의회선서법 제1조 | 사망, 은퇴(70세, 시력감퇴 등) | 상원의회개혁법 2014 제1조 |
| | 하원 | 공직 선서시 | 의회의사규칙 제5,6조 | 법정 임기 만료시 의회 조기 해산시 | 고정임기법 제3조제1항 |
| 미국 | 상원 | 공직 선서시 선거일 이후 1월 3일 | 상원운영규정III 의회법 제1조 | 법정 임기 만료시 (의회 조기해산 제도 없음) | 수정헌법 제20조 |
| | 하원 | 공직 선서시 | 의회법 제25조 | 법정 임기 만료시 (의회 조기해산 제도 없음) | 수정헌법 제20조 |
| 프랑스 | 상원 | 간선)전임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날 선거를 실시한 후 일반회기가 개최되는 날 (상원의원선거는 임기만료 전 60일 안에 실시) | 헌법 제28조제1항 선거법 제277,278조 | 법정 임기 만료시 | 선거법 제275조 |
| | 하원 | 선거결과 공포시 | - | 법정 임기 만료시 (5년째 세 번째 화요일) 의회조기 해산시 | 선거법 제121조 헌법 제12조 |
| 독일 | 상원 | 해당 각 주의회에서 지명됐을 때 | 기본법 제51조 | 해당 각 주의회 결정시 | 기본법 제51조 |
| | 하원 | 선거구 선거위원회가 당선자를 확정 한 후 해당 당선인이 1주일 이내 서면으로 당선수락선언을 해당 선거위원장에게 보냈을 때 | 선거법 제45조 | 법정 임기 만료시 의회 조기 해산시 | 기본법 제39조제1항 기본법 제68조제1항 |
| 일본 | 참의원 | 당선인 결정시 단, 의원임기 만료 전이라면 임기만료일 다음날 | 공직선거법 제102,257조 | 법정 임기 만료시 의회 조기 해산 규정 없음 | 헌법 제46조 - |
| | 중의원 | 당선인 결정시 단, 의원임기 만료 전이라면 임기만료일 이후 | 공직선거법 제102,256조 | 법정 임기 만료시 의회 조기 해산시 | 헌법 제45조 헌법 제54조 |
| 스페인 | 상원 | 당선 선서시 | 상원의회규정 11,12 | 법정 임기 만료시 | 상원의회규정 18(e) |

| 국가명 | 구분 | 입기개시 | 근거규정 | 입기만료 | 근거규정 | |
|-------|----|---------------------------|-------------------------------------|-------------------|---|-------------------------|
| | | | | 의회 조기 해산시 | 헌법 제69조제6항, | |
| | | | | | 헌법 제99조제5항, 제115조 | |
| | 하원 | 당선 선언시 | 하원의회규정 20 | | 법정 입기 만료시 | 헌법 제68조제4항 하원의회규정 22(3) |
| | | | | | 의회 조기 해산시 | 헌법 제99조제5항, 제15조 |
| 스웨덴 | - |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 소집시 | 헌법 제153조제1항 정부기관법 제3장제5조 |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소집일 | 헌법 제153조제1항 정부기관법 제3장제5조 | |
| | | | | 의회 조기 해산시 | 헌법 제133조제e항, 제171조제2항, 제172조 선거법 제1장제4조 제2항 | |
| 스위스 | 상원 | 공직 선서시 | 의회의사규칙 제4조제1항 |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시 | - | |
| | 하원 | 공직 선서시 | 의회 의사규칙 제4조제2항 |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시 | - | |
| 캐나다 | 상원 | 선거일 당선인 결정시 | 헌법 제19조제3항 | 법정 입기 만료시 | 헌법 제25조제b항 | |
| | 하원 | 선거일 당선인 결정시 | | 의회 조기 해산시 | | 헌법 제25조제e항 |
| 호주 | 상원 | 선거일 당선인 결정시 | 선거법 제42조 | 다음 총선거의 선거일 전날 만료 | 헌법 제13조 | |
| | 하원 | 당선 후 첫 회의 개시일 | 헌법 제57조 | 법정 입기 만료시 | 헌법 제5,28조 | |
| 오스트리아 | 상원 | 당선인 결정시 ※ 주의회 인구비례로 간선 | 연방헌법 제35조제1항 상원의원 운영규정에 관한 법 제1조제1항 | 법정 입기 만료시 | 연방헌법 35조제3항 | |
| | | | | 의회 조기 해산시 | 상원의원운영규정에 관한 법 제3조제1,2항 | |

| 국가명 | | 구분 | 입기개시 | 근거규정 | 입기만료 | 근거규정 |
|-------|-----|----------------------------|-----------------------|---|--------------------------------------|------------|
| | 하원 | 신임장이 의회 행정국에 도착했을 때 | 하원의원 운영규정에 관한 연방법 제9조 | 새로운 의회의원들의 첫 회의 개시일 | 연방헌법 제27조제1항, 제29조제3항 | |
| | | | | 의회 조기 해산시 ※ 이 경우 연방대통령이 조기 해산에 따른 입기만료일자를 정함 | 연방헌법 제29조제2,3항 | |
| 벨기에 | 상원 | 직선) 선거일 당선인 결정시 간선) 지명시 | - | 직선) 새로운 선거일 간선) 새로운 의원 회의 개시일 전일 | 선거법 제239조 | |
| | 하원 | 선거일 당선인 결정시 | - | 법정 입기 만료시 의회 조기 해산시 | 헌법 제46조 선거법 제239조 | |
| 체코 | 상원 | 선거일 당선인 결정시 | 헌법 제19조제3항 | 법정 입기 만료시 | 헌법 제25조제b항 | |
| | 하원 | 선거일 당선인 결정시 | | 의회 조기 해산시 | | 헌법 제25조제e항 |
| 칠레 | 상원 | 공직 선서시 | 상원의사규칙 제4조제4항 | 법정 입기 만료시 (중신상원의원제외) | - | |
| | 하원 | 공직 선서시 | 하원의사규칙 제32조제2항 | 법정 입기 만료시 | - | |
| 덴마크 | - | 선거일 당선인 결정시 | 헌법 제32조제7항 | 새로운 선거일 | 헌법 제32조제4항 | |
| | | | | 의회 조기 해산시 | 헌법 제32조제2,3항 | |
| 에스토니아 | 단원제 | 선거일 당선인 결정시 | 헌법 제61조제1항 | 새로운 의회의 선거일 당선인 결정시 | 헌법 제61조제1항 | |
| | | | | 의회 조기 해산시 | 헌법 제89조제6항, 제97조제4항, 제105조제4항, 제119조 | |
| 핀란드 | 단원제 | 선거 결과 확정 및 공표시 | 헌법 제24조 선거법 제94조 | 새로운 의회의 선거 개최시 | 헌법 제24조 | |
| 그리스 | 단원제 | 선거 결과 공표시 | 헌법 제53조제1항 | 법정 입기 만료시 | 헌법 제53조제1항 | |
| | | | | 의회 조기 해산시 | | |
| 헝가리 | 단원제 |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시 | 헌법(STATE) 제3조 |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시 | 헌법(STATE) 제3조 | |

| 국가명 | | 구분 | 입기개시 | 근거규정 | 입기만료 | 근거규정 |
|-------|-----|------------------------------|---|------------------------------|--------------------|---------------|
| | | | | | 의회 조기 해산시 | 헌법(STATE) 제3조 |
| 아이슬란드 | 단원제 | 공직 선서시 | 헌법 제46,47조 의회절차법 제1,2조 | 새로운 의회의 선거일 의회 조기 해산시 | 헌법 제24조 | |
| 아일랜드 | 상원 | - | - | 법정 입기 만료시 | 헌법 제18조제9항 | |
| | 하원 | 새로운 의원들의 첫 집회일로부터 5년 | 선거법 제33조 | 법정 입기 만료시 | - | |
| 이스라엘 | 단원제 | 공직 선서시 | 헌법 제14,16조 |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시 | 헌법 제37조 | |
| | | | | 의회 조기 해산시 | 헌법 제34-37조 | |
| 이탈리아 | 상원 | 당선인 결정시 | 상원 의회규정 제1조제1항 |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시 중신 상원의원 제외 | 헌법 제61조 헌법 제59조 | |
| | | | | 의회 조기 해산시 | 헌법 제88조 | |
| | 하원 | 공직 선서시 | - |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시 | 헌법 제61조 | |
| | | | | 의회 조기 해산시 | 헌법 제88조 | |
| 라트비아 | 단원제 | 이전 의원들의 입기 만료시 /입기의 유효성의 인증시 | 헌법 제12조 |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시 | 헌법 제12,13,49조 | |
| | | | | 의회 조기 해산시 | 헌법 제48,50조 | |
| 리투아니아 | 단원제 | 공직 선서시 | - |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시 | - | |
| 룩셈부르크 | 단원제 | 공직 선서시 | 헌법 제57조제2,3항 의회규정 제3조제6항 | 법정 입기 만료시 의회 조기 해산시 | - | |
| 멕시코 | 상원 | 공직 선서시 | 헌법 제128조 의회기본법 제62조제1,2항 의회내부규칙 제8,9,193조 | 법정 입기 만료시 의회 조기 해산시 | - | |
| | 하원 | 공직 선서시 | - | 기타 | - | |
| 네덜란드 | 상원 | 공직 선서시 | - | 기타 | - | |
| | 하원 | 공직 선서시 | 헌법 제60조 |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 전날 의회 해산시 | 헌법 제64조 | |
| 노르웨이 | 단원제 | 새로운 의원들의 첫 집회시 | 의회의사규칙 제1조제1항 | 법정 입기 만료시 | - | |
| 뉴질랜드 | 단원제 | 소집령 반환 지정일의 다음날 | 선거법 제54조 | 새로운 선거일 | 선거법 제54조 | |

| 국가명 | 구분 | 임기개시 | 근거규정 | 임기만료 | 근거규정 |
|-------|----------|-------------------|------------------------|------------------------|------------------------------|
| | | | | 의회 조기 해산시 | 헌법 제18조 |
| 폴란드 | 상원 | 선거결과 공포시 | - | 법정 임기 만료시 | 헌법 제98조 제1,3,4항 |
| | | | | 의회 조기 해산시 | 헌법 제155조제2항, 제225조 |
| | 하원 | 선거결과 공포시 | - | 법정 임기 만료시 | 헌법 제98조제1,3항 |
| | | | | 의회 조기 해산시 | 헌법 제155조제2항, 제225조 |
| 포르투갈 | - |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 개시일 | 헌법 제153조제1항 의회의사규칙 제1조 |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 개시일 | 헌법 제153조제1항 |
| | | | | 의회 조기 해산시 | 헌법 제133조제e항, 제171조제2항, 제172조 |
| 슬로바키아 | 단원제 | 공직 선서시 | 헌법 제75조 | 법정 임기 만료시 의회 조기 해산시 | 헌법 제81a조 |
| 슬로베니아 | 상원 하원 | 새로운 의원들의 첫 집회시 | - |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시 | - |
| 터 키 | 단원제 | 선거결과 공포시 | 헌법 제81조 | 새로운 의원들의 임기 개시시 | 헌법 제77조제2,3항 |
| | | | | 의회 조기 해산시 | |

출처: IPU. PARLINE DATABASE. <http://archive.ipu.org/parline-e/mod-mandate.asp> (검색일 2019.6.25.)

제14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표 14-1> OECD국가의 의회의원 결원 시 보충방법

| 국가명 | 결원 시 보충방법 | 근거규정 |
|-----|---|--|
| 영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퇴, 제명, 귀족신분 격상, 정신장애, 사망의 경우 보궐선거 실시(공식적인 의원사퇴는 인정하지 않고 간접사퇴 방식 활용) 결원이 발생한 정당의 원내대표가 보궐선거 발의, 의회의장이 보궐선거에 관한 선거 소집령 발주절차 수행(통상적으로 공식발생 3개월 이내), 관례에 따라 목요일을 선거일로 채택, 총선거보다 일정단축 실시 | 1983년 국민대표법 제144조, 부칙1, 제64조 |
| 미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원의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주지사가 다음 선거시까지 임시후임자를 임명하거나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결원을 충원(주마다 다름) 하원의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주지사가 공고하는 보궐선거에 의해 충원(주마다 다름) 하원의원의 경우 연방하원의장의 결원공포가 있는 날부터 원칙적으로 49일 이내에 실시 | 연방선거법 제1장 제2조 연방법 제2편 제1장 제8조 |
| 프랑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수대표제에 의해 선출된 상원의원이 사망하거나 행정부 또는 헌법평의회 구성원직 승낙, 정부의 잠정임무 6개월 이상 연장 수행 시 동시에 선출된 대리후보로 충원 하원의원의 경우 다음 총선거까지 그 대리후보로 교체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된 의원은 해당 명부상의 다음 순위자로 충원 선거무효와 대리승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 보궐선거를 실시 | 선거법 제176조 |
| 독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궐선거: 결원은 선거일 이후보한 정당의 주명부에서 승계되거나 결원자가 소선거구의 무소속이거나 해당 주에서 정당명부를 등록하지 못한 경우 실시(결원 시 60일 이내) 재선거: 선거무효 결정 확정 후 60일 이내 실시 추가선거: 하나의 선거구 또는 투표소에서 선거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본선거일로 3주 이내 실시), 선거구 후보자 중 한 명이 후보자 등록 후 선거 전에 사망한 경우(본선거일로부터 6주 이내 실시) | 연방선거법 제43,44,46조 |
| 일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선거: 당선인수 미달, 선거일 후 당선인 사망, 당선무효의 경우 보궐선거: 당선인이 의원이 된 후 사망·사직·퇴직의 경우 중의원 선거에서 결원발생, 참의원의원정수 1/4 초과 결원 발생, 비례대표선거구에서 해당선거구 정수의 1/4 초과 결원 발생 실시시기: 중의원·참의원 재선거는 사유발생일로부터 40일 이내, 보궐선거는 9.16-3.15 사이는 4월의 네 번째 일요일, 3.15-9.15 사이는 10월의 네 번째 일요일,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재선거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임기만료일 6개월 전부터는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음. | 공직선거법 제133조의2, 제109,110,113조 |
| 스페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원 발생 시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 선거법 제164조 |
| 스웨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퇴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대리의원으로 충원 | 선거법 14절 18조, 15절 13,14조 |
| 스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원 발생 시 후보자명부에 있는 차순위자(후보자 추천)로 충원, 추천자 없을 시 보궐선거 실시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55,56조 |

| 국가명 | 결원 시 보충방법 | 근거규정 |
|-------|--|--|
| 캐나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원의원의 경우 총독이 임명하여 충원 • 하원의원의 경우 보궐선거 실시 | 선거법 제57조 |
| 호 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원의원의 경우 총독이 소집한 상·하원의원합동회의에서 선출하여 충원 • 하원의원의 경우 보궐선거 실시 | 헌법 15,33조 연방선거법 제44조 |
| 오스트리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원: 의원 선출시 대리후보자를 동시에 선출하기 때문에 대리후보자로 충원 • 하원: 후보자명부 중 차순위자로 14일 이내에 충원 | 상원절차규정 제2조제2항 헌법 제34조제2항 의회선거법 제98조제5항 |
| 벨기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원 발생 시 40일 이내에 선거위원회 회의 소집, 보궐선거일은 법령으로 결정하며 본선거 실시 3개월 전에 공식 발생할 경우, 의회에서 결정 | 선거법 제106조 |
| 체 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원 발생 시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명부상의 차순위자로 충원 • 차순위자가 없을 경우 해당 의석은 공석으로 둠. • 정당해산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해당 의석은 공석으로 두며 임기 동안 충원하지 않음. | 선거법 제54조제1~3항 |
| 칠 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 결원 발생 시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에서 지명 | 헌법 제51조 |
| 덴마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원 발생 시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 차순위자가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선거구의 정당명부 차순위자로 충원 • 해당 지역에 정당명부의 차순위자가 없을 경우 전국단일선거구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 위 방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보궐선거 실시 | 선거법 제92조 |
| 에스토니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 사직, 제명 등의 이유로 결원 발생 시 등록된 대리 후보로 교체 • 전국적으로 5% 이상 득표한 정당에 소속된 후보 중, 득표수가 많은 후보, 동일 득표의 경우 후보자명부의 순서에 따라 대리후보를 등록 | 헌법 제64조 선거법 제75조 |
| 핀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 선출시 같은 명부상의 차순위자를 대리인(부대표)으로 임명하고 결원 발생 시 의원직을 승계 | 선거법 제92조 |
| 그리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원 발생 시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 차순위자가 없는 경우 보궐선거 실시 | 선거법 제104조 |
| 헝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구의원 결원 시 보궐선거 실시 • 비례대표의원의 결원 시 소속 정당이나 연합의 후보자명부의 후보 중에서 임명하고 명부에 후보자가 더 이상 없을 경우는 공석으로 둠. | 헌법 제4조, 의회선거법 제19,20조 |
| 아이슬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원 발생 시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 의회선거법 제122조 |
| 아일랜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궐선거 실시¹²⁵⁾ | 선거법(1992) 제39조제2항 |
| 이스라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 의회 기본법 제43조 |
| 이탈리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원 발생 시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 차순위자가 없는 경우 다른 선거구 정당명부에 의석을 배분 | 하원선거법 제84,86조 |
| 라트비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퇴, 사망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 선거법 제41조, |

| 국가명 | 결원 시 보충방법 | 근거규정 |
|-------|--|------------------------------|
| 리투아니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례대표의석의 경우 해당 정당명부의 차순위 후보자에 의하여 충원 • 소선거구 의석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다음 선거일까지 1년 미만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음. | 선거법 제97조 |
| 룩셈부르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퇴, 사망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 정당명부에 차순위자가 없을 경우 공석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자 는 내무부 장관이 결정 | 선거법 제167조 제259조 |
| 멕시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일 경우 선거절차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로 보궐선거 실시 • 하원 지역의원 결원 발생 시 보궐선거 실시 • 하원 비례대표의원 결원 발생 시 정당명부의 차순위 후보자로 충원 • 상원 비례대표의원 결원 발생 시 정당명부의 차순위 후보자로 충원 | 연방선거법 제23조 |
| 노르웨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원 발생 시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 선거법 제14-1조 |
| 네덜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 사직, 제명, 공직 임명 등의 이유로 결원 발생 시 14일 이내에 후보자명부에 있는 차순위자로 충원 | 헌법 제57조 선거법 제X1~X3조, 제W1조 |
| 뉴질랜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구의원 결원 시 보궐선거 실시. 단, 의회 임기가 6개월 내에 만료되거나, 의원 75%의 찬성으로 충원하지 않을 것이 의결된 경우 공석으로 유지 • 비례대표의원의 결원 시 같은 정당 후보자명부의 차순위자가 승계 | 선거법 제129,131,137조 |
| 폴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원: 3개월 이내에 보궐선거가 실시 • 하원: 같은 정당 후보자명부에 있는 차순위자가 의석 승계 | 선거법 제251,283조 |
| 포르투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원 발생 시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 선거법 제18조 |
| 슬로바키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 차순위자가 없을 경우 해당 의석은 공석으로 둠. • 정당 해산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해당 의석은 차순위자로 충원할 수 없으며 임기 종료 시까지 충원하지 않음. | 선거법 제71조 제1~3항 |
| 슬로베니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정당명부의 차순위 후보자에 의하여 충원 • 명부에 후보자가 없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의회임기만료 6개월 이내에 결원생길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음. | 선거법 제17,18조 |
| 터 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원 발생 시 중간선거(Midterm Election) 실시 • 중간선거는 임기 중 1회만 실시할 수 있음. • 총선 30개월 이전에는 중간선거를 실시할 수 없으나 결원이 의원 총원의 5% 이상이 될 경우 의회는 3개월 이내로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총선 1년 전에는 중간선거를 실시할 수 없음. | 의회선거법 제7조 |

125) If a TD (member of Parliament) dies or resigns, his or her seat in Parliament will be filled by a bye-election unless it is only a short time until the next general election.
https://www.citizensinformation.ie/en/government_in_ireland/elections_and_referenda/national_elections/by_elections_in_ireland.html (검색일 2019.9.2.)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표 15-1> OECD국가의 선거에 관한 쟁송 제기방법

| 국가명 | 소송/이의제기 | 관할기관 | 관련규정 |
|-----------------|----------------------------|-----------------------------------|----------------------------|
| 영국 |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송 | 선거법원(항소법원에 항소 가능) | 1983년 국민대표법 제121~123조 |
| 미국 (캘리포니아 주) | 당선, 뇌물관련범죄 투·개표 문제 | 고등법원(항소법원에 항소 가능) | 캘리포니아 주 선거법 제16100,16400조 |
| 프랑스 |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송 | 헌법위원회 | 선거법 제118-1,118-3,180조 |
| 독일 | 선거효력에 관한 심사 | 연방헌법재판소 | 기본법 제41조 |
| 일본 | 선거효력에 관한 이의신청 | 해당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 | 공직선거법 제204,208조 |
| | 선거·당선 소송 | 고등재판소에서 판결 | |
| 스페인 | 당선인 공표 등 선거쟁송 대상 | 선거관리기관에 제기 후 대법원 행정소송 합의부에서 판결 | 선거법 제109~112조 |
| 스웨덴 | 선거결과·투표결과 | 선거감독위원회 | 선거법 제15절 |
| 스위스 | 선거준비·선거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 주정부 결정 후 연방최고법원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77~80조 |
| 캐나다 | 당선,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 | 주 대법원 또는 최고법원 (연방대법원에 항소 가능) | 선거법 제524,525조 |
| 호주 | 선거의 효력 | 고등법원(연방법원에 항소 가능) | 연방선거법 제353,354조 |
| 오스트리아 | 개표에 관한 이의신청 | 연방선거위원회 | 의회선거법 제110조 |
| | 선거절차·당선무효 소송 | 헌법재판소 | 헌법 제10,141조 헌법재판소법 제67조 |
| 벨기에 |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제기 | 지방자치단체(항소법원에 항소가능) | 선거법 제19,20,27조 |
| | 후보자등록에 관한 이의제기 | 선거관리위원회 (항소법원에 항소가능) | 선거법 제125조, 125조의1~4 |
| | 언론 관련 이의제기 ¹²⁶⁾ | 언론규제기관(행정법원에 항소가능) | - |
| | 선거비용 관련 이의제기 | 재정감사기관(행정법원에 항소가능) | - |

| 국가명 | 소송/이의제기 | 관할기관 | 관련규정 |
|-------|---|---|-------------------------------|
| 체코 | 선거의 효력, 결과·당선에 관한 이의제기, 투·개표문제 | 최고행정법원 | 선거법 제87,88조 |
| 칠레 | 선거법 위반행위,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투·개표문제 | 지방선거법원 | 선거법 제105,106조 |
| 덴마크 | 선거관련 이의제기 | 의회 | 선거법 제87,88,89조 |
| 에스토니아 | 선거과정의 위법, 절차 하자에 대한 의의신청, 투표결과의 무효 | 선거위원회(대법원에 항소 가능) | 헌법재판소 절차법 제37조 선거법 제68~73조 |
| 핀란드 | 선거결과에 관한 소송 (대통령선거는 불가) | 관할 행정 법원 최고행정재판소에 항소 가능 | 선거법 제100,102,105조 |
| 그리스 | 당선인의 피선거권 결격, 선거절차 및 법규의 위반, 개표오류 관련 문제 | 대법원 | 헌법 제58,100조 선거법 제125,126조 |
| 헝가리 | 선거 절차 및 법규의 위법에 대한 이의제기 | 선거구 선거위원회, 지역구 선거위원회 | 선거법 제208조 |
| | 선거위원회 결정에 대한 소제기 | 최고법원 및 항소법원 | 제221,222,229조 |
| 아이슬란드 | 당선인에 관한 이의제기 후보자명부에 대한 이의제기 선거의 효력에 관한 이의제기 | 법무부에 제기 후 법무부는 후보자명부 작성주체와 의회에 송부, 의회에서 결정 | 의회선거법 제118,120조 |
| | 선거법 위반행위 | 경찰에 제기하여 범죄처리 절차에 따름. | 의회선거법 제119조 |
| 아일랜드 | 입후보자격, 선거법 위반행위,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투·개표문제 | 고등법원 | 선거법 제132조제1,5항 |
| 이스라엘 | 의석배분 문제,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투·개표문제 | 행정법원 | 선거법 제86조제A,B항 |
| 이탈리아 | 선거관련 이의제기 | 의회 | 헌법 제66조 |
| 라트비아 | 선거위원회의 후보자명부 등록 거부 | 지방행정법원 | 선거법 제13,351,51, 521,54조 |
| | 개표문제,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선거범죄 판결에 따른 의석 배분 문제 | 대법원 | |
| 리투아니아 | 선거결과에 관한 이의제기 | 선거위원회 (불복할 경우 의회의원, 대통령에게 이의제기 후, 의회의원과 대통령은 48시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항소) | 선거법 제86조 |
| | 선거과정에 관한 이의제기 | 헌법재판소에 제기 후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근거하여 의회에서 최종결정 | 선거법 제95조 |
| 룩셈부르크 | 선거인명부 오류,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투·개표문제 | 행정법원 | 선거법 제21,22조, 제276조~279조 |

| 국가명 | 소송/이의제기 | 관할기관 | 관련규정 |
|-------|--|--------------------|-----------------------------|
| 멕시코 | 선거관련 이의제기 | 선거법원 | 헌법 제99조 |
| 노르웨이 | 투표권 및 투표권 행사 | 의회 | 선거법 제13-1조 |
| | 이의 선거관련 이의제기 | 중앙선거위원회 | |
| 네덜란드 | 선거인명부와 후보자 등록에 관한 이의제기 | 관할법원, 국왕최고자문위원회 | 선거법 제14,18조 |
| 뉴질랜드 | 선거와 결과에 관한 소송 | 고등법원 | 선거법 제229,230,258조 |
| | 의석 배분 관련 소송 | 항소법원 | |
| 폴란드 | 선거인명부등록에 대한 이의제기 | 지방법원 | 선거법 제20조제4항 |
| | 선거효력, 당선효력 | 대법원 | 선거법 제241조 |
| 포르투갈 | 후보자 등록 절차, 선거과정, 투표결과 | 헌법재판소 | 선거법 제32,34,117,118조 |
| 슬로바키아 | 선거효력에 대한 이의신청 ¹²⁷⁾ | 헌법재판소 | 헌법 제129조제1,2항 |
| | 선거인명부 오류 | 지방법원 | 선거법 제10,250z조 |
| | 후보자명부 오류 | 대법원 | 선거법 제250za조 |
| 슬로베니아 | 후보자에 관한 이의제기 | 선거위원회(행정법원에 항소 가능) | 선거법 제105조 |
| 터 키 |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¹²⁸⁾ , 투·개표문제, 선거인명부 오류, 후보자명부 오류 | 최고선거위원회 | 헌법 제79조 선거기본법 제110조~115조 |

126)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belgium/416432?download=true> (검색일 2019.7.29.)

127) 슬로바키아 선거법은 선거쟁송에 관한 항목을 제공하지 않음. 선거법 상 선거쟁송에 관한 절차가 없으며 선거운동과 관련된 분쟁은 법원이 아닌 내무부에서 관할함. 선거효력에 관한 이의신청은 대통령, 정부, 1/5 이상의 의원 또는 검찰총장 등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제기될 수 있음.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slovakia/235591?download=true> (검색일 2019.7.24.)

128) https://www.ifes.org/sites/default/files/2019_ifes_turkey_local_elections_faqs_final.pdf (검색일 2019.7.23.)

<http://www.ysk.gov.tr/doc/dosyalar/Kurumumuz/YuksekJuruluTanitimKitapciigi/YSK-Book.pdf> (검색일 2019.7.23.)

제16장 벌칙

<표 16-1> OECD국가의 주요 선거범죄 비교

1. 매수죄

| 국가명 | 주요 내용 | 벌칙 | 근거규정 |
|--|---|-------------------------------|---------------|
| 영국 | • 부패행위, 금전에 의한 입후보 취소, 권유, 알선 |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양자의 병과 | 국민대표법 제60조 |
| 미국 (연방) | • 투표를 하거나 못하도록 금품을 지출하거나 지출을 제의하는 행위,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 연방선거운동법 제597조 |
| | • 누구든지 투표를 하거나 못하도록 정부의 특별지출금을 사용하거나 그 권한을 행사한 행위 |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 제598조 |
| | • 후보자가 그 지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공직의 임명 또는 취업을 약속하는 행위 |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 제599조 |
| 캘리포니아 주 | • 선거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고용, 지위, 보수, 계약, 임명, 기타 이익을 약속하는 행위 |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 제600조 |
| | • 투표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기 위해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 16개월 또는 2년 또는 3년의 징역 | 선거법 제18310조 |
| | •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행위와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행위 | | 선거법 제18311조 |
| • 투표를 하거나 못하도록 공직, 고용을 제공하거나 약속 또는 알선하겠다는 행위 | 선거법 제18520조 | | |
| 프랑스 | •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품을 선물로 약속하는 행위 • 동의하거나 교사한자도 동일한 형벌에 처함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0의 벌금 | 선거법 제106조 |
| | •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구시군이나 특정조직체에 선물을 약속하는 행위 | 2년의 징역 또는 €15,000의 벌금 | 제108조 |
| 독일 | • 투표를 하거나 못하도록 금품이나 이익을 제안·약속 또는 공여한 행위 •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게 하며 수령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 형법 제108조의b |
| 일본 | •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무를 주거나 주겠다고 약속하는 행위 또는 특수한 직접 이해관계를 이용해 유도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 이하의 벌금 | 공직선거법 제221조1항 |
| | • 수수 또는 교부받은 이익을 몰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 | 몰수할 수 없을 때 | 제224조 |
| 캐나다 | • 부패행위, 후보자, 공식 대표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 | 7년 간 하원 피선거권 제한, 공무담임권 제한 | 선거법 502조 |

| 국가명 | 주요 내용 | 벌칙 | 근거규정 |
|--|--|---|---------------|
| 스페인 | • 보상, 선물, 금품에 대한 약속을 통해 어느 특정 선거인의 표를 직·간접적으로 호소하거나 기권을 유도하는 자 |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벌금 공직과관련 특별자격정지 | 선거법 제146조1항1호 |
| 스위스 | • 특정인에게 투표하거나 국민투표, 국민발안의 대가로 금품·선물제공 수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 형법 제281조 |
| 스웨덴 | •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않을 목적으로 부적절한 대가를 받거나 약속을 수락하는 행위 |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 형법 제17장 제9절 |
| 호 주 | • 투표에 영향을 미치거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수령 또는 제공 또는 약속하는 행위 | 2년의 징역 또는 50 페널티 유닛의 벌금 양자의 병과 | 연방선거법 제326조 |
| 오스트리아 | • 투표에 영향을 미치거나 투표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약속, 공여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720일수입이하의 벌금 ¹²⁹⁾ | 형법 제265조 |
| 벨기에 | • 누구든 선거권자에게 여행, 숙박비용 등 재산상 가치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경우 | €26 이상 €200 이하의 벌금 | 선거법 제184조 |
| | • 누구든 선거와 관련하여 음식, 음료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경우 | | |
| | • 제공 또는 제공의 약속을 받은 사람도 함께 처벌 | 8일 이상 1개월 이하의 구금 또는 €50 이상 €500 이하의 벌금 양자의 병과 | 제181,182조 |
| | • 어떤 상인도 선거와 관련한 비용 지급을 주장할 수 없음. | | |
| • 누구든 직간접적으로 투표, 기권, 투표안내문, 선거결과에 따른 이득에 대하여 금전 등 재산상 이익, 거래상의 우위나 안전을 제공, 제안, 약속하는 행위 | 2배 가중처벌 | 제185조 | |
| • 제공 또는 제공의 약속을 받은 사람도 함께 처벌 | | | |
| • 누구든 공사의 직을 제공, 제안, 약속, 수락하는 행위 | 2배 가중처벌 | 제186조 | |
| • 위 두 가지 매수죄와 관련한 금원을 제공한 경우 | | | |
| • 공무원이 매수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 | | |
| 체코 | • 금품, 이익을 대가로 선거권자로 하여금 자신의 자유의지와 다르게 투표하도록 하는 행위 | 6개월 이상 3년 미만의 징역 | 형법 제351조 |
| 칠레 | • 선거에서 금품을 대가로 특정인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징역 또는 10~50개월의TU ¹³⁰⁾ 에 해당하는 벌금, 공무원임권 영구박탈 | 선거법 제150조 |
| | • 선거에서 금품을 받고 특정인에게 투표하는 행위 | 징역 또는 1~3월의TU에 해당하는 벌금 | |
| 덴마크 | • 투표 또는 기권하도록 선거권자에게 금품이나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 투표 또는 기권하도록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117조제4,5항 |
| 에스토니아 | • 투표에 영향을 미치거나 투표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금품이나 혜택을 약속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162조 |
| 핀란드 | • 투표에 영향을 미치거나 투표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 벌금 또는 | 형법 |

| 국가명 | 주요 내용 | 벌칙 | 근거규정 |
|-------|---|---|--------------------------|
| | 보상 또는 혜택을 약속, 제안하는 행위 •투표를 대가로 보상이나 혜택을 요구하는 행위 | 최고 1년 이하 징역 | 제14장제2조 |
| 그리스 | •선거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금품을 제공받아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 | 벌금 또는 3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선거법 제114조 |
| 헝가리 | •후보자 추천을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 최고 3년 이하 징역 | 형법 제350조제1항 |
| 아이슬란드 | •투표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돈이나 기타 이익을 지불하거나 지불할 것을 약속, 요구, 수용하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 형법 제103조 |
| | •투표하거나 하지 않도록 재산상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투표하거나 하지 않거나, 특정 방법으로 투표하는데 대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행위 | 벌금 | 의회선거법 제127조 |
| 아일랜드 | •금품을 대가로 선거권자로 하여금 특정인에 대한 투표를 유도, 알선, 기권 또는 입후보 포기를 요구하는 행위 | 약식 재판: £1,000 미만의 벌금 또는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정식 재판: £2,500 미만의 벌금 또는 2년 미만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 선거법(1992) 제135,157조 |
| 이스라엘 | •선거권자로 하여금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 또는 기권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 20,000NIS의 벌금과 5년의 징역 | 선거법 제122,123조 |
| 이탈리아 |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유리하게 입후보 추천을 위한 서명을 받거나 투표 또는 기권하도록 현금, 유가증권 또는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및 3,000ITL 20,000ITL 이하의 벌금 | 하원선거법 제96조 |
| 라트비아 | •고의로 폭력, 뇌물, 매수, 기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선거권자가 총선, 국민투표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 | 최대 3년의 구금 또는 금고 또는 사회봉사 또는 벌금 | 형법 제90조 제1,2항 |
| 리투아니아 | •투표를 하거나 못하도록 선물이나 그 밖의 보상을 제공하는 행위 | 사회봉사, 벌금, 자유의 제한, 체포 또는 4년 이하의 징역 ※ 선거무효로 귀결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172조 의회선거법 제5조제1항 |
| 룩셈부르크 | •투표 또는 기권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금품, 보조금, 이익 또는 식음료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 €500~5,000의 벌금 | 선거법 제95,96조 |
| 멕시코 | •투표, 기권, 특정 후보자나 정당 및 연합에 투표하는 것을 대가로 폭력을 사용 또는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 50일 이상 100일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과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선거범죄에 관한 일반법 제7조제7항 |

| 국가명 | 주요 내용 | 벌칙 | 근거규정 |
|-------|---|---|----------------|
| 노르웨이 | • 투표 또는 기권하도록 선거권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동의하는 행위 |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151조제b항 |
| | • 투표 또는 기권을 대가로 혜택을 제공받거나 동의하는 행위 |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 형법 제152조 |
| 네덜란드 | • 투표를 대리하기 위해 뇌물이나 약속을 주고받는 행위 • 후보자명부 추천서명서를 위해 뇌물이나 약속을 주고받는 행위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4,100 이상 €8,200 이하의 벌금 | 선거법 제Z4조제1항 |
| | • 투표에 영향을 미치거나 투표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뇌물이나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 | | 형법 제126조 |
| 뉴질랜드 | •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전, 선물, 장소, 고용, 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한 행위 • 투표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거나 동의한 선거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N\$40,000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 | 선거법 제216조 |
| 폴란드 | • 투표를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전적 이익이나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 |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250a조제1,2항 |
| 포르투갈 | • 투표에 영향을 미치거나 투표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표를 매수하거나 시도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0일수의 벌금 ¹³¹⁾ | 형법 제341조 |
| | • 특정 투표를 설득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용 등의 혜택을 제안, 약속, 제공하거나 여행, 숙식경비, 선거운동 비용 등을 위장하여 보상하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이상 \$50,000 이하의 벌금 (escudo \$1,000=€5) | 선거법 제155조 |
| 슬로바키아 |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주거나 약속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선거법 제41조에 따라 선거법 명시내용 외에는 형법으로 규제(*형법, IDEA ¹³²⁾) | 최대 3년의 징역, 정도에 따라 가중처벌 | 형법 제332조 |
| 슬로베니아 | • 투표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물 또는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요구, 수용하는 행위 |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157조 |
| 터 키 | • 1명 이상의 선거권자에게 이익, 금품, 공직의 임명 또는 취업, 서비스를 대가로 투표를 요구하는 행위 • 수령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 • 폭력, 강요, 위협 등의 수단을 사용했을 경우 2배 가중처벌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선거기본법 제152조 |

129) Tagessatz(오스트리아 형법상 일일 벌금기준 단위: 월별 또는 연간 수입을 통해 계산된 일평균 수입)×법정일수

130) Tax Unit: 49,033.000CLP, 한화 약 84,000원 Jul 2019 기준(검색일 2019.7.29.)

<https://www.ceicdata.com/en/chile/monthly-tax-unit/monthly-tax-unit> (월별 TU단위)

131) Dias-multa(포르투갈 일일 벌금기준 단위: €1 이상 €500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법원이 사안에 따라 결정)×법정일수

132) <https://www.idea.int/data-tools/country-view/266/60> (검색일 2019.7.26.)

2. 선거의 자유방해죄

| 국가명 | 주요내용 | 벌칙 | 근거규정 |
|-------------|--|--|------------------|
| 미 국 (연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협박하거나 협박을 시도한 행위 |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양자의 병과 | 연방선거 운동법 제594조 |
| 캘리포니아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박 또는 폭력으로 선거인이 정치모임에 나가는 것을 막거나 방해한 행위 | 경범죄로 \$1,000(한화 119만 원) 미만의 벌금 | 선거법 제18340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폭력 또는 위협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 16개월 또는 2년 또는 3년 징역 | 제18540조 |
| 프랑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란 또는 위협적인 시위행위로 선거인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선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 행위 | 2년의 징역과 €15,000의 벌금 | 선거법 제98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선거인단에 폭력을 사용했거나 폭력을 사용할 행위 | 5년의 징역과 €22,500(한화 3,600만 원)의 벌금 | 제99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기를 가지고 있거나 투표를 침해한 행위 | 10년의 징역 | 제100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 범죄가 공모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1개 또는 수개의 도 또는 구 규모로 행해진 경우 | 20년의 징역 | 제101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인에 대해 폭행, 협박이나 공포심을 일으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2년의 징역과 €15,000의 벌금 | 제107조 |
| 독 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 기타의 경제상 압력을 가하여 투표를 강요 또는 방해한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특히 중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미수범도 벌함. | 형법 제108조 |
| 일 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인, 공직후보자, 선거운동원에게 폭행이나 위력을 가하거나 유인한 행위 교통, 집회, 연설을 방해하거나 문서, 그림 등을 훼손한 행위 특수이해관계를 이용해 협박한 행위 | 4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 이하의 벌금 | 공직선거법 제225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중이 집합하여 죄를 범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모자: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타인을 지휘하거나 앞장서서 행동한 자: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단순참가자: ¥20만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 제230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선거관계사무원이 고의로 공직후보자나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행위 | 4년 이하의 금고 | 제226조 |
| 스페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인에게 폭력·위협을 행사하여 선거권 행사를 못하게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하게 하는 행위 |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벌금형 | 선거법 제146조 제1항제2호 |
| 스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력이나 협박으로 선거나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형법 제279,280조 |

| 국가명 | 주요내용 | 벌칙 | 근거규정 |
|-------|--|--|-------------------------|
| 캐나다 | • 투표소 또는 투표가 실시되는 모든 곳에서 선거인이 투표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식 유죄판결 시 - C\$20,000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양자의 병과 • 기소에 대한 유죄판결 시 - C\$50,000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양자의 병과 | 선거법 제166조1항3호 제489조3항4호 |
| | • 선거과정(electoral process)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 | | 제480조 |
| | • 협박·강요, 허위·왜곡을 통해 선거인에게 투표를 하거나 못하게 하는 행위 | | 제482조 |
| 호 주 | • 공무원이 타인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한 행위 또는 사건을 행할 때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 페널티 유닛 이하의 벌금 양자의 병과 | 연방선거법 제325조 |
| | • 병원 또는 요양소의 장 또는 그 직원인 자(병원 또는 요양소의 소유주인 법인의 이사 또는 직원 포함)가 그 병원 또는 요양소 환자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6개월의 징역이나 10 페널티 유닛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 | 제325A조 |
| | •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된 타인의 정치적 권리 또는 의무 행사를 방해하거나 간섭하는 행위 | 일반인의 경우 2년의 징역 또는 50 페널티 유닛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 법인의 경우 200 페널티 유닛의 벌금 | 제327조 |
| 오스트리아 | • 위협 또는 강요로 투표를 방해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720일수입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62조 |
| | • 강요 이외의 방법으로 투표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60일수입 이하의 벌금 | |
| 벨기에 | • 폭력 또는 협박을 통해 선거권자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권하게 하려는 행위 | 8일 이상 1개월 이하의 구금 또는 €50 이상 €500 이하의 벌금 양자의 병과 | 선거법 제183,185, 186조 |
| | • 의도를 알면서 금전을 제공한 행위 | | |
| | • 공무원이 관여된 경우 두 배 가중처벌 | | |
| | • 복지기관, 자선단체 직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빈곤층에게 투표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지원을 약속, 제공 또는 지원을 중단하는 행위 | 8일 이상 1개월 이하의 구금 또는 €50 이상 €500 이하의 벌금 | 제187조 |
| | •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조건으로 복지기관 등에 대해 지원을 요구하는 행위 | 8일 이상 3개월 이하의 징역 | 제189조 |
| | • 선거인을 위협하거나 소란을 피우기 위해 개인 혹은 집단을 고용하거나 배치하는 행위(무기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해당) | 15일 이상 1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6 이상 €500 이하의 벌금 | 제188조 |

| 국가명 | 주요내용 | 벌칙 | 근거규정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도적으로 위의 폭력조직 등에 참여한 경우 | 8일 이상 15일 이하 구금 또는 €26 이상 €200 이하의 벌금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력적인 집회, 협박, 폭력 등으로 선거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15일 이상 1년 이하의 구금 또는 €26 이상 €1,000 이하의 벌금 | 제189조 |
| | 제188조 관련 범죄: 고용, 연합(united), 배치한 사람 ※ 폭력조직, 범죄조직 등을 고용한 경우 |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구금 또는 €100~1,000의 벌금 | 제191조 |
| 체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기를 통해 타인을 기망하거나 폭력을 동원하여 선거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 | 6개월 이상 3년 미만의 징역 | 형법 제351조 |
| 칠레 | - | - | - |
| 덴마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선거권자로 하여금 특정인에게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선거권자로 하여금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투표를 방해하거나 투표를 무효로 만드는 행위 |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117조제2,3항 |
| 에스토니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적지위, 폭력, 기만 또는 가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 |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162조 |
| 핀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박·강요 등을 행사하여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 |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14장제1조 |
| 그리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력 또는 위협 수단을 동원하여 선거권자로 하여금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자 | 3개월 이상의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선거법 제112조제1항 |
| 헝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력, 위협, 기만 등으로 투표를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350조제1항제 e호 |
| 아이슬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적인 수단으로 강요, 정치적 자유의 제한, 지휘권의 남용 등으로 투표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 형법 제103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권을 침해하기 위해 강압적인 조치나 폭력, 위협을 가하여 투표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4년 이하의 징역 | 의회선거법 제128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하거나 하지 않도록 재산상 손해나 일자리의 상실에 대한 협박을 하는 행위 | 벌금 | 의회선거법 제127조 |
| 아일랜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협, 폭력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직간접적으로 투표를 방해하거나 특정인이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입후보를 방해하는 행위, 선거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 약식 재판: £1,000 미만의 벌금 또는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 선거법(1992) 제136,157조 |
| | | 정식 재판: £2,500 미만의 벌금 또는 2년 미만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 |
| 이스라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권자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자 | 2년의 징역 또는 10,000NIS의 벌금 | 선거법 제119조제3항 |

| 국가명 | 주요내용 | 벌칙 | 근거규정 |
|-------|---|--|----------------------|
| 이탈리아 | • 위협, 폭력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선거절차,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투표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자 |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벌금 및 3,000ITL 이상 20,000ITL 이하의 벌금 | 하원선거법 제100조제1항 |
| 라트비아 | • 고의로 폭력, 뇌물, 매수, 기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선거권자가 총선, 국민투표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 | 최대 3년의 구금 또는 금고 또는 사회봉사 또는 벌금 | 형법 제90조 제1,2항 |
| 리투아니아 | • 정신적 강요나 속임수를 써서 투표와 관련된 타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 사회봉사, 벌금, 자유의 제한, 체포 또는 4년 이하의 징역 ※ 선거무효로 귀결되는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172조 |
| 룩셈부르크 | •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 직업 상실 위협, 개인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위협이나 기타 경제적 압력을 가하여 기권 또는 무효투표를 강요 또는 방해하는 행위 | 최대 €2,000의 벌금 또는 8일 이상 1개월 이하의 금고 | 선거법 제97조 |
| 멕시코 | • 폭력 또는 위협 수단을 동원하여 선거권자로 하여금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 50일 이상 100일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과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선거범죄에 관한 일반법 제7조제16항 |
| 노르웨이 | • 위협 또는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선거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 • 선거권자로 하여금 본인의 의사와 다른 방향으로 투표하거나 기권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151조제a,c항 |
| 네덜란드 | • 폭력이나 위협으로 자유로운 투표권의 행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4,100 이상 €8,200 이하의 벌금 | 형법 제125조 |
| | • 대리투표를 하기위해 개인적인 접근과 설득을 하는 행위 | 1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4,100 이상 €8,200 이하의 벌금 | 선거법 제28조 |
| 뉴질랜드 | • 협박, 강요, 폭력, 구속을 행사하거나 또는 정신적, 신체적인 상해, 피해, 손실을 가하여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 • 납치, 협박, 기만 등을 통해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N\$40,000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 | 선거법 제218조 |
| 폴란드 | • 위협과 폭력 등을 행사하여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 |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249,250조 |
| 포르투갈 | • 폭력, 위협 또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의해 투표를 방해 또는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시도 | 5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340조 |
| | • 해고나 취업방해 혹은 다른 위협을 통해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이상 \$20,000 이하의 벌금 (escudo \$1,000=€5) | 선거법 제154조 |
| 슬로바키아 | • 폭력이나 위협 또는 사기 등을 통해 타인이 자신의 헌법상의 권리인 선거 및 국민투표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 최대 3년의 징역 | 형법 제351조제1,3항 |

| 국가명 | 주요내용 | 벌칙 | 근거규정 |
|-------|--|--|--------------|
| | 하는 자 ※ 그 정도가 심각하거나, 공무원이 가담한 경우, 특정 동기 유무 또는 공개적으로 행했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처벌 | | |
| 슬로베니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이 선거인명부에 선거인의 이름을 등재하지 않거나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이름을 삭제하는 행위 폭력, 위협, 뇌물, 속임수 등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투표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공무원 등 선거 관련 직무를 남용한 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 제공한 뇌물은 몰수 | 형법 제150,151조 |
| 터 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인의 선거인등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자가 했을 경우 가중처벌 선거권자가 투표소에 가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감금하거나 지역 간 이동을 막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또는 권한이 있는 자가 연루된 경우 가중처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격 자격을 갖춘 선거권자가 해당 행위로 인해 선거권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해당 행위에 폭력, 강요, 위협 등의 수단을 사용했을 경우 가중처벌 | 선거기본법 제145조 |
| | |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 |

3. 투표소 무기휴대죄

| 국가명 | 주요내용 | 벌칙 | 근거규정 |
|-------|---|---|-------------|
| 프랑스 | 투표소에 무기를 휴대하고 들어가는 행위 | 3개월의 구금과 €7,500의 벌금 | 선거법 제96조 |
| 일본 | 총포, 도검, 곤봉, 기타 사람을 해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고 투표소, 개표소, 선거회장에 들어간 행위 |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만 이하의 벌금 | 공직선거법 제231조 |
| 스페인 | 무기 또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의 소지를 통해 각종 투표행위 또는 투표 장소의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방해하는 자 |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6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벌금형 | 선거법 제147조 |
| 오스트리아 | 지역선거관리기관이 정한 투표소 반경 제한구역 내에서는 총기류 소지가 금지 | 2주 이하의 구금 또는 €218의 벌금 | 의회선거법 제58조 |
| 벨기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기를 소지한 채로 투표소에서 선거인, 참관인 등에 대하여 모욕, 폭력, 협박을 행사하거나 선거절차를 지연시키는 행위 투표가 침해된 경우 최대 2배 가중 처벌 | 15일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1,000의 벌금 | 선거법 제193조 |

| 국가명 | 주요내용 | 벌칙 | 근거규정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소지 시 가중처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소지 시 - 초범: 3개월~2년 징역 또는 €200~2,000의 벌금 - 재범: 5년~10년 징역 €3,000~5,000의 벌금 | |
| 이탈리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절차, 선거권자의 투표권 행사 방해 등 본 법에서 규정한 위반행위를 집단이 무기를 동원해 저지른 경우 ※ 5명 이상의 군중이 무기를 이용하거나 그 일부만 이용한 경우, 또는 10명 이상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해당 행위를 했을 경우 |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및 최대 20,000ITL의 벌금 | 하원의원선거법 제101조 |
| 룩셈부르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또는 다중이 집합하여 무기를 소지하고 선거권자들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 <p>개인: 초범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5,000 벌금, 재범 5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5,000 벌금, 투표용지 훼손 시 2배 가중처벌</p> <p>단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5,000 벌금</p> | 선거법 제101,102조 |
| 멕시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 또는 위협 수단을 동원하여 선거권자로 하여금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다수의 무기를 소지한 집단이 행했을 경우 | 50일 이상 100일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과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및 1/2에 해당하는 가중처벌 | 선거범죄에 관한 일반법 제7조제16항 |
| 폴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를 소지한 자는 투표소에 출입할 수 없음. | - | 선거법 제46조 |
| 터 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일 무기소지 금지 ※ ‘무기’는 형법 제6조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름. | 총포도검류 등에 관한 법률 ¹³³⁾ 에 따른 가중처벌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25일에 해당하는 벌금 | 선거기본법 제79,133조 |

※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호주, 칠레,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네덜란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는 투표소 무기휴대죄 별도 규정 없음.

133) Law No. 6136 For the Firearms and Knives and Other Tools

4. 선거방해죄

| 국가명 | 주요내용 | 벌칙 | 근거규정 |
|----------------|---|--|-------------------------|
| 미 국 캘리포니아 주 | • 투표물품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경범죄로 \$1,000 미만의 벌금 선거법 제18001조 | 선거법 제18380조 |
| | • 선거나 개표를 방해하는 행위 | 16개월 또는 2년 또는 3년의 징역 | 제18502조 |
| 프랑스 | • 투표소에서 폭력 또는 협박으로 선거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1년의 징역과 €15,000의 벌금 | 선거법 제102조 |
| | • 실제투표가 방해된 경우 | 5년의 징역과 €22,500의 벌금 | |
| 독 일 | • 폭력 또는 협박으로 선거 또는 선거결과의 확정을 방해하거나 교란한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 형법 제107조 |
| 일 본 | • 투표 관리자, 선거사무원을 폭행, 협박해 소란스럽게 하거나 선거물품을 훼손, 탈취한 행위 |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공직선거법 제229조 |
| | • 다중이 집합하여 죄를 범할 때 - 주모자: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타인을 지휘하거나 앞장서서 행동한 자: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단순참가자: ¥20만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 제230조 |
| 스페인 | • 선거절차가 진행되는 곳에서 선거인, 후보자, 대리인, 참관인 및 공증인의 출입 또는 그곳에 머무르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자 |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벌금형 | 선거법 제146조 제1항제3호 |
| 스웨덴 | • 투표를 방해, 투표결과를 조작하는 등 투표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중할 경우 4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17장 제8절 |
| 스위스 | • 선거인명부를 조작·훼손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투표사거나, 선거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 형법 제282조 |
| | • 투표용지를 계획적으로 수집, 기표 또는 변경하거나 이러한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행위 | 과태료 | 형법 제282조의 bis |
| 캐나다 | • 고의적으로 임무수행 중에 있는 선거공무원을 방해하는 행위 | • 약식 유죄판결 시 - C\$20,000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양자의 병과 • 기소에 대한 유죄판결 시 - C\$50,000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양자의 병과 | 선거법 제43조 제484조제3항 |
| 호 주 | • 누구든지 선거기간 동안 선거인을 현혹 또는 기만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을 인쇄, 공표 또는 배포하는 행위 | 일반인: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 페널티 | 연방선거법 제329조 |

| 국가명 | 주요내용 | 벌칙 | 근거규정 |
|-------|--|--|-------------------|
| | | 유닛 이하의 벌금 양자의 병과 법인: 50 페널티 유닛 이하의 벌금 | |
| | • 선거일 선거인등록에 관해 허위 또는 거짓 진술을 하는 행위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 페널티 유닛 이하의 벌금 | 제330조 |
| | • 제3자가 투표용지에 기표 또는 기타 표시를 하는 행위 | 양자의 병과 | 제338조 |
| | • 투표할 목적으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 후보자 등록서류 또는 투표용지를 파손·훼손하는 행위 • 권한 없이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행위 | 6개월 이하의 징역 | 제339조제1항 |
| | • 같은 선거에서 두 번 이상 투표하는 행위 | 10 페널티 유닛 이하의 벌금 고의로 이중투표하면 60 페널티 유닛 이하의 벌금 또는 12개월의 징역 양자의 병과 | 제339조 제1A, 1C항 |
| 오스트리아 | • 강제 또는 위협에 의해 투표나 선거 결과의 확정, 공표를 방해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267조 |
| 벨기에 | •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 선거인단 구성 방해, 폭력으로 선거절차를 지연시키는 행위 • 투표가 침해된 경우 최대 2배 가중 처벌 • 무기소지 시 가중 처벌 |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 이상 €2,000 이하의 벌금 ※ 무기소지 시 - 초범: 1년~3년 징역 또는 €500~3,000의 벌금 - 재범: 5년~10년 징역 또는 €3,000~5,000의 벌금 | 선거법 제190조 |
| | • 투표소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 €50 이상 €500 이하의 벌금 | 제111조 |
| | • 선거인명부 등재를 위해 서류를 조작하는 행위 | €26 이상 €200 이하의 벌금 | 제195조 |
| | • 선거인명부에서 선거인을 삭제, 대체, 추가 등 조작하는 경우 | 26€ 이상 200€ 이하의 벌금 그리고 8일 이상 15일 이하 구금 | 제196조 |
| | • 선거권자 확보를 위해 선거인명부를 조작하는 경우 | 8일 이상 1개월 이하의 구금 또는 €50 이상 €500 이하 벌금 | |
| | • 참의원,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도적으로 선거인명부 등재를 거부하거나, 선거인명부에서 선거인을 삭제, 대체, 조작하는 경우 |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구금 | 제197조 |

| 국가명 | 주요내용 | 벌칙 | 근거규정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개표 중 투표용지를 오용, 변경, 추가하거나 투표지 개수를 실제 개표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6 이상 €1,000 이하의 벌금 | 제200조 |
| | ※ 선거위원회 직원 또는 참관인의 경우 |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 이상 €3,000 이하의 벌금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선거권자의 이름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려는 행위 |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6 이상 €1,000 이하의 벌금 | 제201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용지를 분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 26 이상 €1,000 이하의 벌금 | |
| 체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 선거 관련 수치, 선거 관련 청원과 관련된 문서 및 정보를 조작하는 행위 의회, 지자체 구성, 국민투표를 위한 선거절차를 방해하는 자 | 6개월 이상 3년 미만의 징역 | 형법 제351조 |
| 칠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위원회 또는 투표소 관계자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 | 중간등급(medium grade) 이하의 징역형 ¹³⁴⁾ | 선거법 제143조 |
| 덴마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절차를 방해하거나 결과를 조작, 또는 개표가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자 | 6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116조제1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적으로 권한을 취득하여 투표에 관여하는 행위 |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117조제1항 |
| 에스토니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나 선거결과의 확정, 공표를 방해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 형법 제161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력을 사용한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용지나 관련 장부의 손상, 파괴, 탈취, 위조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 제163조 |
| 핀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권이 없는 자가 투표하거나, 두 번 이상 투표를 하거나 시도한 자 |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14장제3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용지를 파괴, 손상, 추가하거나 잘못된 개표를 하여 선거결과를 왜곡하려는 행위 |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14장제4조 |
| 그리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의로 선거를 방해하거나 소음, 무질서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선거를 방해하는 자 |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선거법 제115조 |
| 헝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인 없는 투표 또는 서명을 하거나 투표의 결과를 위조하는 행위나 시도를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350조 제c,d,f,g호 |
| 아이슬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를 방해하거나 선거의 결과를 조작하고 무효화하려는 행위 | 4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102조 |

| 국가명 | 주요내용 | 벌칙 | 근거규정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의로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 자신이 배달 또는 발송하도록 위임된 투표지의 배달·발송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자가 등재되거나, 자격자가 누락되거나, 선거구가 바뀌도록 하는 행위 • 잘못된 선거지침을 발행하는 행위 • (사전)투표 투표지 등의 회송을 지연시키는 행위 • 투표소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 다른 장소에서 투표하는 행위 | 벌금 | 의회선거법 제125,126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지를 위조하거나 누락 또는 손상시켜 개표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 4년 이하의 징역 | 의회선거법 제128조 |
| 아일랜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선에서 후보자추천이나 투표소에서 폭력을 사용하여 절차를 방해하는 자 | 약식 재판: £1,000 미만의 벌금 또는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정식 재판: £2,500 미만의 벌금 또는 2년 미만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 선거법 제145,157조 |
| 이스라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투표용지를 배포하는 자,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꺼내어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 | 10,000NIS의 벌금 또는 2년의 징역 | 선거법 제119조 제1,2,6항 |
| 이탈리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단의 여하를 불문하고 공·사적 선거운동집회를 방해하는 자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ITL 이상 15,000ITL 이하의 벌금 | 하원선거법 제99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 실시를 위한 문서를 위·변조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조작, 파괴하는 자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 하원선거법 제100조제2항 |
| 라트비아 | 규정 없음. | - | - |
| 리투아니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개표록, 투표용지 등을 위조하는 행위 | 사회봉사, 벌금, 자유의 제한, 체포 또는 4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173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표를 잘못 세어 기록하거나 개표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 체포,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174조 |
| 룩셈부르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소에서 개인 또는 다중이 집합하여 선거권자들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 개인: 15일 이상 1개월 미만의 징역과 최대 €5,000의 벌금 단체: 8일 이상 15일 미만의 금고와 최대 €5,000의 벌금 | 선거법 제98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지를 교체하여 실제 개표수보다 더 많거나 낮은 투표수가 집계되도록 하는 행위 |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5,000의 벌금 | 제109조 |

| 국가명 | 주요내용 | 벌칙 | 근거규정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마선언서, 후보자동의서, 증인입명서 등의 서명을 위조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대리 투표하여 더 많은 투표수가 집계되도록 하는 행위 |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과 최대 €10,000의 벌금 | 제110조 |
| 멕시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절차 또는 연방선거기관 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선거 관련 문서를 위·변조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대치, 파괴하는 자 | 50일 이상 100일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과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선거범죄에 관한 일반법 제7조제4,11항 |
| 노르웨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권 없이 투표하는 자, 타인의 명의로 투표하거나 한번 이상 투표하는 자 |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153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지를 조작, 제거, 부정투표지 투입 등으로 개표결과를 방해하는 자 |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154조 |
| 네덜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가 진행 될 때 의도적으로 투표를 방해하거나 투표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8,200 이상 €20,500 이하의 벌금 | 형법 제129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용지나 선거권자카드 등의 모방, 위조 등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8,200 이상 €20,500 이하의 벌금 | 선거법 제Z1조 |
| 뉴질랜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인과 후보자명부 등 선거정보를 승인된 목적 외 사용을 위해 수신, 제공하는 행위 | 상업적 목적: N\$50,000 이하의 벌금 그 외의 경우 N\$10,000 이하의 벌금 | 선거법 제116,117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시행 시 필요한 신청서나 증명서 등의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N\$2,000 이하 벌금 | 제118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명부나 선거인명부작성 시 고의로 가명이나 사망한 자의 이름을 기입하는 행위 | N\$2,000 이하 벌금 | 제119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인 본인확인을 위한 질문에 대해 선거관리관에게 대답하지 않거나 거짓을 말하는 경우 | 최대 N\$1,000 벌금 | 제166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용지의 위조, 훼손, 파괴, 유출, 승인된 투표용지가 아닌 용지의 투표함 투입 | 6개월 이하의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선거관리관) | 제201조제1,2항 제a~d호 |
| 폴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명부나 선거인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선거 문서를 파손, 은폐, 위조, 개표 및 집계를 방해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248조 |
| 포르투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력, 위협, 무질서의 방법으로 결과 발표 등을 방해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 형법 제338조제1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이상 \$10,000 이하의 벌금 (escudo \$1,000=€5) | 선거법 제161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용지 투입 시 부정을 저지른 행위 |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제157조 |

| 국가명 | 주요내용 | 벌칙 | 근거규정 |
|-------|--|---|--------------------------|
| | | \$20,000 이상 \$200,000 이하의 벌금 (escudo \$1,000=€5) | |
| 슬로바키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의로 개표 오류를 범하는 자 ※ 그 정도가 심각하거나 공무원이 가담한 경우 특정 동기 유무 또는 공개적으로 행했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처벌 | 최대 3년의 징역 | 형법 제351조 제2항제a호 제351조제3항 |
| 슬로베니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을 대신해 투표하거나 한 번 이상 투표하는 행위 |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152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 지위를 이용하여 실제 투표결과와 다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 제155조 |
| 터 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소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자 | 250TRY의 과태료 | 선거기본법 제158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를 한 이후에도 투표함 근처에 남아 있으려 하거나 다른 선거권자들을 방해하는 자 |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 선거기본법 제159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하고 질서정연한 투표절차 진행, 선거위원회의 기능 수행, 개표과정 지연 등의 목적을 갖고 고의로 이의를 제기하는 자 | 1,000~5,000TRY의 벌금 | 선거기본법 제166,167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법률에 언급된 최고선거위원회 및 유관 기관의 정당한 업무 진행을 폭력, 강요, 위협 등의 수단을 통해 방해하는 자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선거기본법 제171조 |

5. 투표함 탈취죄

| 국가명 | 주요내용 | 벌칙 | 근거규정 |
|-----|--|--|-------------------------|
| 프랑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표되지 않은 투표함을 탈취한 행위 | 5년의 징역과 €22,500의 벌금 | 선거법 제103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적이고 폭력적으로 탈취한 경우 | 10년의 징역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소 관리인에 의해 또는 투표용지 경비책임을 맡은 자가 투표함을 탈취한 경우 | 10년의 징역 | 선거법 제104조 |
| 캐나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함이나 장부 또는 투표용지 묶음을 파괴하거나 탈취· 개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간섭하는 행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식 유죄판결 시 - C\$20,000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양자의 병과 | 선거법 제167조1항4호 제489조3항5호 |

134) Prison, temporary imprisonment and confinement are either long-term or short-term and consist of minimum, medium or maximum degrees.

<https://www.oecd.org/daf/anti-bribery/anti-briberyconvention/33742154.pdf> (검색일 2019.9.3.)

| 국가명 | 주요내용 | 벌칙 | 근거규정 |
|-------|---|--|---------------------|
| | | • 기소에 대한 유죄판결 시 - C\$50,000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양자의 병과 | |
| 호 주 | • 투표함에 투표지 부정투입, 불법적으로 투표함 또는 투표용지를 파손·취득·개봉하는 행위 | 6개월 이하의 징역 | 연방선거법 제339조제1항 |
| 그리스 | • 투표함을 훼손하거나 은닉하는 자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선거법 제116조 |
| 아일랜드 | • 의도적으로 적법한 권한 없이 투표함이나 투표용지, 총선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문서를 파괴, 은닉, 개봉 또는 훼손하는 행위, 공식 인장이 찍힌 투표용지를 위조하는 행위, 적법한 권한 없이 투표용지를 유폐하는 행위, 투표함에 투표지가 아닌 종이를 투입하는 행위 | 약식 재판: £1,000 미만의 벌금 또는 6개월 미만의 징역 양자의 병과 정식 재판: £2,500 미만의 벌금 또는 2년 미만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 선거법 제138,157조 |
| 이스라엘 | • 담당관의 인허가 없이 투표함을 다루거나 투표용지를 꺼내거나 개봉하는 행위, 개봉에 포함되기 이전에 투표함에서 투표봉투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 10,000NIS의 벌금 또는 2년의 징역 | 선거법 제119조 제4,5,8항 |
| 리투아니아 | • 선거인명부, 투표지, 개표록 등을 훼손, 분실, 획득, 은폐하여 선거무효 등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사회봉사, 벌금, 자유제한, 체포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175조 |
| 멕시코 | • 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장소, 시간에 투표함을 설치 또는 개봉하거나 설치를 방해하는 행위 | 50일 이상 200일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과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 선거범죄에 관한 일반법 제8조제7항 |
| 뉴질랜드 | • 투표함을 파손 또는 탈취하거나 개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훼손한 행위 | 6개월 이하의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선거관리관) | 선거법 제201조제1,2항 제e호 |
| 슬로베니아 | • 투표지를 훼손, 은폐하거나 투표결과에 증거로 사용되는 문서, 증거 등을 위조, 훼손, 은폐하는 행위 |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공무원 등 선거 관련 직무를 남용한 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154조 |
| 터 키 | • 적법한 절차 또는 권한 없이 투표함을 옮기거나 이동 또는 개봉하는 자, 투표함을 탈취 또는 파괴하는 자, 투표함에서 투표용지를 꺼내거나 꺼낸 후 탈취 또는 파괴하거나 다른 투표용지로 교체하는 자 • 폭력, 강요, 위협 등의 수단을 사용했을 경우 2배 가중처벌 |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선거기본법 제161조 |

※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칠레,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는 투표함 탈취죄 별도의 규정이 없음.

6. 투표의 비밀침해죄

| 국가명 | 주요내용 | 벌칙 | 근거규정 |
|----------------|--|---|---------------------------|
| 미 국 캘리포니아 주 | • 투표지 위의 이름을 알아내려고 하는 행위 | 경범죄로 \$1,000 미만의 벌금 | 선거법 제18001, 18562조 |
| 프랑스 | • 투표 전이나 진행 중, 종료 후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고 한 행위, 투표결과를 변경하거나 변경하려는 행위 | €15,000와 1년 징역을 함께 또는 별도로 과함 | 선거법 제113조 |
| 독 일 | •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반한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 형법 제107조의c |
| 일 본 | • 선거관리공무원 또는 선거사무원이 선거인이 투표한 사항을 표시한 행위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만 이하의 벌금 | 공직선거법 제227조 |
| 스페인 | • 선거인에게 폭력·위협을 행사해 투표내용의 비밀을 공개하도록 하는 행위 |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벌금형 | 선거법 제146조1항2호 |
| 스웨덴 | •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반한 행위 |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 | 형법 제17장 제9절 |
| 스위스 | •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타인의 투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 형법 제283조 |
| 캐나다 | •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반하는 행위 | C\$5,000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 양자의 병과 | 선거법 제163조 제489조2항2호 |
| 호 주 | • 공무원 또는 참관인이 그 권한 행사 중 취득한 선거인 투표에 관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폭로 또는 전달하는 행위 | 6개월의 징역이나 10 페널티 유닛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 | 연방선거법 제323조 |
| 오스트리아 | • 투표에 내용을 알기 위해 비밀투표 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60일수입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68조 |
| 벨기에 | • 투표의 비밀을 폭로하는 행위 | €500 이상 €3,000 이하의 벌금 | 선거법 제199조 |
| 체 코 | • 고의로 개표오류를 범하거나 투표의 비밀 보장을 침해하는 행위 | 6개월 이상 3년 미만의 징역 | 형법 제351조 |
| 칠 레 | • 투표소 관계자가 투표용지에 선거인이 투표한 사항을 표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고의로 무효표를 만드는 행위 | 중간등급(medium grade) 이하의 징역형 | 선거법 제144조제5항 |
| 에스토니아 | •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 300 이하의 단위 벌금 ¹³⁵⁾ 또는 구금 법인의 경우 최대 €2,400의 벌금 | 형법 제166조 |
| 그리스 | •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선거권자의 투표 내용을 확인하거나 시도하는 자 | 2년 이하의 징역 | 선거법 제113조 |
| 헝가리 | •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반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350조제1항 제f호 |

| 국가명 | 주요내용 | 벌칙 | 근거규정 |
|-------|---|---|--------------------------|
| 아이슬란드 | • 선거 혹은 투표와 관련해 권한 없는 자의 공표 또는 의도적으로 부정확한 공표를 하는 행위 | 벌금 또는 징역 6개월 | 형법 제115조 |
| | • 고의로 자신 또는 타인의 투표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 타인의 투표내용을 엿듣는 행위 • 의도적으로 장애를 가장하여 투표보조를 동반하는 행위 | 벌금 | 의회선거법 제125조 |
| 아일랜드 | • 우편투표, 특별선거인명부 등록자 투표함 개봉 시 투표마감 전 외부와 연락을 취하는 행위, 투표용지에 적힌 숫자에 대한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선거인 투표 내용에 관한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투표내용을 볼 목적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를 보이도록 유도하는 행위 | 약식 재판: £1,000 미만의 벌금 또는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정식 재판: £2,500 미만의 벌금 또는 2년 미만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 선거법 제137,157조 |
| 라트비아 | • 고의로 비밀투표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 | 최대 4년의 구금 또는 금고 또는 사회봉사 또는 벌금 또는 최대 5년 동안 특정 직위에 취임할 권리 박탈 | 형법 제92조 |
| 룩셈부르크 | • 투표사무관계자, 참관인 등 가운데 1표 이상의 투표내용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 €5,000~15,000 이상의 벌금 | 선거법 제108조 |
| 멕시코 | • 투표 내용을 요구하여 비밀투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50일 이상 100일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과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선거범죄에 관한 일반법 제7조제8항 |
| 뉴질랜드 | • 투표소내의 선거권자의 투표 정보를 확인하려는 시도나 대화, 기표된 투표지를 보여 달라고 하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N\$40,000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 | 선거법 제203,204,224조 |
| 폴란드 | •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251조 |
| 포르투갈 | • 비밀 투표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투표 내용을 알게 되거나 알리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0일수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42조 |
| 슬로바키아 | •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자 ※ 그 정도가 심각하거나 공무원이 가담한 경우 특정 동기 유무 또는 공개적으로 행했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351조 제2항제a호 제351조제3항 |
| 슬로베니아 | • 선거인에게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또는 투표하거나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153조 |
| | •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반하는 행위 |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 공무원 등 선거 관련 직무를 남용한 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156조 |

※ 덴마크, 핀란드,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네덜란드, 터키는 투표의 비밀침해죄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음.

135) trahviühikut: 에스토니아의 벌금 기준 단위, 2019 현재 4유로

[별책]
2019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표

인 쇄 | 2019년 12월
발 행 | 2019년 12월
발행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전 화 | (031) 296-8755
디자인 및 인쇄 | 도서출판 오름 (oruem9123@naver.com)

(비매품)